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교수)
방은령 (한서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김현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결혼이라는 통과의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의 상당수는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율이 높은 것도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많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기라는 특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입양, 자녀양육 실태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의 근거로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한편 사후 개입방안으로서의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기관의 모든 연구진과, 연구진행에 자문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많은 사안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백혜정 연구위원	김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혜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방은령 교수(한서대학교)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보영 전문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이상림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윤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1차 년인 올해는 청소년의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을 연장선상에 놓고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라 크게 세 영역에서 세부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파악과 다양한 정책적 이슈 및 욕구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을 바탕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예방과 지원정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 실태를 검토하고 한부모 정책을 유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대상 양적 및 질적조사, OECD 및 EU 국가 통계자료분석, 관계자 FGI,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총괄보고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과 세부보고서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등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배경에는 취약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상황, 낮은 피임실천율이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비해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크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학업 및 근로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인해 제도적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정책제언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정책부터 입양정책,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족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단계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임신·출산, 입양, 자립지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1차 년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입양 경험과 자녀양육 및 자립상황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이슈 및 정책 요구를 도출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경험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임.
- 두 번째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임신·출산의 배경과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단계별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2. 연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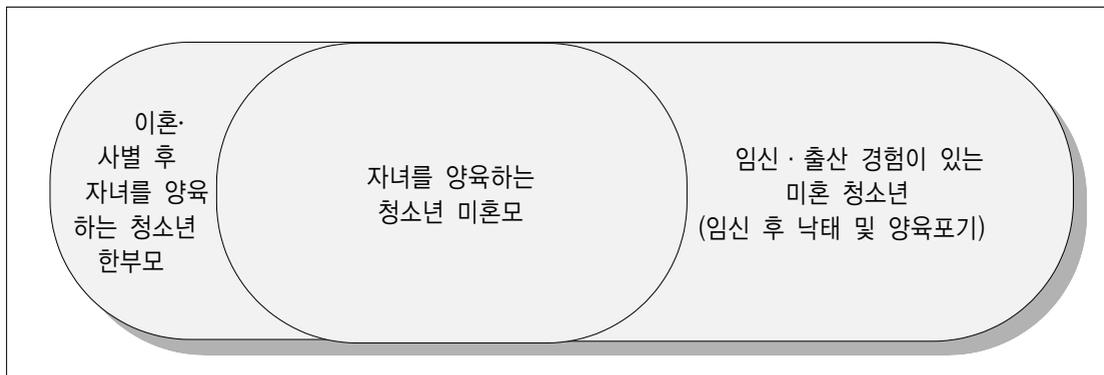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이 참여하였음. NYPI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 파악을 위한 양적조사, 질적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였음.
- 협동연구기관인 KIHASA는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현황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분석하였고, KWDI는 설문지 문항의 공동개발과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단계에 따른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음.
-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의 양적조사에 대한 심층분석과 2차 질적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 및 유형별 정책개발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내용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임신·출산(낙태 포함)·입양 경험이 있는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46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 조사」를 실시함. 또한 시설 및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 35명, 출생한 아기의 외조모인 청소년 미혼모의 어머니 2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고, 청소년 한부모 시설 및 기관 관계자 집단과 보건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함.
- 정책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을 발간함.
- 청소년 한부모의 성교육, 피임 및 임신·낙태 경험, 입양과 양육의 선택 경험을 분석하여 역으로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과 OECD 주요국의 청소년 임신·출산 현황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비교 검토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양산을 줄이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개선안을 도출함.

4. 연구결과

- 이 연구에서 정책대상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뿐 아니라 현재 임신 중인 청소년, 임신 및 낙태경험이 있거나 출산 이후 입양 등 양육 포기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함. 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은 준비 없는 임신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며, 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립과 자녀양육이라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임.
- 여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배경으로는 취약한 가정환경, 학업중단 상황, 낮은 피임실천율이 지목됨. 낙태 및 입양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대상 범위

큰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양육과 학업 및 근로를 효과적으로 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보다 취약하고,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인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됨.

○ 임신·출산·입양 경험

- 본 조사 표본에서 2회 이상 임신 경험자는 26.9%로, 10명 중 2명은 재임신과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반복함. 임신 경험자 중 89.1%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며, 피임실천율은 5.0%, 낙태 경험 18.2%(2회 10.8%, 3회 3.6% 포함), 임신 기간 중 음주나 흡연 경험 21%, 임신 기간 중 산부인과 진료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11.8%에 달함.
- 본 조사 표본에서 출산 경험은 1회가 94.1%로 가장 많고 2회 5.3%, 3회 0.6% 순임. 입양 경험 및 계획이 있는 경우는 33.2%로, 경제적 이유(38.8%)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입양을 보낸 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한 경우는 10명 중 7명에 달하였으나 이들 중 상담 및 치료를 받은 경우는 14.2%에 불과함.

○ 자녀양육 및 자립 환경

- 본 조사 표본에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57.3%로, 양육 자녀가 1명인 경우가 97.7%로 가장 많고 2명은 2.3%임. 자녀 연령은 2세 이하가 72.7%로 가장 많고, 3~5세가 27%임. 비양육부모(父)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29.5%)가 가장 많고, 19세 미만인 경우 46.3%에 달함. 현재 아기 아버지와 함께 살거나(5.7%), 따로 살지만 여전히 사귀는 경우(14.9%)도 있어 비양육부모가 자녀양육과 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기 아버지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한 지원이 요구됨.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87%로 가장 많고,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전체의 30.6%에 불과함. 특히 전체 응답자의 72.6%는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상황이 여자 청소년에게 임신과 같은 위기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함. 또한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 및 출산이라고 답한 경우는 19세 미만 36.5%, 19세 이상 15.5%임.
- 임신 및 출산 이후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경험은 24.7%에 불과하며, 이는 출산과 육아로 받을 수 없거나(31.4%), 정보가 없기 때문(20.9%)임. 취업자 역시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 약 88만원으로 나타남. 근로소득 및 외부지원 일체를 포함한 양육 청소년 한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68,02만원(19세 미만 60.18만원, 19세 이상 70.86만원)으로 자녀양육과 자립이 힘든 취약한 수준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여부
 - 출산지원, 양육지원, 자립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 생활 지원제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에 편차가 있으며,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실제 서비스 이용 및 수혜율에 격차가 발생함.
 -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이돌보미,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정책의 수혜율은 36~60% 정도에 불과하여 정책 마련 및 제도홍보 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접근성 자체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청소년 한부모 가족지원정책 국가 비교(세부보고서)
 - 지리적·문화적 구분, 복지국가유형, 성역할유형, 가족관계유형에 따라 유럽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청교도적 보수주의, 허용적인 자유주의, 의료적 지원주의, 잔여주의로 유형화됨.
 - OECD 주요국의 한부모 지원정책은 법적인 혼인 여부, 부모의 연령과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됨.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및 사실혼이나 혼인신고가 된 경우 한부모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최저생계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OECD 주요국의 한부모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임신중절과 피임에 대한 정책적·문화적 용인도, 빈곤과 사회통합성 정도에 따라 국가별 대응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세부보고서)
 - 학교 성교육이 실제 성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거나(51.1%), 교육 이수 후 성에 대한 생각이 변한 경우(38.3%)가 저조하여 보건교육 내 성교육 시수 확대와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이

- 요구됨. 특히 젠더역학과 남학생에 대한 양육책임성 교육 등 성별분리 성교육 도입이 요구됨.
- 사전 및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하여 소비자인 청소년의 접근성,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입장을 감안한 재논의가 요구됨.
-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임신상태, 인공임신중절 후, 출산 후, 입양 후, 양육기간 등 단계별 지원과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수용적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세부보고서)

-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은 생계 22개, 교육·의료 각각 16개, 자활 13개 등 약 111개임.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약 119개이며, 지자체별로 편차가 발생함.
- OK주민서비스(<http://oklife.go.kr>)에 등록된 16 시·도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사업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함.

5. 정책제언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은 교육정책부터 입양정책, 가족 및 복지정책, 청소년정책의 연계를 통한 추진이 요구됨.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를 감안할 때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정책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정책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 한부모 발생 이전 예방정책과 발생 이후 개입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예방을 위한 과제 및 정책으로는 (1) 취약가정 및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강화, (2) 성교육 시수보장 및 맞춤형 성교육 실시,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확대, (4) 성평등 피임교육 강화: 남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 (5) 자녀양육 책임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6) 성적인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적응력 강화, (7) 청소년 관점을 반영한 응급 피임약 재분류 추진, (8) 보편적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등을 제안함.
- 청소년 한부모 발생 이후 과제 및 개입정책으로는 (1)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강화,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전환: 이중과업 수행자, (3) 사회적 배제 예방: 자립능력 강화

① 학습권 보장 지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②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여건 마련, ③ 자녀양육 지원 강화, ④ 주거지원 강화, (4) 심리적 지원 강화 및 확대, (5)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가족지원 확대, (6) 재가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접근성 제고, (7)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5
1.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 및 현황	17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연구 동향	31
3.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 및 당면과제	34
III. 국내·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43
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45
2.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73
3. 시사점	85
IV.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요구도 분석	93
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95
2.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159
3.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249
4. 시사점	261
V. 정책제언	265
1.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267
2. 정책과제 및 제언	271

참고문헌	285
부록(설문조사지)	295
Abstract	323

표 목 차

〈표 Ⅱ-1〉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출산 건수	21
〈표 Ⅱ-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22
〈표 Ⅱ-3〉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혼외자 및 미상 출산 건수	23
〈표 Ⅱ-4〉 한부모가구비율	25
〈표 Ⅱ-5〉 한부모가족 성별 및 연령별 현황	25
〈표 Ⅱ-6〉 한부모가족 형성 이유	26
〈표 Ⅱ-7〉 2010년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26
〈표 Ⅱ-8〉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27
〈표 Ⅱ-9〉 국내 입양아동 유형	28
〈표 Ⅱ-10〉 국외 입양아동 유형	29
〈표 Ⅱ-11〉 연령별 미혼모 분표	29
〈표 Ⅱ-12〉 연도별 미혼모의 연령 변화	30
〈표 Ⅲ-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의 주요 연혁	46
〈표 Ⅲ-2〉 한부모가족 지원조건 비교(2012년 1월 기준)	48
〈표 Ⅲ-3〉 2012년 긴급생계비 지급금액	49
〈표 Ⅲ-4〉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생계급여 지급금액(2012년 기준)	49
〈표 Ⅲ-5〉 생활요금 감면제도	51
〈표 Ⅲ-6〉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2012년 기준)	52
〈표 Ⅲ-7〉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내용	53
〈표 Ⅲ-8〉 복지자금 용자사업의 용자한도액 및 조건 (2012년도 기준)	54
〈표 Ⅲ-9〉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99업지원 내용(고용노동부)	55
〈표 Ⅲ-10〉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	56
〈표 Ⅲ-11〉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내용	56
〈표 Ⅲ-1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내용	57
〈표 Ⅲ-1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내용	58
〈표 Ⅲ-14〉 2012년 사업별 예산 내역	58

〈표 III-15〉 아이돌봄 서비스	59
〈표 III-16〉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보건복지부)	59
〈표 III-17〉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내용	60
〈표 III-18〉 저소득 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내용(교육과학기술부)	61
〈표 III-19〉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내용	62
〈표 III-20〉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 내용(문화체육관광부)	63
〈표 III-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2012년 1월 현재)	64
〈표 III-22〉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65
〈표 III-23〉 모(부)자 공동생활가정(2012년 1월 1일 현재)	65
〈표 III-24〉 미혼모자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66
〈표 III-25〉 모자일시보호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66
〈표 III-26〉 건강가정지원센터(2012년 1월 1일 현재)	67
〈표 III-27〉 미혼모·부자 거점기관(2012년 1월 1일 현재)	68
〈표 III-28〉 청소년 한부모 지원 내용	70
〈표 III-29〉 시·도별 미혼모자시설의 대안위탁교육지정 현황(2011년 기준)	72
〈표 III-30〉 유럽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과 선택 인공유산 비율 비교(2003년)	78
〈표 III-31〉 Trifiletti에 따른 한부모 정책의 국가별 유형	81
〈표 III-32〉 유럽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유형별 구분	82
〈표 III-33〉 OECD 국가 간 가족정책 지표 비교	87
〈표 IV-1〉 설문참여자의 혼인 상태	95
〈표 IV-2〉 설문참여자의 연령분포	96
〈표 IV-3〉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가족 유형	96
〈표 IV-4〉 원가족 유형	96
〈표 IV-5〉 설문참여자의 조사 참여 경로	97
〈표 IV-6〉 설문참여자의 거주 지역	97
〈표 IV-7〉 첫 성관계를 경험한 만 나이	104
〈표 IV-8〉 임신 전 성관계시 피임을 한 정도	104
〈표 IV-9〉 출산(낙태, 자연유산, 사산) 이후 성관계시 피임하는 정도	105
〈표 IV-10〉 성관계시 피임을 결정하는 주체	105
〈표 IV-11〉 피임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	105
〈표 IV-12〉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	106

〈표 IV-13〉 먹는 피임약(사전 피임약) 구입 시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	106
〈표 IV-14〉 지금까지 임신을 경험한 총 횟수	107
〈표 IV-15〉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기	107
〈표 IV-16〉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이유	108
〈표 IV-17〉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	108
〈표 IV-18〉 상대 남성과의 관계	109
〈표 IV-19〉 임신 당시 상대 남성의 나이	109
〈표 IV-20〉 상대 남성이 임신을 인지한 후 관계의 변화	109
〈표 IV-21〉 임신을 알린 후 상대 남성의 주된 반응	110
〈표 IV-22〉 주변 사람들의 임신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관계 변화	110
〈표 IV-23〉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산부인과 검진 여부	111
〈표 IV-24〉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 정도	112
〈표 IV-25〉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이 있는지 여부	113
〈표 IV-26〉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113
〈표 IV-27〉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114
〈표 IV-28〉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후 후유증 정도	114
〈표 IV-29〉 낙태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집단비교(일원배치분산분석)	115
〈표 IV-30〉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116
〈표 IV-31〉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116
〈표 IV-32〉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117
〈표 IV-33〉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견	117
〈표 IV-34〉 출산 후 후유증 정도	118
〈표 IV-35〉 아이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8
〈표 IV-36〉 출산을 알게 된 후 아이 아버지의 주된 반응	119
〈표 IV-37〉 입양 보낸 경험이나 보낼 계획이 있는지 여부	119
〈표 IV-38〉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120
〈표 IV-39〉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120
〈표 IV-40〉 입양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121
〈표 IV-41〉 자녀를 입양 보낸(보내기로 결정한) 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정도	121
〈표 IV-42〉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122
〈표 IV-43〉 자녀의 연령	122

〈표 IV-44〉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출산/양육 의사	123
〈표 IV-45〉 양육할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123
〈표 IV-46〉 양육할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	124
〈표 IV-47〉 본인의 자녀양육을 아이 아버지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124
〈표 IV-48〉 현재 아기 아버지와와의 관계	125
〈표 IV-49〉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125
〈표 IV-50〉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126
〈표 IV-51〉 가정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126
〈표 IV-52〉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127
〈표 IV-53〉 미취학 자녀가 현재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는지 여부	128
〈표 IV-54〉 주변 사람들의 자녀양육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관계 변화	129
〈표 IV-55〉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도움 정도(중복응답)	130
〈표 IV-56〉 부모효능감	131
〈표 IV-57〉 육아 스트레스	132
〈표 IV-58〉 지난 한 달간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	133
〈표 IV-59〉 자녀에 대한 감독 및 학대	134
〈표 IV-60〉 현재 생활하는 곳	135
〈표 IV-61〉 현재 동거자(자녀양육자 만)	135
〈표 IV-62〉 미혼모자 관련시설 입소 경험	136
〈표 IV-63〉 맨 처음 입소한 시설을 알게 된 경로	136
〈표 IV-64〉 시설에 입소하게 된 주된 이유	137
〈표 IV-65〉 입소시설의 주된 선택 이유	137
〈표 IV-66〉 입소 기간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견	138
〈표 IV-67〉 입소시설에서 받았던 지원에 대한 만족도	138
〈표 IV-68〉 퇴소 후 간 곳(갈 예정인 곳)	139
〈표 IV-69〉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유	140
〈표 IV-70〉 학업 지속 여부	141
〈표 IV-71〉 현재 받고 있는 교육 유형	141
〈표 IV-72〉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임신 및 출산 때문인지 여부	142
〈표 IV-73〉 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142
〈표 IV-74〉 향후 학업 계획	143

〈표 IV-75〉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144
〈표 IV-76〉 직업 훈련(교육)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144
〈표 IV-77〉 직업 훈련(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145
〈표 IV-78〉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145
〈표 IV-79〉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146
〈표 IV-80〉 현재 고용형태	146
〈표 IV-81〉 하루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 근로일수(주중)	147
〈표 IV-82〉 현재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147
〈표 IV-83〉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	148
〈표 IV-84〉 소득 지원 여부(양육모만)	149
〈표 IV-85〉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출산 지원제도 인지 여부	150
〈표 IV-86〉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출산 지원제도 수혜 여부	150
〈표 IV-87〉 양육 지원제도 인지 여부	151
〈표 IV-88〉 양육 지원제도 수혜 여부	152
〈표 IV-89〉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제도 인지 여부	153
〈표 IV-90〉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 수혜 여부	153
〈표 IV-91〉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주거 지원제도 인지 여부	154
〈표 IV-92〉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주거 지원제도 수혜 여부	154
〈표 IV-93〉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의료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155
〈표 IV-94〉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기타 생활 지원제도 인지 여부	155
〈표 IV-95〉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기타 생활 지원제도 수혜 여부	156
〈표 IV-96〉 청소년 한부모 면접참여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	160
〈표 IV-97〉 심층면접진행과정에 대한 개요	161
〈표 IV-9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주요내용	162
〈표 IV-99〉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주요내용	162
〈표 IV-100〉 심층면접대상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164
〈표 IV-101〉 집단면접조사 참여자	249
〈표 IV-102〉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정 유형	255
〈표 V-1〉 정책방안 추진 계획(안)	283

그림 목 차

【그림 I -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6
【그림 I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그림 II -1】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범위	20
【그림 II -2】 한부모가구 대비 미혼 한부모가구 비율	36
【그림 III -1】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1980, 2008)	76
【그림 IV -1】 설문지 개발절차	98
【그림 IV -2】 설문 영역 및 주요 내용	99
【그림 IV -3】 거주 시설 내 청소년 한부모의 수	25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저출산·고령화가 우리사회의 거대한 시대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령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자녀출산만큼은 합법적 혼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혈연관계에 기반 해야 한다는 가족 구성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자의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기이자 주변에 밝히기 힘든 일로 여겨져 미혼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은 그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자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임신한 미혼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출산 포기의 단적인 예로는 미혼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을 들 수 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가 불법인 현 상황에서 2010년 가임기 여성 4,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16만 7천여 건 가운데 미혼 여성의 경우가 42.9%(72,452건)에 이르렀다. 또한 가임기 여성 인구 천 명당 미혼여성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2008년 13.9%, 2009년 12.7%, 2010년 14.1%로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는 반면,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한편 출산 후 자녀양육 포기의 예로는 입양 보내는 것을 들 수 있다. 입양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 아동 10명 중 9명은 입양의뢰 사유가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²⁾ 미혼모들 중 많은 경우가 자녀를 입양 보냄으로써 양육을

1) 이 장은 백혜정 연구위원, 김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2) 보건복지부의 입양통계(<http://www.mw.go.kr>, 검색일: 2012.1.30)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입양아동 1,462명 중 혼외자를 포함한 미혼부모의 자녀는 1,290명(88%)에 달한다. 이와 함께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자녀는 전체 해외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9%에 달하여(재외동포재단, 2006) 혼인 이외의 출산이 입양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혼모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학업과 진로,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녀양육과 생계 부양이라는 성인 역할까지 감당해 내야 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충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일탈 행위로 규정되어 임신한 청소년들 중 많은 경우가 학업을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의 지지체계로부터 단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산되는 개방적인 성문화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및 행동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 고교생의 약 과반수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약혼자와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백혜정, 김은정, 2008). 또한 201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중1~고3 응답자의 1.1%(남학생 1.5%, 여학생 0.6%)가 중학교 입학 전 성관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신 경험률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9.9%(전체 응답 여학생의 0.3%)에 달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률은 임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70.7%(성관계 경험 여학생의 7%, 전체 응답 여학생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피임 실천율은 200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남학생(42.1%)보다 여학생(38.4%)의 피임 실천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고, 성관계시 ‘항상’또는 ‘대부분’피임을 행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미혼모조사에서는 학생미혼모의 평균연령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연령대인 16.7세로 나타났으며, 13~14세의 나이에 미혼모가 된 경우도 보고되었다(제석봉, 석창훈, 2008). 위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그에 따른 임신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임신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낙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양육보다는 입양 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현장전문가들은 청소년 미혼부모를 포함한 미혼부모들 중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가능한 것은 부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수용 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되는 등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환경 개선의 일례로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24세 이하 미혼모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스스로 자녀를 키우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입양 보낸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자녀를 입양을 보내기보다는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환경의 점진적 개선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전의 연구 및 정책방향은 성인과 청소년의 구별 없이 미혼모 또는 한부모를 정책대상으로 하여 시설입소를 통한 긴급구호와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에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를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미혼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만이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과 성인은 각자 처한 상황과 발달과제가 상이함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은 한부모라는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특성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인 한부모와 공통적인 정책지원 이외에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들만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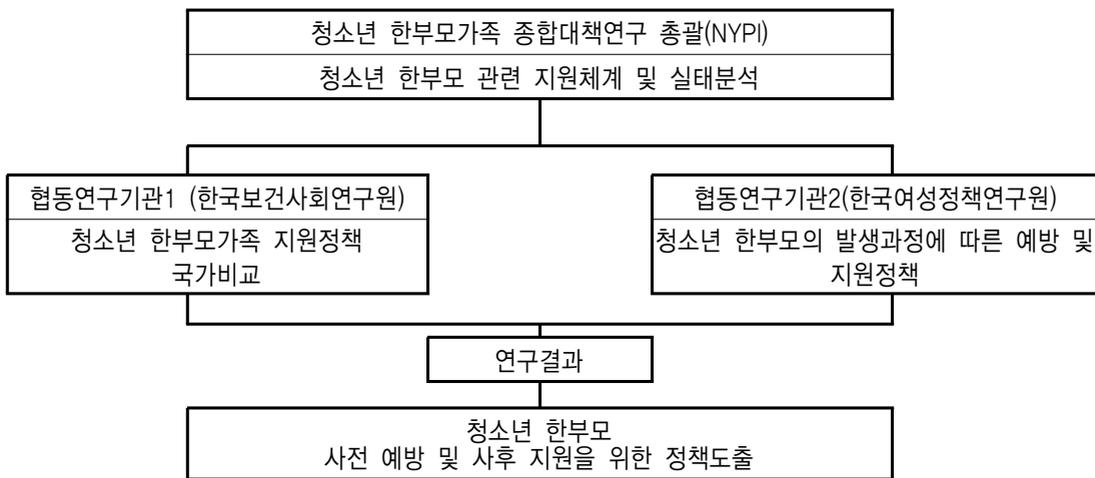
둘째, 청소년 한부모들은 특히 빈곤·취약계층이 되기 쉽다는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빈곤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지지체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일상생활 및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이 배가됨을 감안한다면 청소년 한부모들 중 절대 다수가 빈곤·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빈곤과 취약성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시점의 경제적 지원이나 긴급구호적 지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신 및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 개입으로서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적 접근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개방적인 서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예: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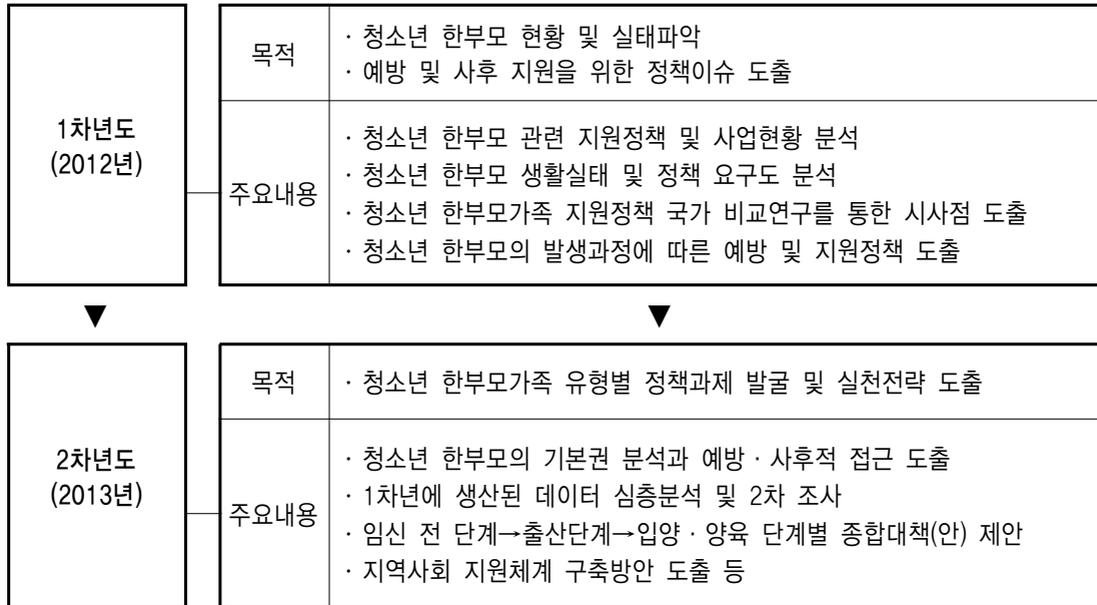
and Unplanned Pregnancy, 2011).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과 방향에 따라 이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올해는 민관에서 수행중인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등 제반 여건을 점검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인지도 및 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은 각국이 취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한부모의 자립과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수준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유형별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차 년도에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유형과 생애주기적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임신 후 출산 단계, 출산 후 입양보내기 및 양육단계 각각에서 미혼부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에게 필요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 수용성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유관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로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의 개선과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1-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그림 I-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그림 I-1】 과 같은 연구추진체계로 운영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청소년 한부모 종합대책연구를 총괄하며, 현행 법·제도·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 및 면접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정책 요구도 분석을 담당하였다. 한편 협동연구기관1(KIHASA)은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현황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분석하였고, 협동연구기관2(KWDI)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지 문항의 공동개발과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단계에 따른 현황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2차년에는 1차 년도의 양적조사에 대한 심층분석과 2차 질적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 및 유형별 정책개발과 상황별 욕구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자립과 원만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여건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I-2】 .

3. 연구내용

1)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및 여건분석

(1)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와 정책 요구도 분석

현재까지 청소년 한부모를 특화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선행연구마저도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 파악은 물론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생활시설 입소자 및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이시백, 서정애, 박인화, 이제진, 2002; 제석봉, 석창훈, 2008; 김은지, 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김혜영, 여유진, 2011). 이에 이 연구는 시설 입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재가(在家) 한부모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생활실태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따라 임신 후 낙태 또는 출산단계, 출산 후 입양보내기와 양육 선택에서의 갈등단계, 입양보내는 단계 및 양육단계 등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요 이슈와 그에 따른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은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것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양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그간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조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업, 진로 및 직업문제와 정신건강문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서비스 이용실태를 포함한 지원 사업 인지 정도와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가족지원정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서비스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후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2010년 4월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양육지원 및 자립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2010년 기준 국비 121억 원(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위기와 욕구 수준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임신·출산에 따른 한부모 실태와 청소년 임신·예방 정책,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이 연구는 2년간 추진되는 다년과제로 1차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실태 및 정책 여건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사전 예방과 사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안하였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발간(세부과제)

정책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관련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지자체별 사업과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4) 청소년 한부모 발생경로 및 생활분석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세부과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출산 및 낙태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취약·위기 청소년의 성경험 노출과 대응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 예방대책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적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원하지 않는 임신과 한부모됨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청소년한부모의 발생경로를 고려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 한부모가 겪은 성교육, 낙태와 피임, 출산 및 입양 보낸 이후 심리적 치유 등의 과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성문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청소년 한부모들을 통해 학교 및 학교 밖 성교육이 이들의 성경험,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 성적 자기결정권 기여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사회적 낙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입장에서 피임과 임신중절 관련 이슈를 재고해 보고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출산과 입양을 경험한 바 있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였다.

5)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세부과제)

국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은 청소년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크게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 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한 청소년 임신·출산의 세계적 경향과 쟁점, 학교 성교육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후자는 개별 국가의 사례보다는 OECD 국가를 지리적·문화적 구분에 의해 앵글로색슨국가, 북구유럽국가, 대륙유럽국가, 남부 유럽 국가로 구분하고 복지국가유형, 성역할유형, 가족관계유형 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정책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주요 쟁점과 유럽 국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부모 지원정책을 모성지원 및 근로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학술논문, 관련법, 통계 및 정책자료 등 선행 문헌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과 특성,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과 규모를 예측하고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과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과 민간 차원의 서비스 현황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다. 셋째, 청소년 임신·출산의 세계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amily database, 유럽연합(EU)의 Eurostat 자료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과 심층면접 조사용 질문을 개발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연구 과정 전반에서 한부모 당사자조직 및 활동가, 미혼모자시설·미혼모 공동생활가정·미혼모부

자치지원기관 종사자, 청소년성교육 및 보건관련 현장 종사자,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성(sexuality) 관련 연구자, 관련부처 공무원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정책 실무자의 자문이 이루어졌다. 자문 영역은 연구의 구성과 내용 설정, 설문지 문항 보완, 현행 법·제도·서비스 내용 및 개선 과제를 포함한다. 해외사례 분석 과정에서는 OECD, 프랑스 국립 인구문제 연구소(INED) 등 유럽 국가 연구소 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참고하였다.

3) 양적연구(설문조사)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의 임신·출산·낙태·입양·자녀양육 등 실태와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법률상 청소년 한부모는 미혼, 이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경로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남·녀 한부모를 의미하나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다수가 미혼모이므로 남성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렵고 모집단 구성원을 찾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목표 표본을 500명으로 정하고 기간 내에 이를 채워가는 식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정책 수혜 경험이 없는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미혼모·부자지원기관, 한부모시설 이용자 외에 당사자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인터넷 카페, 기 확보된 조사 대상자의 소개 등 눈덩이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설문 영역은 크게 미혼모자 관련시설 영역, 학업 및 자립 영역, 성교육·성경험 및 피임 영역, 임신·인공임신중절(낙태)·출산·입양·양육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일대일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 문항개발에는 총괄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총괄기관에서 검수작업을 거쳐 협동연구기관과 영역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총괄보고서와 세부보고서에 각각 포함되어 있다.

4) 질적연구(면접조사)

(1) 청소년 한부모 면접조사

청소년의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결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설문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면접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그 부모를 면담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연령별(19세 기준), 상황별(양육/비양육, 시설입소/재가 등) 특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고 총 35명을 개별 면접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는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면접조사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2명만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하였다.

질적조사 영역은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입양과정 혹은 양육과정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심층면접에 필요한 질문은 구조적/반구조적으로 구성하여 일부 문항은 면접참여자가 직접 응답지에 기술하기도 하였다. 모든 면접은 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면접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추후 전사 후 녹음내용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특히 면접조사는 성교육 및 피임 등 예방적 측면에서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협동연구기관(KWDI)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남학생 5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 포커스 집단면접

포커스 집단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1회씩 실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청소년 한부모 관련 시설 및 기관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과 욕구,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보건교사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보건교육, 정책제언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심층 논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청소년 한부모 거주시설 입소자 특성 분석

설문조사에 참여한 관련 기관 기관장(혹은 종사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입·퇴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현황, 원가정 유형, 퇴소 후 거주 현황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총 52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결과(빈도)는 4장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부분에 포함되었다.

5) 기타 연구방법

(1) 정책협의회

연구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 기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와의 정책협의회를 각각 1회 개최되었다.

(2) 콜로키움 및 세미나

콜로키움은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주제로 총 2회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협동연구기관에서 추진하는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국가비교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주제로 하여 1회 개최되었다.

(3) 정책 자문회의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실 단위의 정책 자문회의가 1회 개최되었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성과 발표회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2차 년도 연구 추진 시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 및 현황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연구 동향
3.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 및 당면과제

제 2 장³⁾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 및 현황

1) 청소년 한부모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본격적인 정책대상으로 등장한 지는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의 성 관련 의식 및 행동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여전히 사회적인 승인이 전제되는 성인기 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공론화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청소년기의 부모됨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국가사회가 구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범주와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음은 청소년기 성적 특성이 대단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이들의 자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서구도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십대 임신’이라는 용어는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초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편화 되었는데, 이때 십대의 임신은 ‘문제행동’이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 규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Wong & Checkland, 1999).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문제행동 내지는 환영받지 못할 행위로 규정해 왔다. 197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율은 낮아지거나 일정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임신과 출산율은 국가사회마다 다르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이나 계층, 혹은 인종간의 차이가 적지 않다(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75-76).

국가 복지체제는 물론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에 따라 혼인제도 밖에서 발생하는 임신 및 출산행위와 청소년의 부모됨에 대한 사회적 수용정도,

3) 이 장의 1, 3절은 백혜정 연구위원, 김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은 김혜영 교수(숙명여대)가 집필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의 폭과 내용은 상이하다. 예컨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방성이 높거나 자녀양육 지원정책이 발달한 노르딕 국가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은 여전히 보수적이며, 보편적인 아동 및 여성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지만 십대출산율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십대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관련정책에서도 분명한 방향성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숙함을 강조하고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좀 더 자유로운 태도를 견지하면서 피임, 낙태관련 정보제공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십대 미혼모들에 대해 교육과 노동시장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사회적 종속으로부터의 탈출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장혜경 외, 2006:79).

통상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점차 늦춰지고 있지만, 늦은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논쟁은 수반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정한 연령이하에서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가치논쟁을 촉발하는데, 이는 출생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이 단순한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을 넘어 사회적 승인과정을 거쳐 사회의 가치 및 질서체계까지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문화전통으로서의 가족주의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한 사회성원의 정치(定置) 기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어 가족제도 밖의 생명탄생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억제되어온 측면이 없지 않다. 그 결과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한부모나 조부모의 (손)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있었다.

하지만 후기근대적 특징이 가족과 개인에게 강하게 투영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는가 하면, 결혼과 출산이라는 행위가 특정생애주기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개인과업이기 보다는 매순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혼인율과 출산율이 급감하는 사회변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녀출산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되고, 소외와 배제를 경험해 온 비정형적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모의 혼인형태나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차세대 자녀의 인적자본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부모 가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들의 부모됨과 이들 자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지하듯,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6·25전쟁으로 인한 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1955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었

다. 그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대상은 사회변화에 따라 모자(母子)에서 부자(父子), 나아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까지 확대되었으며, 2011년의 법 개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념정의가 포함되면서 비로소 청소년 한부모가 특화된 정책대상으로 부각되었다.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모(母)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모자가족과 부(父)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나 부는 배우자와의 사별·이혼, 배우자로부터의 유기,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의미한다. 동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로,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가족 가운데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이와 같이 법정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 다수는 사실상 미혼모이며, 아이를 출산한 여자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양 보내기를 선택하거나 혹은 임신한 단계에서 불법이라 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상으로 청소년 미혼모 가족은 정당한 혼인관계 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자 청소년과 그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태 등의 방법을 통해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출산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입양 보낸 경우는 미혼모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개념 역시 청소년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입양과 낙태로 이미 자녀양육을 포기한 청소년을 ‘한부모’라 정의하는 것 역시 개념정의와 어긋나는 측면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취지와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청소년 모 또는 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청소년 한부모 연구대상 범위를 좀 더 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이들을 정의한다면 청소년 모 또는 부라고 할 때, 자녀를 임신, 출산 후 양육하는 경우 뿐 아니라 낙태나 입양 보낸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들이 현재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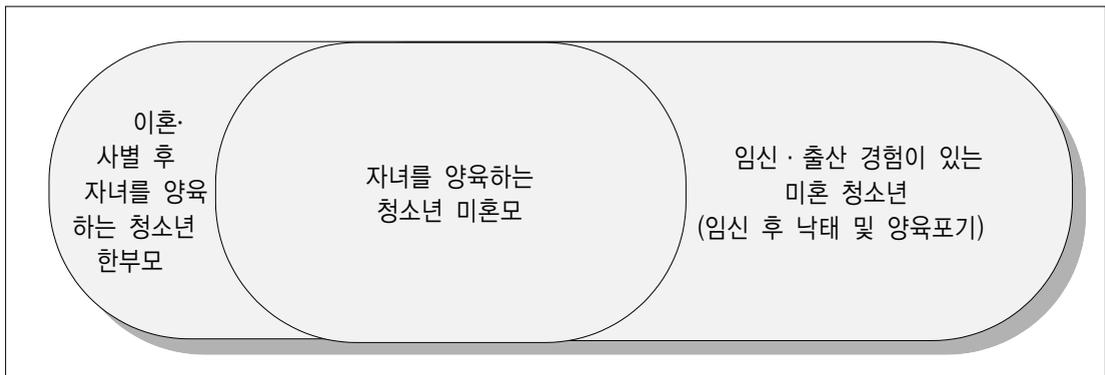
4) 2011년 법 개정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0년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소년 한부모를 특화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있지는 않지만,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을 통해 짧지만 위기상황에서 부모됨을 경험한 바 있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생애에 복잡한 양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 나아가 부모됨의 경험이 오롯이 청소년의 성적 이탈이나 개인적 취향의 결과라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문화,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진단과 해법 역시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남미애, 홍봉선, 2011).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에 대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뿐 아니라 현재 임신 중인 청소년, 임신 및 낙태 경험이 있거나 출산 이후 입양 등 양육 포기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그림 II-1】). 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이 청소년의 준비 없는 임신과 출산을 최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출산 후 양육을 희망할 경우 양육 포기 사례를 줄이고 대상 청소년이 자립과 자녀양육이라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2) 청소년 한부모 규모 추정

선행연구(예: 김은지, 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김혜영, 여유진, 2011)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를 곧 미혼모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절대 다수가 미혼모일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미혼모는 법적 혼인은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혼·별거·사별 등 혼인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로,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모 상황을 넘나들 수 있는 가변적인 사회적 신분의 의미를 지닌다. 미혼모는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라는 도덕적



【그림 II-1】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범위

비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 한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단 미혼모는 청소년 한부모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간 청소년 한부모보다 미혼모 관련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혼용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발표자료(2006, 김은지 외, 2011: 16 재인용)에서 우리나라 미혼모 청소년은 5천명에서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나 미혼모 규모를 담은 전국차원의 포괄적인 통계자료는 정확하지 않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예: 조주은, 2010 재인용)나 장래가구추계와 같은 국가통계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증가를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미혼모가 정책대상으로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미혼모가 청소년일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거니와 이들이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그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 중에는 임신 상태를 중도 포기하거나 출산 후 입양 보내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를 양육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간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시도도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특성상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와 같이 인구관련 통계자료들을 활용해 대략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가 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모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해 보고자 한다.

표 II-1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출산 건수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19세 미만	3,467(0.7)	2,774(0.60)	2,815(0.63)	2,934(0.62)	2,998(0.64)
19~24세	31,883(6.47)	28,173(6.05)	24,911(5.60)	24,538(5.22)	24,648(5.23)
총 출산 건수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주: ()안의 수치는 총 출산건수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검색일: 2011. 9. 6)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파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소년들의 출산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모의 연령별 출산 건수⁵⁾(표 II-1)를 보면, 지난 5년간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출산 건수는 평균 약 29,00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성 출산율의 약 6.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한 우리나라 여성의 분만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4세 이하 청소년 여성의 분만 건수가 연간 2만 3천 건에서 2만 9천 건에 달하며 이 역시 전체 여성의 분만건수 중 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2). 이 두 통계자료 상의 청소년 출산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수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두 수치상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료들은 청소년의 분만건수만을 보여줄 뿐 이들의 혼인 여부를 알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도 구별할 수 없어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도 인구동향조사의 출생아 통계자료에서는 출생아들을 ‘혼인중인 자’와 ‘혼인외 자’⁶⁾, ‘미상’ 등으로 구분하여 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가 낳은 아이는 혼인외 자, 그리고 영아사망자 및 유기된 경우를 포함한 미상의 일부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청소년 미혼모의 규모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 통계자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혼인외자를 출생한 청소년들은

표 II-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단위: 건(%)

	2007	2008	2009	2010
19세 미만	2,334(0.49)	2,064(0.45)	2,123(0.49)	2,489(0.54)
19~24세	26,144(5.45)	23,620(5.20)	21,343(4.92)	21,203(4.62)
총 분만 건수	479,647	454,247	433,467	459,284

주: ()안의 수치는 총 분만건수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초경산별제왕절개 분만 평가지표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검색일: 2011. 9. 6)

5)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검색일: 2011. 9. 6)

6) 우리나라의 총 출생아 대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이 50%를 상회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OECD, 2011). 이처럼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법적인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 양육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인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 혹은 낙태를 하거나 양육포기를 한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혼외출생아 비율이 2% 이하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전체 혼외 임신의 일부만이 출산으로 이어질 뿐 상당수는 낙태로 귀결됨을 시사할 수 있다.

1,000여 명에서 1,700여 명에 이르고, 미상인 경우는 900여 명에서 1,500여 명에 이른다(표 II-3). 이는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4세 이하의 모 아래서 매년 1,270여 명이 혼외자인경우로, 1,200여 명이 미상인 경우로 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2010년에 모 연령이 청소년 한부모 제한나이인 24세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2006년에는 20세, 2007년에는 21세, 2008년에는 22세, 2009년에는 23세까지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혼외자와 미상 출생아를 계산하면 5년 간 약 9,700명이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상이나 혼외자를 출생하는 경우, 극소수이긴 하나 이르면 모 연령 12~13세에 출산한 사례도 있고 16~17세부터 자녀 출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2~2003년부터의 출산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 출생아 수는 만 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수치가 곧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수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조사결과가 출생신고에 의존한 것으로 혼외자 및 미상 출생아들 중에는 출생 후 일정기간 부모가 양육하다 입양을 보내거나 한 명의 모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미상 출생자라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표 II-3 인구동향조사의 연령별 혼외자 및 미상 출산 건수 단위: 건

연령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미상	혼외자								
12	-	-	-	-	-	-	1	-	-	-
13	-	-	-	2	6	-	4	-	2	2
14	31	2	-	3	34	5	14	7	23	7
15	32	18	2	12	52	18	47	25	56	34
16	58	41	20	42	79	56	76	73	71	109
17	146	75	56	81	98	109	103	152	101	221
18	300	91	145	96	121	101	126	156	93	217
19	346	112	453	124	116	116	134	167	116	249
20	150	109	170	111	145	112	194	135	100	169
21	138	123	127	116	150	130	162	134	104	153
22	144	110	84	105	141	144	111	167	99	169
23	119	181	64	162	159	164	92	167	71	204
24	113	174	75	204	111	183	65	199	72	208
계	1,577	1,036	1,196	1,058	1,212	1,183	1,129	1,382	908	1,742

주: ()안의 수치는 총 출산건수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청소년 미혼모의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반면 출산 후 곧바로 출생신고 없이 비밀리에 입양을 보내 양부모가 친부모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부모, 즉 출생아의 조부모를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 하는 등 편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예상한다면 그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 뿐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청소년기에 한부모가 되는 청소년까지 포함한다면,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부모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은지 외, 2011)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이혼 및 사별은 3.1%에 불과한데 반해 미혼은 94.4%이며, 여성(母)의 비율이 95.1%로 청소년 한부모 중 미혼모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의 상당수가 미혼모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201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청소년의 혼인율은 전체 혼인율의 10.8%(총 329,087건 중 35,659건),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의 3.6%(총 114,284건 중 4,141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이혼과 사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혼이나 사별을 한 청소년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들 역시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는 안타깝게도 이혼이나 사별한 청소년의 자녀유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발생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청소년 한부모에 기초하여 출산 뿐 아니라 임신 및 낙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그 규모가 인구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보다 훨씬 증가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이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까지는 청소년 한부모 규모를 추정할 수 있으나 좀 더 정확한 추정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세대구성 분포를 바탕으로 24세 이하 미혼 청소년과 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추출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를 가늠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구 추출에 앞서 전체 한부모가구 수를 보면, 표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137만 가구)에서 2010년 9.2%(159만 4천 가구)로 0.6%p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혼과 비혼 등의 증가로 한부모가구가 전체 가구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저소득 한부모가구 수 역시 9.1%(12만 4천가구)에서 11.6%(18만 5천 가구)로 2.5%p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 역시 같은 기간 4.1%(5만7천 가구)에서 2010년 6.74%(10만 7천 가구)로 2.6%p 증가하였다.

한부모가구 중 부자가구와 모자가구를 나누어 살펴보면, 표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자가정이

표 II-4 한부모가구비율

단위: 천 가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가구	15,587	16,158	16,417	16,673	16,917	17,339
한부모가구	1,370	1,394	1,421	1,447	1,472	1,594
저소득한부모가족	124	140	148	150	171	185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57	66	73	82	94	107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⁷⁾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정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 한부모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 한부모가구에서 30세 미만의 청년세대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2000년 5.2%(58,160가구), 2005년 3.8%(52,635), 2010년 3.7%(58,408가구)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제 그 수치를 보면 52,000~58,000여 가구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 형성 사유는 표 II-6에서 보는 바와 2010년의 경우 사별이 29.7%, 이혼 32.8%, 미혼모·부가 11.6%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별요인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이혼이나 미혼 요인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미혼모·부가 전체 한부모 가구에서

표 II-5 한부모가족 성별 및 연령별 현황

단위: 가구

연도	합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00	모자가정	903,857	1,276	52,512	189,229	307,648	222,423	130,769
	부자가정	219,997	129	4,143	34,751	86,903	61,328	32,743
	계	1,123,854	1,405	56,655	223,980	394,551	283,751	163,512
2005	모자가정	1,083,020	1,187	46,322	215,446	391,585	260,237	168,243
	부자가정	286,923	213	4,913	36,208	113,715	85,262	46,612
	계	1,369,943	1,400	51,235	251,654	505,300	345,499	214,855
2010	모자가정	1,246,690	835	49,342	209,808	443,861	339,865	202,979
	부자가정	347,448	219	8,012	37,228	122,084	117,042	62,863
	계	1,594,138	1,054	57,354	247,036	565,945	456,907	265,842

* 24세 이하 모자가정 10,799가구, 24세 이하 부자가정 2,049가구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7)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idx_korrm=한부모%20가구%20비율
(검색일: 2012. 2. 14)

표 II-6 한부모가족 형성 이유

단위: 천 가구(%)

연도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수					한부모 가구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	
1990	11,355	498(56)	79(8.9)	85(9.6)	227(25.5)	889(100.0)	7.8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0)	7.4
2000	14,312	502(44.7)	245(21.9)	123(10.9)	252(22.5)	1,124(10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0)	9.2

자료: 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9.6%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근소하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이혼이나 사별에 의한 발생보다는 미혼모에 의한 발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은지 외, 2011)에 비추어 볼 때, 한부모가구에서 미혼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부나 모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 가구는 총 12,848 가구(표 II-7)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가구 수(총 17,339,422가구)의 약 7%를 차지한다. 이 중 모자가정은 10,799가구이며, 부자가정은 2,049가구이다. 이 수치는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된 청소년 미혼모 규모인 일만 여 명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며, 청소년 한부모가구가 미혼모 가구 뿐 아니라 이혼 및 사별 가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기초로 가구변동요인(인구, 혼인·이혼, 가구구성)의

표 II-7 2010년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단위: 가구

구분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계
15-19세	219	835	1,054
20-24세	1,830	9,964	11,794
계	2,049	10,799	12,848

주: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추이를 반영, 향후 장래가구를 전망한 결과인 장래가구추계(통계청, 2010)에 따르면 향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표 II-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세 이하 모자가정은 2013년 950가구에서 5년 후인 2017년 777가구로 다소 감소하지만, 20~24세 모자가정은 2013년 11,264가구에서 2017년 12,285가구로, 24세 이하 부자 가정은 2013년 2,762가구에서 2017년 3,578가구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24세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해 내년인 2013년에는 약 15천 여 가구로, 5년 후인 2017년에는 16천 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볼 때, 현재 통계상으로 잡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는 2010년 약 12천 여 명으로, 2012년 현재는 그 수치가 좀 더 증가하여 약 13~4천 명에 이르며, 이후에는 그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치는 인구동향조사와 달리 미혼모 뿐 아니라 이혼 및 사별가구도 포함하므로 인구동향조사에서 나온 수치보다 좀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조사표 내 해당 문항에 미혼 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앞서 기혼(유배우자, 이혼, 사별) 여성만 자녀 출산에 응답하라는 지시문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 이 문항을 지나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 양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동태조사를 기초로 청소년 한부모 규모 추정시 발생하는 한계점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자녀 출산 후 입양을 보내 양부모 밑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아의 조부모를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등 편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임신 중 출산을 포기한 청소년에 대한 규모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된 수치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수치에는 훨씬 밑돌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8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단위: 가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9세 이하	부+자녀	305	312	316	317	319
	모+자녀	950	950	866	820	777
20-24세	부+자녀	2,457	2,457	2,911	3,105	3,259
	모+자녀	11,264	11,694	12,047	12,249	12,285
계		14,976	15,413	16,140	16,491	16,640

자료: 통계청(2010). 장래가구추계.

인구조사를 통해 추산된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들에 한정된 것이며, 이에 앞서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 후 입양을 보낸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자녀를 입양보내기 보다는 한부모 스스로 양육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입양모에 대한 추산까지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임신 혹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 청소년 수와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수를 합한다면 사실상 정확한 대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계한 교육통계에서 학업중단 사유에 임신·출산·자녀양육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 이들 상당수가 '가사' 혹은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과 혼재되어 있다. 더욱이 여자청소년들의 임신은 지위비행으로 간주되는 만큼 임신여부를 학교에 정확하게 밝히길 꺼려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 미혼모들 중 일부는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통계를 이용한 청소년 한부모의 정확한 규모 파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양아의 규모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중 자녀를 입양 보낸 규모를 짐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09년과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유형을 보면(표 II-9, 표 II-10),⁸⁾ 2009년에는 약63%, 2010년에는 약 74%가 미혼모아동이며, 국외입양 아동은 86~89%가 미혼모아동인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입양아의 대다수가 미혼모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중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 비율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입양기관 내 미혼모의 연령(표

표 II-9 국내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연도	입양 신청자	입양아동유형						보호유형	
		계	미혼모 아동	시설 (유기) 아동	빈곤 가정	결손 (한부모) 가정	기타	시설 보호 아동	위탁 보호 아동
2009	1,760	1,314	1,116	70	82	27	19	636	678
2010	1,733	1,462	1,290	46	73	27	26	643	819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국내외 입양통계.

8)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EQ=264530&page=1: 2009년 입양통계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EQ=264582&page=1: 2010년 입양통계

표 II-10 국외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연도	계	성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남	여	미혼모 아동	기아/빈곤	결손가정	비장애	장애
2009	1,125	722	403	1,005	8	112	1,028	97
2010	1,013	675	338	876	4	133	808	205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국내외 입양통계.

II-11)을 보면 15세 미만의 미혼모를 포함, 20세 미만 미혼모 비율이 기관 내 전체 미혼모의 23%~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의 경우가 약 73%~77%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에도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연령에 속하는 24세 미만인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다른 연구(조주은, 2010 재인용)에서 나타난 전체 미혼모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표 II-12), 1980년대 10대 미혼모의 규모는 약 25%였으나 90년대는 과반수를 넘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24세 이하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약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약 2,400여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87.5%인 2,100여 명이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입양 보낸 미혼모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타 연구에서 전체 미혼모의 약 62%가 24세 이하의 미혼모였다는 결과를 이 수치에 대입한다면 약 1,300여 명이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국내외로 입양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수치는 비율을 단순하게 계산한 수치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입양아동의 유형 및 미혼모의 연령 추이를 기초로 하여 전체 미혼모 중 청소년 미혼모 아동의 입양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중 입양을 보내는 한부모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표 II-11 연령별 미혼모 분포

단위: 명

연도	계	15세미만	15~20세미만	20세이상
2009	1,125	10	292	823
2010	434	3	98	333

주: 위의 입양기관에서 집계된 미혼모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2009, 2010), 국내외 입양통계.

표 II -12 연도별 미혼모의 연령 변화

단위: %

연도	10대	20대	30대	계
1980년대	24.9	73.2	1.9	100.0
1990년대	52.7	43.6	3.6	100.0
2000년대	53.5	43.6	2.8	100.0
2008년도	30.6	31.8(20~24세) 20.9(25~29세)	16.7	100.0

* 출처: 김혜영 외(2009); 조주은, 2010: 9, 재인용.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자녀를 입양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2012년 8월부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 절차가 종전에 비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개인입양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 자료가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 자녀를 입양보내는 규모를 추정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그 수치를 파악해 본다면 한 해 청소년 미혼모 중 약 1,300여 명의 청소년이 자녀를 입양보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자녀의 출산하여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 약 13,000~14,000여 명에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수치인 약 1,300명을 더한다면, 출산 후 양육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는 약 14,000~15,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앞서 이미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 이외에 임신과 낙태 경험이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산한 청소년 한부모는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경험한 미혼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출산보다는 낙태를 선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본연구의 조작적 정의에서도 밝혔듯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불법낙태를 하지 않고 사회적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낙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현재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낙태 경험자들에 대한 추산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부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청소년들의 임신 및 낙태 경험을 추산해 보았다. 우선 전국 임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에 따르면, 15~24세에 해당하는 전체 가임기 여성 중 약 7%(15~19세 0.2%, 20~24세 6.8%)는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쉽게도 이들의 혼인상태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20~24세 여성의 약 52%가 임공임신 중절 사유로 '미혼'임을 선택하였다. 한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에서는 응답여학생의 약 0.3%가 임신 경험이 있으며, 그중 약 70.7%가 낙태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신을 경험한 미혼 청소년 중 15~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약 70%, 20~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약 52%가 낙태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24세 이하 임신을 경험한 미혼 청소년의 약 40% 정도만이 출산을 선택하였으며, 나머지 약 60%는 낙태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이 비율을 앞서 표Ⅱ-3에서 제시하였던 인구동향조사에서 나타난 미혼 및 혼인외자 출산건수를 바탕으로 추산한 청소년 한부모 규모인 약 10,000여 명에 대입해 본다면, 현재 24세 이하 미혼 청소년 중 약 25,000여 명이 임신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10,000여 명은 출산을, 15,000여 명은 낙태를 선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한 비율만을 계산하여 나온 수치로 대략적인 가늠일 뿐이므로 보다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임신 후 낙태를 선택한 청소년이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보다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1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출산 후 입양을 보내거나 임신 후 출산이 아닌 낙태를 선택한 청소년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에 비해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청소년 한부모 관련 연구 동향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불과 1~2년 남짓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가 부족하다. 학계의 연구동향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청소년 한부모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까지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된 복지수혜자로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까지 한부모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이들 가족이 봉착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혹은 자녀양육의 문제에 집중되어 왔을 뿐, 한부모 가족구성의 내부적 다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한부모 연구들은 주로 이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추이에 관한 것이거나(김혜영, 윤희식, 2005; 윤희식, 2004; 김미숙, 2006; 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송다영, 2006), 자녀양육비 확보 및 지원방안(박복순, 2004; 김수정, 2003; 강철희, 김교성, 김영범, 2000), 또는 비양육부모의 협력적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유희정, 2004). 이처럼 대다수 한부모 연구들은 주로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이나 빈곤위험에 더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미혼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활세계는 연구에서 조차 주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부모가구 형성요인이나 이들 한부모의 연령에 따라 이들 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수준과 층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족의 형성요인이나 경제수준, 한부모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생활실태의 파악 및 주요 동향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2011년도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한부모 가족실태조사가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최초의 실태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와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할 수밖에 없다. 요행히 최근 들어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육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양육과정이나 삶의 전이과정(김혜선, 김은하, 2006; 최경화, 2006;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 2008; 김유순, 김은영, 2008),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또래집단의 태도(백옥현, 2008),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홍순혜, 김혜래, 이해원, 변귀연, 정재연, 이상희, 조보라, 2007; 석창훈, 2008)에 대한 연구 등으로 관심이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나아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모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혜영, 2010; 남미애, 홍봉선, 2011)로부터 청소년미혼모 발생경로와 이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정경순, 2008; 윤미현, 이재연, 2002;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도미향, 정은미, 2001, 김만지, 2000), 나아가 자녀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원가족들이 당사자인 십대청소년 못지않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점차 그들의 양육을 지지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확인되고 있다(이현주, 2011).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십대 미혼모가 성인미혼모 보다 산전관리에 소홀하고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나 자기지지기 미약한 십대 미혼모들은 죄의식,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존의 생활양식에서 이탈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십대 미혼모들이 미혼모와 청소년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매우 취약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자 문제집단으로 분류되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기회조차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김혜영 외, 2009:22-23).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사례 수에 의존하거나 질적인 인터뷰를 통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한부모가 되는 경로나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효과적인 정책설계를 뒷받침할 만한 크기의 표본연구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청소년의 성경험이나 이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성경험과 임신에 대한 도덕적 비난의 수위가 높은 우리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청소년기를 다분히 성인으로의 입문을 위한 준비기 또는 아동과 성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불안정한 과도적 시기로 규정해 온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는 청소년기를 강렬한 성적 충동을 발산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도, 결코 그들의 성적 충동이나 욕망의 표출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조응하듯, 10대의 성경험이나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10대 청소년의 자녀출산 및 부모됨에 관한 논의는 오로지 미혼모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편향적인 연구경향이 이어져온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십대들이 성경험을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하는지, 혹은 출산 후 입양과 양육의 선택과정에서 어떠한 고민과 혼란함을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완전한 성인기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의 성장이라는 인생의 과업과 더불어 부모로서의 자녀양육 및 경제적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상당수의 한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 아동의 빈곤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자립 및 지지기반이 미약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책욕구에 관한 과학적 진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대상자 발굴조차 쉽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기초적인 자료생산 역시 누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 및 당면과제

청소년 한부모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들의 특성 및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관련 연구 역시 선행연구에 포함하여 그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와 연관된 특징들을 추출하였다.

1) 높은 미혼모 비율

우리 사회의 통념을 고려할 때 청소년 한부모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통계 및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감안해 보면, 청소년 한부모 중 미혼모의 비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최근의 자료로 한부모시설 이용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미혼모의 비율이 95.1%로 압도적인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⁹⁾. 이는 전체 청소년 한부모 중 미혼모가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 다수가 미혼모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은 곧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높은 비율의 낙태와 입양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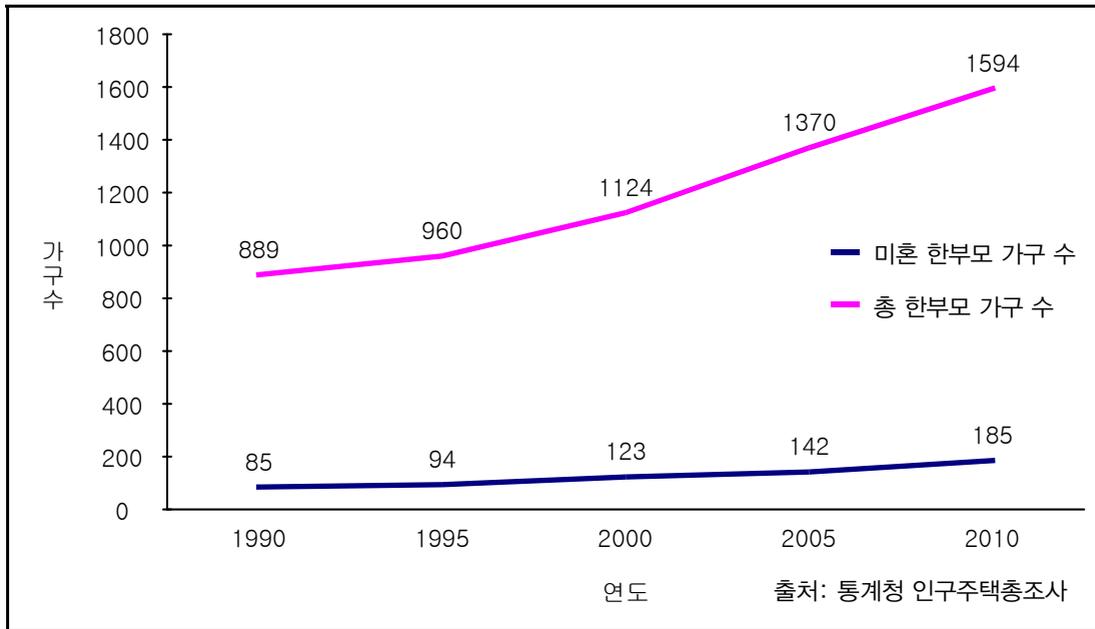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산보다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 결과, 2010년 청소년의 임신 경험률은 전체 응답 여학생의 0.3%였으며, 임신 경험이 있는 여학생 중 인공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를 경험한 비율은 70.7%(전체 응답 여학생의 0.2%)에 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뿐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2009년 청소년유해환경점검촉진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0)에 따르면, 일반 여학생의 경우 2.4%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위기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9) 2011년 실시된 이 연구의 표본에 의하면, 미혼이 94.4%, 이혼이 3.1%로 '청소년 한부모'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미혼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9세 이하가 30.7%, 20세 이상이 69.3%로 20세 이상 응답자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연령은 20.5세로 대부분 20세 근처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1).

40.4%의 높은 성관계 경험률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위기청소년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그 규모면에서는 훨씬 작지만, 상대적으로 임신 및 낙태와 출산의 반복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전개된 낙태근절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3월 3일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낙태를 줄이기 위한 피임교육 강화와 위기 임신 상담 핫라인 개설 및 운영을 통해 낙태수술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10월부터 임신 및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현금지원(월 12만 4천원)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간 낙태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형사정책연구원, 2011). 낙태수술 단속 강화는 오히려 임신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전히 불법적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낙태를 감행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이들의 위기상황은 한층 높아졌다. 또한 낙태의 담론이 여성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는 속에서도 청소년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정책이 낙태금지와 출산을 제고에만 집중되고 출산 후 자녀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보호 아동의 증가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입양보내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입양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입양 총 1,462건 중 1,290건이, 국외입양 총 1,013건 중 876건이 미혼모 아동으로 전체 입양건수의 약 87.5%가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혜영 등(2009)이 571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혼모들은 자녀 출산 후 양육보다는 입양보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보내는 경우가 성인 미혼모의 경우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신 중 낙태나 출산 후 입양을 보낸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죄책감, 우울, 상실감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허남순, 노충래, 2005). 그럼에도 현재 입양 보낸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슬픔과 상실의 감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정서적 개입을 하고 있는 외국의 지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oles, 1989; 최승희, 2003).



【그림 II-2】 한부모가구 대비 미혼 한부모가구 비율

3) 양육모의 증가

청소년이 임신을 한 경우 상다수가 낙태 및 출산 후 입양보내기를 선택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양육미혼모 중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은 1998년 22.9%에서 2001년 40.7%로 2년 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보고는(강영실, 2002)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또한 【그림 II-2】에서 보듯이 총 한부모가구 수 뿐 아니라 미혼 한부모가구 수 역시 차츰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미혼 한부모가구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수용 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점차 확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혜영 외(2009)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개선된다면 입양을 보내기보다는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입양 미혼모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부족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미혼모들의 상당수는 사회가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있는 응답자의 64.7%, 양육모 그룹홈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33.3%가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죄인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이 특히 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도 89%의 응답자들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할 때(27%)나 결혼할 때(24%) 특히 심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전국의 18세 이상 일반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미혼모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상황에서의 편견과 차별은 혼전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업무능력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혼부모의 경제활동에 실제 장애물로 작용함으로써 이들이 만성적인 빈곤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OECD 국가들은 미혼모, 동거부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가족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미래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높은 비율의 학업중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분으로 임신을 한 청소년들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 및 시설관계자, 학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국가인권위원회, 2007)에 따르면 학교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임신한 청소년에 대해 “징계대상” 혹은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임신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 미혼모 중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한부모 응답자의 약 60.6%가 학업중단을 경험하였으며, 그 가운데 임신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32.3%, 출산 후 중단한 경우는 1.7%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임신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35.7%)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의 징계나 강요(16.7%), 부모의 권유(15.5%)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은지 외, 2011).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 지지체계의 단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일반가정에서도 조부모의 양육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양육참여는 모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육실태조사¹⁰⁾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의 21.9%가 동거 또는 비동거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인 경우에는 42.7%가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미혼모의 경우는 자녀양육을 포함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있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에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부모를 꼽은 경우는 29.2%인 반면 어린 자녀를 꼽은 비율은 34.8%로 가장 높아 자녀양육과 관련한 부모의 지원이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신들의 부모 이외의 전반적 지지체계에서도 취약한 경향이 있다. 우울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한부모는 15~18%에 이르며(김은지 외, 2011), 부모 뿐아니라 정부·주변사람들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는 “사회적 고립”상태를 호소한 미혼모가 전체 응답자의 13.2% 수준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혜영 외, 2010). 지지체계 단절은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및 경제적 지원과 같은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Reid & Meadows-Oliver, 2007).

10) http://stat.mw.go.kr/stat/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601(검색일: 2012.2.20)

7) 경제활동의 제약에 따른 빈곤

일반적으로 한부모는 배우자의 부재로 양육과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원의 상실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9.1%(137만 6천 가구 중 12만 4천가구)에서 2010년 11.6%(159만 4천 가구 중 18만 5천가구)로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를 대상으로 한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2.8%가 소득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약 62.8%, 100만 원 이하는 약 8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미혼모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 집단에서도 빈곤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10대 미혼모의 72.7%가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18.2%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며, 전일제 고용은 27.3%에 불과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일차적으로 낮은 학력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령 제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지지체계의 미흡으로 본인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맡아야 하는 경우 양육시간의 확보를 위해 낮은 임금의 시간제나 일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8) 불안정한 주거환경

청소년 미혼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중 하나는 주거지원이며, 월평균지출에서 주거비 부담(21.4%)은 아이용품(32%) 다음으로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나타나(김은지 외, 2011)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거지원은 매우 절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관련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1)에 따르면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자 자립시설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2005년 85개에서 2010년에 총 121개로 증가하였으나 입소 정원은 총 2,610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보호기간 역시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정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수요에 비해 물량이 많지 않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모의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산과 소득이 있을 경우 입주에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 자녀의 발달적 문제발생 가능성 증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는 생활 전반에서 취약성을 나타내는 고위기 청소년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이다. 의식주를 포함한 생계 문제 뿐 아니라 지지체계 단절, 학업과 진로, 취업, 자녀양육 등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신과 출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보호와 지원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청소년 한부모 자신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신체적 문제나 심리적 부적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십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들은 성인 임신부들에 비해 저체중·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등의 문제로 임신 관련 진료를 덜 받는 경향을 보였다(Raatikainen, Heiskanen, Verkasalo, & Heinonen, 2006). 부적절한 가정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된 아동들은 발달정도가 지체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더 큰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Lynch, 2004). 양육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망이 결여된 어머니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고 자녀 학대 경향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자녀도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더 높다(여진주, 2008; 박진아, 201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가족정책 내에서 제공되는 소득보장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육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뿐 아니라 고위기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이 포함된 다각적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10) 긍정적인 생활태도로의 전환 기회 필요

청소년 미혼모들은 통상적인 성규범과 혼인규범에서 벗어나 미성년의 지위로 성과 출산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범탈탈자로 스스로를 낙인하고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하지만, 자녀양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긍정적인 측면 역시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 2010; 김유순, 김은영, 2008; 남미애, 홍봉선, 2011). 요컨대 스스로 자녀양육을 결정한 청소년들은 부모됨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는 주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회복과 사회통합에 있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la & Gamble, 2000; Breheny & Stephens, 2008).

김혜영 외(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양 결정 후 미혼모들이 느끼는 감정을 1-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슬프고’(3.39점), ‘후회스러우며’(2.88점), ‘절망스럽고’(2.51점), ‘화가 나는’(2.46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느꼈던 반면,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양육 결정 후에 ‘후회스럽기보다는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36.9%)나 ‘일단 결정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53.1%)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응답자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156-159). 또한 김혜영(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분석 결과 미혼모들은 성인 미혼모나 10대 미혼모의 구별 없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를 보다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다”(평균 3.67점)와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평균 3.37점)의 항목에 높은 동의를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미혼모들의 삶에 있어 자녀양육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국내·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

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2.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3. 시사점

제 3 장

국내·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현황¹¹⁾

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¹²⁾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625전쟁 이후 경제적으로 빈곤한 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1955년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을 통해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사별, 이혼, 별거 등을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89년 모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이들 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면서 조손가정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이전에도 민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의료보호법, 입양특례법, 청소년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을 통해 저소득 가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미혼모·부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이루어져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의 주요 연혁은 표 Ⅲ-1과 같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도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급여를

11) 이 장의 1절은 백혜정 연구위원, 김지연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신윤정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의 연구를 김지연 부연구위원이 요약 제시하였고, 3절은 김지연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12) 이 절은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부 공공복지포털 복지료(www.bokjiro.or.kr),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포털 OK주민서비스(<http://www.oklife.go.kr>)와 각 부처별로 현재 추진 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을 요약·정리한 것이다(검색 기간 : 2012. 5~6월).

표 III-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의 주요 연혁

연도	추진내용
1955	○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6·25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
1960 -	○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원인으로 모·부자 가정 증가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예우에관한법률에서 지원
1982	○ 위한 모자복지법 입법을 위해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에서 모자복지법 초안 마련
1989	○ 모자복지법 시행(7.1):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아동교육비·아동부양비 등 복지급여 지급, 생업자금 등 복지자금 대여,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모자복지시설 규정
1992	○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1995	○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생업기반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복지자금 대출사업 실시
1998	○ 모자복지법 개정(12.30): 모자복지위원회 폐지
1999	○ 모자복지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7)에 따른 인용 법제명 변경
2001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16,000원 지급
2002	○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12.18):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복지시설에 추가
2003	○ 복지자금 대출 보증조건 완화 및 손실보전료 국고 지원
2004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20,000원으로 지급
2005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월 50,000원으로 지급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부자복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시설 운영비 지방이양
2006	○ 모·부자복지법 개정(12.28): 외국인 중 대학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로 함, 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복지급여 추가 지원,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여 아동 보호·양육 강화, 공동생활가정 설치
2007	○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으로 개정(10.17):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에 포함, 한부모가족 자녀가 취학 중일 때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8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모·부자복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00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10세 미만으로 확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6개소),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을 한부모에서 저소득 취약가족으로 확대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2세 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공동생활가정 보호기간 확대(1년→2년),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연장기간 확대(3월→6월)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확대(6개소→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도입·시행(4월~): 만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최저생계비 150%까지), 아동 양육·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2세 미만으로 확대

연도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공동생활가정 보호기간 확대(1년→2년),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연장기간 확대(3월→6월)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확대(6개소→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시행(4월~): 만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최저생계비 150%까지), 아동 양육·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확대: 아동양육비 금액 상향조정(월10만 원→월15만 원), 고교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월10만 원) 신설 ※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신규가입 폐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확대: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인정액 130%이하→실제소득 150%이하, 대여자금 용도를 창업→창업 및 사업운영 비용, 대여한도액을 담보대출시 2,000만 원→담보범위 내 5,000만 원 이내 대여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가족보듬사업 확대(11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1.4.12.):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2012.1.1.시행),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2012.1.1.시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2012.7.1.시행), 입양기관의 미혼모자보호시설 설치→운영 금지(2015.7.1.시행)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업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5만 원) 신규 지원 ○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월 5만원) 신규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5만 원) 신규지원

자료: 여성가족부 (2012: 9-12).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있어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수급자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의료지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수준이며, 자녀양육비 지원 역시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액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 지원조건 중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관련이 있는 지원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표 III - 2 한부모가족 지원조건 비교(2012년 1월 기준)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기초수급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족
긴급 지원	○ 긴급생계급여(복지부) ○ 장제급여(복지부):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		-
소득 지원	○ 생계급여(복지부) ○ 생활요금(주민세, 전기요금, TV 수신료, 복지전화,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등) 감면제도(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전력공사 등)	○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 가구	○ 생활요금 일부(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감면
주거 지원	○ 주거급여(복지부): 현금 및 현물급여(시설입소자는 제외) ○ (영구)임대주택 공급(국토해양부/지자체): 한부모가족 우선 공급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복지(거주) 시설* 입소 지원	-
자립 지원	○ 자활급여(복지부): 자활특례자의 경우 생계급여 대신 자활급여 지급(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단, 한부모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어도 출산 후 6개월까지는 근로의무 면제) ○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함 ○ 생업자금 융자(복지부):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함	○ 복지자금 융자(여가부)	-
의료 지원	○ 의료급여(복지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2종으로 분류	○ 취업성공 패키지(노동부):자활사업 참여자 제외	○ 건강보험료 지원(복지부): 월소득 360만원 이하 한부모 가정에 10~30% 감면
양육 (교육) 지원	○ 임신 및 출산 지원(복지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비용 중 실제 부담 비용 지원(고운맘카드) ○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교과부/여가부): 만 5세 아동 대상 연령별 차등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여가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 산모신생아도우미(여가부):태아에 따라 2~4주 ○ 자녀 돌봄 서비스(여가부/교과부) ○ 결식아동 급식지원(교과부/복지부) ○ 저소득 가구 자녀 교육비지원(교과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해산급여(복지부): 출산시 급여 지원 ○ 교육급여(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복지부): 초중고 자녀 대상		-
		○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여가부)	○ 아동양육비(여가부): 12세 미만 아동 대상 ○ 추가아동양육비(여가부): 5세 이하 아동 대상 ○ 아동교육비(여가부): 중고생 자녀 학용품비
정서 지원	○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한부모가족 상담사업,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여가부)	

주 : 복지시설은 주거지원 외 자립, 양육, 정서 지원 등을 포함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보건복지부, 2012; 여성가족부, 2012

표 Ⅲ-3 2012년 긴급생계급여 지급금액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지급액(원)	208,802	355,528	459,929	563,330	668,731	773,132	877,533

자료: 보건복지부(2012: 156)

(1) 긴급지원

긴급지원에는 긴급생계급여와 장제급여가 있다. 긴급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한부모에 한해 수급자격 심사기간 동안 긴급하게 요구되는 생계비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37.7%)에 해당하는 금액(표 Ⅲ-3)을 지급하며,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개월 더 연장가능하다. 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소득지원

①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소득지원에는 수급자격을 충족시키는 가구에 한해 생계급여와 앞서 언급한 긴급생계급여가 포함된다.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2012년도 최저생계비 및 생계급여액은 표 Ⅲ-4와 같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시설로 지원되는데, 보장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인당 약 14만 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표 Ⅲ-4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생계급여 지급금액(2012년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생계급여액(원)	365,393	622,156	804,853	987,549	1,170,246	1,352,943	1,535,639

자료: 보건복지부(2012: 47)

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소득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이 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지원목적은 한 명의 부 또는 모가 생계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저소득한부모 가구의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월 5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이다. 단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도 제외된다.

2012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소득지원이 확대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등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2011년 4월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연령 및 학년에 따라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양육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③ 생활요금 감면제도 및 기타 소득지원

2012년 3월 현재 기타 소득지원으로는 각종 생활요금 감면제도가 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행정안전부), TV 수신료 면제, 복지전화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디지털 컨버터 무상제공(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보험료 할인(금융감독원) 등이 있다(표 Ⅲ-5).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 감면제도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실시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명절 위로금, 월동비(난방비 포함) 등과 같이 연 1~2회의 현금 및 현물로 소득지원을 실시하지만 이는 지역별 편차가 있는 일회적인 사업이다.

(3) 주거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뉜다. 현금급여의 경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는데 생계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 III-5 생활요금 감면제도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심야전력 20~31.4% 할인 - 주택용 전력 21.6% 할인 ○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 18~29.7% 할인 - 주택용 전력 2%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주민서비스 (www.oklife.go.kr /한국전력공사)
TV 수신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서비스/ KBS수신료콜센터/ 읍면동 자치센터
복 지 전 화 서 비 스	유선 전화	○ 가입비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 원 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이동 통신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면제나 감면(최대 13,000원 이내) - 기본료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통화료의 50% 할인 (3만 원 한도 이내) ○ 차상위계층 - 가입비 면제 - 월 사용액 3만 원의 35% 할인(최대 10,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 우 포함)
	인터넷 전화 요금	○ 전화요금(개인(가구)당 1회선에 한함)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일반통화료(월 통화요금 150도수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이동전화통화료 월 통화요금 1만원 한도 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서비스 통화료 100%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동 자치센터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한부모가족: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보험료 할인	○ 기존 자동차 보험 대비 15~17% 보험료 할인 -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 1.5톤 이하 화물차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자*	금융감독원/ 해당보험회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배우자와 합산)이면서 30세 이상인 자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7(검색일: 2012. 5. 7)

표 Ⅲ-6 2012년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2012년 기준)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원)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주거급여 한도액(원)	87,657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현물급여 기준액(원)	26,000	45,000	58,000	71,000	84,000	97,000	110,000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

자료: 보건복지부(2012: 157-158)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단 자가 거주자에게는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현물급여는 3년에 1회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가인 경우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통해 주택 관리 등을 지원한다. 단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12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은 표 Ⅲ-6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주거지원은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연계로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기존주택 임대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표 Ⅲ-7).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한부모가족이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주택의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으로 제공된다. 매입임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며 전세임대 방식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입주 후 3년 단위로 최다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임대횟수의 제한이 없다. 입주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까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5,600만 원,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의 경우는 3,500만 원, 기타지역은 2,800만 원이고, 3자녀 이상인 세대에게는 7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2% 이내이다.

이 외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일시적 주거 지원을 위해 모(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표 III-7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관
영구임대 주택 공급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중 일부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존 주택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시중 전세가 30% 수준)하게 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세체결 후 저렴(시중 전세가 30%수준)하게 재임대 ○ 임대기간: 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사업대상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읍·면·동 주민센터 내공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 ○ 지역여건에 따라 85㎡ 이하 주택도 포함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600만 원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 원 - 기타지역: 2,800만 원 - 3자녀 이상 세대: 700만 원 추가 ○ 연리 2%, 15년 분할상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시군구청 5개 시중 은행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시 사업)	○ 임대료 보조지원(2인 이하 월 43,000원, 3~4인: 월 52,000원, 5인 이상: 월 65,000원) ○ 임대보증금 융자, 임대보증금 70% 범위 이내, 이율 2%, 10년 분할상환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SH공사

자료: 국토해양부 http://www.mlim.go.kr/ebook/20100503_ebook/EBook.htm (검색일: 2012. 5. 29)

복지로 http://www.bokjiro.go.kr/service/livingView.do?data_sid=5085124 (검색일: 2012. 5. 29)

서울특별시청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2> (검색일: 2012. 5. 29)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거주 및 지원) 시설¹³⁾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2개소 등 총 12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복지 시설은 일시적 주거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립·정서·양육 지원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4) 자립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립지원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어 직업훈련이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자활특례

13)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표 Ⅲ-8 복지자금 융자사업의 융자한도액 및 조건 (2012년도 기준)

사업내용	세부 내용(융자한도액 및 대출조건)	지원대상	신청 및 수행기관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기존대출금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2만 원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족	신청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절차 ↓ 수행기관 농협 영업점(대출)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 보증인의 연간소득인 800만 원 이상인 자이거나 ○ 연간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 원 이상인 자 중 1명 ○ 대출금액이 일천만 원 초과이면 보증인 1명 추가		
담보대출	○ 가구당 담보범위 내(5,000만 원 이하)		

* 자소득층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 타 기관 유사목적 자금과의 중복융자 불가

* 고정금리 연3.0% / 5년 거치 5년 상환

자료: 여성가족부(2012: 201-205)

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자활특례자가 되면 생계 및 주거급여가 중지되는 대신 자활급여가 지급된다. 자활급여특례 지원기간은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이다. 단 자활급여 수급대상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출산 후 6개월까지는 근로의무를 면제한다.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으로는 자활급여 지급 외에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생업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가 3년 후 탈 수급을 목표로 3년간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불입하면 연4.7%(세전)의 금리를 적용하여 만기 후 지급할 뿐 아니라 탈 수급시에는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30%), 민간매칭금을 더하여 기초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업자금융자제도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¹⁴⁾. 또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1:1 맞춤형 취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며 지속적인 취업유지를 위해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자립지원은 복지자금 융자사업이 있다(표 Ⅲ-8).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가구당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연3%의 고정금리로 최초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대여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2012년 배정된 융자규모는 4,000백만 원)이며, 대여 기관은 전국

14) 이 제도의 융자한도액 및 대출조건은 가구의 경우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자금대여제도와 동일하다.

표 Ⅲ-9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내용(고용노동부)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진단 및 경로설정 -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2단계: 의욕 및 능력 증진 - 취업프로그램(집단상담, 직업훈련, 디딤돌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 등) ○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 가구 구성원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이하자, 청년층(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대학졸업이나 실직 후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등), 여성가장 등	고용센터
취업 관련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5만 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20만 원 지급 ○ 생계유지수당(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 월 20만 원 한도) ○ 취업성공수당: 취업 1개월 후 20만 원, 3개월 후 30만 원, 6개월 후 50만 원 지급 ○ 탈수급 축하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하거나 법정 차상위계층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50~100만 원 지급 		

자료: 여성가족부(2012: 249-251)

농협 영업점으로 신청자가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일정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 이들을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형식을 따른다.

이 외에 타 부처 지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취업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 이는 취업지원계획에 따른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과 취업계획 수립 시 5만 원,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의 생계지원, 취업 성공으로 근로를 유지할 경우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3회에 걸쳐 분할 지원하며 취업을 통해 자립하여 탈 수급할 경우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표 Ⅲ-9).

(5) 의료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는 국가부담이 85%, 본인부담이 15%이다. 그 외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출이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하는데, 1종 수급권자가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2종 수급권자가 6개월간 60만 원을

표 III-10 저소득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입자 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월 보험료 10~30%를 경감 - 1등급(30% 경감):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 2등급(20% 경감):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인 경우 - 3등급(10% 경감):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 재산 9,000만 원 초과 ~ 13,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족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 군복무중, 학생인 세대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12: 252)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하여 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의료지원(표 III-10)은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보건복지부)이 있으며 월 소득 360만 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10~30%를 감면하지만 그 외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6) 양육지원

자녀양육지원은 크게 양육지원과 교육비지원으로 구분된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임을 감안하여, 미취학자녀 대상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등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양육지원과 교육비지원을 살펴보았다.

표 III-11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지원단가)	지원대상	신청 기관
만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월 20만원 지원	○ 유치원/어린이 집 이용 취학전 만 5세 아동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신청
만3,4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만 3세: 19.7만 원 지원 ○ 만 4세: 17.7만 원 지원	○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유치원/어린이 집 이용 취학전 만 3, 4세 아동	
만0~2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만 0세: 39.4만 원 지원 ○ 만 1세: 34.7만 원 지원 ○ 만 2세: 28.6만 원 지원	○ 어린이 집 이용 취학전 만 0~2세 아동	

※ 지원단가는 사립시설 종일반 기준이며, 국공립의 경우는 이보다 낮게, 야간 및 24시 시설의 경우는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morning/morning1.do> (검색일: 2012. 6. 5)

표 Ⅲ-1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지원단가)	지원대상	신청 기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가구 36개월 미만 아동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신청
	○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	○ 취학 전 농어촌 거주 아동 (최대 84개월)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의 45%	○ 취학 전 등록 장애 아동 (최대 84개월)	
	○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만 5세: 10만 원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morning/morning1.do> (검색일: 2012. 6. 5)

① 미취학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미취학 자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양육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이 있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은 만 0~2세, 만 5세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비 및 보육료(월 20만 원~39.4만 원)를 지원하며, 만 3, 4세아의 경우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에 월 17.7만 원~19.7만 원까지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표 Ⅲ-11).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월 7~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표 Ⅲ-1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 소득 50% 이하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표 Ⅲ-13).

② 양육지원

양육 지원으로는 우선 모든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지원(고운맘카드)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 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경우 해산급여로 자녀 출산 시 50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한 양육지원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지원의 일환으로 아동양육비 지급

표 Ⅲ-1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 기간 및 서비스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태야: 2주(12일) 642천 원 - 쌍생아: 3주(18일) 1,180천 원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 4주(24일) 1,747천원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천 원 / 40% 초과~50% 이하는 92천 원 ○ 이용시간: 평일은 오전 9시~오후 5시(휴식 1시간 포함, 8시간) /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휴식 30분 포함, 4시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산모	관할 시·군·구 보건소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o.go.kr/gowt/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 (검색일: 2012. 6. 5)

외에 2012년부터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이 추가되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동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정 내의 만12세 미만 아동이며 국민기초수급자가가구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012년부터 아동교육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아동양육비이며 항목별 예산 규모는 표 Ⅲ-14와 같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급여지원으로 아동양육비 외에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조손가구나 미혼 한부모(모

표 Ⅲ-14 2012년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2011년	28,937	36,531	-	-	-
2012년	29,884	-	284	2,800	210

*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음.

자료: 여성가족부(2012: 119)

표 III-15 아이돌봄 서비스

구분	일시급급 등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12개월 영아가 있는 취업부모 가정)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지원기준 (4인 가구 월소득)	50% (219만 원)	50~100% (307만 원)	50~100% (439만 원)	초과	40% (215만 원)	40~50% (293만 원)	50~60% (376만 원)	60%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 원				월 100만 원(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 원	2천 원	1천 원	-	70만 원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본인부담	1천 원	3천 원	4천 원	5천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				월 120~200시간			

※ 맞벌이의 경우 합산 소득의 25% 감경

자료: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1.jsp (2012. 6. 5)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가구에 한하는 것으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¹⁵⁾

이상과 같은 현금급여 외에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한 돌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이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정도가 다르며 저소득 취업 한부모의 경우는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에 있다(표 III-15).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11년 도입되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아침 6시 30분~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을 볼보며 간식, 식사, 숙제 지도, 예체능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1년에는 1000개의 교실에서 3만여 명의

표 III-16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보건복지부)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결식아동 급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급식소, 도시락 및 주/부식 제공, 음식점 이용 등을 통한 급식지원(1식당 3,000원) ○ 미취학 아동: 조/중/석식 중 선택 ○ 취학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석식: 연중지원 - 중식: 토/일/공휴일(학기 중) 및 방학 중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보호자로부터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 가구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복지로 <http://www.bokjira.go.kr/gow/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servId=SCY00000003> (검색일:2012. 6. 5)

15) 청소년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15만 원으로 성인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보다 많다.

표 Ⅲ-17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 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한부모 가족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89개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32개소) ○ 대한변호사협회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지원(강제집행, 과태료, 이행 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		
법률 안내	○ 생활법률 강연 및 이동법률상담		

* 사업비 100% 국비 보조(총 270백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2012: 236-245)

학생이 참여했으며, 2012년에는 1700개 교실(5만 명)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경우 표 Ⅲ-16과 표 Ⅲ-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학교 내 급식은 교과부, 학교 밖 급식(방학, 주말, 공휴일)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⁶⁾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표 Ⅲ-17). 이는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률 서비스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으로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포함된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화해권유,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며,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지원에서는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법률상담, 유전자 검사 및 소송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서는 상대방이 자녀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과태료, 이행명령, 감치처분 신청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270백만 원으로 전액 국비 보조로 이루어져 있다.

16)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 제9조, 복지부는 별도 지침을 근거로 급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대동소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현재 아동급식위원회가 통합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의 평가 및 규제, 개선사항 등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경우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연방차원에서 농무부가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선정 등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김지연, 2012: 30).

③ 교육비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교과서대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자녀에 한하여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학년 초에 일인당 119,200원을 지급하고,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일인당 연 49,500원(학기당 24,750원씩 연 2회)을 지급한다. 또한 부교재비는 초·중학생 자녀에게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일인당 36,000원을 지급한다.

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교육지원은 2012년 신규사업인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에 국한된다.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내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액은 중고등학생 자녀 일인당 5만 원(연 1회, 3월 20일 지급)이며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조손가구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한부모 가구 내 중고등학생 자녀이다. 단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중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비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상과 같은 현금급여 외에도 교육과학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급식비,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일인당 48만 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이내) 및 PC 지원) 등이 포함된다(표 III-18).

표 III-18 저소득 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내용(교육과학기술부)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학교급식비	○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보호자부담금 전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해당학교
학비	○ 학비전액 -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포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48만 원 이내		
교육정보화	○ 컴퓨터(PC)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월17,600원 이내)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est.go.kr/es/index.jsp> (검색일: 2012. 5. 1)

(7) 정서지원

정서지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위기가족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과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¹⁷⁾’ 등이 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취약 한부모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인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80% 이하의 비수급, 저소득 한부모 가구(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포함)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 사례관리,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컨설팅 및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 고용지원센터·후원단체·신용회복위원회·법률상담소·학교 등 기관, 생계비·창업자금·장학금·의료비 등 물적 자원연계, 후원자·자원봉사자·법률전문가·학습교사 등 인적자원 연계, 건강·직업·보육·아이돌보미·사회적일자리·법률문제 등의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표 Ⅲ-19).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사업(표 Ⅲ-20)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한부모지원사업의 내용은 각 지역별로 상이하나 많은 지자체들이 명절위로금 지급,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대상 현장체험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명절위로금의 경우 추석 등의 명절에 2만~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복 및 참고서 구입 등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Ⅲ-19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내용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및 수행기관
사례관리	○ 상담,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족	건강가정 지원센터 (전국 31개소)
직업훈련	○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아이돌봄 서비스	○ 직업훈련·자활프로그램·자조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기관연계: 고용지원센터, 후원단체, 법률상담소, 학교 등 ○ 물적 자원 연계: 생계비, 창업자금, 의료비, 장학금 등 ○ 인적 자원 연계: 후원자, 자원봉사자, 법률전문가, 학습교사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2:215-233)

17)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와의 관련성이 적어 여기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였다.

사업내용	세부 내용	지원대상	신청 기관
문화바우처	○ 공연·전시·영화·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이 가능한 5만 원 한도의 문화바우처를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시·군·구청
스포츠바우처	○ 매월 7만 원 한도, 연 3~12개월간 체육 프로그램 강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7~19세 유·청소년	
스포츠관람 바우처	○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용 보조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만 14세 이상	
여행바우처	○ 개별/단체 바우처 발급 및 지자체 기획 여행을 통해 1인당 15만 원 이내 국내 관광활동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중 선정 (연1회 공개모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voucher/art.jsp> (검색일: 2012. 6. 10)

(8) 한부모가족 복지 및 지원시설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 및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 및 지원시설은 시설유형에 따라 일시적 주거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뉘며, 2012년 현재 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 2개소 등 총 12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표 III-21). 다음은 각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과 미혼모자시설(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다. 부자보호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父)로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표 Ⅲ-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2012년 1월 현재)

시설별	기능	시설 수	입소정원
모자보호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입소	41	1,058세대
모자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입소	2	40세대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입소	3	41세대
부자보호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입소	1	20세대
부자공동생활가정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입소	2	15세대
미혼모자시설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입소	33	782명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입소	24	222세대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입소	1	10명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자녀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입소	14	380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2	(이용시설)

자료: 여성가족부(2012: 255).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 등으로 공동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소가 제한될 수 있다. 모자자립시설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에게 우선 입소자격이 주어진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며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고 자립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연장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지원내용은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 급식비 지급(자립시설 제외),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등이다. 2012년 1월 현재 16개 시도별 현황은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모(부)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보호	41	6	6	5	1	1	1	1	2	1	1	2	4	2	5	2	1
정원(세대)	1,058	136	166	169	20	22	22	27	59	24	30	40	86	45	119	50	43
부자보호	1	-	-	-	1	-	-	-	-	-	-	-	-	-	-	-	-
정원(세대)	20	-	-	-	20	-	-	-	-	-	-	-	-	-	-	-	-
모자자립	3	-	-	-	-	-	-	-	1	-	1	-	1	-	-	-	-
정원(세대)	41	-	-	-	-	-	-	-	10	-	7	-	24	-	-	-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56).

■ 모(부)자공동생활가정

모(부)자공동생활가정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족으로서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2년 이내로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제공, 자립프로그램(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직업교육과 인성·양육 교육, 상담지도) 운영과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를 연계 지원한다. 2012년 1월 현재 16개 시도별 현황은 표 Ⅲ-23과 같다.

■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시설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1년 이내이며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숙식무료제공 외에 의료급여 대상자로

표 Ⅲ-23 모(부)자 공동생활가정(2012년 1월 1일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모자공동	2	-	-	-	2	-	-	-	-	-	-	-	-	-	-	-	-
정원(명)	40	-	-	-	40	-	-	-	-	-	-	-	-	-	-	-	-
부자공동	2	-	-	-	1	-	-	-	-	-	-	-	-	-	-	-	-
정원(명)	15	-	-	-	10	-	-	-	-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12: 257).

표 Ⅲ-24 미혼모자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모자	33	6	2	2	2	2	3	1	6	1	1	-	2	2	1	1	1
정원(명)	782	157	57	70	40	59	63	15	137	40	35	-	20	31	10	13	35

자료: 여성가족부(2012: 258).

관리되어 분만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¹⁸⁾,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미혼모 특수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미혼모 특수치료비와 해산급여는 별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 직업교육(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과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의 자립지원을 제공한다. 2012년 1월 현재 16개 시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 표 Ⅲ-24이다.

■ 모자일시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자녀 동반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모도 입소 가능)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숙식 무료제공, 의료혜택(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법률상담, 심리상담, 퇴소 후의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¹⁹⁾ 자녀의 방과후 지도 및 아동급식비 지원, 입소 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전입학 문제 지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및 정보를 연계지원한다. 기타 입소자에 대한

표 Ⅲ-25 모자일시보호시설(2012년 1월 1일 현재)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혼일시	14	1	1	2	1	-	1	1	2	-	-	1	1	-	1	1	1
정원(명)	380	10	30	27	24	-	45	37	54	-	-	33	31	-	9	50	30

자료: 여성가족부(2012: 260).

1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보호대상자로 관리하며, 지역내 병원·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숙아 분만 시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의 건강관리 등)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 배우자의 면회 요청시 입소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면회여부를 결정하고 면회실, 경비실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생계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하여 제공된다. 2012년 현재 16개 시도별 현황은 표 Ⅲ-25와 같다.

② 지원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을 위시하여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이혼 전후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및 문화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을 중심으로 맞춤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지원,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는 앞서 정서지원정책에서 언급했던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2012년 현재 각 시도별 지원센터는 모두 31개소이다(표 Ⅲ-26).

표 Ⅲ-26 건강가정지원센터 (2012년 1월 1일 현재)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서울	구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인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12: 233).

표 Ⅲ-27 미혼모·부자 거점기관(2012년 1월 1일 현재)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경남미혼모지원센터
울산	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 여성가족부(2012).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미혼여성의 낙태, 미혼모 자녀의 요보호 아동화 및 입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임신한 미혼여성이 상담과 양육교육, 미혼모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은 다소 미약하였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2009년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6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정부는 미혼모·부자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해당가정에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을 지원하였고 2012년 현재 전국 17개 지정기관이 운영되고 있다(표 Ⅲ-27).

추진내용으로는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 온오프라인 상담과 정보제공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²⁰⁾에 대해 출산비를 비롯, 자녀 입원·예방접종비, 분유·기저귀·계절에 따른 내의, 유모차, 겁옷, 보행기, 장난감 등 생필품(1회 10만 원 이하) 지원 등 연간 가구당 70만 원 이하(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 원)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친자검사비 실비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임신, 출산, 자녀양육, 산전·후 관리교육, 부모교육, 경제 및 법률교육, 성교육 등과 산전후 체조, 엄마와 아기체조, 자녀와 놀이활동, 아기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모빌·자동차 만들기 등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등), 자조모임 운영지원, ‘희망복지 129센터’와 공조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 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의무자 및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청소년 미혼모·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미혼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필요시 기타의 방법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며 재가 미혼모·부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2).

사업수행기관은 시도별 1개소(서울 2개소)이며,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년 이내이다. 단 미혼모부자가 입양보다는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입양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²¹⁾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크게 양육지원과 자립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지원과 자립지원 이외의 소득지원이나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계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2010년 이전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여타 한부모 가족과 대상 구분 없이 지원되었다. 이후 2010년 4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여성가족부, 지자체)’을 실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일부 개정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은 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과 재산,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한 2012년 국비지원액은 2,962백만 원(국비 보조율: 서울 50%, 타 시도: 80%)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급여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표 III-28).

(1) 양육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양육지원에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있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5만 원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월 10만 원만 지급하며 기초수급권 가구

2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각 부처별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한부모가족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Ⅲ-28 청소년 한부모 지원 내용

구분	양육지원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 계좌지원	대안 위탁교육
지급금액 및 시기	월 15만 원 월별 지급 (매월 20일)	연 15만 원 이내 수시 지급(신청시)	실비 분기별 지급	월 10만 원 월별 지급 (매월 20일)	월 5~20만 원 수시 지급(적립시)	-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 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5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 권자 제외)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초수급권자) 자녀 연령 만 24개월 이하	- 기초수급권자: 5만 원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0만 원 이하	학령기 청소년 한부모
지급방법	계좌 입금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계좌 입금	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 입금	계좌 입금	계좌 개설 은행입금	-
수행기관 (신청기관)	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지원					지정 기관
비고 ²²⁾	2011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조정	-	2011년 신설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2011년 신규 가입 폐지	검정고시 준비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2: 132).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낮고 자산조사 및 소득신고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낙인적 성격이 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어 생계비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본 사업에 의한 아동양육비는 중지된다.

(2) 자립지원

①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22) 2011년에는 자산형성계좌지원의 신규가입 뿐 아니라 아동의료비 지원(월2만4천 원)도 함께 폐지되었다. 한편 2011년부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고교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역시 2011년에 신설되었다.

및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취업능력 및 자립기반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액은 학원등록비와 교재비를 포함하여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 가구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원격평생교육시설(3개소)에 등록한 자이며, 2012년 현재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은 185개 소이다.

②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은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정규학력인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액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고등학교 교육비(학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자이며 기초수급 대상 청소년 한부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③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단절 및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자립기반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극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액은 가구당 월 1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00% 이하로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서 자녀의 연령이 만 24개월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 시 학업(초·중·고·대·대학교와 대학원 등의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 한부모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하며, 위탁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자녀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 활동의 요건은 학업 중, 취업 훈련 중, 취업 중(창업 포함)이어야 하며 동 활동기간이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자립활동 관련 사항으로 학업중인 경우(초·중등교육법상 학생, 평생교육법상 학생,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검정고시 학원등록자, 대안학교 등록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등)는 학업지속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취업중인 경우(회사원,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자, 창업자 등)에도 역시 취업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근로)증명서(취업 증임을 확인 가능 서류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필요시) 급여입금통장 등) 등의 제출을 통해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액은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1:1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초수급권자는 최대 월 5만 원까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이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지원대상은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하며 신규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소극적인 복지에서 탈피하고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기회 제공이라는 자산형성 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 재개 및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⑤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실비) 외에

표 III-29 시도별 미혼모자시설의 대안위탁교육지정 현황(2011년 기준)

시도별	지정 수	지정기관
서울시교육청	1	애란원
부산시교육청	2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인천시교육청	1	인천 자모원
울산시교육청	2	물푸레 미혼모자시설, 울산시민학교
경기도교육청	2	에스더의 집, 고운뜰
강원도교육청	1	마리아의 집
계	9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11)

학령기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로 미혼모자시설을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안위탁교육기관은 전국에 약 9개소가 있다(표 Ⅲ-29).

2.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²³⁾

1) 임신·출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실태

청소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OECD 국가에서 청소년 출산은 공통적으로 사회 문제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청소년 출산이 청소년 엄마와 출산한 자녀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 출산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Berthoud와 Robson(2001)은 1996년의 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 자료를 분석하여 13개 EU 국가에서 청소년기에 자녀를 낳은 여성과 20세에 자녀를 낳은 여성의 삶을 비교해 보았다. 학력수준, 근로 유무,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의 척도를 가지고 비교한 결과 13개 EU 국가 중 12개 국가에서 청소년기에 자녀를 출생한 여성이 더 열악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을 예로 들면 청소년기에 자녀를 낳은 여성이 20세에 자녀를 낳은 여성보다 두 배 더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빈곤율에서도 두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도 청소년기에 출생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두 배 더 높게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출산 이후 직면하게 되는 취약한 삶이 과연 청소년기에 출산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청소년이 초기부터 직면하고 있었던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Kiernan(1995)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출산할 가능성은 배경적인 요인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재정적인 곤란, 아동과 청소년기의 감성적인 어려움, 낮은 학업 성취율, 청소년 부모에게서 출생한 경우일수록 청소년기에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이 청소년기에 출산할 확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청소년이 출산할

23) 이 절은 협력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신윤정 외(2012)가 작성한 본 연구의 세부보고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 대책 연구 I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이다.

확률은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Hoffman(1998)은 “청소년 출산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이후의 청소년들 삶에서 가난과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청소년 출산을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잘못 방향 설정되었다고 하기는 이르다. 청소년 출산 감소 정책은 청소년들이 가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넓혀주는 잠재적으로 생산적인 전략이며 적어도 사회적 불이익에 의해 야기된 핸디캡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을 지양하는 정책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빈곤과 청소년 출산 중 어느 것이 선행조건이었던 간에 청소년 출산자는 학업중단 가능성이 더 높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자격 기준을 갖추게 되어 실업상태에 있거나 혹은 임금이 낮은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FAC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의 경우 3%만이 의무교육 졸업장을 받지 못한 반면 한부모의 경우는 무려 19%가 의무교육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부모들의 낮은 졸업률은 한부모들이 취약한 노동시장에서 근로하는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는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비경제활동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복지급여를 포기할 만큼 노동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취업한 경우라도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모의 연령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16~25세의 청소년 미혼모 집단이 빈곤할 확률은 전체 미혼모 집단과 비교하여 1.5배 높은 상황이며, 미혼모들은 유럽 국가 전체에 걸쳐 높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과 열악한 노동환경, 빈곤으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들은 질 낮은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중국에는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청소년 출산자의 자녀들도 가난 속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아버지 없이 양육되고 유기와 학대의 대상이 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부모가 되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많다. 청소년 출산과 관련한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문제는 결국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OECD 국가가 청소년 출산에 대해 우려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OECD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임신 및 출산을 감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입장과 정책 유형 및 정책의 강조점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어느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성행위를 절제시키는 금욕 교육을 시킬 것인지, 피임도구를 무료로

배급할 것인지, 사후 피임약은 보급할 것인지, 청소년 한부모가 받게 되는 복지급여에 상한선을 둘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별 차이는 첫째, 각국의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문화·역사·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효과성이 있다고 알려진 정책을 도입하여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 사후 피임약을 보급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으나 청교도적인 성향이 강한 아일랜드나 텍사스에서 사후 피임약 도입을 합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미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사회복지급여의 상한선을 적용하거나 방대한 규모로 청소년 대상 성적 활동 자제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나 스웨덴이나 아이슬란드에서는 윤리적인 이유로 이러한 정책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둘째, 각국의 청소년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과 전략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시스템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청소년 출산을 억제하는 이유가 청소년 출산과 함께 수반되는 불이익 때문이라면 그 국가의 정책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피임약을 자유롭게 구매하도록 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와 반대로 강한 종교적 혹은 문화적 이유가 있는 나라라면 -예를 들면 혼전 성관계를 통한 임신과 낙태가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 등- 국가의 정책은 청소년의 성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캠페인, 인공임신 중절의 제한, 성교육과 피임을 함께 제공하는 모호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청소년 임신 및 출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자녀를 갖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거두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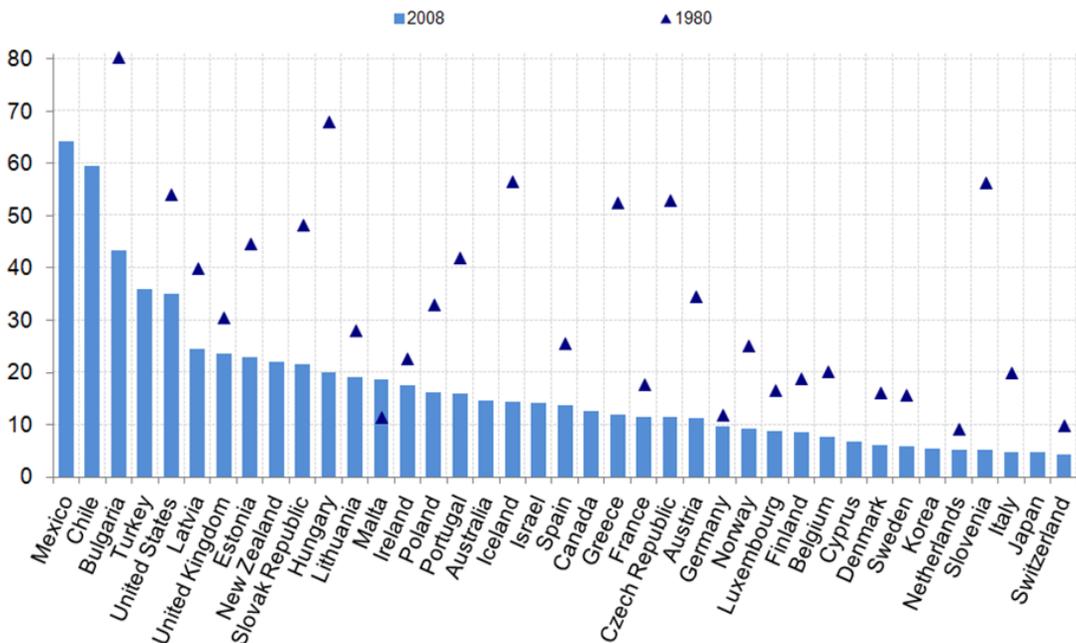
청소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시각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국가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청소년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사전 예방정책과 더불어 사후 개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OECD국가들의 청소년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을 예방정책과 한부모 지원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청소년 임신·출산 예방정책

【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의 변화 추이를 볼 때 몰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각국의 청소년 출산 예방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나라별 청소년 임신 및 출산 예방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낙태 허용과 피임교육 및 허용 정도, 성교육 수준을 들 수 있다.

(1) 인공임신중절 허용

우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통계 자료가 가능한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 임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부분의 경우(5건 중 4건)가 인공임신중절로 끝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청소년 임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우는 스웨덴보다 적어서, 독일의



주: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처: OECD Family database(2012)

【그림 Ⅲ-1】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율(1980, 2008)

경우 청소년 임신의 3분의 1, 이탈리아의 경우 2분이 1이 인공임신중절로 끝난다. 영국과 루마니아의 경우 청소년 임신은 스웨덴보다 높지만 인공임신중절률은 스웨덴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 출산율은 스웨덴의 4~6배에 달한다. 이 같은 결과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경우 낮은 청소년 출산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되며, 높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피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실패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은 스웨덴의 여자 청소년들은 인공임신중절을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여기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처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공임신중절을 출산 관리의 방안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painful necessity)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들은 학교 성교육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임교육 및 허용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청소년 출산율과 낙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최근 30년 동안 청소년 출산율을 72% 감소 시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소년 출산율과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과 덴마크를 보면, 역시 같은 기간 중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출산율 감소를 보이지만 인공임신중절률은 네덜란드 보다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출산율 감소는 피임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인공임신중절의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표 Ⅲ-30).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가 청소년 출산 뿐 아니라 임신 예방정책까지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네덜란드의 청소년 피임 허용에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성과 피임과 관련하여 Ingham과 van Zessen(1998)은 네덜란드 남자 청소년이 영국 남자 청소년에 비해 2~3배 더 많이 성적 파트너와 함께 피임에 대해서 논의하며, 부모들 역시 두 배나 더 많이 자녀들과 함께 성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성과 피임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네덜란드가 청소년 출산 및 인공임신중절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각 국가가 청소년 출산율에서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적인 활동에 가담한 청소년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임을 실천하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임은 필수적으로 인공임신중절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피임 방법이 진보하면 인공임신중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표 III-30 유럽국가의 청소년 출산율과 선택 인공유산 비율 비교(2003년)

	출산율(1,000명당)		선택 인공유산율(1,000명당)	
	10-14세	15-19세	10-14세	15-19세
덴 마 크		2.8		7.8
필 란 드	0.002	10.3	0.4	14.9
독 일			0.4	4.9
이 태 리		5.0		7.2
네 델 란 드		16.0		4.2*
노 르 웨 이	0.05	22.5		16.4
러 시 아	0.18	15.9	0.24	26.1
스 페 인		11.4		11.2
스 웨 덴	0	5	1	23.0
스 위 스		4		5.7
영 국	3.6	38	4.5	24.0

출처: Ercan et al.(2009: 423)

*는 10-19세

Khan, Brinds, & Gleib(1999)는 피임 도구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소년 출산율을 추정한 결과, 연간 청소년 출산 수는 494,000명에서 1,650,000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청소년들이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대신 성 관계를 덜 갖고 생체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임신에 대응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임약 사용에 따른 효과성은 감소되어, 100만 건의 추가적인 임신, 40만 건의 인공임신중절, 12만 7천 건의 유산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 연구는 결과적으로 피임으로 인해 청소년 임신율이 감소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행위 절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행위 빈도가 80% 이상으로 감소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에게 피임도구를 허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임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임신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잉글랜드에서 실시된 십대 임신 관리 10년 계획(ten-year national Teenage Pregnancy Strategy)을 연구한 연구자들도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십대 임신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해 있는 특정 집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Wilkinson, French, & Kane, 2006), 청소년들의 피임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French, Mercer,

& Kane, 2007). 반면 Paton(2002)과 같이 피임 도구에 대한 쉬운 접근이 과연 청소년 임신율과 인공임신중절률의 감소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그는 성적 행동을 감행하는 청소년들이 피임을 사용하는 경우 임신의 위험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피임 도구 자체가 청소년들의 성적인 행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성교육

네덜란드의 사례는 청소년 임신 및 출산 예방 정책에서 학교 성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학교 성교육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중고등학교 생물시간의 “인간 재생산(human reproduction)”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약 85%의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고 있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낮아 절반 정도만이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Ketting & Visser, 1994).

네덜란드 학교 성교육의 특징은 네덜란드 학교 시스템의 전반적인 자율성에 기초한 교육의 개방성에 있다. 학교 내 성교육은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본적으로 생물학 시간과 개인·사회·보건 시간을 통해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교육 내용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교육과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향에 맞추어 각 학교의 교사가 직접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두 학교 이상이 동일한 교재를 사용하더라도 내용의 전달방식은 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소규모 집단 토의 등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분명한’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학교마다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성교육의 초점을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인 지도보다는 생식 등에 관한 정보 제공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성교육 내용에 사회정서적인 측면을 포함시키는 정도가 달랐다. 이러한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 성교육은 물론 네덜란드 교육 시스템의 자율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성교육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학생들이 양성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인간 생태를 다루고 있는 과목에서는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성과 인간 재생산에 대한 내용을 배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과 인간 재생산에 대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인간 재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피임, 임신, 출산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은 이러한 임신 예방 수단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은 성의 다양한 기능과 그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각 학교에게 교육전달 및 학습결과에 대한 완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학습 목표에 있어서 생물과 같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에서 학생에게 피임과 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토론하도록 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자율성 부여로 인해 서로 다른 종교 교파를 갖고 있는 학교가 커리큘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청소년 출산을 감소가 전통적인 문화나 역사가 아닌 잘 고안된 정책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덜란드의 성공에서 근본적인 핵심은 통합적인 사회의 구축과 피임을 포함하여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 열린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성과 통제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높고, 성관계 이후에 후회하는 비중이 낮고, 피임의 사용과 효과성이 높으며, 성적인 행동에 대해 부모와 상의하고 미리 계획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1) 국가별 유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정책

국가별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일반적으로 성인 한부모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지원정책 안에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한부모 지원정책은 가족정책, 소득지원정책, 노동시장 규제현황, 사회안전망 현황, 가족의 책임 등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과 복지체계 및 정책에 있어서 각 국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별 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각에서는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중 Trifiletti(2007)는 각 국가의 한부모정책을 복지국가 체계에 따라 구분함에 있어 Esping-Andersen(1990)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²⁴⁾을 기본틀로 하여 사회 민주적인 성향을

24) Esping-Andersen(1990)은 18개 국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제도주의), 자유주의(잔여주의), 조합주의로서 각 국가의 복지 국가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은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계층 구조, 타협의 모형을 기준

표 III-31 Trifiletti에 따른 한부모 정책의 국가별 유형

유형	국가
사회민주주의형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자유주의형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조합주의형	독일
지중해 연안 국가형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불가리아
과도기 국가형	폴란드, 슬로베니아

*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parent household.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대륙 유럽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조합주의 국가(독일), 자유주의 국가(영국, 아일랜드), 지중해 연안 국가(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동유럽 국가(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 구분은 복지체계의 성격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부모 정책의 특징은 같은 복지 체계에 속한 국가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Trifiletti(2007)는 각 국가의 복지국가 체계를 기초로 하되 각국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여 국가들의 유형을 재분류하였다. 이에 대륙 유럽 국가에 해당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각각 분리하여 프랑스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같은 그룹으로 묶고, 네덜란드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함께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유럽 국가 중에서 불가리아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 묶고, 폴란드와 슬로베니아는 과도기 상황에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표 III-31).

한편 Daurerre와 Nativel(2003)도 Esping-Andersen(1990)의 분류체계에 따라 제도주의와 잔여주의로의 구분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특히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사회복지정책을 복지국가 유형 뿐 아니라 성역할,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에 따라서는 혼합주의, 평등주의, 가부장주의, 모계주의로 구분하였으며, 가족관계 유형에 따라서는 불안정한 개인주의, 안정적인 개인주의, 불안정한 가족주의, 안정적인 가족주의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앵글로 색슨 국가, 북유럽 국가, 대륙유럽 국가, 남유럽 국가로 구분하여 각 국가

으로 국가별 복지 국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 간의 영역 구분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을 남성과 평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정과 사회 조직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아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표 III-32 유럽 국가의 청소년 한부모 정책의 유형별 구분

지리적·문화적 구분	복지국가유형	성역할유형	가족관계유형	청소년한부모정책유형
앵글로 색슨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자유주의형	혼합주의	불안정한 개인주의	청교도적 보수주의
북유럽 국가 (스웨덴, 덴마크)	사회민주주의형	평등주의	안정적인 개인주의	허용적인 자유주의
대륙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조합주의형	가부장주의	불안정한 가족주의	의료적 지원주의
남유럽 국가 (스페인, 이태리)	지중해형	모계주의	안정적인 가족주의	잔여주의

* 출처: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Bordeaux (2004). Les maternités précoces dans les pays développés: Problèmes, dispositifs, enjeux politiques" Dossiers d'études 53,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유형별로 청소년 한부모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III-32).

가장 먼저 앵글로 색슨 국가(미국, 영국, 호주)는 기회의 평등과 개인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국가에 해당하며, 성역할유형은 혼합주의형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으나 보육비용이 높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여성들이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유형은 이혼율과 한부모가족 비율이 높은 불안정한 개인주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청교도적 보수주의 유형으로서 금욕 및 개인의 의지력을 강조한다.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는 보편적인 사회통합과 평등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남녀간 성역할에 있어서는 평등주의를 강조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참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가족관계유형은 안정적인 개인주의형으로서 청소년의 자립을 독려하고 혼외출생비율이 높다.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허용적인 자유주의 유형으로서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대륙유럽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부장주의를 강조하여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을 따르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러한 성역할 구분 경향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 유형은 불안정한 가족주의 유형으로서 청소년의 자립을 독려하고 있으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과 사회적 불평등이 높아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자립의 한계로서 작용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은 의료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의료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개입의 동반 지원을 중시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는 복지국가체계가 조합주의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으나 가족가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계주의를 중시하는 모형을 따르고 있다. 가족관계유형은 안정적인 가족주의로서 결혼과 세대 간 통합 및 협동을 중시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정책은 잔여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혼 전 금융과 종교적 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미약한 상태이다. 이처럼 한부모정책에 따른 국가별 유형구분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짚어내주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소년 한부모정책의 최근 경향

청소년을 포함, 한부모를 대상으로 유럽 국가들이 실시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경제적 지원과 가족지원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경제적 지원은 수당지급으로, 가족지원은 보육 서비스로 대변될 수 있다. 수당지급에는 이혼 혹은 별거한 전 배우자나 전 파트너가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이러한 부양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정책이 있다. 단 부양비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은 각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한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최근에 나타난 근로활동 활성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부모들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정책적인 강조점이 보육서비스의 공급 증가에서 보육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정책의 추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지역사회 인구특성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OECD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틀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 첫째, 한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한부모 가족들은 그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책을 통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 즉 가족에 대한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가족과 다른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한부모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들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고, 전체적인 가족 정책 안에서 통합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다. 한부모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삼는 정책들을 수행하는

나라들은 한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취약성, 고립성, 낮은 교육 수준, 경제적으로 빈곤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족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체적인 가족 정책안에서 한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나라에서는 가족관계의 해체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한부모와 그의 자녀가 사회 통합과 근로활동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de Certaines et al. 2000).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한부모를 특별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한부모들에게 낙인을 가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그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들을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함께 통합적인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한부모가 특수하게 직면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보면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노동시장, 자녀교육, 빈곤 등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서 제기 되고 있는 이슈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지만 유럽 국가의 사회정책과 가족정책 안에서 한부모는 주요한 정책적인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 사회적 불평등 해소, 개인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요약하면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부모에 대한 지원정책이 자녀를 가진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유럽 국가의 한부모들은 한부모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가난함,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국가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들에게 사회수당을 통한 지원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정책 중 어느 것을 더 강조하는 지에 따라 나라별 지원정책에 차이가 난다. 유럽 전역에 걸쳐 한부모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전술하였듯이 이들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빈곤한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어린 나이와 낮은 자격 수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배제 때문이다. 즉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가족으로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는 양질의 일자리에 적합한 교육 수준과 기술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해 노동시장에 참여해도 낮은 임금수준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의 한부모 정책은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한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약요건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수당 지원정책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한부모들의 근로 활성화를 강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사회지원 및 가족정책을 통해 한부모들을 사회 안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 시사점

청소년 한부모 관련 국내·외 정책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생계보장의 사각지대 보완

우리나라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26.7%로 스웨덴의 7.9%, 덴마크 6.8% 수준과 비교할 때 4배에 달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 한부모의 빈곤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성인기 이후에도 만성 빈곤 상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소득지원비가 대표적이다.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부양의무자’기준²⁵⁾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 민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일체의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급여 일체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미성년자인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소득지원은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00~130%에 해당하는 모 혹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지원하나,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실상 아기 아버지인 상대 남성과 일체의 접촉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거나, 상대 남성과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실혼에서는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기의 부모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도 아기의 부(父)가 경제력이 없어 한부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기의 모(母)는 부와의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친자검사비와 자녀양육비

25)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동법 제4조제1항).

청소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상대 남성이 양육비를 제공할 만한 경제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있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가 없어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스웨덴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한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상대 남성 역시 미혼모와 비교할 때 빈곤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기아버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가구’를 단위로 하는 지원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기아버지 역시 청소년인 경우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취업 지원 등 자립여건을 강화시키고, 아기아버지가 가족을 떠나지 않고 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조건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빈곤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보전을 장려하므로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에게 보다 유익한 가정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OECD 주요국 가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차이를 둔다는 데 있다. 아동의 존재는 단기적으로 가구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경험과 숙련도 등 소득능력(earning capacity)을 감소시키므로 빈곤에 처할 위험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이 한부모와 사는지, 부모가 일을 하는지는 아동의 빈곤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사회투자정책의 배경에는 이러한 지원이 사회적 편익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OECD family database 역시 가족정책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자녀양육, 출산 저해 요인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고용 기회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정책목표에 따라 가족정책 내에서 부모권이나 노동권에 초점을 두는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보육·노동·시간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은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한부모가족정책 역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정책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혼외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유무가 가족정책의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 빈곤감소를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한부모의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하고 아동 지원을 목적으로 보육과 교육정책이 가족정책의 틀 내에서 제공되는데 OECD 주요국의

표 III-33 OECD 국가 간 가족정책 지표 비교

(단위 : %, 일)

국가명	가족급여 ¹⁾ (GDP 대비)	출산휴가 최대일 수 ²⁾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아동의 교육서비스 이용률
호 주	2.81	126	29.0	54.6
핀 란 드	2.83	105	28.6	74.2
스 웨 덴	3.35	50	46.7	91.1
독 일	2.71	98	17.8	92.7
스 위 스	1.40	112	.	47.5
프 랑 스	3.71	112	42.0	99.9
네 델 란 드	2.84	112	55.9	67.1
영 국	3.58	182	40.8	92.7
미 국	1.19	84	31.4	55.7
그 리 스	1.09	119	15.7	46.6
스 페 인	1.47	112	37.5	98.5
이 탈 리 아	1.40	140	29.2	97.4
한 국	0.66	90	37.7	79.8
일 본	1.30	98	28.3	90.0

1)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을 포함함.

2) 법정 출산휴가일 수 외 부성휴가 및 무급휴가는 제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012), 2008년 기준 자료임.

가족정책 지표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표 III-33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 급여를 먼저 살펴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공공지출 중 가족급여 비중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71%)와 영국(3.58%)으로, 우리나라(0.66%)와는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저소득 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프랑스의 경우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은 한부모 가구주의 소득을 약 18% 증가시키고, 여성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한부모 보호 급여는 최저임금의 53%까지 소득을 지원하며, 이에 더하여 자녀 한 명 당 최저임금의 약 18%의 금액을 한부모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 가구 내 아동이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이용우, 2006: 110 재인용).

두 번째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일-가정 양립의 기반이 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라별 법정 출산휴가일을 보면, 영국(182일), 이탈리아(140일), 프랑스(112일) 등의 국가에서는 출산휴가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스웨덴(50일), 미국(84일)의 경우

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스웨덴은 60일의 법정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수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90일로 출산휴가 자체는 짧지 않으나 문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고용보험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및 파트타임 근로여성의 휴가기간 중 소득상실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0대, 20대 초반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중에 있거나, 학업중단과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휴직 개념을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이 기간을 출석에 반영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학업중단의 위험 요소를 완화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37.7%로 그리스,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높으나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에 비해서는 낮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3세 미만 어린 자녀의 양육에서 여전히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보니 청소년 한부모에게 비공식적인 보육 제공자가 없다면 학업과 근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 서비스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취학 전인 3~5세 아동은 전적으로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반면 그리스, 스위스의 유아교육 이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은 8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 특히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대부분 미취학 아동임을 감안할 때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기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기의 자립준비와 성인기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실제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서비스 확충이 요구된다.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또는 부모로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학습권의 침해를 들 수 있다.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고, 입시 중심의 과열 경쟁체제가 만연한 공교육 체계 하에서 법적 기반이 없는 한 개별 학교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적극 수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는 청소년 임신과 출산 문제는 급변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전향적인 보호와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홍순혜 외(2007)의 연구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0명 중 9명에 달하는데 반해 대만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10명 중 5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일선 학교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대두된 미국은 1972년 교육법 9조(Title IX)에 따라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는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조건에 근거하여 학생을 교육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Paula, A.M, 2007).²⁶⁾ 대만에서도 성별평등교육법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근거가 되고 있으며 임신·출산 학생을 위해 교내·외 시설 구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상담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역시 10대 한부모의 학습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가 청소년 임신과 출산에 대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본권 침해의 두 번째 예로는 평등권 침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교육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대우를 평등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여자 청소년의 임신·출산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임신과 출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성행동에 제한을 받는 청소년에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받는데 있다. 또한 혼전순결의 도덕률은 남녀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관한 모든 책임을 여성이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여성에게만 혼전성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여성에게 ‘이중적 성차별’을 가하는 일이 된다(이준일, 2012: 156).

이러한 상황에서 임신을 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설 자리는 매우 비좁다. 우리나라 현행 모자보건법 하에서 임신한 청소년은 ‘불법’으로 임신중절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을 하기 위해 성폭력에 의한 임신으로 사유를 ‘조작’하지 않으면 미혼모가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인한 청소년 미혼모의

26)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2002년 한 해 동안 15~17세 사이의 십대 미혼모 가운데 10%만이 고등학교를 마쳤고, 이들 중 약 80%가 복지수급 대상이 되며, 출산 후 최대 5년 이내에 75%가 복지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이며 기초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며 관련 지원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아살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11년까지 영아살해로 검거된 범죄자 총 83명 가운데 10대를 포함한 25세 이하가 48명(57.8%)으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는 10대도 16명(19.2%)이나 되었다(경찰청, 2012).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경우 학교 내 보건교육을 통해 시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그리고 피임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임신초기인 임신 12주 이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최정수, 원종욱, 채수미, 박은자, 서경, 2010: 69).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임신은 상당수가 낙태로 종결되며 교육 과정 내에서 보건교육은 선택교과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채택한 학교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피임지식 부족이 반복임신과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성개방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면서 성적 결정권을 포함한 자유권을 바르게 행사하고, 건강권·학습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보호책임 간의 조화가 요구된다.

4)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전환: 이중과업 수행자

OECD 주요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잔여적 정책지원은 시대착오적인 도덕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출산 이후 입양이 아닌 자녀양육을 선택한 청소년은 청소년기 과업과 성인기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과업 수행자로, 특별한 보호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정책대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수행과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한 해 성인 한부모가족보다 자녀양육비 5만 원이 추가되는 양육비지원과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학습비 및 고교생 교육비지원,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녀 일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보면, 0~2세의 경우는 68,500원, 3~5세는 81,600원, 6~11세는 87,500원 수준이다(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즉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하지 않거나 비공식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정부지원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앞서 OECD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부모 대상 수당이 한부모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대두된 바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는 노동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고, 가족관계까지 단절된 경우가 많아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을 배양하는 사회투자적 관점이 요구된다.

정부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이외에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 정책의 수혜를 받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중 하나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이다. 연 480시간(월 4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0~4,000원)과 본인부담(1,000~5,000원)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월 40시간이라는 제약이 있어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한다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는 1일 11시간(주5일) 기준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0~61만 원)과 본인부담(41~102만 원)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이 최소 40만 원 이상이므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이용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거지원의 경우도 청소년 한부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제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순위자 간의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조건에서 다른 성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자활사업 참여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납입횟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시설 입소 등으로 인한 잦은 주거지 변경 때문에 동일한 지역 내의 최저주거기간 조건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 가능성이 낮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0대 한부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를 위한 복지시설은 자립기반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시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책 수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 한부모를 자립과 양육을 수행하는 ‘이중과업 수행자’로 인식하고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틀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배제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 4 장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요구도 분석

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2.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3.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4. 시사점

제 4 장²⁷⁾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요구도 분석

1.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설문 참여자

이 연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 만24세 이하 청소년들 중 임신, 낙태, 출산, 입양 및 양육을 경험한 이들이다. 표본 수는 총 457명²⁸⁾으로 이들은 주로 청소년 한부모 거주시설 및 관련 기관 이용자들이며,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되었다.

설문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이들의 혼인상태를 보면(표 IV-1),

표 IV-1 설문참여자의 혼인 상태 단위: 명(%)

미혼	이혼	사별	계
453(99.1)	4(0.9)	0(0.0)	457(100.0)

27) 이 장의 1, 4절은 백혜정 연구위원이, 2절은 방은령 교수(한서대), 3절은 백혜정 연구위원, 김지연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단, 1절은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의 연구와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상호 중복된 내용이 있음을 밝혀둠.

28)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모두 463부였으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6부를 제외하고 총 457부만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2 설문참여자의 연령분포

(n=457)

연령(출생연도)	24세(1987)	23세(1988)	22세(1989)	21세(1990)	20세(1991)	19세(1992)
빈도(%)	20(4.4)	45(9.8)	42(9.2)	47(10.3)	68(14.9)	60(13.1)
연령(출생연도)	18세(1993)	17세(1994)	16세(1995)	15세(1996)	14세(1997)	13세(1998)
빈도(%)	52(11.4)	65(14.2)	37(8.1)	14(3.1)	3(.7)	4(.9)

미혼이 453(99.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혼은 4명(0.9%), 사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 다수가 미혼모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연령을 보면(표 IV-2), 설문참여자들은 최소 13세(1998년생)부터 최대 24세(1987년생)까지 분포해 있었으며, 17세~20세에 해당하는 이들이 245명(53.6%)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222명(48.6%), 15세 이상 19세 이하가 228명(49.9%)이었으며, 14세 이하도 7명(1.6%)이나 되어, 본 조사 표본에서 10대에 청소년 한부모가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성장한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보면(표 IV-3), 중상 이상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에 불과한 반면, 중하 이하라고 응답한 이들은 53.2%에 이르러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가족 유형을 보면(표 IV-4), 양친가정(52.7%)에서 성장한 이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한부모가정(28.2%) 순이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이 9.3%임을 감안하면(통계청, 2011) 본 조사 표본에서 한부모가족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 한부모가족 중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가족 유형

단위: 명(%)

하	중하	중	중상	상	모름/무응답	계
101(22.1)	142(31.1)	180(39.4)	31(6.8)	1(0.2)	2(0.4)	457(100.0)

표 IV-4 원가족 유형

단위: 명(%)

양친가정	계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탁가정	대안가정	모름/무응답	기타	계
241(52.7)	32(7.0)	129(28.2)	27(5.9)	6(1.3)	13(2.8)	2(0.4)	7(1.5)	457(100.0)

표 IV-5 설문참여자의 조사 참여 경로

집단별	사례 수 (%)
모자시설(모자보호시설((구)모자원),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27(5.9)
미혼모자시설	213(46.6)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65(14.2)
미혼모·부자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65(14.2)
그 외 시설 및 기관	12(2.6)
집(시설 및 기관 이용 안 함)	54(11.8)
기타(지인소개)	21(4.6)
합계	457(100.0)

한편 설문참여자들의 조사 참여 경로를 보면(표 IV-5), 미혼모자시설을 통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46.6%),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통한 이들이 두 번째로 많았다(각 14.2%). 마지막으로 이들의 거주지역은 과반수에 가까운 이들이 수도권(222명, 43.8%)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강원 및 제주도(10명, 2.2%)에 거주하는 이들이 가장 적었다(표 IV-6). 이는 관련 시설을 통한 조사 참여가 많았고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시설에 입소한 참여자의 경우 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거주지역으로 응답하여 거주지역과 출신지역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지원정책 요구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에서부터 낙태, 출산 및 입양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 및 상황별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일부는 선행연구들(김은지 외, 2011;

표 IV-6 설문참여자의 거주 지역

단위: 명(%)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제주권	계
200(43.8)	66(14.4)	80(17.5)	101(22.1)	10(2.2)	45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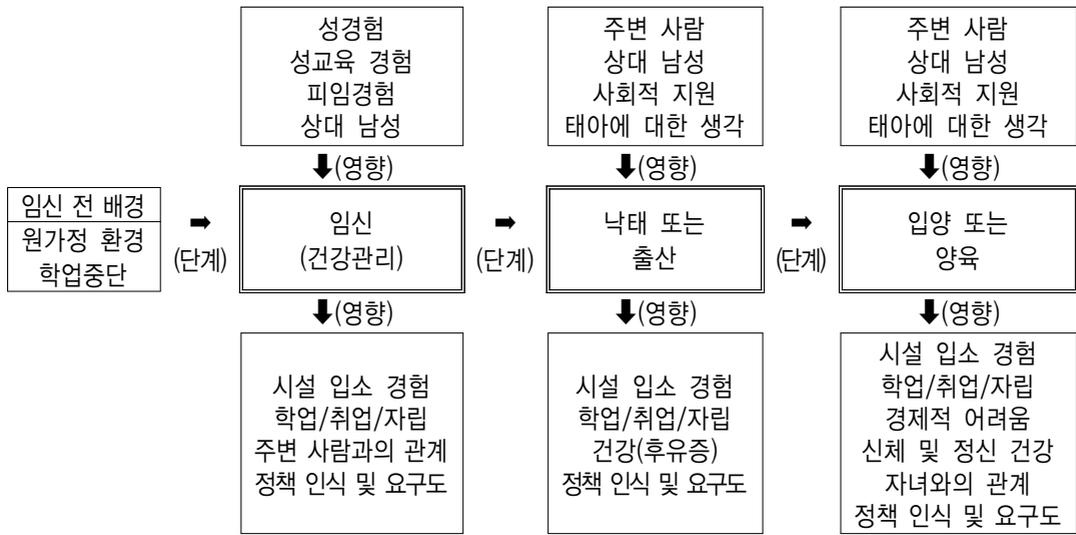
김혜영 외, 2009; 김혜영 외, 2010; 백혜정, 김은정, 2008;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이봉주 외, 2011;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의 설문조사에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참조하였고, 나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설문지 구성체계 및 문항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설문지 개발절차 및 구성체계

설문지 개발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총괄하고,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임신·출산·피임 관련 설문 문항 개발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관련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 및 기존에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주용 영역(내용)을 구성한 후 각 영역에 적절한 문항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였다. 초안이 완성된 후 여러 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자문회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설문지의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조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문지 구성논리 및 편집상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개발절차는 【그림 IV-1】 과 같으며, 이렇게 완성된 설문지의 구성체계는 【그림 IV-2】 와 같다.



【그림 IV-1】 설문지 개발절차



【그림 IV-2】 설문 영역 및 주요 내용

② 설문 문항의 내용

○ 미혼모자 시설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

미혼모자 시설 관련 영역은 (미혼)모자 관련 시설에 입소 경험 여부에 따라 질문 문항에 차이를 두었다. 입소 경험자의 경우는 입소 이유 및 시설 선택기준, 기간의 적절성, 시설에 대한 만족도, 퇴소 후 주거지 계획 등이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은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중 (미혼)모자시설에 관한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비경험자에 대해서는 입소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고 이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학업 및 자립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2** ~ **문 4**)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업 및 자립과 관련해서는 학업, 직업훈련과 취업 여부에 따라 응답 문항에 차이를 두었다. 학업영역에서 학업 지속자를 대상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교육수준 및 유형, 학업의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학업 중단자를 대상으로는 최종학력, 중단시기 및 이유, 향후 학업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직업훈련(교육)의 영역에는 주로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지, 경험했거나 희망하는 훈련 내용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되었다. 취업과 관련한 문항으로는 현재의 직업 및 고용형태, 근로일수 및 시간, 근로에서의 어려운 점, 취업희망 여부 등이 있다. 학업 및 자립 관련 문항들 중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학업 지속자에 대한 질문 문항들과 직업훈련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은 김은지 외(2011), 김혜영 외(2009),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성교육, 성경험 및 피임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5**)

성교육 관련 문항은 학교에서의 교육 여부 및 내용과 학교 밖 단체에서의 교육 여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경험 및 피임 관련 문항에는 첫 성관계 시기 및 대상과 이유, 성관계시 피임여부 및 피임방법과 피임도구 구입 실태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성교육 관련 문항은 백혜정, 김은정(2008), 성경험 및 피임에 관한 문항 중 일부는 김혜영 외(2009)와 보건복지부연세대학교(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피임에 관한 문항 중 피임도구 구입에 관한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임신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6**)

임신 관련 문항에는 임신횟수, 임신 중 검진 및 건강관리 여부, 상대 남성과의 관계, 상대 남성의 임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반응, 주변사람들의 임신에 대한 인지 여부 및 반응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신 관련 문항은 주로 김혜영 외(2009),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단 원하지 않은 임신의 이유와 피임실패 이유는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임신기간 중 건강관리에 관한 문항은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임신 중 검진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7**)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문항은 경험자들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임신중절 횟수 및 시기, 주요 이유, 인공임신중절 후 몸조리 및 후유증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중 인공임신중절 횟수 및 시기, 주요 이유 등의 문항은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인공임신중절 후 몸조리 및 후유증 정도 등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문항이다.

○ 출산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8**)

출산 관련 문항은 출산 경험자 및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출산 횟수 및 이유, 자연분만

및 조산 여부, 출산 후 몸조리 및 후유증 정도, 아이 아버지의 출산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주된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출산관련 문항 중 출산결정 이유, 출산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인지 여부 및 주된 반응 등과 관련된 문항은 김혜영 외(2009)와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자연분만과 조산 여부는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출산 후 몸조리 및 후유증 정도 등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문항이다.

○ 입양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9**)

입양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입양 보낸 횟수 및 이유, 입양을 보낸 후 후유증 정도 등에 관해 응답하도록 작성하였다. 입양 관련 문항 중 입양을 보낸 후 후유증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문항의 대부분은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자녀양육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0**)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자녀양육 경험이나 계획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양육 이유 및 자녀의 주양육자, 일상생활 영역(경제적 영역, 자녀 돌보기 영역, 가사 영역, 정서적 영역)에서의 주변사람들의 도움 정도, 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비 지원 정도, 자녀양육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지 여부 및 관계의 변화 정도, 자녀의 취학 여부와 학교나 보육시설이 파한 후 돌봄 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였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감독(**문10-16**)이나 학대(**문 10-18**), **문10-20-5**, **문10-20-8**) 정도, 부모효능감(**문 10-17**)과 육아스트레스(**문10-19**) 문항도 포함되었다.

자녀양육 관련 실태를 묻는 문항 중 주양육자,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주변사람들의 도움 정도, 자녀감독, 학대, 부모효능감, 육아스트레스, 학교나 보육시설이 파한 후 돌봄 실태의 문항은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 나머지 문항은 김혜영 외(2009),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1**)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 여부와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김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개인의 심리 및 정서문제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2** ~ **문 15**)

개인의 심리 및 정서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아존중감(**문 12** 1)~5)문항), 자기효능감(**문 12** 6)~8) 문항), 정서조절능력(**문 12** 9)~11)문항), 낙관성(**문 12** 12)~14)문항), 우울(**문 13**),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문 14**), 주관적 건강상태(**문 15**)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 중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의 문항은 최인재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우울 문항은 이봉주 외(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련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8** ~ **문 23**)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과 관련하여 현 가정에 대한 질문에는 거주유형 및 형태, 함께 사는 사람, 현재 소득 및 저축과 부채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원가정에 대한 질문에는 성장 가정의 유형,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 및 부모님과과의 만남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중 거주유형 및 형태, 함께 사는 사람 관련 문항은 김혜영 외(2009)의 연구에서, 현재 소득 및 저축과 부채, 부모님과과의 만남 관련 문항은 김혜영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성장 가정의 유형 등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수집되었다. 전문조사기관에 자료 수집을 의뢰하기에 앞서 사전에 본 연구진들이 여성가족부의 협조와 인터넷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미혼)모(부)자 보호 시설과 (미혼)모(부)자공동생활 가정, 미혼모부자 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기타 청소년 한부모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찾아 목록표를 작성하고 각 기관 및 시설 관계자와 자문회의 및 전화 통화, 각 시설 및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협조 요청을 의뢰하였다. 또한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와의 접촉을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설문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개별적인 조사 참여자를 발굴하였다. 개별적인 재가 청소년들에게는 주변에 다른 재가 청소년 한부모가 있을 경우 소개를 부탁하는 형식, 즉 눈덩이 표집(snowballing)방식으로 재가 청소년의 표본을 늘려나갔다. 이 외에도 당사자 조직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도움을 얻어 인터넷과 기관을 통해서도 연결되지 않았던 설문참여자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3월부터 9월까지 협조 허락을 받은 관련 시설 및 기관, 재가 조사참여자의 명단을 전문조사기관으로 전달하였고, 조사기관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일대일 대인면접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의 자료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면접원들의 조사 진행을 돕고 조사 진행과정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면접원 선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면접원의 선발 기준은 설문참여자인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35세 이상의 여성이며, 청소년 조사 대상 유경험자로 하였다. 선발된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의 참관 아래 면접원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실사는 면접원 교육 후 진행되었으며, 실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 및 기관, 개인거주지를 방문하여 설문참여자를 확인한 후 참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다음 조사 매뉴얼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가 완성된 후에는 자가 검증 후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설문지 작성에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참여 시설 및 기관, 응답자에게 인사와 답례품, 공지사항을 전달한 후 설문지 작성을 마쳤다. 작성된 설문지는 슈퍼바이저와 전문검증팀을 통해 검증절차를 거친 후 컴퓨터에 더블펀칭 방식으로 입력되었고 이후 연구진이 전체 설문지의 10%에 달하는 50부를 무작위 선정하여 검수작업을 한 차례 거친 후 설문조사 과정을 완료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및 절차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STATA, SPSS를 활용하여 교차분석²⁹⁾, 일원변량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다.

29) 교차분석에서는 χ^2 분석은 사용하지 않고 분도만 분석하였다. 그 이유로는 χ^2 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집단(셀)이 많은 경우 그 유의도가 정확히 어느 집단(셀)간의 차이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의도 검증을 통해 얻은 정보가 빈도 분석을 통해 얻은 정보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표 IV-7 첫 성관계를 경험한 만 나이

단위: 명(%)

구분	만 13세 미만	만13~15세	만16~18세	19세 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
19세 미만	4(2.3)	55(31.4)	112(64.0)	3(1.7)	1(0.6)	175(100.0)	16.39세
19세 이상	0(0.0)	18(6.4)	128(45.4)	135(47.9)	1(0.4)	282(100.0)	18.56세
계	4(0.9)	73(16.0)	240(52.5)	138(30.2)	2(0.4)	457(100.0)	17.73세

2) 조사 결과

(1) 청소년 한부모 발생과정별 현황

① 성경험 및 피임

청소년 한부모들의 성경험을 살펴보면, 첫 성관계를 경험한 평균나이는 19세 미만의 경우 16.4세, 19세 이상인 경우는 18.6세이다(표 IV-7).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나이는 만 16~18세(52.5%)이며, 만 13세 미만에 첫 성경험을 한 경우도 4명에 달하였다. 또한 이들의 첫 성관계 상대는 애인이나 이성친구가 82.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나 선후배(7.7%),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4.4%), 전혀 모르는 사람(3.5%) 순이었다. 또한 낙태 및 자연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이후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29.1%(133명, 19세 미만 26.3%(46명), 19세 이상 30.9%(87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성관계를 다시 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1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18.8%(25명)에 달하였다. 이는 이후 출산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피임과 관련하여 임신 전 피임정도에 대해 알아 본 결과(표 IV-8), 성관계시마다 항상 피임을 했었다는 응답은 5%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끔 하거나(39.8%),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31.1%)이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관계시 전혀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났다.

표 IV-8 임신 전 성관계시 피임을 한 정도

단위: 명(%)

구분	항상	대부분	가끔	전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10(5.7)	28(16.0)	64(36.6)	72(41.1)	1(0.6)	175(100.0)
19세 이상	13(4.6)	81(28.7)	118(41.8)	70(24.8)	0(0.0)	282(100.0)
계	23(5.0)	109(23.9)	182(39.8)	142(31.1)	1(0.2)	457(100.0)

표 IV-9 출산(낙태, 자연유산, 사산) 이후 성관계시 피임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항상	대부분	가끔	전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11(23.9)	7(15.2)	11(23.9)	16(34.8)	1(2.2)	46(100.0)
19세 이상	22(25.3)	23(26.4)	22(25.3)	20(23.0)	0(0.0)	87(100.0)
계	33(24.8)	30(22.6)	33(24.8)	36(27.1)	1(0.8)	133(100.0)

또한 낙태 및 자연유산, 사산을 포함하여 출산 후 성관계를 갖는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피임 여부를 질문한 결과(표 IV-9), 성관계마다 항상 피임을 한다는 응답은 24.8%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임을 가끔 하거나(24.8%) 전혀 하지 않는다(27.1%)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1.9%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세 미만에서는 34.8%, 19세 이상에서는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피임의 결정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응답자 457명 중 109명으로 약 24%(19세 미만 24.6%, 19세 이상 23.4%)로 나타나(표 IV-10), 피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행동 이전에 성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피임의 중요성과 방법을 포함한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표 IV-10 성관계시 피임을 결정하는 주체 단위: 명(%)

구분	본인	상대방	서로 합의	피임 안 함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53(30.3)	43(24.6)	47(36.9)	26(14.9)	3(1.7)	3(1.7)	175(100.0)
19세 이상	104(36.9)	66(23.4)	91(32.3)	16(5.7)	3(1.1)	2(0.7)	282(100.0)
계	157(34.4)	109(23.9)	138(30.2)	42(9.2)	6(1.3)	5(1.1)	457(100.0)

표 IV-11 피임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얻는 곳 단위: 명(%)

구분	학교 (보건교사)	인터넷	친구/ 선후배	대중 매체	없음	의사/ 간호사/ 약사	부모님	기타	모름/ 무응답	계
19세 미만	74(42.3)	31(17.7)	43(24.6)	4(2.3)	10(5.7)	4(2.3)	3(1.7)	4(2.4)	2(1.1)	175(100.0)
19세 이상	68(24.1)	97(34.4)	81(28.7)	11(3.9)	4(1.4)	7(2.5)	5(1.8)	6(2.2)	3(1.1)	282(100.0)
계	142(31.1)	128(28.0)	124(27.1)	15(3.3)	14(3.1)	11(2.4)	8(1.8)	11(2.1)	5(1.1)	457(100.0)

특히 조사 참여자들이 피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19세 미만인 경우는 주로 학교나 보건교사를 통하는 경우(42.3%)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가(24.6%)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9세 이상인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34.4%)가 가장 많았으며, 친구나 선후배(28.7%), 학교나 보건교사(24.1%)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1). 종합적으로 본다면, 학교나 보건교사를 통해 피임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성교육 및 보건교사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고 내실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피임법에 대한 질문에서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을 제외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콘돔을 사용하는 이들(65.3%)이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 경구 피임약 사용이(19.2%), 19세 미만의 경우는 질외사정법(12.7%)이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표 IV-12). 사전 경구 피임약 사용률이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피임 실천율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고 피임약 부작용에

표 IV-12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

단위: 명(%)

구분	콘돔	(사전) 경구 피임약	질외 사정법	사후 피임약	월경 주기법	자궁 내 장치	살(질) 정제 (질좌약)	소계	피임 함	모름/ 무응답	계
19세 미만	83(70.3)	10(8.5)	15(12.7)	5(4.2)	2(1.7)	1(0.9)	2(1.7)	118(100.0)	55	2	175
19세 이상	147(62.8)	45(19.2)	26(11.1)	5(2.1)	7(3.0)	3(1.3)	1(0.5)	234(100.0)	46	2	282
계	230(65.3)	55(15.6)	41(11.7)	10(2.8)	9(2.6)	4(1.1)	3(0.9)	352(100.0)	101	4	457

표 IV-13 먹는 피임약(사전피임약) 구입 시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려움 겪음	어려움 겪지 않음	소계	구입 경험 없다	모름/ 무응답	계	
콘돔	19세 미만	6(10.7)	50(89.3)	56(100.0)	117	2	175
	19세 이상	15(16.7)	75(83.3)	90(100.0)	192	0	282
	계	21(14.4)	125(85.6)	146(100.0)	309	2	457
사전 피임약	19세 미만	5(15.6)	27(84.4)	32(100.0)	141	2	175
	19세 이상	23(19.5)	95(80.5)	118(100.0)	163	1	282
	계	28(18.7)	122(81.3)	150(100.0)	304	3	457
사후 피임약	19세 미만	8(34.8)	15(65.2)	23(100.0)	150	2	175
	19세 이상	20(30.8)	45(69.2)	65(100.0)	216	1	282
	계	28(31.8)	60(68.2)	88(100.0)	366	3	457

대한 속설이 많이 떠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호진, 2012).

한편 피임약 구입 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13), 사전피임약이나 콘돔 구입에는 80% 이상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사후피임약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경우는 68.2%였으며, 32%에 가까운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콘돔은 일반 상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경구 사전 피임약의 경우도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입에 어려움이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후 피임약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임신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임신 횟수를 질문한 결과(표 IV-14), 1회에 한하는 경우는 72.6%였으며 2회 이상이 26.9%로, 본 조사 표본에서 볼 때 10명 2명 이상의 청소년은 재임신과 한부모가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평균 13.6주였으며, 8주 이내에 인지한 경우가 35.4%, 그 이후에 인지한 경우가 64.6%, 25주가 지나서 인지한 경우도 6.6%나 되었다(표 IV-15). 이와 같이 임신을 늦게 인지하게 되는 것은 임신 징후와 확인 방법 등 임신과 관련된 사전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표 IV-14 **지금까지 임신을 경험한 총 횟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모름/무응답	계	평균
19세 미만	135(77.1)	34(19.4)	6(3.4)	0(0.0)	0(0.0)	0(0.0)	175(100.0)	1.26
19세 이상	197(69.9)	64(22.7)	15(5.3)	3(1.1)	1(0.4)	2(0.7)	282(100.0)	2.07
계	332(72.6)	98(21.4)	21(4.6)	3(0.7)	1(0.2)	2(0.4)	457(100.0)	1.76

표 IV-15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기** 단위: 명(%)

구분	1~4주	5~8주	9~12주	13~16주	17~20주	21~24주	25주 이상	계	평균
19세 미만	25(14.3)	35(20.0)	32(18.3)	21(12.0)	23(13.1)	23(13.1)	16(9.1)	175(100.0)	14.6주
19세 이상	39(13.8)	63(22.3)	69(24.5)	42(14.9)	35(12.4)	20(7.1)	14(5.0)	282(100.0)	12.9주
계	64(14.0)	98(21.4)	101(22.1)	63(13.8)	58(12.7)	43(9.4)	30(6.6)	457(100.0)	13.6주

표 IV-16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이유

단위: 명(%)

구분	피임 실패	피임을 하지 않았다(못했다)	계
19세 미만	26(15.9)	138(84.1)	164(100.0)
19세 이상	59(24.3)	184(75.7)	243(100.0)
계	85(20.9)	322(79.1)	407(100.0)

이해되며, 그만큼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임신을 원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9세 미만의 93.7%(164명), 19세 이상의 86.2%(243명), 전체적으로 89.1%(407명)가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이유에 대해 피임을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0.9%, 피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79.1%로 나타났다(표 IV-16). 특히 19세 미만의 경우는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4.1%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로 피임 방법을 몰랐다가(15.9%), 임신이 될 줄 몰랐다(13.8%)는 응답이 19세 이상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각 8.7%, 4.9%) 이들이 임신과 피임에 대한 지식이 낮음을 보여주었다(표 IV-17). 뿐만 아니라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10.9%)이라거나 귀찮아서(4.3%)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신의 의미와 임신 이후의 책임 및 결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신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순위별로 두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1, 2순위를 합하여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49.7%)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38.5%)을 꼽았다. 그 외에 경제적 문제(34.6%)나 마음의 혼란(32.8%)에 대한 언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19세 이상의 경우는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경제적

표 IV-17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피임 방법을 몰라서	상대 남성이 원하지 않아서	임신될 줄 몰라서	임신을 상관하지 않아서	성폭력 등 사고로 인해	귀찮아서/이유 없음	술에 취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60(43.5)	22(15.9)	7(5.1)	19(13.8)	15(10.9)	8(5.8)	6(4.3)	0(0.0)	1(0.7)	0(0.0)	138(100.0)
19세 이상	110(59.8)	16(8.7)	23(12.5)	9(4.9)	7(3.8)	5(2.7)	2(1.1)	6(3.3)	5(2.7)	1(0.5)	184(100.0)
계	170(52.8)	38(11.8)	30(9.3)	28(8.7)	22(6.8)	13(4.0)	8(2.5)	6(1.9)	6(1.9)	1(0.3)	322(100.0)

표 IV-18 상대 남성과의 관계 단위: 명(%)

구분	애인/ 남자친구	친한 친구/ 선후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가족이나 친인척	기타	계
19세 미만	152(86.9)	10(5.7)	5(2.9)	5(2.9)	1(0.6)	2(1.1)	175(100.0)
19세 이상	250(88.7)	6(2.1)	11(3.9)	11(3.9)	0(0.0)	4(1.4)	282(100.0)
계	402(88.0)	16(3.5)	16(3.5)	16(3.5)	1(0.2)	6(1.3)	457(100.0)

표 IV-19 임신 당시 상대 남성의 나이 단위: 명(%)

구분	만19세 미만	만 19~21세	만22~24세	만25~29세	30세 이상	모름/무응답	계	평균
19세 미만	91(52.0)	47(26.9)	10(5.7)	13(7.4)	8(4.6)	6(3.4)	175(100.0)	19.78
19세 이상	33(11.7)	85(30.1)	77(27.3)	63(22.3)	16(5.7)	8(2.8)	282(100.0)	22.74
계	124(27.1)	132(28.9)	87(19.0)	76(19.0)	24(5.3)	14(3.1)	457(100.0)	21.6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였다.

가장 최근의 임신과 관련하여 상대 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당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IV-18), 대부분 애인이나 남자친구(88%)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 남성의 나이는 평균 21.6세였으며, 청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가 전체 응답자의 75%(343명)에 달하였다(표 IV-19).

설문 참여자 중 상대 남성에게 임신사실을 알린 경우는 83.4%(381명)로 나타났으며, 상대 남성이 임신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대부분(84.2%, 385명)이 임신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남성이 임신을 인지한 후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서는 관계가 더 멀어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0).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성의 반응을 살펴보면(표 IV-21),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표 IV-20 상대 남성이 임신을 인지한 후 관계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더 좋아졌다	더 멀어졌다	변화 없다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33(22.0)	63(42.0)	53(35.3)	1(0.7)	150(100.0)
19세 이상	35(14.9)	138(58.7)	60(25.5)	2(0.9)	235(100.0)
계	68(17.7)	201(52.2)	113(29.4)	3(0.8)	385(100.0)

표 IV-21 임신을 알린 후 상대 남성의 주된 반응

단위: 명(%)

구분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하였다	낙태 하라고 하였다	출산 후 입양 보내라고 하였다	연락이 끊어 졌다	결혼 하자고 하였다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헤어 지자고 하였다	아무 반응 없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였다	기타	계
19세 미만	69(46.0)	20(13.3)	22(14.7)	11(7.3)	3(2.0)	7(4.7)	5(3.3)	6(4.0)	3(2.0)	4(2.7)	150(100.0)
19세 이상	75(32.5)	56(34.2)	23(10.0)	26(11.3)	16(6.9)	10(4.3)	10(4.3)	4(1.7)	3(1.3)	8(3.5)	231(100.0)
계	144(73.8)	76(19.9)	45(11.8)	37(9.7)	19(5.0)	17(4.5)	15(3.9)	10(2.6)	6(1.6)	12(3.1)	381(100.0)

보였는데, 임신한 여성의 연령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고 했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9세 이상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고 했다는 응답(32.5%)보다는 낙태를 하라고 했다는 응답(34.2%)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 남성의 나이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19세 미만의 여성이 임신 당시 상대 남성의 나이도 21세 이하가 78.9%인데 비해, 19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는 상대 남성의 나이가 22세 이상인 경우가

표 IV-22 주변 사람들의 임신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관계 변화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해당자 없음	계	
	더 좋아짐	더 멀어짐	변화 없음	모름/무응답	소계				
아버지	19세 미만	24(21.4)	36(32.1)	51(45.5)	1(0.9)	112(100.0/64.0)	45(25.7)	18(10.3)	175
	19세 이상	21(13.9)	63(41.7)	67(44.4)	0(0.0)	151(100.0/53.5)	93(33.0)	38(13.5)	282
	계	45(17.1)	99(37.6)	118(44.9)	1(0.4)	263(100.0/57.5)	138(30.2)	56(12.3)	457
어머니	19세 미만	31(29.0)	23(21.5)	53(49.5)	0(0.0)	107(100.0/61.1)	36(20.6)	32(18.3)	175
	19세 이상	37(19.5)	46(24.2)	107(56.3)	0(0.0)	190(100.0/67.4)	63(22.3)	29(10.3)	282
	계	68(22.9)	69(23.2)	160(53.9)	0(0.0)	297(100.0/65.0)	99(21.7)	61(13.3)	457
형제자매	19세 미만	22(24.2)	13(14.3)	56(61.5)	0(0.0)	91(100.0/52.0)	57(32.6)	27(15.4)	175
	19세 이상	35(18.1)	28(14.5)	128(66.3)	2(1.0)	193(100.0/68.4)	67(23.8)	22(7.8)	282
	계	57(20.1)	41(14.4)	184(64.8)	2(0.7)	284(100.0/62.1)	124(27.1)	49(10.7)	457
상대방 가족	19세 미만	16(15.2)	45(42.9)	44(41.9)	0(0.0)	105(100.0/60.0)	62(35.4)	8(4.6)	175
	19세 이상	18(13.8)	50(38.5)	61(46.9)	1(0.8)	130(100.0/46.1)	143(50.7)	9(3.2)	282
	계	34(14.5)	95(40.4)	105(44.7)	1(0.4)	235(100.0/51.4)	205(44.9)	17(3.7)	457
친구 / 동료	19세 미만	40(31.5)	13(10.2)	73(57.5)	1(0.8)	127(100.0/72.6)	42(24.0)	6(3.4)	175
	19세 이상	55(23.2)	16(6.8)	163(68.8)	3(1.3)	237(100.0/84.0)	41(14.5)	4(1.4)	282
	계	95(26.1)	29(8.0)	236(64.8)	4(1.1)	364(100.0/79.6)	83(18.2)	10(2.2)	457

58.1%였다. 즉 19세 이상의 경우는 미혼의 상태에서 발생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회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좀 더 앞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를 낳아 키우자거나 결혼하지는 반응이 아닌 낙태, 출산 후 입양, 연락 끊어짐, 헤어지자고 함, 본인의 아이를 부인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19세 미만의 경우는 43.3%, 19세 이상의 경우는 64.1%나 이르러 여성의 임신과 자녀에 대한 상대 남성의 책임 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교육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며, 자녀양육비 지원 등 양육과 부양에 대한 상대 남성의 책임 역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주변사람들의 임신 인지 여부 및 관계 변화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22), 청소년 한부모의 친한 친구 및 동료들이 아는 경우(79.6%)가 원가정이나 상대 남성의 가족이 아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인지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상대 남성의 가족으로, 특히 19세 이상의 경우는 상대방 남성 가족의 50%가 넘게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좋아졌다는 응답만 비교해 본다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더 멀어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비율보다 다소 높은 반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19세 미만의 경우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이, 19세 이상에서는 더 멀어졌다는 응답비율이 다소 높아 연령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형제자매나 친한 친구 및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멀어졌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으며 상대 남성 가족의 경우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형제자매나 친구 및 동료들은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 좀 더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아버지나 상대 남성의 가족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표 IV-23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산부인과 검진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기적으로 받았다 (한 달에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몇 번 받았다	받지 않았다	계
출산함	19세 미만	55(49.1)	38(33.9)	19(17.0)	112(100.0)
	19세 이상	133(58.3)	82(36.0)	13(5.7)	228(100.0)
	소계	188(55.3)	120(35.3)	32(9.4)	340(100.0)
출산 안 함	19세 미만	27(42.9)	25(39.7)	11(17.5)	63(100.0)
	19세 이상	20(37.0)	23(42.6)	11(20.4)	54(100.0)
	소계	47(40.2)	48(41.0)	22(18.8)	117(100.0)
계		235(51.4)	168(36.8)	54(11.8)	457(100.0)

임신 후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응답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는 51.4%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혀 받지 않았던 경우도 11.8%에 달하였다(표 IV-23). 특히 임신 이후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 동안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임신이 19세 이상 청소년들의 임신보다 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임신기간 동안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표 IV-24), 전반적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임신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 및 영양섭취를 거의 하지 못했거나 가끔 한 경우가 56.7%,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거의 갖지 못했거나 가끔 가진 경우가 62.6%로 이들이 임신기간 동안의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70.2%와 63%에 불과하였다. 음주나 흡연을 자주하거나 거의 항상 했다는 응답은 각각 6.8%와 14.2%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6.5%와 12.6%로 나타나 임신기간 중 태아의 건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부모됨에 대한 책임과 자신 및 태아의 건강권에 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임신 기간 동안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행동 정도 단위: 명(%)

구분		거의 안 했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거의 항상 했다	계
가벼운 운동 및 영양섭취	출산 경험 있음	66(19.4)	118(34.7)	117(34.4)	39(11.5)	340(100.0)
	출산 경험 없음	19(16.2)	56(47.9)	29(24.8)	13(11.1)	117(100.0)
	계	85(18.6)	174(38.1)	146(31.9)	52(11.4)	457(100.0)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	출산 경험 있음	81(23.8)	118(34.7)	112(32.9)	29(8.5)	340(100.0)
	출산 경험 없음	34(29.1)	53(45.3)	24(20.5)	6(5.1)	117(100.0)
	계	115(25.2)	171(37.4)	136(29.8)	35(7.7)	457(100.0)
음주	출산 경험 있음	237(69.7)	81(23.8)	15(4.4)	7(2.1)	340(100.0)
	출산 경험 없음	84(71.8)	24(20.5)	6(5.1)	3(2.6)	117(100.0)
	계	321(70.2)	105(23.0)	21(4.6)	10(2.2)	457(100.0)
흡연	출산 경험 있음	230(67.6)	67(19.7)	27(7.9)	16(4.7)	340(100.0)
	출산 경험 없음	58(49.6)	37(31.6)	12(10.3)	10(8.5)	117(100.0)
	계	288(63.0)	104(22.8)	39(8.5)	26(5.7)	457(100.0)

표 IV-25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
19세 미만	29(16.6)	146(83.4)	175(100.0)
19세 이상	54(19.1)	228(80.9)	282(100.0)
계	83(18.2)	374(81.8)	457(100.0)

③ 낙태

청소년들에게 낙태 경험여부를 물어 본 결과, 낙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8.2%로 나타났다(표 IV-25). 또한 낙태 유경험자들의 낙태 횟수를 살펴 본 결과, 1회가 85.5%(71명)로 가장 많았지만, 2회 10.8%(9명), 3회 3.6%(3명)로 낙태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시술은 모자보건법 상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불법과 위협을 무릅쓰고 낙태를 감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의 낙태시기를 살펴보면, 응답자 68명 중 임신 2개월 이내가 33.8%(23명)로 가장 많고, 3개월 이내가 25%(17명)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4개월 이내 16.2%(11명), 5개월 이내 14.7%(10명), 1개월 이내가 10.3%(7명) 순이었고,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5개월 이후도 7.4%(5명)로 나타났다. 낙태시술 시기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임신주수가 경과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56개국의 경우에도 임신 1분기(3개월)에 대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최정수 외, 2010: 46).

낙태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표 IV-26), 19세 이상의 경우는 자신이 아이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37%)이 가장 많았으나 19세 미만의 경우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20.7%)이 가장 많았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낙태는 청소년 자신이 처한 환경 및 주변 여건

표 IV-26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내가 원치 않아서	상대 남성이 원치 않아서	학교(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상대남성 가족이 원치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미혼모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태아의 건강문제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4(13.8)	6(20.7)	2(6.9)	3(10.3)	4(13.8)	0(0.0)	1(3.4)	2(6.9)	0(0.0)	29(100.0)
19세 이상	20(37.0)	9(16.7)	6(11.1)	3(5.6)	2(3.7)	3(5.6)	1(1.9)	2(3.7)	1(1.9)	54(100.0)
계	24(28.9)	15(18.1)	8(9.6)	6(7.2)	6(7.2)	3(3.6)	2(2.4)	4(4.8)	1(1.2)	83(100.0)

표 IV-27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내 부모님 (보호자)	상대 남성	나 혼자 결정	상대 남성 가족	기타	계
19세 미만	14(48.3)	7(24.1)	3(10.3)	5(17.2)	0(0.0)	29(100.0)
19세 이상	12(22.2)	18(33.3)	16(29.6)	4(7.4)	4(7.4)	54(100.0)
계	26(31.3)	25(30.1)	19(22.9)	9(10.8)	4(4.8)	83(100.0)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합법적인 낙태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태아의 건강문제에 대한 언급은 2.4%에 불과했다. 이러한 응답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임신의 상당수가 불법 낙태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이 낙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표 IV-27)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19세 미만의 경우는 자신의 부모님(보호자)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48.3%), 그 다음이 상대 남성이 (24.1%)이었다. 한편 19세 이상의 경우는 상대 남성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 혼자 결정하였다는 응답(29.6%)이 높았다. 부모님의 결정에 따랐다는 응답은 22.2%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민법상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보호자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고,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립이 용이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낙태 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표 IV-28), 신체적으로는 약 27.7%가 후유증이 매우 심했거나 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있었다는 응답도 25.3%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이 낙태 후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한 이들 44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표 IV-28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후 후유증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심했다	심했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계	
신체적 후유증	19세 미만	2(6.9)	4(13.8)	7(24.1)	6(20.7)	10(34.5)	29(100.0)
	19세 이상	4(7.4)	13(24.1)	14(25.9)	11(20.4)	12(22.2)	54(100.0)
	계	6(7.2)	17(20.5)	21(25.3)	17(20.5)	22(26.5)	83(100.0)
정신적 후유증	19세 미만	5(17.2)	11(37.9)	5(17.2)	4(13.8)	4(13.8)	29(100.0)
	19세 이상	12(22.2)	14(25.9)	17(31.5)	7(13.0)	4(7.4)	54(100.0)
	계	17(20.5)	25(30.1)	22(26.5)	11(13.3)	8(9.6)	83(100.0)

79.5%(35명)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진료를 받지 않고 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는 응답은 6.8%(3명), 병원 등에서 전문적으로 신체적 후유증을 치료받은 응답은 13.6%(6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낙태 후 정신적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약 50.6%가 후유증이 매우 심했거나 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있었다는 응답도 26.5%나 되었다. 이 역시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이 낙태 후 정신적 후유증을 심하게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약 77%가 정신적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한 이들 64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치료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8%(44명)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응답은 25%(16명), 상담기관의 상담이나 병원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이들은 4.7%(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부분적으로 청소년 임신과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지원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낙태경험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평균비교를 통해

표 IV-29 낙태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한 집단비교(일원배치분산분석)

구분		평균(SD)	F
자존감	낙태 경험 있음(n=83)	13.7(2.5)	.775
	낙태 경험 없음(n=374)	13.9(2.7)	
	전체(n=457)	13.9(2.7)	
자기효능감	낙태 경험 있음(n=83)	8.1(1.7)	2.177
	낙태 경험 없음(n=374)	8.4(1.7)	
	전체(n=457)	8.4(1.7)	
정서조절능력	낙태 경험 있음(n=83)	6.5(1.9)	13.230*
	낙태 경험 없음(n=374)	7.3(1.8)	
	전체(n=457)	7.1(1.9)	
낙관성	낙태 경험 있음(n=83)	7.3(1.9)	10.125*
	낙태 경험 없음(n=374)	8.0(1.7)	
	전체(n=457)	7.9(1.87)	
우울	낙태 경험 있음(n=83)	26.0(7.1)	9.568*
	낙태 경험 없음(n=374)	23.3(7.2)	
	전체(n=457)	23.8(7.3)	

* p<.01

표 IV-30 출산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1회	2회	3회	계
19세 미만	109(97.3)	3(2.7)	0(0.0)	112(100.0)
19세 이상	211(92.5)	15(6.6)	2(0.9)	228(100.0)
계	320(94.1)	18(5.3)	2(0.6)	340(100.0)

낙태 경험여부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 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IV-29), 낙태여부와 자존감,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이나 낙관성, 우울의 정도에서는 낙태 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낙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조절능력 및 낙관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우울의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태경험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부분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④ 출산

설문 참여자 457명에게 출산 경험여부를 물어 본 결과,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4.4%(340명)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의 경우에서는 64%(112명), 19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80.9%(228명)가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산 횟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94.1%(320명)가 1회라고 응답하였고, 2회 5.3%(18명), 3회는 0.6%(2명)이었다(표 IV-30).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본 결과(표 IV-31), 자기 혼자 결정하였다(55.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 아버지(14.7%), 자신의 부모님(11.2%) 순으로

표 IV-31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나 혼자 결정	아이 아버지	내 부모님	상담기관/지원시설	친구/선후배	아이 아버지 가족	내 형제자매	기타	계
19세 미만	49(43.8)	19(17.0)	18(16.1)	11(9.8)	6(5.4)	5(4.5)	2(1.8)	2(1.8)	112(100.0)
19세 이상	140(61.4)	31(13.6)	20(8.8)	12(5.3)	15(6.6)	3(1.3)	3(1.3)	4(1.8)	228(100.0)
계	189(55.6)	50(14.7)	38(11.2)	23(6.8)	21(6.2)	8(2.4)	5(1.5)	6(1.8)	340(100.0)

표 IV-32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내가 낳기를 위해서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낙태를 미처 하지 못해서	혼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 아버지가 낳기를 위해서	사실/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29(25.9)	24(21.4)	36(32.1)	5(4.5)	7(6.3)	9(8.0)	2(1.8)	0(0.0)	112(100.0)
19세 이상	86(37.7)	66(28.9)	32(14.0)	17(7.5)	12(5.3)	10(4.4)	4(1.7)	1(0.4)	228(100.0)
계	115(33.8)	90(26.5)	68(20.0)	22(6.5)	19(5.6)	19(5.6)	6(1.8)	1(0.3)	340(100.0)

응답률이 높았다. 여기서도 연령별 차이가 다소 있었는데 자신 혼자 결정하였다는 비율이 19세 미만보다 19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이라는 응답은 19세 미만의 경우가 19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를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였다는 응답에 비해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낙태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부모님이 아닌 자신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자신이 낳기를 원했다(33.8%)거나 생명에 대한 애착(26.5%), 낙태를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2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연령집단에 따라 응답비율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19세 이상의 경우는 내가 낳기를 위해서(37.7%)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던 반면, 19세 미만의 경우는 낙태를 미처 하지 못해서(32.1%)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표 IV-32). 이는 아무래도 연령이 어린 경우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의 산후 검진 및 몸조리, 후유증 및 처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출산 후 산부인과에서 산후 검진을 받은 경우는 79.1%(269명)로 나타났으며,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0.3%(69명)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를 충분히 했다는 응답은 19.1%에 지나지 않았으며, 거의 못했거나 전혀 못 했다는 응답이 36.5%나 되었다(표 IV-33).

표 IV-33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충분히 했다	약간 했다	거의 못 했다	전혀 못 했다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23(20.5)	48(42.9)	26(23.2)	15(13.4)	0(0.0)	112(100.0)
19세 이상	42(18.4)	102(44.7)	56(24.6)	27(11.8)	1(0.4)	228(100.0)
계	65(19.1)	150(44.1)	82(24.1)	42(12.4)	1(0.3)	340(100.0)

표 IV-34 출산 후 후유증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심했다	심했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계
신체적 후유증	19세 미만	4(3.6)	9(8.0)	20(17.9)	39(34.8)	40(35.7)	112(100.0)
	19세 이상	16(7.0)	26(11.4)	73(32.0)	50(21.9)	63(27.6)	228(100.0)
	계	20(5.9)	35(10.3)	93(27.4)	89(26.2)	103(30.3)	340(100.0)
정신적 후유증	19세 미만	7(6.3)	22(19.6)	34(30.4)	23(20.5)	26(23.2)	112(100.0)
	19세 이상	30(13.2)	40(17.5)	79(34.6)	41(18.0)	38(16.7)	228(100.0)
	계	37(10.9)	62(18.2)	113(33.2)	64(18.8)	64(18.8)	340(100.0)

이러한 결과는 출산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향후 출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출산 후 후유증이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본 결과(표 IV-34), 신체적 후유증보다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신체적 후유증이 매우 심했다거나 심했다는 응답은 16.2%, 약간 있었다는 27.4%,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56.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심했다 또는 심했다는 응답은 29.1%, 약간 있었다는 33.2%,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37.6%로 나타났다. 낙태 후 신체적 및 정신적 후유증이 매우 심했다 또는 심했다는 응답이 각각 27.7%와 50.6%였으며,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응답이 47%와 22.9%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낙태가 출산에 비해 이들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출산 뿐 아니라 낙태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유증에 대한 치료여부를 살펴 본 결과,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75.7%와 65.6%로 나타났으며, 전문적인 치료나 처치를 받은 경우는 각각 18.9%와 11.8%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후유증보다는 신체적 후유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낙태 후와 비교해 볼 때, 낙태 후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나 처치를 받은 경우는 각각 13.6%와 4.7%로 낙태 보다는 출산 후에 후유증에 대해

표 IV-35 아이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	계
19세 미만	84(75.0)	28(25.0)	112(100.0)
19세 이상	153(67.1)	75(32.9)	228(100.0)
소계	237(69.7)	103(30.3)	340(100.0)

표 IV-36 출산을 알게 된 후 아이 아버지의 주된 반응

단위: 명(%)

구분	함께 키우자고 하였다	입양 보내라고 하였다	연락이 끊어졌다	아무 반응 없었다	혼자 키우라고 하였다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헤어 지자고 하였다	양육비만 일부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기타	계
19세 미만	39(46.4)	21(25.0)	7(8.3)	9(10.7)	2(2.4)	1(1.2)	2(2.4)	0(0.0)	3(3.6)	84(100.0)
19세 이상	56(36.6)	20(13.1)	31(22.2)	15(9.8)	8(5.2)	6(3.9)	2(1.3)	2(1.3)	10(6.5)	153(100.0)
계	95(40.1)	41(17.3)	41(17.3)	24(10.1)	10(4.2)	7(3.0)	4(1.7)	2(0.8)	13(5.5)	237(100.0)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았다.

출산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인지 정도 및 반응에 대한 응답을 살펴 본 결과, 19세 미만의 경우 75%, 19세 이상의 경우 67.1%, 전체 69.7%가 아이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으며 30.3%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5). 출산 사실을 알린 경우 아이 아버지의 주된 반응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IV-36).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앞서 살펴 본 임신 후 상대남성의 반응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함께 키우자는 응답이 19세 미만의 경우는 46.4%로 19세 이상 36.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입양 보내라고 하였다는 응답도 19세 미만의 경우가 25%로 19세 이상 13.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연락을 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19세 이상의 경우가 22.2%로 19세 이상 8.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세 미만보다 19세 이상에서 보다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로 인해 자녀 및 생모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의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시에 있음을 인지하고 양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⑤ 입양

설문 참여자 457명 중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거나 보낼 계획이 있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33.2%이다

표 IV-37 입양 보낸 경험이나 보낼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입양 보냈다	입양 보낼 계획이다	입양 보낸 경험도 보낼 계획도 없다	계
19세 미만	29(16.6)	48(27.4)	98(56.0)	175(100.0)
19세 이상	26(9.2)	49(17.4)	207(73.4)	282(100.0)
소계	55(12.0)	97(21.2)	305(66.7)	457(100.0)

표 IV-38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내 가족	나 혼자 결정	아이 아버지	친구/선후배	기관/시설 상담원	아이 아버지 가족	입양 경험자	기타	계
19세 미만	39(50.6)	23(29.9)	8(10.4)	1(1.3)	2(2.6)	3(3.9)	0(0.0)	1(1.3)	77(100.0)
19세 이상	22(29.3)	30(40.0)	14(18.7)	4(5.3)	3(4.0)	0(0.0)	2(2.7)	0(0.0)	75(100.0)
계	61(40.1)	53(34.9)	22(14.5)	5(3.3)	5(3.3)	3(2.0)	2(1.3)	1(0.7)	152(100.0)

(표 IV-37). 이 중 이미 입양을 보낸 이들은 12%이며, 입양을 계획 중인 이들은 21.2%인데, 연령집단별 비율을 살펴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중 입양을 보냈거나 고려 중인 이들의 비율이 19세 이상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서보다 더 높았다. 이들의 입양횟수를 살펴보면, 입양 경험자(53명) 중 92.7%(51명)가 1회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회라는 응답은 2명(3.6%)이었다. 입양 횟수가 2회라는 응답자가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입양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살펴보면(표 IV-38), 내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신 혼자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비율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응답은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약 50.6%에 이르는 반면, 19세 이상에서는 29.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 혼자 결정하였다는 응답은 19세 미만의 경우는 29.9%였으나 19세 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입양 결정 역시 낙태 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9세 이상인 경우는 가족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표 IV-39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이가 더 나은 곳에서 자라도록	나의 미래를 생각 해서	부모 노릇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보호자/아이 아버지 권유로	주위의 시선/편견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충분치 않아서	학교(직장)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24(31.2)	22(28.6)	10(13.0)	6(7.8)	5(6.5)	3(3.9)	2(2.6)	1(1.3)	1(1.3)	1(1.3)	2(2.6)	77(100.0)
19세 이상	35(46.7)	17(22.7)	9(12.0)	5(6.7)	3(4.0)	2(2.7)	1(1.3)	1(1.3)	1(1.3)	1(1.3)	0(0.0)	75(100.0)
계	59(38.8)	39(25.7)	19(12.5)	11(7.2)	4(5.2)	5(3.3)	3(2.0)	2(1.3)	2(1.3)	2(1.3)	2(1.3)	152(100.0)

표 IV-40 **입양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구분	아이에 대한 미안함	아이에 대한 애착	어려움 점이 없었다	입양가정(부모)에 대한 불안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44(57.1)	21(27.3)	4(5.2)	5(6.5)	2(2.6)	1(1.3)	77(100.0)
19세 이상	52(69.3)	10(13.3)	8(10.7)	5(6.7)	0(0.0)	0(0.0)	75(100.0)
계	96(63.2)	31(20.4)	12(7.9)	10(6.6)	2(1.3)	1(0.7)	152(100.0)

입양 결정의 주된 이유(표 IV-39)로는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거나(38.8%) 자녀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2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아이 아버지나 부모의 권유로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하여, 앞서 자녀를 입양 보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라는 응답이 40%가 넘게 나온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결과의 불일치라기보다는 부모나 가족이 설득 등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여 입양을 보내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입양 결정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63.2%)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아기에 대한 애착(20.4%)이 그 뒤를 이었다(표 IV-40). 입양 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 보낸 후 또는 입양결정 후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41), 후유증이 매우 심했다거나 심했다는 응답은 30.9%, 약간 있었다는 43.4%,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는 25.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입양을 보낸 후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적 후유증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한편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이들 113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 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7%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응답이 35.4%, 전문기관의 상담, 병원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표 IV-41 **자녀를 입양 보낸(보내기로 결정한) 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심했다	심했다	약간 있었다	거의 없었다	전혀 없었다	계
19세 미만	5(6.5)	20(26.0)	35(45.5)	7(9.1)	10(13.0)	77(100.0)
19세 이상	12(16.0)	10(13.3)	31(41.3)	14(18.7)	8(10.7)	75(100.0)
계	17(11.2)	30(19.7)	66(43.4)	21(13.8)	18(11.8)	152(100.0)

표 IV-42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양육하고 있다	양육할 계획이다	양육 경험/계획이 없다	계
19세 미만	68(38.9)	35(20.0)	72(41.1)	175(100.0)
19세 이상	194(68.8)	24(8.5)	64(22.7)	282(100.0)
소계	262(57.3)	59(12.9)	136(29.8)	457(100.0)

14.2%에 불과하였다. 이는 현재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이 입양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후유증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집단별 평균비교를 통해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 여부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신건강, 즉 자존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우울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집단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⑥ 양육

설문 참여자들 중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262명으로 57.3%로 나타났으며, 현재 임신 중으로 양육을 계획 중인 경우는 12.9%, 낙태나 입양 등으로 양육 경험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는 29.8%로 나타났다(표 IV-42). 이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262명을 대상으로 현재 양육 중인 자녀 수를 물어 본 결과, 1명을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이 97.7%로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자녀 한 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2명을 양육하고 있다는 응답도 2.3%(6명)로 나타났다. 첫째 아이 연령을 기준으로 자녀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표 IV-43), 자녀가 2살 이하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2.7%에 해당하며, 3~5살은 27%로 나타난 반면 6세 이상은 2명(0.4%)에 불과하였다.

표 IV-43

자녀의 연령¹⁾

단위: 명(%)

구분	2살 이하	3-5살	6살 이상	계
19세 미만	59(86.8)	9(13.2)	0(0.0)	68(100.0)
19세 이상	130(67.0)	61(31.4)	2(1.0)	193(100.0)
소계	189(72.7)	70(27.0)	2(0.8)	261(100.0)

1) 2살 이하(2011년 이후 출생)

3~5살(2008~2010년 출생)

6살 이상(~2007년 출생)

표 IV-44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출산/양육 의사

단위: 명(%)

구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만 없어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양육 지원제도만 잘 갖추어져 있어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둘 다 갖추어져야만 출산/양육할 의사가 있다	둘 다 갖추어져있다 하더라도 출산/양육할 의사가 없다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8(11.1)	10(13.9)	28(38.9)	23(31.9)	3(4.2)	72(100.0)
19세 이상	3(4.7)	16(25.0)	15(23.4)	30(46.9)	0(0.0)	64(100.0)
소계	11(8.1)	26(19.1)	43(31.6)	53(39.0)	3(2.2)	136(100.0)

현재 자녀양육 경험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 사회적 여건이 변화된다면 자녀양육의사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표 IV-44),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면 양육 의사가 있다는 경우는 8.1%, 지원제도가 충분하다면 키울 수 있다는 경우가 19.1%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둘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양육의사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 낙태와 입양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거나 현재 양육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양육 결정의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45),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아서(59.2%), 아이를 사랑해서(24.9%)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이 양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는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51.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아이 아버지(18.7%), 내 가족(17.1%)이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표 IV-46). 여기서도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다소 보였는데, 자신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이 19세 이상의 경우는

표 IV-45 양육할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 아버지가 함께 키울 수 있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양육을 지원할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 제도가 마련 되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51(49.5)	27(26.2)	12(11.7)	3(2.9)	3(2.9)	2(1.9)	5(4.9)	0(0.0)	103(100.0)
19세 이상	139(63.8)	53(24.3)	14(6.4)	5(2.3)	2(0.9)	1(0.5)	3(1.4)	1(0.5)	218(100.0)
소계	190(59.2)	80(24.9)	26(8.1)	8(2.5)	5(1.6)	3(0.9)	8(2.5)	1(0.3)	321(100.0)

표 IV-46 양육할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단위: 명(%)

구분	나 혼자 결정	아이 아버지	내 가족	자원시설/기관 종사자	친구/선후배	아이 아버지 가족	다른 청소년 한부모	종교인	기타	계
19세 미만	40(38.8)	27(26.2)	18(17.5)	7(6.8)	5(4.9)	4(3.9)	1(1.0)	0(0.0)	1(1.0)	103(100)
19세 이상	126(57.8)	33(15.1)	37(17.0)	10(4.6)	7(3.2)	2(0.9)	1(0.5)	1(0.5)	1(0.5)	218(100)
소계	166(51.7)	60(18.7)	55(17.1)	17(5.3)	12(3.7)	6(1.9)	2(0.6)	1(0.3)	2(0.6)	321(100)

57.8%에 이르는 반면, 19세 미만에서는 38.8%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 아버지가 양육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19세 미만에서는 26.2%에 이르는 반면, 19세 이상에서는 15.1%에 불과하였다. 이는 앞서 임신 및 출산에서 나타난 경향과 마찬가지로 양육에 대해서도 19세 미만의 경우가 19세 이상의 경우보다 상대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아버지가 자녀양육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표 IV-47), 75.2%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22.1%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별로 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19세 미만의 경우가 19세 이상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난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17.3%에 불과한 반면, 더 멀어졌다는 응답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현재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보면(표 IV-48),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66.8%로 나타났는데, 19세 이상의 경우는 70.6%, 19세 미만의 경우는 55.9%로 높은 연령 집단에서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함께 산다는 응답이 약 5.7%로 나타났는데, 함께 사는 경우는 한부모의 정의에서 벗어나며, 법적으로도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아직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 중 아이의 부모가 함께 살면서도

표 IV-47 본인의 자녀양육을 아이 아버지가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해당자 없음	계
	더 좋아짐	더 멀어짐	변화 없음	모름/무응답	소계			
19세 미만	12(20.7)	27(46.6)	18(31.0)	1(1.7)	58(100.0/85.3)	9(13.2)	1(1.5)	68
19세 이상	22(15.8)	78(56.1)	37(26.6)	2(1.4)	139(100.0/71.6)	49(25.3)	6(3.1)	194
계	34(17.3)	105(53.3)	55(27.9)	3(1.5)	197(100.0/75.2)	58(22.1)	7(2.7)	262

표 IV-48 현재 아기 아버지와 관계

단위: 명(%)

구분	함께 산다	따로 살지만 여전히 사귀고 있다	헤어졌지만 필요 시 연락하고 지낸다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기타	계
19세 미만	8(11.8)	17(25.0)	5(7.4)	38(55.9)	0(0.0)	68(100.0)
19세 이상	7(3.6)	22(11.3)	19(9.8)	137(70.6)	9(4.6)	194(100.0)
계	15(5.7)	39(14.9)	24(9.2)	175(66.8)	9(3.4)	262(100.0)

그렇지 않은 것으로 위장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양육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가 된 청소년 당사자가 양육부담을 덜 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보다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 아버지 역시 상당수가 경제적 지원과 자립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양부모에 대한 공식적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아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이들 247명을 대상으로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물어 본 결과, 19세 미만 68.3%(41명), 19세 이상 72.2%(135명)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들 176명은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표 IV-49), 19세 미만의 경우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상의 경우는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3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 71명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표 IV-50),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25.4%에 불과하였으며, 19세 이상보다는 19세 미만의 경우가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응답자의 56.3%였으며, 연령집단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은

표 IV-49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아이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아이를 데려갈까봐	아이 아버지와 연락하기 싫어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기타	계
19세 미만	19(46.3)	8(19.5)	9(22.0)	3(7.3)	1(2.4)	1(2.4)	0(0.0)	41(100.0)
19세 이상	33(24.4)	43(31.9)	30(22.2)	12(8.9)	4(3.0)	2(1.5)	11(8.1)	135(100.0)
계	52(29.5)	51(29.0)	39(22.2)	15(8.5)	5(2.8)	3(1.7)	11(6.3)	176(100.0)

표 IV-50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현재 주고 있다	처음엔 주었으나 점차 끊어졌다	처음엔 주지 않았으나 최근에 주기 시작했다	주겠다고 하고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주겠다고 말한 적도 실제로 준 적도 없다	계
19세 미만	7(36.8)	1(5.3)	0(0.0)	5(26.3)	6(31.6)	19(100.0)
19세 이상	11(21.2)	9(17.3)	3(5.8)	12(23.1)	17(32.7)	52(100.0)
계	18(25.4)	10(14.1)	3(4.2)	17(23.9)	23(32.4)	71(100.0)

자녀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데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자녀를 가정에서 누가 주로 돌보는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표 IV-51), 아이 엄마 자신이라는 응답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가족이나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도 12%에 가까웠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19세 이상은 90%가 넘게 아이 엄마가 주로 아이를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나 19세 미만에서는 가족이나 외부 지원이 20%가 넘고 아이 엄마라는 응답은 약 78%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8명은 자녀양육을 주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어 학업이나 근로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시 자녀양육 지원사업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세 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52), 경제적 어려움(57.6%)을 제일 많이 언급하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2, 3순위로 꼽은 경우(각각 27.8%와 19.8%)가 많았다. 그 외의 어려움으로는 아이돌보기나 아이가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가정일과 직장일 및 학업을 병행하는 것을 주로 꼽았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이 돌보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은 한부모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래 진로나 결혼에 대한 걱정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51 가정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아이 엄마 (본인)	가족	자원봉사자/ 아이돌보미 (외부 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계
19세 미만	53(77.9)	10(14.7)	4(5.9)	1(1.5)	0(0.0)	68(100.0)
19세 이상	175(90.2)	14(7.2)	3(1.5)	1(0.5)	1(0.5)	194(100.0)
소계	228(87.0)	24(9.2)	7(2.7)	2(0.4)	1(0.4)	262(100.0)

표 IV-52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단위: 명(%)

구분	경제적 어려움	아이 돌보기	아이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힘들어 할까봐	내 미래 (진로 및 결혼)의 불투명성	가정과 직장일 (학업) 병행	사회적 편견	가족과의 단절	특별히 없다	기타	계	
1 순 위	19세 미만	32(47.1)	10(14.7)	6(8.8)	5(7.4)	6(8.8)	1(1.5)	2(2.9)	5(7.4)	1(1.5)	68(100.0)
	19세 이상	119(61.3)	18(9.3)	18(9.3)	12(6.2)	14(6.9)	4(2.1)	2(1.0)	6(3.1)	1(0.5)	194(100.0)
	소계	151(57.6)	28(10.7)	24(9.2)	17(6.5)	20(7.6)	5(1.9)	4(1.5)	11(4.2)	2(0.8)	262(100.0)
2 순 위	19세 미만	9(13.8)	13(20.0)	5(7.7)	19(29.2)	6(8.8)	6(9.2)	4(6.2)	3(4.6)	0(0.0)	65(100.0)
	19세 이상	33(17.6)	24(12.8)	26(13.9)	51(27.3)	25(13.4)	18(9.6)	8(4.3)	1(0.5)	1(0.5)	187(100.0)
	소계	42(16.7)	37(14.7)	31(12.3)	70(27.8)	31(12.3)	24(9.5)	12(4.8)	4(1.6)	1(0.4)	252(100.0)
3 순 위	19세 미만	11(18.6)	12(20.3)	4(6.8)	13(22.0)	8(13.6)	6(10.2)	3(5.1)	2(3.4)	1(1.7)	59(100.0)
	19세 이상	18(10.1)	25(14.0)	31(17.4)	34(19.1)	32(18.0)	30(16.9)	7(3.9)	4(2.2)	1(0.6)	178(100.0)
	소계	29(12.2)	37(15.6)	35(14.8)	47(19.8)	40(16.9)	36(15.2)	10(4.2)	6(2.5)	2(0.8)	237(100.0)

한편 미취학 자녀의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보육기관 재학 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IV-53), 미취학 자녀 중 약 43.1%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3세 이상의 경우는 87% 이상이 보육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세 이하의 경우는 26.5%만이 보육기관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기관에 다니는 이들 112명을 대상으로 현재 다니는 교육기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놀이방 4명, 유치원 1명을 제외한 대부분(94.6%)이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들 14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집에서 돌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7%(75명)로 가장 많았고, 아직 어렵다고 보육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1%(49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관에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1%(9명),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5명), 주변에 보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0.7%(1명)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 아이의 연령이 어려서 보육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적지 않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은 학업이나 근로활동을 육아와 병행하지 못해 결국 육아를 위해 학업과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가 영아기 자녀를 위해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업과 근로를 육아와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대한 정보와 지지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53

미취학 자녀가 현재 보육(교육) 기관에 다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다니고 있다	다니고 있지 않다	계
2살 이하	19세 미만	14(23.7)	45(76.3)	59(100.0)
	19세 이상	36(27.7)	94(72.3)	130(100.0)
	소계	50(26.5)	139(73.5)	189(100.0)
3~ 5살	19세 미만	8(88.9)	1(11.1)	9(100.0)
	19세 이상	53(86.9)	8(13.1)	61(100.0)
	소계	61(87.1)	9(12.9)	70(100.0)
6살 이상	19세 미만	0(0.0)	0(0.0)	0(100.0)
	19세 이상	1(0.0)	0(0.0)	1(100.0)
	소계	1(100.0)	0(0.0)	1(100.0)
계	19세 미만	22(32.4)	46(67.6)	68(100.0)
	19세 이상	90(46.9)	102(53.1)	192(100.0)
	소계	112(43.1)	148(56.9)	260(100.0)

청소년 한부모 주변사람들의 자녀양육 인지 여부 및 관계 변화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표 IV-54),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해 친한 친구 및 동료들이 아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90.5%),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녀양육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자녀양육 사실을 알고 난 후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만 비교해 본다면, 부모와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관계에서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이 더 멀어졌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더 멀어졌다는 응답비율은 2.2%~27.4%의 범위에 있었으나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0.0%~52%의 범위에 있어 관계가 좋아진 경우가 멀어진 경우보다 현저히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가족들이 자녀양육 사실을 알고 난 후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앞서 제시한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과 비교하여 보아도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이 가족 및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상대 남성 가족과의 관계는 다른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다른 주변사람들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19세 이상의

표 IV-54

주변 사람들의 자녀양육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관계 변화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해당자 없음	계	
	더 좋아짐	더 멀어짐	변화 없음	모름/무응답	소계				
아버지	19세 미만	20(38.5)	13(25.0)	19(36.5)	0(0.0)	52(100.0/76.5)	8(11.8)	8(11.8)	68
	19세 이상	41(28.3)	38(26.2)	63(43.4)	3(2.1)	145(100.0/74.7)	19(9.8)	30(15.5)	194
	계	61(31.0)	51(25.9)	82(41.6)	3(1.5)	197(100.0/75.2)	27(10.3)	38(14.5)	262
어머니	19세 미만	26(52.0)	5(10.0)	19(38.0)	0(0.0)	50(100.0/73.5)	5(7.4)	13(19.1)	68
	19세 이상	59(35.3)	29(17.4)	76(45.5)	3(1.8)	167(100.0/86.1)	10(5.2)	17(8.8)	194
	계	85(39.2)	34(15.7)	95(43.8)	3(1.4)	217(100.0/82.8)	15(5.7)	30(11.5)	262
형제자매	19세 미만	18(39.1)	1(2.2)	27(58.7)	0(0.0)	46(100.0/67.6)	6(8.8)	16(23.5)	68
	19세 이상	51(30.0)	17(10.0)	98(57.6)	4(2.4)	170(100.0/87.6)	11(5.7)	13(6.7)	194
	계	69(31.9)	18(8.3)	125(57.9)	4(1.9)	216(100.0/82.4)	17(6.5)	29(11.1)	262
상대방가족	19세 미만	13(27.1)	15(31.3)	20(41.7)	0(0.0)	48(100.0/70.6)	15(22.1)	5(7.4)	68
	19세 이상	14(15.1)	35(37.6)	42(45.2)	2(2.2)	93(100.0/47.9)	89(45.9)	12(6.2)	194
	계	27(19.1)	50(35.5)	62(44.0)	2(1.4)	141(100.0/53.8)	104(39.7)	17(6.5)	262
친구/동료	19세 미만	22(37.9)	2(3.4)	34(58.6)	0(0.0)	58(100.0/85.3)	7(10.3)	3(4.4)	68
	19세 이상	49(27.4)	12(6.7)	115(64.2)	3(1.7)	179(100.0/92.3)	12(6.2)	3(1.5)	194
	계	71(30.0)	14(5.9)	149(62.9)	3(1.3)	237(100.0/90.5)	19(7.3)	6(2.3)	262

경우는 상대방 남성 가족의 47.9%만이 자녀양육 사실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녀양육 사실을 알고 난 후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더 멀어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일련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이 아버지 및 그의 가족이 원하지 않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지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적 측면, 양육, 가사, 정서적 측면에서의 도움 받는 정도를 살펴보았다(표 IV-55). 생활비나 용돈 등 경제적 측면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은 지원 기관 및 시설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아이의 외조부모, 아이 아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은 19세 이상 보다는 19세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어린 경우 오히려 비양육 부모로서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잘 이행하였다. 19세 이상의 경우 경제적

표 IV-55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도움 정도(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지원 시설/기관	아이 외조모	아이 외조부	아이 아버지	내 친구/이웃	아이 조모	아이 조부	정부 지원	아이 친가	아이 돌보미/자원 봉사자	없음 (스스로 해결)	일시 위탁	계	
경제	19세 미만	40 (58.8)	32 (47.1)	23 (33.8)	16 (23.5)	9 (13.2)	14 (20.6)	9 (13.2)	5 (7.4)	7 (10.3)	5 (7.4)	1 (1.5)	0 (0.0)	68
	19세 이상	78 (40.2)	79 (40.7)	64 (33.0)	26 (13.4)	16 (8.2)	9 (4.6)	14 (7.2)	14 (7.2)	7 (3.6)	6 (3.1)	8 (4.1)	2 (1.0)	194
	소계	118 (45.0)	111 (42.2)	87 (33.2)	42 (16.0)	25 (9.5)	23 (8.8)	23 (8.8)	19 (7.3)	14 (5.3)	11 (4.2)	9 (3.4)	2 (.8)	262
육아	19세 미만	30 (44.1)	19 (27.9)	10 (14.7)	5 (7.4)	8 (11.8)	10 (14.7)	6 (8.8)	0 (0.0)	3 (4.4)	20 (29.4)	1 (1.5)	3 (4.4)	68
	19세 이상	69 (35.6)	68 (35.1)	17 (8.8)	10 (5.2)	12 (6.2)	8 (4.1)	4 (2.1)	2 (1.0)	3 (1.5)	44 (22.7)	9 (4.6)	3 (1.5)	194
	소계	99 (37.8)	87 (33.2)	27 (10.3)	15 (5.7)	20 (7.6)	18 (6.9)	10 (3.8)	2 (0.8)	6 (2.3)	64 (24.4)	10 (3.8)	6 (2.3)	262
가사	19세 미만	17 (25.0)	17 (25.0)	5 (7.4)	3 (4.4)	7 (10.3)	4 (5.9)	4 (5.9)	0 (0.0)	2 (2.9)	7 (10.3)	6 (8.8)	0 (0.0)	68
	19세 이상	29 (14.9)	59 (30.4)	9 (4.6)	6 (3.1)	8 (4.1)	6 (3.1)	2 (1.0)	0 (0.0)	2 (1.0)	7 (3.6)	20 (10.3)	1 (0.5)	194
	소계	46 (17.6)	76 (29.0)	14 (5.3)	9 (3.4)	15 (5.7)	10 (3.8)	6 (2.3)	0 (0.0)	4 (1.5)	14 (5.3)	26 (9.9)	1 (0.4)	262
정서	19세 미만	29 (42.6)	18 (26.5)	11 (16.2)	13 (19.1)	0 (0.0)	3 (4.4)	3 (4.4)	0 (0.0)	2 (2.9)	4 (5.9)	1 (1.5)	0 (0.0)	68
	19세 이상	52 (26.8)	37 (19.1)	15 (7.7)	15 (7.7)	0 (0.0)	2 (1.0)	3 (1.5)	1 (0.5)	2 (1.0)	5 (2.6)	6 (3.1)	0 (0.0)	194
	소계	81 (30.9)	55 (21.0)	26 (9.9)	28 (10.7)	0 (0.0)	5 (1.9)	6 (2.3)	1 (0.4)	4 (1.5)	9 (3.4)	7 (2.7)	0 (0.0)	262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책임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육아 측면에서도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원시설 및 기관을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곳으로 언급하였고 그 외에 아이의 외할머니와 아이돌보미/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안일, 집 봐주기 같은 가사 도움에서는 아이의 외할머니의 도움이 가장 많았으며, 마지막으로 의논이나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에서도 지원 기관 및 시설 다음으로 아이 외할머니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원 기관 및 시설의 도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기관 및 시설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일차적인 지원체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동시에 본 표본의 응답자 중 80% 정도가 시설 거주자로 가족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원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이 외할머니, 즉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경우 청소년 한부모들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혼외 임신과 출산으로 원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것이라는 통념과도 거리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아이 아버지 및 아이의 친가족 도움은 외가의 도움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 역시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쪽에 있으며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덜하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경향일 수 있다. 이에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의 기회 및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적은 수치이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도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자립한 경우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며, 후자의 경우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부모효능감 및 육아스트레스 정도, 자녀에 대한 감독과 방임 및 학대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들의 부모효능감을 살펴보면(표 IV-56),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육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5% 정도이며,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표 IV-56 부모효능감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현재 잘 키우고 있다	19세 미만	0(0.0)	8(11.8)	44(64.7)	16(23.5)	68(100.0)
	19세 이상	4(2.1)	30(15.5)	128(66.0)	32(16.5)	194(100.0)
	소계	4(1.5)	38(14.5)	172(65.6)	48(18.3)	262(100.0)
앞으로 잘 키울 것이다	19세 미만	0(0.0)	3(4.4)	41(60.3)	24(35.3)	0(0.0)
	19세 이상	3(1.5)	17(8.8)	116(59.8)	57(29.4)	1(0.5)
	소계	3(1.1)	20(7.6)	157(59.9)	81(30.9)	1(0.4)
아이와 관계가 좋다	19세 미만	0(0.0)	2(2.9)	31(45.6)	35(51.5)	0(0.0)
	19세 이상	2(1.0)	5(2.6)	111(57.2)	75(38.7)	1(0.5)
	소계	2(0.8)	7(2.7)	142(54.2)	110(42.0)	1(0.4)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표본에서 볼 때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육아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나 받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표 IV-57), 청소년 한부모들 중 절반 이상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6.9%는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5.2%는 아이가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 돌보기와 관련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49.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볼 때,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 어려움은 청소년기에 기대되는 학업수행, 교우관계 등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보다는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육아 스트레스 이외에 한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 IV-57

육아 스트레스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니다/ 거의 없다	아닌 편이다/ 적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많다	모름/무응답	계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	19세 미만	8(11.8)	17(25.0)	32(47.1)	11(16.2)	0(0.0)	68(100.0)
	19세 이상	21(10.8)	75(38.7)	82(42.3)	16(8.2)	0(0.0)	194(100.0)
	소계	29(11.1)	92(35.1)	114(43.5)	27(10.3)	0(0.0)	262(100.0)
지치고 힘들다	19세 미만	23(33.8)	23(33.8)	21(30.9)	0(0.0)	1(1.5)	68(100.0)
	19세 이상	48(24.7)	101(52.1)	40(20.6)	5(2.6)	0(0.0)	194(100.0)
	소계	71(27.1)	124(47.3)	61(23.3)	5(1.9)	1(0.4)	262(100.0)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19세 미만	11(16.2)	23(33.8)	23(33.8)	10(14.7)	1(1.5)	68(100.0)
	19세 이상	28(14.4)	76(39.2)	74(38.1)	16(8.2)	0(0.0)	194(100.0)
	소계	39(14.9)	99(37.8)	97(37.0)	26(9.9)	1(0.4)	262(100.0)
아이 돌보기 스트레스 정도	19세 미만	15(22.1)	20(29.4)	18(26.5)	10(14.7)	0(0.0)	68(100.0)
	19세 이상	26(13.4)	54(27.8)	67(34.5)	35(18.0)	2(1.0)	194(100.0)
	소계	41(15.6)	74(28.2)	85(32.4)	45(17.2)	2(0.8)	262(100.0)

표 IV-58 지난 한 달간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구분		거의 없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해당사항 없음	계
집안일	양육 중	27(10.3)	81(30.9)	107(40.8)	41(15.6)	6(2.3)	262(100.0)
	계획 중	15(25.4)	21(35.6)	9(15.3)	6(10.2)	8(13.6)	59(100.0)
	양육(계획) 안 함	41(30.9)	48(35.3)	17(12.5)	9(6.6)	20(14.7)	136(100.0)
	계	84(18.4)	150(32.8)	133(29.1)	56(12.3)	34(7.4)	457(100.0)
경제적 어려움	양육 중	12(4.6)	38(14.5)	98(37.4)	107(40.8)	7(2.7)	262(100.0)
	계획 중	4(6.8)	7(11.9)	23(39.0)	23(39.0)	2(3.4)	59(100.0)
	양육(계획) 안 함	18(13.2)	34(25.0)	38(27.9)	33(24.3)	13(9.6)	136(100.0)
	계	34(7.4)	79(17.3)	159(34.8)	163(35.7)	22(4.8)	457(100.0)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양육 중	41(15.6)	74(28.2)	85(32.4)	45(17.2)	15(5.7)	2(0.8)
	계획 중	17(28.8)	13(22.0)	19(32.2)	4(6.8)	6(10.2)	0(0.0)
	양육(계획) 안 함	51(37.5)	28(20.6)	21(15.4)	16(11.8)	20(14.7)	0(0.0)
	계	109(23.9)	115(25.2)	125(27.4)	65(14.2)	41(9.0)	2(0.4)
건강 문제	양육 중	98(37.4)	74(28.2)	56(21.4)	22(8.4)	12(4.6)	262(100.0)
	계획 중	16(27.1)	19(32.2)	17(28.8)	3(5.1)	4(6.8)	59(100.0)
	양육(계획) 안 함	35(25.7)	45(33.1)	29(21.3)	15(11.0)	12(8.8)	136(100.0)
	계	149(32.6)	138(30.2)	102(22.3)	40(8.8)	28(6.1)	457(100.0)
미래에 대한 걱정	양육 중	10(3.8)	22(8.4)	76(29.0)	148(56.5)	6(2.3)	262(100.0)
	계획 중	2(3.4)	6(10.2)	21(35.6)	30(50.8)	0(0.0)	59(100.0)
	양육(계획) 안 함	9(6.6)	20(14.7)	41(30.1)	60(44.1)	6(4.4)	136(100.0)
	계	21(4.6)	48(10.5)	138(30.2)	238(52.1)	12(2.6)	457(100.0)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정도를 살펴본 결과(표 IV-58), 자녀를 양육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양육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부모들은 건강문제를 제외하고는 집안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서 자녀양육 경험 및 계획이 없는 이들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자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심하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까지도 이르게 된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감독과 학대정도를 살펴보면(표 IV-59), 응답자 대다수는 자녀를

표 IV-59 자녀에 대한 감독 및 학대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니다/ 거의 없다	아닌 편이다/ 가끔 있다	그런 편이다/ 자주 있다	매우 그렇다/ 거의 항상 있다	모름/무응답	계
누구와 있는지 안다	19세 미만	0(0.0)	1(1.5)	17(25.0)	50(73.5)	0(0.0)	68(100.0)
	19세 이상	1(0.5)	3(1.5)	43(22.2)	147(75.8)	0(0.0)	194(100.0)
	소계	1(0.4)	4(1.5)	60(22.9)	197(75.2)	0(0.0)	262(100.0)
어디에 있는지 안다	19세 미만	0(0.0)	0(0.0)	19(27.9)	49(72.1)	0(0.0)	68(100.0)
	19세 이상	2(1.0)	2(1.0)	43(22.2)	147(75.8)	0(0.0)	194(100.0)
	소계	2(0.8)	2(0.8)	62(23.7)	196(74.8)	0(0.0)	262(100.0)
무엇을 하는지 안다	19세 미만	1(1.5)	6(8.8)	31(45.6)	30(44.1)	0(0.0)	68(100.0)
	19세 이상	2(1.0)	9(4.6)	84(43.3)	99(51.0)	0(0.0)	194(100.0)
	소계	3(1.1)	15(5.7)	115(43.9)	129(49.2)	0(0.0)	262(100.0)
병원에 못 간 적이 있다	19세 미만	52(76.5)	15(22.1)	0(0.0)	1(1.5)	0(0.0)	68(100.0)
	19세 이상	144(74.2)	40(20.6)	9(4.6)	0(0.0)	1(0.5)	194(100.0)
	소계	196(74.8)	55(21.0)	9(3.4)	1(0.4)	1(0.4)	262(100.0)
내쫓거나 보낸다고 한 적이 있다.	19세 미만	62(91.2)	6(8.8)	0(0.0)	0(0.0)	0(0.0)	68(100.0)
	19세 이상	162(83.5)	25(12.9)	4(2.1)	1(0.5)	2(1.0)	194(100.0)
	소계	224(85.5)	31(11.8)	4(1.5)	1(0.4)	2(0.8)	262(100.0)
때린 적이 있다	19세 미만	41(60.3)	26(38.2)	1(1.5)	0(0.0)	0(0.0)	68(100.0)
	19세 이상	122(62.9)	52(26.8)	17(8.8)	1(0.5)	2(1.0)	194(100.0)
	소계	163(62.2)	78(29.8)	18(6.9)	1(0.4)	2(0.8)	262(100.0)

감독하고 학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자녀를 자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방임과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 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직 남아 있는 청소년기의 욕구를 자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높은 육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육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육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육아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부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표 IV-60 현재 생활하는 곳

단위: 명(%)

구분	시설 거주	부모님 집	내가 마련한 주거지	형제자매/친인척집	친구집	아이 아버지집	계
19세 미만	148(84.6)	14(8.0)	5(2.9)	5(2.9)	2(1.1)	1(0.6)	175(100.0)
19세 이상	181(64.2)	39(13.8)	50(17.7)	7(2.5)	2(0.7)	3(1.1)	282(100.0)
소계	329(72.0)	53(11.6)	55(12.0)	12(2.6)	4(0.9)	4(0.9)	457(100.0)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생활 및 자립실태

① 현재 거주 유형

현재 청소년 미혼모들이 생활하는 곳을 살펴 본 결과(표 IV-60),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72%로 가장 많았으며, 내가 마련한 주거지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11.6%였다. 이렇듯 다수의 응답자가 미혼모 관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표집이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소경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가 적게 표집 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 대부분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적인 접촉이 어려운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가 많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다. 후자 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이들 중 자녀 이외의 동거자에 대해 알아본 결과(표 IV-61), 자녀하고만 산다는 응답이 33.9%로 나타나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37.1%)는 응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자녀 이외에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23.1%로 나타났으며

표 IV-61 현재 동거자(자녀양육자 만)

단위: 명(%)

구분	자녀만	자녀 + 원가족	자녀+친구	자녀+시설	자녀+아이 아버지(가족)	계
19세 미만	8(18.6)	9(20.9)	1(2.3)	23(53.5)	2(4.7)	43(100.0)
19세 이상	55(38.5)	34(23.8)	3(2.1)	46(32.2)	5(3.5)	143(100.0)
소계	63(33.9)	43(23.1)	4(2.2)	69(37.1)	7(3.8)	186(100.0)

표 IV-62 미혼모자 관련시설 입소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입소하고 있다	과거 입소해 보았다	전혀 없다	계
계	19세 미만	143(81.7)	19(10.9)	13(7.4)	175(100.0)
	19세 이상	174(61.7)	62(22.0)	46(16.3)	282(100.0)
	소계	317(69.4)	81(17.7)	59(12.9)	457(100.0)

이들은 자녀하고만 사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자녀하고만 산다는 응답이 33.9%에 이른다는 것은 주변에 지지체계가 부족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하고만 사는 63명의 경우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안 만난다, 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는 응답이 14.3%(9명)에 달하여 비공식적인 도움과 지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주변의 지지체계와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안전망 속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미혼모자 관련 시설

응답자들은 미혼모자 관련 시설 입소 경험을 살펴본 결과(표 IV-62), 총 457명 중 317명(69.4%)이 조사 당시 입소 중이었으며, 과거에 입소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81(17.7%)명, 입소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59명(12.9%)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19세 이상 중에는 61.7%(174명)가 19세 미만 중에는 81.7%(143명)이 입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입소 경로를 알아본 결과(표 IV-63), 인터넷(49.7%)을 통해 시설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27.6%), 상담 및 입양기관(11.6%)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은 정보수집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표 IV-63 맨 처음 입소한 시설을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구분	인터넷	주변사람	상담/입양 기관	병원	정부기관 /사회단체	기타	계
19세 미만	67(41.4)	55(34.0)	21(13.0)	14(8.6)	4(2.5)	1(0.6)	162(100.0)
19세 이상	131(55.5)	55(23.3)	25(10.6)	10(4.2)	11(4.7)	4(1.7)	236(100.0)
소계	198(49.7)	110(27.6)	46(11.6)	24(6.0)	15(3.8)	5(1.3)	398(100.0)

표 IV-64 시설에 입소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명(%)

구분	출산/양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변사람 모르게 출산/양육 하려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려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어서	기타	계
19세 미만	67(41.4)	51(31.5)	22(13.6)	2(1.)	9(5.6)	6(3.7)	5(3.1)	162(100.0)
19세 이상	142(60.2)	49(20.8)	24(10.2)	2(0.8)	18(7.6)	0(0.0)	1(0.4)	398(100.0)
소계	209(52.5)	100(25.1)	46(11.6)	4(1.0)	27(6.8)	6(1.5)	6(1.5)	398(100.0)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한 시설 및 기관 홍보는 수요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자녀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인 위드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표 IV-64) 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52.5%, 209명)로 나타났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출산/양육하고자 하는 것(25.1%, 100명)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였다. 또한 시설에 입소하여야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입소하였다는 응답도 6.8%(27명)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입소시설의 선택기준(표 IV-65)은 원래 살던 곳과 가까운 곳(19세 미만 37%, 19세 이상 29.2%)으로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19세 이상인 경우는 이용자들의 평판(25%)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꼽은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은 반면, 19세 미만인 경우는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17.9%)을

표 IV-65 입소시설의 주된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원래 살던 곳과 가까운 곳	정원이 다 차지 않아 빈자리가 있는 곳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곳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용자들의 평판이 좋은 곳	기타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60(37.0)	26(16.0)	13(8.0)	29(17.9)	23(14.2)	3(1.9)	8(4.9)	162(100.0)
19세 이상	69(29.2)	33(14.0)	24(10.2)	35(14.8)	59(25.0)	5(2.1)	11(4.7)	236(100.0)
소계	129(32.4)	59(14.8)	37(9.3)	64(16.1)	82(20.6)	8(2.1)	19(4.8)	398(100.0)

표 IV-66 입소 기간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적절하다	짧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길다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계
양육 중	165(78.6)	42(20.0)	3(1.4)	210(100.0)
양육 계획 중	47(85.5)	6(10.9)	2(3.6)	55(100.0)
양육 포기	123(92.5)	4(3.0)	6(4.5)	133(100.0)
계	335(84.2)	52(13.1)	11(2.8)	398(100.0)

주된 선택기준으로 꼽은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19세 이상 청소년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좀 더 높은 반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19세 이상 청소년들보다 미혼모를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의식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입소자 정원에 여유가 있는 곳을 선택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두 연령대 모두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19세 이상 14%, 19세 미만 16%)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원하는 시설보다는 정원에 여유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시설 입소를 위해 월 거주지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입소기간의 적절성(표 IV-66)에 대해서는 전체 입소 경험자 중 84.2%(335명)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어, 대부분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를 양육 중인 응답자들 가운데 20%가 거주 기간이 짧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시설 거주 기간은 시설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혼모자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표 IV-67 입소시설에서 받았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받은 적 없다	모름/ 무응답	계
자립지원	6(1.5)	17(4.3)	188(47.2)	69(17.3)	117(29.4)	1(0.3)	398(100.0)
교양/문화	10(2.5)	30(7.5)	177(44.5)	100(25.1)	78(19.6)	3(0.8)	398(100.0)
자녀양육지원	11(2.8)	21(5.3)	179(45.0)	92(23.1)	92(23.4)	2(0.5)	398(100.0)
심리/상담	11(2.8)	36(9.0)	205(51.5)	95(23.9)	49(12.3)	2(0.5)	398(100.0)
산전후 관리	8(2.0)	22(5.5)	190(47.7)	107(26.9)	70(17.6)	1(0.3)	398(100.0)
성교육	14(3.5)	19(4.8)	173(43.5)	65(16.3)	124(31.2)	3(0.8)	398(100.0)
의료 서비스	7(1.8)	12(3.0)	180(45.2)	154(38.7)	44(11.1)	1(0.3)	398(100.0)
법률지원	13(3.3)	16(4.0)	133(33.4)	47(11.8)	185(46.5)	4(1.0)	398(100.0)

하고 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모자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보호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기준에 부합될 경우 최장 1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3년은 결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퇴소 이전에 각 기관 및 시설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입소시설에서 받았던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IV-67), 지원을 받았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이 설문결과에서 이들이 시설에 거주하면서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받지 않은 것이 이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둘 중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설에 거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숙식(거주지)제공(52%), 법률 및 의료지원과 같은 지원서비스(15.3%), 비밀보장(13.6%) 등을 주로 언급하였으며,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외출제한(27.1%), 입소자들과의 관계(14.3%), 내키지 않은 프로그램 참석(12.3%), 개인생활 부족(12.3%) 등을 주로 언급하였다. 입소자들과의 관계나 개인생활 부족 등은 단체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외출 제한이나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석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체로 시설 거주 경험에 대해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IV-68 퇴소 후 간 곳 (갈 예정인 곳) 단위: 명(%)

		부모님 집	자립	미결정	다른 거주 시설	아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	친구/선후배 집	기타	계
양 육 중	19세 미만	27(29.0)	18(19.4)	19(20.4)	13(14.0)	13(14.0)	2(2.2)	1(1.1)	93(100.0)
	19세 이상	47(27.3)	52(30.2)	30(17.4)	21(12.2)	17(9.9)	3(1.7)	2(1.2)	172(100.0)
	소계	74(27.9)	70(26.4)	49(18.5)	34(12.8)	30(11.3)	5(1.9)	3(1.1)	265(100.0)
양 육 포 기	19세 미만	53(76.8)	7(10.1)	5(7.2)	1(1.4)	1(1.4)	0(0.0)	2(2.9)	69(100.0)
	19세 이상	28(43.8)	19(29.7)	9(14.1)	1(1.6)	3(4.7)	2(3.1)	2(3.1)	64(100.0)
	소계	81(60.9)	26(19.5)	14(10.5)	2(1.5)	4(3.0)	2(1.5)	4(3.0)	133(100.0)
계		155(38.9)	96(24.1)	63(15.8)	36(9.0)	34(8.5)	7(1.8)	7(1.8)	398(100.0)

시설 퇴소 후의 거주지에 대해 응답결과는 연령 및 자녀양육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IV-68),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청소년 한부모들(26.4%)중에는 양육을 포기한 이들(19.5%)에 비해 자립하고자 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양육을 포기한 청소년들(60.9%)중에는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들(27.9%)에 비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들 중에는 양육을 포기한 이들에 비해 아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비율이나 미결정 비율도 높았다. 이처럼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하거나 미결정, 아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에게 주거지 마련이 절실한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원가정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 중 하나이다.

한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은 입소하지 않은 이유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IV-69). 이는 앞서 입소 시설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숙식(거주지)제공이었다는 응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들이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임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을 결정할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양육을 포기한 이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자녀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지원에는 주거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학업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업 지속여부를 살펴본 결과(표 IV-70),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30.6%에 불과하였다. 이 중 19세 미만의 경우를 보면 51.4%가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업을 지속여부는 양육 중(55.9%)인 경우가 포기(52.8%)한 경우보다 오히려 다소

표 IV-69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공동 생활이 힘들어서	입소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입소 절차가 까다로워	나 혼자 생활 할 수 있어서	입소 시설에 빈자리가 없어서	아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친구나 친지 집에 있을 수 있어서	모름/무응답	계
19세 미만	5(38.5)	2(15.4)	1(7.7)	2(15.4)	1(7.7)	0(0.0)	1(7.7)	1(7.7)	0(0.0)	13(100.0)
19세 이상	21(45.7)	7(15.2)	5(10.9)	2(4.3)	3(6.5)	3(6.5)	2(4.3)	1(2.2)	2(4.3)	46(100.0)
계	26(44.1)	9(15.3)	6(10.2)	4(6.8)	4(6.8)	3(5.1)	3(5.1)	2(3.4)	2(3.4)	59(100.0)

표 IV-70 **학업 지속 여부** 단위: 명(%)

구분		학업 지속	학업 중단	계
양육 중	19세 미만	38(55.9)	30(44.1)	68(100.0)
	19세 이상	33(17.0)	161(83.0)	194(100.0)
	계	71(27.1)	191(72.9)	262(100.0)
양육 계획 중	19세 미만	14(40.0)	21(60.0)	35(100.0)
	19세 이상	4(16.7)	20(83.3)	24(100.0)
	계	18(30.5)	41(69.5)	59(100.0)
양육 포기	19세 미만	38(52.8)	34(47.2)	72(100.0)
	19세 이상	13(20.3)	51(79.7)	64(100.0)
	계	51(37.5)	85(62.5)	136(100.0)
계		140(30.6)	317(69.4)	457(100.0)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 계획 중인 경우는 40%만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을 계획 중인 경우에 학업 지속 비율이 낮은 것은 현재 임신 중이어서 잠정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받고 있는 교육 유형을 살펴 본 결과(표 IV-71), 19세 미만의 경우는 검정고시 학원(22.2%)을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 정규학교는 15.6%만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신을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비율이 낮은 것이 임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학업 중단자들에게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 및 출산 때문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IV-72), 전체 응답자의 78.9%, 19세 미만 청소년들 중에는 63.5%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가 임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이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72.6%, 19세 미만의 경우 60%가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응답하여 학업중단 후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표 IV-71 **현재 받고 있는 교육 유형** 단위: 명(%)

구분	일반 정규학교	검정고시 학원	독학	대안학교	원격교육	기타	계
19세 미만	14(15.6)	20(22.2)	16(17.8)	14(15.6)	9(10.0)	17(18.8)	90(100.0)
19세 이상	17(34.0)	9(18.0)	9(18.0)	1(2.0)	6(12.0)	8(16.0)	50(100.0)
소계	31(22.1)	29(20.7)	25(17.9)	15(10.7)	15(10.7)	25(17.9)	140(100.0)

표 IV-72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임신 및 출산 때문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19세 미만	31(36.5)	54(63.5)	85(100.0)
19세 이상	36(15.5)	196(84.5)	232(100.0)
계	67(21.1)	250(78.9)	317(100.0)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는 학업중단이 임신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가능성을 높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36.5%가 임신 및 출산이 학업 중단의 주된 이유라고 답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신과 출산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학업 중단의 사유가 되고 있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선 학교 현장의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 그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표 IV-73),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 둔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35.8%, 19세 미만 청소년 중에는 48.4%로 나타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임신사실이 알려져 학교(교사)의 징계나 강요 때문에 강제로 그만 둔 경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이 학생이 재학 중 임신하면 퇴학을 시키는 학칙을 개정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과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정책을 마련(연합뉴스, 2012.8.29)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졸업미만의 학력을 가진 학업 중단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학업계획을 질문한 결과(표 IV-74),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표 IV-73 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임신사실이 주위에 알려질까 봐 스스로 그만 둠	부모님이나 가족의 권유로 그만 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몸조리를 위해 스스로 그만둠	주위로 부터의 차별이나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교사)의 징계나 강요 때문에 강제로 그만 둠	계
19세 미만	15(48.4)	5(16.1)	4(12.9)	1(3.2)	3(9.7)	3(9.7)	0(0.0)	31(100.0)
19세 이상	9(25.0)	7(19.4)	5(13.9)	7(19.4)	3(8.3)	2(5.6)	3(8.3)	36(100.0)
계	24(35.8)	12(17.9)	9(13.4)	8(11.9)	6(9.0)	5(7.5)	3(4.5)	67(100.0)

구분	학업 지속의지 없음	정규 학교	원격 교육 이용	대안 학교에서 학력취득	대안 학교 후 검정고시	독학, 학원 수강 후 검정 고시	고민 중	취업을 위한 공부	계
19세 미만	8(3.1)	8(13.1)	5(8.2)	1(1.6)	4(6.6)	22(36.1)	12(19.7)	1(1.6)	61(100.0)
19세 이상	12(27.3)	4(9.1)	3(6.8)	1(2.3)	3(6.8)	12(27.3)	9(20.5)	0(0.0)	44(100.0)
계	20(19.0)	12(1.4)	8(7.6)	2(1.9)	7(6.7)	34(32.4)	21(20.0)	1(1.0)	105(100.0)

학업 중단자 10명 중 8명은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지속 방법으로는 독학이나 학원 수강 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마도 육아 등의 문제로 주간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업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력취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원격교육 등과 같이 다양한 학력 취득 방법에 대한 지원 및 홍보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들(2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45%, 9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출산 및 육아로 학업을 지속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30%, 6명)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청소년들 간에는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19세 미만의 경우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62.5%, 5명)이라는 응답이 형편이 되지 않아서(25%, 2명)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던 반면, 19세 이상의 경우는 그 비율이 같았다(각 33.3%, 4명).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는 직업 훈련 및 취업을 통해 자립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④ 직업 훈련

임신이나 출산 이후 정규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표 IV-75), 응답자의 24.7%가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 중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24.3%로 나타났으며, 특히 19세 미만 학업 중단자의 직업훈련 경험자들은 16.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어린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훈련받은 내용은 다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표 IV-75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학업 지속	19세미만	21(23.3)	69(76.7)	90(100.0)
	19세이상	15(30.0)	35(70.0)	50(100.0)
	소계	36(25.7)	104(74.3)	140(100.0)
학업 중단	19세미만	14(16.5)	71(83.5)	85(100.0)
	19세이상	63(27.2)	169(72.8)	232(100.0)
	소계	77(24.3)	240(75.7)	317(100.0)
계		113(24.7)	344(75.3)	457(100.0)

네일아트 및 피부관리를 포함한 미용(17명),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15명), 간호조무사(13명) 교육을 받은 경우가 제일 많았다.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113명중 13명(11.5%)에 불과했으며, 6개월 이상이 15%(17명),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미만이 48.7%(55명)로 직업훈련 경험자 대부분이 단기간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의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유경험자 중 78.8%(89명)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2%(24명)였다(표 IV-76).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25%, 6명) 관련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20.8%, 5명), 훈련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20.8%, 5명)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더불어 응답자의 대부분(19세 미만 94.3%, 19세 이상 91%)이 직업훈련 비용을 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IV-77),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받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31.4%), 원래 하던 일이나 공부가 있어서란 응답을 제외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20.9%)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와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훈련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76 직업 훈련(교육)이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별 도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계
19세 미만	12(34.3)	17(48.6)	4(11.4)	2(5.7)	35(100.0)
19세 이상	24(30.8)	36(46.2)	13(16.7)	5(6.4)	78(100.0)
계	36(31.9)	53(46.9)	17(15.0)	7(6.2)	113(100.0)

표 IV-77 직업 훈련(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정보가 없어서	원하는 분야가 없어서	받고 싶지 않아서	출산 및 육아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원래 하던 일이나 공부가 있어서	기타	계
19세 미만	37(26.4)	9(6.4)	24(17.1)	29(20.7)	5(3.6)	31(22.1)	5(3.6)	140(100.0)
19세 이상	35(17.2)	11(5.4)	18(8.8)	79(38.5)	8(3.9)	46(22.5)	7(3.4)	204(100.0)
계	72(20.9)	20(5.8)	42(12.2)	108(31.4)	13(3.8)	77(22.4)	12(3.5)	344(100.0)

또한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훈련내용에 대해 알아 본 결과, 네일아트 및 피부관리를 포함하여 미용관련 분야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33명), 제과제빵, 바리스타, 요리 등 식음료 관련 분야(20명), 간호조무사(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희망분야는 이들이 접해 본 영역 내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⑤ 취업

청소년 한부모들 중 현재 취업(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5.1%에 불과하였다(표 IV-78). 한편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표 IV-78 현재 일(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일자리 찾음	찾지 않음	소계		
19세 미만	양육 중	8(11.8)	17(8.3)	43(71.7)	60(100.0/88.2)	68(100.0)
	양육 계획	0(0.0)	8(22.9)	27(77.1)	35(100.0/100.0)	35(100.0)
	양육 포기	1(1.4)	16(22.5)	55(77.5)	71(100.0/98.6)	72(100.0)
	소계	9(5.1)	41(24.7)	125(75.3)	166(100.0/94.9)	175(100.0)
19세 이상	양육 중	50(25.8)	53(36.8)	91(63.2)	144(100.0/74.2)	194(100.0)
	양육 계획	1(4.2)	4(17.4)	19(82.6)	23(100.0/95.8)	24(100.0)
	양육 포기	2(3.1)	24(38.7)	38(61.3)	62(100.0/96.9)	64(100.0)
	소계	53(18.8)	81(35.4)	148(64.6)	229(100.0/81.2)	282(100.0)
계	62(13.6)	122(30.9)	273(69.1)	395(100.0/86.4)	457(100.0)	

표 IV-79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근무 조건이 맞지 않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음	학력, 자격이 맞지 않음	취업 정보의 부족	나이가 맞지 않음	취업 준비 시간 부족	보수가 맞지 않음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력 부족	적성에 맞지 않음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음	기타	계
19세 미만	7(17.1)	6(14.6)	6(14.6)	3(7.3)	11(26.8)	3(7.3)	1(2.4)	1(2.4)	0(0.0)	0(0.0)	1(2.4)	2(4.9)	41(100.0)
19세 이상	22(27.2)	23(28.4)	7(8.6)	9(11.1)	0(0.0)	5(6.2)	4(4.9)	4(4.9)	3(3.7)	3(3.7)	0(0.0)	1(1.2)	81(100.0)
계	29(23.8)	29(23.8)	13(10.7)	12(9.8)	11(9.0)	8(6.6)	5(4.1)	5(4.1)	3(2.5)	3(2.5)	1(0.8)	3(2.5)	122(100.0)

있는 경우는 양육을 계획 중이거나 포기한 경우보다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을 높았다.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은 19세 이상인 경우 35.4(81명)%, 19세 미만인 경우 24.7%(41명)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는 비율은 19세 미만의 경우는 자녀양육 여부에 상관없이 약 71~77%의 비율을 보인 반면, 19세 이상에서는 양육 계획 중인 경우(82.6%)가 그렇지 않은 경우(약 61~63%)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양육 계획 중인 이들이 현재 임신 중이어서 일자리 찾기를 잠시 미루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결과(표 IV-79),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19세 미만의 경우는 나이가 맞지 않아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26.8%)이, 19세 이상의 경우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28.4%)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두 집단 모두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19세 미만 17.1%, 19세 이상 27.2%).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나이가 맞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최저 연령(15세 미만인자)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제한 기준과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표 IV-80 현재 고용형태

단위: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19세 미만	3(33.3)	6(66.7)	9(100.0)
19세 이상	25(47.2)	28(52.8)	53(100.0)
계	28(45.2)	34(54.8)	62(100.0)

표 IV-81 하루 평균 근로시간 및 평균 근로일수(주중) 단위: 명(%)

시간	7시간 이하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상	무응답	계
19세 미만	2(22.2)	1(11.1)	2(22.2)	0(0.0)	3(33.3)	1(11.1)	9(100.0)
19세 이상	11(20.9)	22(41.5)	10(18.9)	5(9.4)	5(9.5)	0(0.0)	53(100.0)
계	13(20.8)	23(37.1)	12(19.4)	5(8.1)	8(12.9)	1(1.6)	62(100.0)
일	1일	2일	3일	4일	5일	무응답	계
19세 미만	0(0.0)	1(11.1)	0(0.0)	0(0.0)	7(77.8)	1(11.1)	9(100.0)
19세 이상	7(13.2)	0(0.0)	2(3.8)	2(3.8)	41(77.4)	1(1.9)	53(100.0)
계	7(11.3)	1(1.6)	2(3.2)	2(3.2)	48(77.4)	2(3.2)	62(100.0)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용 금지 조항(동법 제65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력까지 낮음으로 인해 소위말해 ‘괜찮은’ 일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들 62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일하는 직종은 편의점을 비롯한 상점에서의 판매직(15명)이었으며, 그 외에 경리, 미용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이들도 각 5명 이상이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45.2%,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54.8%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컸다(표 IV-80). 즉, 19세 이상인 경우 47.2%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19세 미만인 경우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33.3%에 불과하였다. 이들의 근로시간을 보면(표 IV-81), 하루 2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평균 8.2시간씩 주당 4.4일을 일하고, 주말에는 하루 평균 3.4시간씩 주당 0.6일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에는 17.7%(11명)가 하루, 12.9%(8명)가 이틀을 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0%(13명)가 주말에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82 현재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저임금	장시간 근로	직업의 불안정성	신체적 피로	자녀양육 및 집안일 소홀	자녀 돌보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 점 없음	모름/무응답	기타	전체
정규직	5(17.9)	3(10.7)	2(7.1)	1(3.6)	7(25.0)	9(32.1)	1(3.6)	0(0.0)	0(0.0)	28(100.0)
비정규직	8(23.5)	2(5.9)	4(11.8)	5(14.7)	8(23.5)	3(8.8)	2(5.9)	1(2.9)	1(2.9)	34(100.0)
계	13(21.0)	5(8.1)	6(9.7)	6(9.7)	15(24.2)	12(19.4)	3(4.8)	1(1.6)	1(1.6)	62(100.0)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자녀양육과 집안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4.2%), 저임금(21.0%), 자녀 돌봐 주는 사람구하기(19.4%) 순으로 나타났다(표 IV-82).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변의 도움 없이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⑥ 경제상황

현재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항목별 가구 소득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지 알아 본 결과(표 IV-83),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자녀양육별로 살펴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22.1%인 것에 반해 자녀양육을 계획 중이거나 포기한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근로 소득의 평균액수는 약 88만원이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지원 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IV-84), 원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전체 양육모의 28.3%로 나타났으며, 평균 지원 액수는 26만원에 가까웠다. 아이 아버지로부터의 지원³⁰⁾은 양육모 중 14.5%만이 지원이

표 IV-83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있다/평균(만원)	없다	모름/무응답	계
양육 중	19세 미만	7(10.3) / 81.43	61(89.7)	0(0.0)	68(100.0)
	19세 이상	51(26.3) / 89.10	142(73.2)	1(0.5)	194(100.0)
	소계	58(22.1) / 88.14	203(77.5)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19세 미만	0(0.0) / 0.00	35(100.0)	0(0.0)	35(100.0)
	19세 이상	1(4.2) / 100.00	23(95.8)	0(0.0)	24(100.0)
	소계	1(1.7) / 100.00	58(98.3)	0(0.0)	59(100.0)
양육 포기	19세 미만	1(1.4) / 10.00	69(95.8)	2(2.8)	72(100.0)
	19세 이상	4(6.3) / 105.00	60(93.8)	0(0.0)	64(100.0)
	소계	5(3.7) / 86.00	129(94.9)	2(1.5)	136(100.0)
계	19세 미만	8(4.6) / 72.50	165(94.3)	2(1.1)	175(100.0)
	19세 이상	56(19.9) / 90.48	225(79.8)	1(0.4)	282(100.0)
	소계	64(14.0) / 88.16	390(85.3)	3(0.7)	457(100.0)

30) 38명이 아이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앞서 아이 아버지와 따로 사는 경우 18명이 현재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다, 10명이 받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끊어졌다, 3명이 최근에 받기 시작했다고 한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현 응답에서 아이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84 소득 지원 여부(양육모만)

단위: 명(%)

구분		있다/평균(만원)	없다	모름/무응답	계
원가족	19세 미만	20(35.7) / 25.68	36(64.3)	0(0.0)	56(100.0)
	19세 이상	38(25.5) / 26.11	110(73.8)	1(0.7)	149(100.0)
	소계	58(28.3) / 25.96	146(71.2)	1(0.5)	205(100.0)
아이 아버지(가족)	19세 미만	14(20.6) / 36.07	54(79.4)	0(0.0)	68(100.0)
	19세 이상	24(12.4) / 46.84	169(87.1)	1(0.5)	194(100.0)
	소계	38(14.5) / 42.27	223(85.1)	1(0.4)	262(100.0)
정부	19세 미만	51(75.0) / 36.37	17(25.0)	0(0.0)	68(100.0)
	19세 이상	160(82.5) / 37.69	34(17.5)	0(0.0)	194(100.0)
	소계	211(80.5) / 37.36	51(19.5)	0(0.0)	262(100.0)
사회 단체	19세 미만	22(32.4) / 18.13	46(67.6)	0(0.0)	68(100.0)
	19세 이상	59(30.4) / 11.26	133(68.6)	2(1.0)	194(100.0)
	소계	81(30.9) / 12.92	179(68.3)	2(0.8)	262(100.0)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지원액수는 약 42만원이었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양육모의 80%가 받고 있었는데, 평균 지원 액수는 약 3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전체 양육모의 30.9%였으며, 이들에 대한 평균 지원 액수는 약 13만원이었다. 이를 모두 합하여 이들의 한 달 평균 소득액을 합산해 본 결과, 양육모의 한 달 평균 소득은 68.02만원(19세 미만의 경우는 60.18만원, 19세 이상은 70.8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하기에 결코 충분한 액수라고 할 수 없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소득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저축 및 부채 여부를 알아본 결과, 양육모의 40.1%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월 평균 저축액은 20.94만원(19세 미만의 경우는 16.03만원, 19세 이상은 22.86만원)이었다. 부채의 경우는 양육모의 21.4%가 빚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부채 액수는 633.69만원(19세 미만의 경우는 350만원, 19세 이상은 657.83만원)이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실태

청소년 한부모들이 정부에서 지원 및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또

표 IV-85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출산 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¹⁾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19세 미만	92(82.1)	20(17.9)	0(0.0)	112(100.0)
	19세 이상	198(86.8)	29(12.7)	1(0.4)	228(100.0)
	계	290(85.3)	49(14.4)	1(0.3)	340(100.0)
출산비 지원	19세 미만	94(83.9)	18(16.1)	0(0.0)	112(100.0)
	19세 이상	185(81.1)	41(18.0)	2(0.9)	228(100.0)
	계	279(82.1)	59(17.4)	2(0.6)	340(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9세 미만	54(48.2)	58(51.8)	0(0.0)	112(100.0)
	19세 이상	97(42.5)	129(56.6)	2(0.9)	228(100.0)
	계	151(44.4)	187(55.0)	2(0.6)	340(100.0)

1)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만 포함

수혜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계획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여부를 살펴보았다.

① 출산지원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표 IV-85), 출산 관련 지원은 비교적 인지도 및 수혜율이 높았으나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에 대해서는 80%가 넘는 이들이 안다고 응답하였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44.4%만이 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출산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표 IV-86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출산 지원제도 수혜 여부¹⁾

단위: 명(%)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248(85.5)	39(13.4)	3(1.0)	290(100.0)
출산비 지원	239(85.7)	35(12.5)	5(1.8)	279(100.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1(27.2)	110(72.8)	0(0.0)	151(100.0)

1)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각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포함

수혜여부를 알아 본 결과(표 IV-86), 출산 전 진료비 및 출산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85% 이상이었으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7.2%에 불과하였다.

②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 대상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IV-87), 전반적으로 지원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특히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지원은 90.1%, 3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86.6%,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 지원과 아이 돌보미제도는 각각 84.4%, 생필품비 지원은 82.4%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양육을 계획 중인 이들은 지원정책에 따라 44.1%~64.4%가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표 IV-87 양육 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영유아 보육료/학비 (만 0~5세) 지원	양육 중	236(90.1)	25(9.5)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30(50.8)	29(49.2)	0(0.0)	59(100.0)
	계	266(82.9)	54(16.8)	1(0.3)	321(100.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6개월 미만) 양육수당지원	양육 중	227(86.6)	33(12.6)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26(44.1)	33(55.9)	0(0.0)	59(100.0)
	계	253(78.8)	66(20.6)	2(0.6)	321(100.0)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월 15만원)	양육 중	221(84.4)	39(14.9)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28(47.5)	31(52.5)	0(0.0)	59(100.0)
	계	249(77.6)	70(21.8)	2(0.6)	321(100.0)
아이 돌보미	양육 중	221(84.4)	40(15.3)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27(45.8)	32(54.2)	0(0.0)	59(100.0)
	계	248(77.3)	72(22.4)	1(0.3)	321(100.0)
생필품비 (분유, 기저귀 비용 등) 지원	양육 중	216(82.4)	45(17.2)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38(64.4)	21(35.6)	0(0.0)	59(100.0)
	계	254(79.1)	66(20.6)	1(0.3)	321(100.0)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양육 중	149(56.9)	112(42.7)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23(39.0)	36(61.0)	0(0.0)	59(100.0)
	계	172(53.6)	148(46.1)	1(0.3)	321(100.0)

표 IV-88 양육 지원제도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영유아 보육료/학비지원 ¹⁾	134(57.0)	96(40.9)	5(2.1)	235(100.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²⁾	91(72.2)	32(25.4)	3(2.4)	126(100.0)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132(59.7)	86(38.9)	3(1.4)	221(100.0)
아이 돌보미	80(36.2)	137(62.0)	4(1.8)	221(100.0)
생필품비 지원	178(82.4)	35(16.2)	3(1.4)	216(100.0)
친자확인/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12(5.9)	187(91.2)	6(2.9)	205(100.0)

- 1) 2007년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포함
- 2)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만 포함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는 56.9%, 자녀양육을 계획 중인 경우는 39%만이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인지도가 높다고 수혜율도 높은 것은 아니었다. 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양육모들을 대상으로 수혜율을 알아본 결과(표 IV-88), 생필품비 지원 수혜율이 가장 높아 82.4%(176명)가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둔 한부모 126명을 대상으로 3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여부를 알아 본 결과, 72.2%(91명)가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하여 두 번째로 높은 수혜율을 보였다. 한편 각 지원제도를 아는 양육모 중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월 15만원은 59.7%, 5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는 57%가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 돌보미제도는 36.2%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 이행소송 지원을 받은 경우는 매우 낮아 그 제도를 알고 있는 이들 중 5.9%만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제외한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표 IV-89). 청소년 고교생 교육비 지원의 경우는 양육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는 안다는 응답이 모른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았으나, 양육계획 중인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89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지원	양육 중	202(77.1)	59(22.5)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33(55.9)	26(44.1)	0(0.0)	59(100.0)
	계	235(73.2)	85(26.5)	1(0.3)	321(100.0)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지원	양육 중	137(52.3)	123(46.9)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22(37.3)	37(62.7)	0(0.0)	59(100.0)
	계	159(49.5)	160(49.8)	2(0.6)	321(100.0)
자립촉진수당	양육 중	95(36.3)	165(63.0)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11(18.6)	48(81.4)	0(0.0)	59(100.0)
	계	106(33.0)	213(66.4)	2(0.6)	321(100.0)
자산형성계좌지원	양육 중	94(35.9)	166(63.4)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4(6.8)	55(93.2)	0(0.0)	59(100.0)
	계	98(30.5)	221(68.8)	2(0.6)	321(100.0)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대여	양육 중	76(29.0)	184(70.2)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10(16.9)	49(83.1)	0(0.0)	59(100.0)
	계	86(26.8)	233(72.6)	2(0.6)	321(100.0)

또한 이 같은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양육모들 중에도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보다는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표 IV-90). 특히 저소득 복지자금 대여제도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그 수혜율이 매우 낮았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렇게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율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도 수혜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이 쉽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성도 따른 것으로도 판단된다.

표 IV-90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제도 수혜 여부¹⁾ 단위: 명(%)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58(28.7)	142(70.3)	2(1.0)	202(100.0)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13(9.5)	122(89.1)	2(1.5)	137(100.0)
자립촉진수당	38(40.0)	57(60.0)	0(0.0)	95(100.0)
자산형성계좌 지원	25(26.6)	68(72.3)	1(1.1)	94(100.0)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4(5.3)	71(93.4)	1(1.3)	76(100.0)

1)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들 중 각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포함

표 IV-91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주거 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양육 중	116(44.3)	143(54.6)	3(1.1)	262(100.0)
	양육 계획 중	17(28.8)	42(71.2)	0(0.0)	59(100.0)
	계	133(41.4)	185(57.6)	3(0.9)	321(100.0)
임대(국민/영구)주택 지원	양육 중	172(65.6)	88(33.6)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22(37.3)	37(62.7)	0(0.0)	59(100.0)
	계	194(60.4)	125(38.9)	2(0.6)	321(100.0)
복지시설 입소	양육 중	235(89.7)	26(9.9)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46(78.0)	13(22.0)	0(0.0)	59(100.0)
	계	281(87.5)	39(12.1)	1(0.3)	321(100.0)

④ 주거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표 IV-91),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 계획 중인 이들 중 주거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제도별로 차이가 있었다. 복지 시설 입소제도는 8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임대주택 지원은 60.4%,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41.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각 지원제도에 대한 수혜여부를 알아 본 결과(표 IV-92), 복지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68.5%로 비교적 많은 수가 제도를 이용하였지만,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지원을 받은 이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양육모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 입소를 제외한 주거 지원제도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V-92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주거 지원제도 수혜 여부¹⁾

단위: 명(%)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¹⁾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5(4.3)	110(94.8)	1(0.9)	116(100.0)
임대(국민/영구)주택 지원	11(6.4)	159(92.4)	2(1.2)	172(100.0)
복지시설 입소	161(68.5)	71(30.2)	3(1.3)	235(100.0)

1)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모들 중 각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포함

표 IV-93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의료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모름/무응답	계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보험료 지원 인지도	양육 중	173(66.0)	88(33.6)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30(50.8)	29(49.2)	0(0.0)	59(100.0)
	계	203(63.2)	117(36.5)	1(0.3)	321(100.0)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무응답	계
의료 지원제도 수혜율	계	132(65.0)	66(32.5)	5(2.5)	203(100.0)

⑤ 의료지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양육할 계획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2%였으며, 그 중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65%로 나타났다(표 IV-93).

표 IV-94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기타 생활 지원제도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안다	모른다	무응답	계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양육 중	154(58.8)	106(40.5)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28(47.5)	31(52.5)	0(0.0)	59(100.0)
	계	182(56.7)	137(42.7)	2(0.6)	321(100.0)
심리상담 서비스	양육 중	138(52.7)	123(46.9)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25(42.4)	34(57.6)	1(0.0)	59(100.0)
	계	163(50.8)	157(48.9)	1(0.3)	321(100.0)
저소득 가구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양육 중	131(50.0)	130(49.6)	1(0.4)	262(100.0)
	양육 계획 중	6(19.2)	53(89.8)	0(0.0)	59(100.0)
	계	137(42.7)	183(57.0)	1(0.3)	321(100.0)
공공요금 감면	양육 중	136(51.9)	124(47.3)	2(0.8)	262(100.0)
	양육 계획 중	16(27.1)	43(72.9)	0(0.0)	59(100.0)
	계	152(47.4)	167(52.0)	2(0.6)	321(100.0)
기초생활수급	양육 중	242(92.4)	17(6.5)	3(1.1)	262(100.0)
	양육 계획 중	44(74.6)	15(25.4)	0(0.0)	59(100.0)
	계	286(89.1)	32(10.0)	3(0.9)	321(100.0)

표 IV-95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기타 생활 지원제도 수혜 여부¹⁾

단위: 명(%)

구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모름/무응답	계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98(53.8)	81(44.5)	3(1.6)	182(100.0)
심리상담 서비스	100(61.3)	57(35.0)	6(3.7)	163(100.0)
저소득 가구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78(56.9)	58(42.3)	1(0.7)	137(100.0)
공공요금 감면	81(53.3)	67(44.1)	4(2.6)	152(100.0)
기초생활수급 ²⁾	136(47.6)	148(51.7)	2(0.7)	286(100.0)

1)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현재 양육모들 중 각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포함

2) 양육 중인 경우는 총 월 소득 90만 원 이하, 양육 계획 중인 경우는 총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인 가구만 포함

⑥ 기타 생활지원

기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표 IV-94),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89.1%)이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심리상담 서비스, 저소득 가구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공공요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은 지원제도에 따라 42~57%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은 지원대상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이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생활지원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각 지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제도에 따라 42~62%로 혜택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5).

3) 소결

청소년 한부모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 임신과정을 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성경험을 갖게 되지만 성과 임신에 대한 지식과 준비 부족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중 상황도 크게 좋지 못했는데, 조사 참여자들은 임신 중 본인 및 태아의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임신 중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19세 미만인 경우가 19세 이상인 경우보다 임신 중 환경이 더 열악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대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임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나 입양 권유, 연락 끊김 등 책임

회피적 반응을 보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불법낙태로 귀결되고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시술은 모자보건법상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불법과 위험을 무릅쓰고 여전히 낙태를 감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낙태 결정에 있어서 상대남성과 자신의 결정이 가장 주요했다는 응답이 많은 19세 이상과 달리 19세 미만에서는 자신보다는 부모님과 상대 남성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응답이 많아 미성년자의 경우 낙태결정에 있어서 보호자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낙태 후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경험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낙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정서조절능력 및 낙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우울의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낙태가 신체 및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임신과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키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입양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양 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이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적어 입양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자녀에 대한 애정과 책임의식이 한부모가 양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8명은 본인이 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있어 학업이나 근로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시 자녀양육 지원사업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양육비지원 등 아이 아빠가 부분적으로나마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이는 아이 아빠가 양육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한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부모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양육 중인 한부모의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자신감이 있고, 육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스트레스 외에 집안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비록 소수이지만 육아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위한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부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지와 관련하여 설문 참여자들은 70%가 넘게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12%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소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은 한정적이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양육을 결정할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되돌아가는 비율이 낮은 만큼 자녀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지원에는 주거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립에 중요한 학업 및 직업훈련의 정도, 취업 여부를 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미만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직업 훈련을 충분히 받았거나 취업 중인 경우가 드물었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자립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나이 어린 양육모의 경우는 양육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제한 이외에도 낮은 학력,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령제한 기준과 더불어 임신부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동법 제65조)에 해당되어 소위 말하는 ‘괜찮은’일자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 및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수혜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지원이나 청소년 한부모 양육지원 제도 중 양육비 지원과 돌보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다고 수혜율도 높은 것은 아니어서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이들 중 아이돌보미 제도와 영유아 보육료 및 학비,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36~60%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 복지자금 대여제도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그 수혜율도 매우 낮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렇게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혜율이 낮은 것은 부분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진입장벽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도수혜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이 쉽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도 판단된다.

2.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심층면접조사

1) 조사 개요

질적연구의 대상은 먼저 청소년 한부모이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지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면접조사 대상은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양육, 시설입소/재가 등으로 나누어 총 35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심층면접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에 대해서도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청소년 자녀가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경험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부모가 바라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 경험하는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부모들의 면접거부와 표집의 어려움으로 현재 재가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면접참여자에 대한 표집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연령과 이들의 상황별 집단유형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유의표집은 한국한부모가족협회 등 관련기관 협조를 얻거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면접참여 지원신청을 받은 후, 눈덩이 표집(snowballing)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면접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범주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9세를 기준으로 19세 미만 청소년과 19세 이상 청소년으로 구별하여 표집하였다. 이와 같이 19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별한 것은 19세가 교육제도 측면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이며,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들이 겪는 19세 미만과 19세 이상의 경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의 의견을 고르게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유의표집한 청소년 한부모 면접참여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는 표 IV-96과 같다. 표 IV-96을 보면 총 면접 청소년 35명 중 19세 이상은 18명이고 19세 미만은 17명이며, 이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을 하고 있는(출산 후 양육을 할 예정인 3사례 포함) 경우는 25명이고, 10명은 입양을 보낸(혹은 보낼 예정) 경우였다.³¹⁾ 또한 이들 중 18명은 부모의 집이나 혹은 독립하여 자신의

표 IV-96 청소년 한부모 면접참여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

집단별	범주	사례 수	부모 사례 수
미혼모	19세 미만	17	
	19세 이상	18	2
양육/비양육	양육	25	2
	비양육	10	
시설입소*/재가	재가	18	2
	시설	17	

N = 청소년 한부모 사례 수: 35,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사례 수: 2

* 시설엔 모자복지시설과 소년원이 포함됨.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17명은 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소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자와 면접조사원(이하 면접원)들이 진행하였다. 면접원들은 기본적으로 미혼 부모들이 겪고 있는 제반 경험들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면접참여자들이 면접과정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수용하고 다룰 수 있는 자들로서, 이전에 미혼모들에 대한 면접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한국 한부모가족협회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였고, 면접진행은 관련분야 전문가 1인과 한국한부모가족협회 회원 중 관련분야 면접 경험이 많은 6인 등 총 7명이 진행하였다. 면접원을 특정기관의 회원으로 구성한 것은, 앞서 밝혔듯이 면접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과정에서 면접참여자들을 심리적으로 보다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2개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로서, 1차년도 면접참여자들이 2차년도에서도 면접참여자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접원과 면접참여자간의 라포형성은 물론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면접원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면접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은 면접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본 연구원에서 1회 실시하였다. 이 때 면접원의 자세, 면접참여자에 대한 태도, 면접내용 및 방법, 자료기록 및 전사방법, 면접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등을 교육하였고, 그 후 연구원이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면접의 전 과정을 지도 및 감독하였다.

심층면접참여자에 대한 면접기간은 2012년 7월 25일에서 2012년 8월 21일까지였으며, 면접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에 가서 면접원이 직접 가서 진행하였고, 면접장소는 면접참여자가

31) 비양육 11사례 중 C32의 경우, 현재는 임신 중 양육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전의 두 번의 임신출산경험에서 첫 임신은 낙태를, 두 번째 임신은 출산 후 입양을 보낸 경우로서 본 심층면접에서는 입양을 보낸 사례대상자로 면접에 참여하여 비양육 범주 11명에 포함되었다.

거주하는 집이나 시설의 상담실 또는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 등이었다. 면접시간은 사례 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접과정은 면접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질문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응답자가 처한 상황과 의도하는 바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가능한 진술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다른 심층면접진행과정에 대한 개요는 표 IV-97과 같다.

2) 심층면접내용

청소년 한부모와 이들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험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다루었다. 즉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입양과정 혹은 양육과정 등 임신과 출산 및 아기의 성장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 한부모의 각 단계별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제반 경험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에 필요한 질문을 구조적/반구조적으로 구성하여,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면접참여자가 직접 응답지에 기술하게 하고, 심층문항에서는 면접원이 면접참여자의 진술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면서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추후 전사 후 녹음내용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내용분석의 분석범주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입양)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이들 부모)가 겪는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경험들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체감효과

표 IV-97 심층면접진행과정에 대한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면접참여자 표집과정	시설 및 기관 추천, 기존 면접참여자 추천, 관련기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 신청접수 등 다양한 경로 활용
면담참여자 수	- 총 37명 - 청소년 한부모: 35명(시설입소자 및 이용자, 재가 청소년 한부모 등 상황별로 표집) -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2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청소년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둔 부모
면접방식	반구조화 개별 면접
면접시간 및 횟수	1~2시간, 1회(필요시 추가 면접 실시)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면접참여자의 사전동의하에 기록 및 녹취, 전사
면접원	연구진, 면접조사원

표 IV-9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주요내용

단계		주요 면접 내용
1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1. 임신을 하게 된 배경과 인지 과정 2. 임신사실 고지 및 주변반응 3.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2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1.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제반경험과 사회적 지원 2.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3	자녀양육과정 혹은 입양 보낸 후 후적응과정	1. 자녀양육과정에서의 제반 경험과 사회적 지원(입양 보내는 과정과 이후의 적응과정) 2. 입양 보내기와 양육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평가 3. 앞으로의 계획 4. 정책제안

표 IV-99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 주요내용

단계		주요 면접 내용
1	임신에 대한 인지 및 초기대응	1. 청소년 자녀의 임신에 대한 인지과정에서 부모가 겪은 제반 경험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단계	1. 청소년 자녀의 낙태와 출산 / 아기 입양보내기와 양육사이 선택과정에서 부모가 겪은 제반 경험
3	자녀양육 단계	1. 청소년 자녀의 아기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겪은 제반 경험 2.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소망 3.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이다. 청소년 한부모와 이들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IV-98, 표 IV-99와 같다.

3) 심층면접결과

(1) 심층면접참여자의 특성

심층면접참여자는 청소년 한부모 35명과 청소년 한부모를 자녀로 둔 부모 2명 등 총 37명이다. 심층면접참여자는 사례별로 고유번호(청소년 한부모 C1~C35,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P1~P2)를 부여하였고, 이들 고유번호별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IV-100과 같다. 표 IV-100을 보면 심층면접대상 청소년은 모두 여자 청소년으로³²⁾ 이들의 연령분포는 만14세~23세이며, 이

중 28명은 아기를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이고, 7명은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청소년 한부모이다.³³⁾ 또한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현재 중학교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명이었으나, 이들 모두 학업을 중단한 상태로, 나머지 중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되는 33명의 청소년들 중에서도 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14사례나 되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에 해당되는 22명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8사례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총 35명의 청소년 한부모들 중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청소년은 22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추후 학교에 다시 복학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사례에 불과하였다. 한편 이들의 거주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서울 12명, 경기도 14명), 광주광역시(5명), 인천광역시(3명), 전라남도(1명) 등이었다.

면접당시 청소년 면접참여자들 중 24명은 임신과 출산을 처음 경험한 경우였고, 임신을 두 번 이상 경험한 경우는 모두 11사례였다. 그러나 이 중 2사례는 이전 임신의 경우 자연유산을 하였고, 3사례는 임신 후 두 번 모두 출산을 한 경우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경우는 6사례였다. 이들의 가족배경을 살펴보면 35명 중 25명의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가출을 하였으며, 나머지 사례의 경우에서도 1~2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활비 마련은 재가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으며,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가족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들 중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8사례에 불과하였는데, 이것 또한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6사례), 고정된 직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2사례 뿐 이었다.

한편 심층면접참여자 중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사례는 2명으로 모두 어머니였고(P1, P2), 모두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이 중 한 명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와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 한부모인 자녀의 생활비 마련에 부모로서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정부의 지원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P1과 P2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연령은 각각 23살과 22살이었으며, 모두 정부지원과 직장 및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32) 남자청소년 한부모도 면접대상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사례를 구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도 대부분 면접을 거부하였다.

33) C32는 현재 세 번째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전의 두 번의 출산 경험에서 낙태와 입양을 보낸 경우이다. 본 조사에서는 출산 후 입양을 보낸 사례로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다.

표 IV-100 심층면접대상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C	출생연도	거주지	거주형태	양육형태	임신경험	학력	복학희망	가족관계	1	2	3	4	5	6	7
1	1988	서울	재가	양육	1	고졸		모, 자녀	0		0	0	0		
2	1991	경기	재가	임신 중 양육	1	중퇴	희망	본인	0		0				
3	1997	경기	재가	임신 중, 입양예정	1	중재		부, 형제	0						
4	1992	서울	재가	양육	1	대재휴학	희망	부, 모, 형제			0		0		
5	1989	경기	재가	양육	2	중퇴	희망	조모, 부, 모, 형제, 자매	0		0				0
6	1990	인천	재가	양육	1	중 제적	희망	본인							0
7	1993	서울	재가	양육	1	고재		본인			0				
8	1993	서울	재가	양육	1	고재		본인			0				
9	1994	경기	재가	양육	1	중퇴		부, 모, 남매	0		0				
10	1994	서울	재가	양육	1	중퇴		부, 모, 형제, 자매	0		0				
11	1990	서울	재가	양육	1	고 제적	희망	부, 모, 자매			0				
12	1994	서울	재가	양육	1	고 제적		부, 모, 형제	0		0				
13	1992	서울	재가	양육	1	고 제적		부			0				0
14	1989	경기	재가	양육	1	대 제적		부, 모							0
15	1988	경기	재가	양육	2	고졸		모, 형제							
16	1989	경기	재가	양육	3	고졸		모			0				
17	1988	인천	재가	양육	2	고 제적		모, 자매, 이모							0
18	1992	전남	재가	양육	2	고 제적		부, 모, 자매	0						
19	1990	광주	시설	양육	1	중퇴		부, 모, 형제, 자매	0		0				
20	1991	광주	시설	양육	1	고졸		부, 모, 형제	0						
21	1993	광주	시설	양육	2	고재		부			0				
22	1992	광주	시설	임신 중 양육	1	고졸		부			0				
23	1995	광주	시설	임신 중 양육	2	중퇴		부			0				
24	1995	서울	시설	입양	1	중퇴		형제							0
25	1995	경기	시설	임신 중, 입양예정	1	고재		조모, 부, 형제	0						

C	출생연도	거주지	거주형태	양육형태	임신경험	학력	복학희망	가족관계	1	2	3	4	5	6	7
26	1989	인천	시설	비양육 입양예정	1	고졸		부, 모, 형제	0						
27	1995	서울	시설	양육	1	중퇴		부, 오빠		0					
28	1996	서울	시설	임신 중, 입양예정	1	중졸	희망	부, 모, 남여동생		0					
29	1997	서울	시설	임신 중, 입양예정	1	중재	희망	부, 모, 동생		0					
30	1994	경기	시설	입양	1	중퇴		부, 모	0						
31	1992	경기	시설	양육	4	중졸					0				
32	1994	경기	시설	입양	3	중졸		부, 모, 형제	0					0	
33	1995	경기	시설	입양	1	중퇴	희망	자매, 계모						0	
34	1992	경기	시설	양육	2	중졸	희망	부, 모, 자매	0						
35	1993	경기	시설	입양	2	중퇴		부모 각각 재혼	0						

* 표 IV-2에서 임신경험은 면접당시의 임신이나 출산경험이 포함된 숫자이며, 상단범주번호 1-7은 현재 생활비마련원 현황에 대한 것이다(1 가족지원, 2 시설지원, 3 정부지원, 4 지방자치단체 지원, 5 민간단체 지원, 6 임시직 아르바이트, 7 고정직업을 나타낸다).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결과

본 연구의 심층면접 청소년 한부모 대상자 35명 중 현재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25사례였고, 입양을 보내거나 보낼 계획이 있는 경우는 고민 중인 C26, 1사례도 포함하여 모두 10사례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출산 후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와 입양을 보낸(앞으로 보낼)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양육사례에서는 집에서 지내는 경우와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필요에 따라 19세 이상인 경우와 19세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고려하기도 하였다. 입양을 보낸(앞으로 보낼) 사례에서는 현재 대부분 시설에서 지내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서, 출산하여 입양을 보낸 경우와 현재 임신중인 상태에서 앞으로 입양을 보내려는 경우의 경험을 구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면접결과 이들이 진술한 임신과 출산 및 양육(입양보내기)과정에서 겪는 제반 경험들과 이들에게 제공된 사회적 지원내용 및 청소년 한부모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① 양육 사례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25사례이며 이 중 재가는 17명(C1, C2, C4, C5, C6, C7, C8, C9, C10, C11, C12, C13, C14, C15, C16, C17, C18)이고, 시설에서 지내는 경우는 8명(C19, C20, C21, C22, C23, C27, C31, C34)이었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8명 중 6명은 모자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었고, 나머지 두 명(C31, C34)은 산업정보학교(소년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재가양육을 하는 17명의 청소년 한부모들도 대부분 임신기간과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 동안 미혼 모자가족복지시설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퇴소한 경우였다. 한편 양육을 하는 25명의 청소년 한부모 중 19세 이상은 17명이었고, 19세 미만은 8명이었다.

가.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 임신을 하게 된 배경

현재 아기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25명의 청소년 한 부모들은 임신 당시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 있었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사례 중 임신 당시 13명이 가출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12명의 경우도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를 하거나 지방에 출장을 자주 가서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참여자들이 당시 임신을 한 연령은 15살에서 22살까지였으며,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혹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여 대부분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먼저 재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면접참여자들은 남자친구와 연애하다가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하게 되거나(C5, C14, C15, C18),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한 경우(C6, C11, C13, C16), 직장주변 가게사장과 잠시 사귀다가 임신을 한 경우(C1) 등이 있었고, 어릴 적 알던 사람과 커서 사귀다가 성관계를 갖거나(C17), 결혼을 전제로 1년 사귀다가 임신을 한 경우도 있었다(C2).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뒀고…… 알바같은거 하면서 그, 대학을 좀 미루고 지내다가 정신차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중략) 고시원 총무를 들어갔어요, 독학을 하려고. 그런데 엄마랑도 많이 싸웠고 (중략)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보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술 같은 것도 좀 입에 대고 이러다보니까……. 그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아무래도 자취하고 이러니까……. 좀 방탕하게 좀

지낸거 같아요. 치킨 시켜먹다가 치킨집 사장 알게 됐는데, 그냥 뭐, 말동무처럼 이렇게 지내다 그러다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C1)

“교회에서 만났다가 제가 회사 들어가고 거의 저희 회사로 만나러 오는 거였어요. 애기아빠가. 왔다갔다 왕래하면서 만나고, 쉬는 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만난 지 1년 좀 넘어서 아이를 가진 거 같고 그전에 알고 지낸 건 중3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알고 지낸지는…….” (C17)

재가사례 중,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두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C1, C7, C8, C9, C10), 이 중 C7은 운이 나빠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도 대부분 재가와 비슷하였는데, 19세 이상의 경우, 남자친구와 동거하다가 임신을 하거나(C19, C20) 자취나 가출을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C22, C31). 특히 C19의 경우, 남자친구 부모집에 들어가 6개월 정도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동거 초기에 C19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비난하며, 아들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애를 낳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 아빠의 아빠가 계속 애를 못 갖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 아빠나 나나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중략) 애 아빠의 아빠가 이야기를 막 해요. (중략) 어느 날 불려서 애 아빠한테 먼저 말하고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를 (따로) 부른 거예요. 니가 이 집에 산 지 얼마나 됐는데 애기를 못 갖냐고……. (중략) 그 애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몸이 안 좋아서 애를 못 갖는지 어쩌니 둘 중에 한명이 문제 있니 어쩌니 저쩌니……. (중략) 그 애 아빠가 문제가 있으면, 애 아빠 아빠가 자기랑 해서 애를 낳는 게 어떡냐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C19)

이들 중에는 사귀자마자 동거에 들어가 한 달만에 아기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C20), 가출 후 남자친구랑 인터넷으로 만나 사귀다가 임신을 한 경우도 있었다(C34).

“어,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싸이월드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피플이라는 그 곳에서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아기 아빠가 일촌을 걸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좋아서 연애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C34)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 중 19세 미만의 경우는 모두 3명으로, 남자친구와 계속 교제하다

임신을 하거나(C27), 2년 동안 남자친구와 동거하다 임신을 하거나(C23), 남자친구와 여름에 놀러가서 술 먹고 자다가 임신을 하게 된 경우였다(C21). 특히 C21은 친생모가 미혼모였고, 신생아일 때 현재의 아버지에게 입양된 경우인데, 양부모가 이혼하여 12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고 3때 아버지 집에 들어왔고, 당시 아버지는 잦은 장기 지방출장을 가서 그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 한 달씩 머무르면서 지내던 경우였다.

본 면접의 조사대상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을 했을 때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21세까지였으며, 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거나 혹은 임신 후 학교를 자퇴 또는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재가나 시설, 혹은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모두, 대부분 가정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부모 역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신사실에 대한 인지 및 당시의 심정

청소년 한부모들은 사례에 따라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매우 달랐는데, 연령이 어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임신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우가 많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엔 대부분 놀라고 당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가의 경우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들은, 초기에 생리가 나오지 않아서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C6, C4), 임신 5~6개월이 지나 태동을 느끼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C5, C13) 있었다. 또한 남자친구가 먼저 임신 상태를 느끼고 알려준 경우나(C17), 임신 5주 쯤 하혈이 돼서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C14).

“태동을 느끼고 알게 되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C5)

“6개월 쯤 알게 되었고……. 처음엔 어려서 혼란스러웠는데 초음파 보고 기뻐어요. 내 아이라는 생각에.” (C16)

“임신 5주 쯤 하혈이 나서 병원에 실러 가면서 알게 되었고……. 2, 3일간 충격……. 원래 낙태를 반대하던 입장이라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어요.” (C14)

“아기 아빠가 (나의 상태를 보고) 먼저 알고 말해줘서……. 당시 (내) 가족이랑 안 좋던 시기……. 종교적으로 생명은 소중한 거라 무조건 나아야겠다고 생각……. 피임을 안 해서 대략 예측…….” (C17)

청소년 한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당시의 심정을 다양하게 진술하였다. 대부분 처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놀라고 당황하였으나, 일부는 임신자체가 기쁘고 아기 아빠와의 결혼생활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제로 사귀고 두 번 유산 후 임신하게 되어 처음엔 놀라고 기뻐어요.” (C16)

재가청소년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생리가 나오지 않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임신사실을 인지한 후 기분이 안 좋았고,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C7, C8, C10, C12). 임신 초기가 지난 후 알게 되어 공황상태가 된 경우(C9), 애기아빠가 싫어져 헤어진 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C1).

“임신초반 때는 막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실감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정상인처럼 그냥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에서 뭐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그만큼 커 거죠. 아, 진짜 안되겠다, 이러다가 나 임신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엄마한테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C12)

“(임신한 거 알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냥 좌절됐다고 해야 되나? 애를 뭐 지우고 이런 거 떠나서 아,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 (중략) 인생 망쳤다는 기분 들었고 어, 애 아빠는 요, (중략) 저보다 열 살이 많았고 (중략) 내가 이 사람과는 이렇게 사귀고 방탕하게 지낼 수 없다 생각해서 내가 헤어지자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임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도 들고 그래서 그냥 얘기 안하고 있다가…….” (C1)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살펴보면, 이들도 대부분 임신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고 당황하였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9세 이상인 경우, 생리가 안 나오거나 몸의 변화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들 불안하고 걱정되어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남자친구의 반응이 자주 번복되어 불안한 경우(C19), 서로 너무 어리고 사귀지 얼마 안 돼 아기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C22), 이전의 낙태경험으로 인한 죄책감(C31)으로 불안한 경우들이 있었다.

“남자친구네 집에 살면서 임신 2, 3개월 때인지, 처음엔 당연히 키우려 하였으나, 아기 아빠랑 주변반응이 자주 번복되면서 갈등하게 됐어요.” (C19)

“온통세상이 깜깜해지고……. 테스트 양성 나오고 세 시간 동안 멍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C20)

“생리가 이상해져서 테스트……. 사권지 얼마 되지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둘 다 어리고(20세), 놀라고 싫었고, 걱정되었어요.” (C22)

“임신사실 알고 절망했어요. 네 번째 임신……. 두세 번째 아기 아빠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낳고 해서 그럴려고 했는데 유산되었고, 이번에도 피임약 먹었는데 남자 쪽이 돈도 안주고,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끄끙 앓았죠. 아기 지운 적도 있어서 죄책감에, 낳자 말자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C31)

“6개월 됐을 때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떠돌다 1388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테스트 권해서 알게 됐어요. 걱정, 불안, 어떻게 키워야할 지 고민이에요.” (C34)

19세 미만의 경우도, 생리가 안 나와서 테스트해보고 임신사실을 알게 되거나(C21, C27), 하혈로 인해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C23), 임신 14주 혹은 6, 7개월로 접어들어 낙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C23, C2),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하고(C21) 앞날이 걱정되어(C27), 갑갑하고 불안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 6주째 알게 되어 테스트로……. 갑갑하고 불안했어요, 이전에 낙태경험이 있어서…….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그런 상황이 되면 책임질 거라고 해서 관계 가졌는데…….” (C21)

“첫 번째 낙태 때 마취 없이 낙태하여 너무 아팠고 몸상태가……. 후유증이 컸어요. 이번에도 낙태해야 생각하니 무서워요. 이번엔 중간에 하혈을 해 유산됐는줄 알고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 임신 14주 짜라 낙태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C23)

“생리를 세 달 되도 안하는 거예요. 배도 뭔가 뱃살같이 많이 나오고……. 가끔 택시나 버스 이런 거 한 시간씩 타면 (속에서)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약국 가서 너 그것 좀 사와라 했어요. 그랬는데 두 줄인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서 아니야, 이건 임신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다시 한 번 하나 사오랬어요. 두 줄이 임신이라는 걸 보면서 '아, 나 임신했구나…….' 아이 어떡하지.” (C27)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생리가 나오지 않은 초기인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는 태동이 느껴지는 5, 6개월까지 임신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는 연령이 낮은 사례에서 더 많았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 대부분 당황하고 불안해했으나, 당시에 아기 아빠가 임신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결혼을 약속했을 때에는 임신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 임신사실에 대한 고지 및 주변 반응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이 된 사실을 맨 처음 아기 아빠인 남자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기 아빠들은 임신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부모는 대부분 낙태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양육을 하는(혹은 양육을 할) 25명의 사례 중 22명이 임신 후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16명은 임신 중에, 6명은 출산 후에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기 아빠가 아기와 엄마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4사례 뿐이며(C4, C22, C23, C27), 이들 중 3사례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가의 경우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인 경우, C1을 제외하곤 모두 아기 아빠에게 임신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것으로 진술하였다. C1은 아기 아빠를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관계유지를 원치 않아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머지 면접참여자들은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아기 아빠가 당황하고 표정이 안 좋았고(C4, C15), “아기를 지우자.”는 반응(C2, C16, C17)을 보였으며, 당시엔 아기 낳기를 희망하여 낳았으나 출산 후 아기 아빠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거나(C6, C14, C18), 입양 보내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헤어지는 등(C13) 남자친구들은 대부분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며 떠났고, 주변가족이나 친구들도 대부분 낙태를 권유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출산 후 친정에서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동안 아기 아빠와 그의 아버지가 방 보증을 빼서 함께 도망가 버린 경우(C5)도 있었다.

“처음에는 애기아빠도 두 번 애기를 잃었기 때문에, 제 몸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임신이 또 잃어야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기가 잘 크고 애기아빠한테 알렸을 때 애기아빠가 좋아하더라고요. 심장 뛰는 소리도 같이 들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애기아빠 여자친구라고 8년을 사귀었대요. 어, 임신한 거 남자친구가 얘기 했다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갑자기 뭐 다짜고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당연히 병찌죠. 왜냐면 그런 상태를 전혀 몰랐고 애기아빠랑 만난 지 3년이 다 돼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이랑 사귄 수 있냐, 평일에도 계속 만났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직장생활하고 주말에 만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애기아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그냥 애기 지우자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C16)

“(임신이)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부모님한테는 일단은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한테 제일 먼저 말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뭐 자기 아기라면서 막 낳자고 오히려 막 더 그래서 다 잘 될지 알았어요.” (C18).

“애기아빠와 서로 처음에는 2주 정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하다가 저는 왠지 낳고 싶은 마음이었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로 티격태격하게 되고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무조건 혼자 낳아서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아이는 낳고 싶고…….” (C6)

재가양육에서 19세 이상 청소년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낙태를 권유하였고, 청소년들은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자녀의 일에 관심이 없는 부모도 있었고 (C18), 낙태시점이 지나 출산 후 입양을 권한 경우도 있었다(C5). 그러나 C14는 하혈로 되어 엄마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처음엔 놀라고 막막해하면서도 평소 낙태 반대주의자로서 딸자식인 자신을 믿어주고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고 진술하였다.

“애기아빠랑 헤어진 후에 임신사실 알고 애기아빠한테 애 낳고나서 얘기했거든요. (중략)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께 알리고 주변에 알렸는데……. (중략) 다 지우라고……. 근데 그게 쉽나요?(헛웃음) 더군다나 초기에 알았거든요, 임신 5주 쯤에. 그래서 다들 지우라고 했었어요. 안 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C1)

“부모님과 제 친구한테는 알리지 않았고요. 남자친구의 친구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남자친구들 부모님이나 할머니까지도 (중략) 남자 친구 부모님께서서는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신 상태라서…….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셨어요.” (C18)

19세 미만의 경우도 아기 아빠인 남자친구와 가족 및 친구 대부분이 낙태를 권유하였고, 처음에 자신이 책임진다고 아기 낳기를 권유한 남자친구의 경우도(C10, C12) 무책임하게 떠나서 그 후 연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친구에게 바로 알렸는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괜찮다고. 지금은 애기 아빠가 연락도 안 해요. 엄마는 (처음에 아시고) 놀래서 우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생명이니깐 일단 낳자고…….” (C12)

“엄마, 친구 모두 낙태를 권유했어요. (중략) 제가 어렸잖아요, 17살. 친구들까지도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키우냐, 애 한 명 키우는데 억 단위로 들어서 돈 많은 사람도 애 안 가지

려고 하는데……. 어, 솔직히 너 중학교도 안 나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애를 키울 거냐 하고 그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애를 지우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C8)

“애기아빠와 임신을 해 갖고 뭐 어떻게 할 꺼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고. 가족의 반응은 뭐, 엄마는 거의 낳기 전에 알았으니까 나오라고 했어요. (중략) 아빠는 낳고 나서 알았고요. 주변에서는 뭐, 원래 알고 있어 가지고. 낳기 전에는 딱히 뭐라고 한 거 없었고요.” (C9)

“난 낳기 싫었는데 (중략) 남자친구도 낳자, 엄마는 그냥 낳으라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냥 낳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엄마가 도와주겠다. (중략) 실제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죠.” (C10)

“처음에는 막 음, 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음, 막 음……. 뭐, 우시고 어떡할 거냐……. (중략) 저희 집안이 기독교라서 기도드리고 교회 분들과고 말씀 나눠보시고…….애기를 지우는 방향이 아니고 낳아서 뭐, 입양을 보내든 키우든 어쨌건 생명이니깐 낳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저도 수궁을 하고…….” (C12)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9세 이상과 19세 미만 모두 아기 아빠들은 임신사실을 안 후 바로 연락을 끊거나(C31), 돈을 주고 낙태를 강요하거나(C20), 마음이 수시로 변해 면접참여자와 갈등을 많이 빚는 등(C19)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31의 남자친구는 임신사실을 알리자마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는 등 치밀하게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기아빠는 반응이 다 달라서 어쩔 때는 같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키워보자 했는데……. 그냥 미혼모시설 들어가라고 아니면 헤어지자고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같이 키우자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거기(시설)서 니가 알아서 하라고. (중략)” (C19)

“애기아빠한테 얘기 하자마자 애기 지우라고 저한테 돈 주면서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그때 딱 처음 갔는데 임신 7주였어요. 그때 초음파를 하고 애기 심장소리를 들려주는데 애기 심장소리 때문에 못 지우겠는 거예요. 못 지우고 나왔는데 개가 애기 왜 안 지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뱃속에 니 핏줄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우란 말이 함부로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개가 그러면 니가 키울 자신 있냐고, 자기는 키울 자신 없다면서……. 돈도 없고 너 아직 어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기는 내가 키울 거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 찾지 마 이랬어요. 알았으니까 가라고 그래 가지고 헤어졌어요.” (C20)

“낳든 말든 지우든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곤 핸드폰번호를 바꿔 버린 거예요. 제 주위에 서 뭐 그런 쓰레기가 다 있냐고……. 임신 6개월쯤 주위에서 애기아빠 아직 연락 안 된다고 하니 까 성폭력 강간했다 신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고했거든요. (중략)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고소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검사 쪽에서는 성폭력도 아니다 강간이

아니다 서로 합의해서 한 거니까 딱 그렇게 결판나자마자 또 연락이 끊겼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아예 정내미 떨어져서 연락을 안 했어요.”(C31)

아기 아빠가 임신사실을 기뻐하고 현재까지 면접참여자와 호의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C22, C23, C27), 특히 C22의 경우는 엄마와 오빠 및 오빠 여자친구의 지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모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기 아빠랑 같이 임신 테스트했는데 악악 소리 지르고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이 축하해 주고요, 친정엄마만 아는데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인정하고 받아주세요. 아빠는 몰라요. 친오빠와 오빠여자친구가 지켜주겠다고 지지해 주구요. 아기 아빠와 친정 가족들 지지 속에 지냈어요.” (C22)

한편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재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낙태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아기 갖는 것을 미친 짓이라 반응하면서도 자녀 또는 친구가 임신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하였으며, 면접참여자의 앞날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태할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면접참여자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낙태를 강요받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아빠가 알고 처음엔 좋아했어요. 낳자고 하고요. 나중에 지우자……. 마음이 변했어요. 친구들과 양가부모님께 다 알렸는데 아빠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남자친구를 보듬었죠. 남자부모는 우리 아들 아니다, 아들보고 나가라, 나이도 어린데 애 지워라, 시설에서 자라 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욕을 해댔어요. 나중에 애기 태어나면 니 엄마가 너를 낳아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말해줄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C21)

“아기 아빠가 처음부터 알고 낳자 지우자 낳자 지우자 계속 반복했어요. 부모님은 지워라. 강원도에 가서 300만원 주고라도 지워라. 친구들은 잘 키워라, 친구 빼고는 다 지워라…….” (C23)

“아기 아빠와 둘이서 고민했어요. 처음엔 낙태하려다가 생명인데……. 16살 남자친구가 친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오빠는 이를 이용해 나를 협박하여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게 했어요. 아빠는 엄마와 별거 중이라 가게에서 생활했는데 부모에게 무서워서 안 알렸어요. 둘이서 낙태하려고 했죠. (중략) 남자친구 할머니가 아시고 진도에 내려와서 살면서 아기 낳으라고 하기도 엄마가 나중에 아시고 무척 화를 냈어요.” (C27)

○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의 갈등과 선택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 낙태를 생각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한 출산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한 사실이 처음엔 놀랍고 두려웠지만,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존재와 성장을 느끼면서 아기 아빠와 헤어지더라도 낙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가양육의 사례에서는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처음부터 아기를 낳으려고 결심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아기 아빠와 가족들이 낙태를 권유하더라도 대부분 아기는 내손으로 키워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기아빠 (중략) 알자마자 저한테 첫마디가 ‘애기 지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애 지우려면 저 죽이고 지우라고 했어요. 계속 설득하려고 했죠. 지우자, 넌 아직 어리고 다음에도 기회 있으니까. 저는 울면서 나는 애 못 지우니까 그렇게 알라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애 낳아서 키울 거라고 100% 확고하게 밀어붙인 거죠…….” (C17)

이들은 종교생활을 통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되거나(C17),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태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C1), 병원에서 아기 심장 뛰는 것을 보고 낙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기는 꼭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C4, C6).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명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약 애 아빠 말대로 낙태를 했다면 그렇게는 저는 못 살았을 거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렇거든요. (중략) 최근에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쌓인 게 있는데, 애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해서든 아이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C17)

“3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같은 미혼모 이런 거 찾아보면서……. 배아기, 태아기 이런 것도 찾아보고. (중략) 애기가 어느 때부터 커서 뭐, 낙태에 대한 고통, 애기가 언제 느끼냐……. 원래도 낙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략) 태아로 가면 뭐, 그거는 사람이고 그 전에는 세포정도로 불과하니까 얼른 낙태를 해야 한다고 초기에. 근데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불시에 생긴 거라도 그냥 지우면 생명을 죽이는 거니까 입양이라도 차라리 보내자. 내가 못 키워도 애는 그냥 낳아야지. 그 애기를 죽이면 내가 내 자식을 죽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어요.” (C1)

“(주변에서 모두 지우라고 권유) 혼자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

기 때문에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랬어요. 다 낳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웬지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졌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청소년들 중절수술이 너무 흔하잖아요. 아무래도 성경험이 빠르다 보니까. 나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오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병원에 가서 아기초음파보고 아기 심장소리 듣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C6)

“음, 낙태를 할까, 주변의 권유 때문에 병원도 갔었고……. 제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간 건데 또 하룻밤을 생각해 봤었어요. 시어머니 그분이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던 거거든요. 가기 전에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못하겠는 거예요. 애가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태동을 느꼈고 못할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미 안 됐었고.” (C4)

어떤 청소년 한부모는 현실적인 문제로 낙태와 출산사이에서 잠시 갈등을 했으나, 부모가 낙태반대주의자로서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아기를 낳아서 기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중략) 결혼 얘기가 다 깨지고 나서 혼자 낳아서 키워야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을 안 해 본 거는 아닌데……. 사실 평소 낙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중략) 2개월? 이쯤 밖에 안됐을 때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낙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제가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낙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고 (중략) 또 제가 나는 아직 절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환경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절 믿고 있었고 제 스스로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어요.”(C14)

19세 미만의 경우도, 나이는 어리지만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임신기간 동안 태아의 존재와 성장을 경험하면서 출산의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처음엔 막막하고 걱정되어 낙태를 결심한 경우도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기를 절대 못 지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나(C7), 막상 낙태를 하려고 하니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가진 내 아기니까 당연히 키워야한다고 생각한 경우(C8)도 있었다.

“원래는 아기를 지우려고 남자 쪽에서 돈도 해줬어요. 돈도 해줬는데 막상 아기 심장소리 듣고 그러니까 못 지우겠는 거예요. 차라리 입양을 보내더라도 낳아서 보내자 그래서…….” (C7)

“솔직히 낙태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정말 수술대 위에 올라갈 용기도 없을 뿐더러 일단 남자 친구를 사랑했고……. (태동을 느끼고) 점점 갈수록 아, 진짜 지우지 못하겠다.” (C12)

“낙태를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고 내가, 내가 뭐 사람들 말로는 저질러서 난 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진 아이니까 당연히 아이를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C8)

시설양육의 경우에도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아기 아파나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인 경우, 처음에는 출산 여건이 안 되어 낙태를 결심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초음파 사진을 보고 생각을 바꿨으며(C19, C20, C34), 예전 낙태경험에 대한 죄책감이 되살아나 낙태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C31). 또한 남자친구와 오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어릴 때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기는 꼭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아기를 낳을 용기와 결심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C22).

“애기아빠한테 애기 하자마자 애기 지우라고 저한테 돈 주면서 산부인과까지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그때 딱 처음 갔는데 임신 7주였어요. 그때 초음파를 하고 애기 심장소리를 들려주는데 애기 심장소리 때문에 못 지우겠는 거예요. (중략) 뱃속에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워요. 입양보내면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입양도 안하고……. 불쌍하잖아요…….” (C20)

“얼떨결에, 어, 계획 하에 임신한 게 아니라 좀 그랬긴 했는데 그래도 남자친구도 키운다고 먼저 그랬고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친오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옆에서 든든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남자친구나 저나 부모님 사랑 같은 건 못 받아 가지고 우리 애기한테는 꼭 엄마아빠랑 함께 사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한번도 (낙태) 생각을 안 해봤어요.” (C22)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대부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출산에 대한 의지가 높았다. 이들 또한 남자친구의 책임회피와 무관심 및 낙태종용에 맞서며,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친구가족의 무시와 멸시에도 꺾끗하게 견디면서 아기를 낳아 잘 기르고 싶은 생각을 하고(C21),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C27)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기가 유산된 줄 알고 술이나 담배, 약 등을 함부로 먹어도 아기의 생명이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벌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치게 되었다(C23)는 진술도 있었다.

“그쪽 집안은 저를 엄청 무시해요, 저희 가족을. 왜냐면 한부모 가정이고 아빠가 잘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지금도 저를 시험을 하세요. 너가 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성공을 하면 내가 애기랑 같이 사는 집을 주겠다, 내가 그제서야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중략) 그리고 얼마나 저희 가족을 만만하게 봤으면 저희 아빠를 들먹이면서 욕을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애아빠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 보장을 나도 못한다고. 그치만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니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가 이렇게, 네, 잘했네, 이런 소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내가 힘들지만 낱아서 양육을 하겠다.” (C21)

“남자친구가 더 낙태 반대했어요. 생명이고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불쌍하고 뱃속에 같이 있는데 차마 없앨 수가…….” (C27)

“이전 낙태경험이 너무 아프고 위험해서 겁도 나고. 시설에서 애기 유산된 줄 알고 있다가 병원에서요, 그때 좀 충격 먹었어요. (중략) (하혈을 해서) 유산한줄 알고 담배를 피우고 술도 먹고 약까지 먹었어요. 위장약 먹으면서 (그런데) 애기가 건강하대요. 애기가 심장도 뛰고 있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별 받았구나…….” (C23)

나.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제반경험과 사회적 지원

○ 임신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또는 양육 예정인) 청소년 한부모 24사례 중, 15명이 임신 후 아이 아빠와 헤어졌고, 5명은 출산 후 버림받거나 헤어졌으며, 4명만이 아이 아빠와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었다. 아이 아빠와 헤어진 이들은 임신기간 동안 아기 아빠와 헤어지고, 아기 아빠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등이 서글프고 힘들었고, 대부분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미혼모자 시설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역사회단체에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재가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로 아이 아빠의 배신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사실을 알고 아이 아빠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거나, 불성실하게 생활하다 떠나거나, 범죄 혹은 비행을 저지르고 사라지거나,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이중생활을 하는 등, 아이 아빠와 헤어지거나 버림받은 일들이 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가 되었고 이들을 힘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가양육 17사례 중 한 명(C4)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아이 아빠와 헤어지거나 버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랑 헤어진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C2)

“임신기간 내내 아기 아빠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싸우고. 막달에 자기 애가 아니라고 때리고 내쫓고……. 애기생각하며 그냥 어떻게든 견디려고…….” (C13)

“남자친구와 헤어진 게 가장 불안하고 힘들었죠. 주위시선도 무서웠고, 대학동기들, 선후배, 다 알게 돼서. 나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C14)

“임신 3개월 때 아기 아빠 집나가고 불안하고 화나고 힘들어서 혼자 울고……. 그 때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어요. 애기 낳아 키울 거 생각하면 걱정하는 불안한 나날이었죠.” (C15)

“아기 아빠의 이중생활로 심리적 충격에 헤어지고……. 아기를 낳을 때 아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을 갔다하더라고요. 심리적 고통과 친아빠 재혼한 집에서 아기 낳고……. 부모님이 장사하시는데 새벽에 일터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세요. 산후조리를 혼자 한 것이 힘들었죠.” (C16)

“생활고가 힘들고, 아이 아빠가 성실하지 않아서, 임신 6개월째 아기 아빠는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 소년원에……. 혼자 남아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그게 가장 힘들었죠. 아빠 친권상실법원에 신청하려고 서류 떼니 전과자…….” (C18)

임신기간 동안 아이 아빠 원가족의 간섭과 횡포도 면접참여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친구 부모가 찾아와서 자기아들을 망쳤다고 폭언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폭력과 절도를 하여 우울증에 걸렸다는 호소도 있었다. 심지어 산후조리 동안 남자친구 아버지가 보증금을 빼서 도망간 경우(C5)도 있었다.

“(아기 아빠와) 그렇게 나쁘게 지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어머니의 횡포가 있어서. 전화나 찾아와서 자기 아들 망쳤다고, 절대 저와 결혼 안시킨다고 폭언을……. 그럴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게 여겨졌어요.”(C4)

“남자친구랑 사는데,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알콜중독자에다 폭력…….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아기 낳고 할머니 집에서 산후조리하는데 친구아버지가 보증금 빼서 도망갔어요. 아기 아빠와는 그 뒤 헤어지고.”(C5)

두 번째로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재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거주의 경우에도 임신기간 아기 아빠와 불화 또는 이별 및 버림받은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특히 이들 중엔 아기 아빠의 아버지(할아버지뻘)의 폭력으로 인해 동거하던 집을 나오고 아기 아빠의 바람으로 인해 임신 중 헤어져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있었으며(C19), 임신 7개월째 될 때 혼자 키우라며 일방적으로 아기 아빠가 떠나버린 경우도

있었다(C20). 이들은 시설 입소 전 아기 아빠를 찾아다니고 기다리면서 많이 지쳤고, 우울증이 겹쳐 한때 출산의지가 약해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아빠랑 동거하다 나왔어요. 애아빠의 아빠가 들어와서 살면서 폭력과 성관계 요구하고……. 임신 중 애 아빠가 여러 번 헤어지자고 해서 힘들었죠. 애아빠 여자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애아빠가 바람피워 떠나고 나는 찾으러 다니고……. 혼자 버티면서 해결했어요.” (C19)

“애기아빠 떠나고. 우울하고. 자꾸 울고. 낙태, 입양 생각이 왔다 갔다……. 임신 7개월에 혼자서 애 키우라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남자 잘 못 만난 거 그게 가장 힘들었죠.”(C20)

시설에 입소한 면접참여자들 중 일부는 시설의 규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을 느낀 경우도 있었는데(C1, C10, C17, C18), 외출 제한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모든 입소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일들과 입소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부 규칙 등(예를 들면,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식탁자리 우선권 주기 등)이 시설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임신 3-4개월 때 시설에 입소했어요. 임신 동안은 애기아빠가 잘해줘서 애 아빠한테 의존했고 생활은 시설에서 해결했어요. 시설에서는 외출 제한하는 것이 힘들었어요.”(C17)

“시설생활도 불편했죠. 첫날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자리가 정해져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떤 언니가 막 인상을 쓰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소리로 아, 요즘 신입들은 참 무섭다? 진짜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밥을 좀 대충 먹고 올라갔더니 어떤 언니가 저한테 와 가지고 너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거기 저기 언니 자리라고 앞으로 조심해서 앉으라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 거기서도 이렇게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게 보이고 떨어지게 보이면 막 사람들은 다 이용해먹고 청소 더 시키고 그런 건 있었어요.” (C18)

“임신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설 안에서의) 대인관계 문제였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딱히 없었어요. (중략) 시설 자체 제공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임신부들끼리 있다 보니까 단체생활이고 이래서 대인관계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C1)

“시설은 외출에 제한이 있어서 힘들었고, 엄마는 집에 주위시선 때문에 못 오게 하고…….” (C10)

한편 19세 미만의 시설양육사례에서는 3명 모두 남자친구와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C21, C23, C27) 남자친구와는 사이가 좋으나 오빠의 폭력으로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남자친구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어 힘들었던 사례(C27)와 임신문제로 남자친구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고 남자친구의 마음이 변할까봐 불안하여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었다(C21, C23).

“남자친구가 소년원에 들어가고, 시설오기 전에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오빠랑 싸운 것 등이 힘들었고. 오빠가 협박, 폭력을 일삼고……. (중략) 시설 찾아서 입소했는데 시설에 들어오니 편하고 좋아요, 오빠에게 시달리지 않아서……. 시설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C27)

“감정이 불안정하고 죽고 싶었어요. 외롭고……. 아기 아빠와 갈등이 많아 싸우고, 아기문제, 낙태 등으로……. 000(입소시설)에서 규칙 어겨서 퇴소 당하고 이 시설로 들어오게 됐어요. 임신 말기인데 죽기 아님 살기 각오로 지내고 있어요.”(C23)

또한 면접참여자들은 경제적 문제와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양의무자가 부모라서 모든 지원이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이 기능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던 면접참여자들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을 받는데 제약을 받고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지원방침이 달라서 불편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당시 무엇을 하려해도 부모동이가 필요해서 그게 힘들었어요. 사회지원이 정말 없어요. 또 지역의 지원사업이 구마다 너무 틀리고 방침도 틀리고 그때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워서 가도 부양의무자가 아빠로 되어있으니까 아빠도움을 받지 왜 여기 와서……. 여기서 도움을 줄게 없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C6)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면접참여자들은 스스로 참고 이겨내거나, 미혼 모자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면접참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에서 이들은 산전산후관리와 숙식제공 및 출산준비를 할 수 있었으며 취업과 관련된 기술교육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고 시설 선생님께서부터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시설 규정이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임신기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극복은 숨기지 않고 오픈하는 거……. 엄마, 친정부도, 친구들이 많이 격려해 줬는데 도움도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헤치고 나가야…….” (C14)

“제가 엄마를 잘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애기를 낳아 기르고 있으면서 19살 때 애기 낳은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개네들은 전부 다 엄마가 막 연락 끊자 했다, 무슨 집을 나왔다, 내쫓김 당했다, 이랬는데 저희 엄마는 안 그러시고 저랑 애기 되게 많이 하고 절 이해해 주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잘 해야 되겠다 생각들어요. (중략) (어려움 극복은) 기도와 책 읽고 엄마랑 많이 얘기 하면서…….” (C12)

“그냥 친구들 보면서 의지하고 마음도 다잡고…….” (C20)

“시설에 있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시설분위기가, 규칙이 너무 엄격해서……. 시설에서 나오니 주거문제가 힘들고……. (중략) 지금은 시설 선생님이 가장 큰 힘이 돼요.” (C8)

“컵케이크 같은 것도 배우러 다니고 (중략) 교육 프로그램 집중도 하고. 시설 안에만 있으면 애들이랑 자주 부딪히니까 외출시간에는 항상 나가있고 .외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요. 그때 꼭 나가서 외박하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외출 가서 (중략) 쇼핑이라든가 친한 사람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가 엄마 만난다는가. 예, 그런 식으로…….” (C1)

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C21의 경우를 보면, 임신하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아빠가 냉정하게 대해 힘들었는데, 아빠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자신도 미혼모의 딸로서 아빠가 입양한 것이라는)을 알게 되고 자신이 친생모와 같은 인생을 걷는 것을 아빠가 너무나 가슴아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빠와 더욱 관계가 좋아져서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0월 달엔가 입소를 했거든요 근데 추석 때 아빠가 집에 오신 거예요. 아빠가 저한테 이제 좋으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전까지 아빠랑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임신 후 아빠가 냉정하게 나를 대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추석 때 좋냐 물어보시고 너도 니가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느냐고 근데 어떻게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을 생각하냐고……. 너는 저 남자애를 믿냐, 저도 믿지는 않는다고. 그치만 지금은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빠 말고는 없지 않냐고. 아빠가 아휴 이러시더니 제 친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랑 똑같은 짓을 하나, 아빠가 마음이 아프다. 친엄마가 열아홉 살 제 나이에 애기를 낳으신 거예요. 학생이니까 서울에서 임신을 하고 광주로 내려온 거예요. 아빠가 결혼을 하셨었는데 자식이 없으셔서 그 애를 내가 입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를 엄청 챙겨주시고 애 낳을 때까지도 아빠가 옆에 있어주셨어요. 그 딸이 저라고 …… . 아빠는 니가 임신을 했다 했을 때 너희 엄마랑 똑같은 상황을 겪어서

마음이 아팠다, 왜 너는 그 길을 택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략) 제가 어렸을 때 울면 아빠가 저한테도 막 우셨거든요. 아빠가 제가 임신한 거 아시고 나서 눈물을 한 번도 안보이셨는데 그날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못 챙겨 준거 미안하다면서 아빠도 솔직히 일하러 가서 니 생각 맨날, 아빠는 맨날 울면서 일한다고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뭐라도 잘 챙겨 먹었을까 그 남자애가 때리거나 뭐라 하지 않을까 내내 걱정한다고 그 뒤로부터 아빠가 막 챙겨주시고 이제 임신 배가 불러오면 우리 딸 배 많이 불렀네 이런 식으로 챙겨주세요.”(C21)

임신 초기에 스스로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미리 준비를 하면서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C1)도 있었으나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시설입소내용을 알지 못하여 시설에 가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한 경우(C9)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알고 대책을 세웠어요. 미혼모에 대해서 찾고…….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부모님은 인정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 상황도 별로고……. 시설을 들어갔어요. (중략)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거처 마련해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고 좋았어요.”(C1)

“심리적으로 안 좋았어요. 아기 아빠와 거의 매일 싸우고……. 아기를 낳을지 계속 갈등하고 8개월에 학교 자퇴했어요. 아빠는 낳고 나서 알았고……. (중략)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시설 몰라서 입소도 못하고 제도도 몰라서 도움도 못 받고……. 엄마가 가장 큰 도움이 됐죠.” (C9)

이상을 살펴보면 면접참여자들은 임신기간 동안 아기 아빠와의 갈등과 헤어짐을 힘들어 했는데 특히 아이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떠나가는 경우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지원 없이 혼자서 임신기간을 보내는 것, 임신 때문에 학교(또는 직장)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도 힘든 요인 중의 하나였다. 한편 자신과 아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임신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으며, 임신 동안 주거시설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의 주거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를 통해 많이 해결되었으나, 시설입소의 경우 외출 제한과 교육프로그램의 의무적 참여, 시설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등 다소 불편한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주거문제와 생활 문제 및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장 유용한 제도이며,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들이 미래의 불투명한 생활이나 아이 아빠의 빈자리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해 갖게 되는 임신기간 동안의 불안감과 외로움 및 위축 등의 심리적인 문제는 현재의 지원체계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앞으로 많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출산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면접참여자들이 출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가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시에 아기 아빠나 자신의 부모 등 가족이 곁에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진통을 겪으며 아기를 낳는 것이 무척 서럽고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C1, C13, C14, C15, C18). C13의 경우는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한동안 아기가 보기 싫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

“막 진통할 때 어 너무 힘든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거. 그땐 슬픈, 이런 느낌이 없어요. 낳고 나서 참 초라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간호사 분한테 와서 나하고 같이 좀 있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막 거의 울부짖다시피 했고…….” (C1)

“시설에서 도움 받아 출산했는데 아기 아빠는 들여다만 보고 가버렸어요.” (C15)

“혼자서 아이 낳는 게 너무 서러워 많이 울었어요. 시설도움 받은 거 외엔 도움 받은 거 없어요. 아기 아빠에겐 일부러 안 알렸고……. (중략) 산후 우울증이 와서 한동안 아이가 싫었어요.” (C13)

또한 재가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후의 일들이 두려워 주변에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고(C6), 출산 후 주거문제와 기저귀와 분유 비용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C18), C11은 주변에서 자신에게 입양을 보내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다고 진술하였다.

“주변에 안 알리고 출산했는데 뒷일이 더 두려워요.” (C6)

“단기적이라도 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기저귀이랑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랑 분유를 좀 지원,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C18)

“주변에서 입양해라 이런 말만 안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C11)

시설양육의 경우도 출산준비는 시설에서 대부분 이루어져 재가양육 사례들과 특별히 다른 경험을 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들 역시 출산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분만과정에서의 진통인 경우가 많았다.

“아이 아빠는 연락이 안 되고, 출산하던 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그것도 막막하고.” (C20)

“모자보호시설에서 출산준비를 했어요. 더울 때 출산했는데 출산 시 진통이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커서 제일 힘들었고…….” (C31)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시에 아이 아빠나 가족 없이 혼자서 진통하고 분만한 것이 가장 서럽고 힘들었으며, 특히 아이 아빠와 헤어진 경우 출산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은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아이 아빠가 함께 하거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곁에 있어준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출산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19세 미만 재가 청소년의 경우 5명 모두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가 출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시간이 길지 않아 큰 어려움 없었고 부모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 (C10)

“부모님이 꾸준히 지켜주시고 이모가 출산용품 다 사오고요. 가족의 힘이 컸죠.” (C12)

“출산 때 엄마가 도와주고……. 심정은 무서웠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막막하지만 지금 가족을 만나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가족을 다시 만난 거 가족이 경제적인 거 도와주고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있어주고…….” (C8)

“출산할 때 혼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엄마가 나중에 오셔서 이틀간 조리해주시고.” (C7)

한편 C16은 19세 이상이지만 이전에 두 번의 자연유산의 경험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줄 알다가 어렵게 임신이 된 경우로서, 태아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출산의지를 갖고 있었다. 비록 아이 아빠는 이중생활을 하며 바람을 피우고 떠났지만, 친생부와 새엄마의 격려와 지원으로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있었다.

“출산 했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두 아이 보낸 것(이전 유산)도 생각이 나고, (아이 아빠 쪽에서 낙태 강요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 아이 마저 못 지킬 뻔 했다는 게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중략) 아빠가 집을 해주시고, 새엄마가 음식을 조금해주시고,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지원해준 게 아무래도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이 불안했고 애기 낳을 곳을 이렇게 구하지 못했다면 저도 어떻게 뭐 시설에 들어가서 좀 불안하게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편하게 제 집에서 낳은 거니까 가족들이 애기 돌보는 데도 새벽에 들어오시면 애기가 자다가 우는 경우, 신생아니까 그러면 저희 아빠가 와서 봐주시고 하셨거든요. 전 그래도 좀 더 수월했죠.” (C16)

또한 C19는 출산 후 아이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떠나버려 지금은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외로운 상태이지만 출산당시에는 아기 아빠의 도움으로 지금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다. 또한 C27의 경우는 비록 어린나이(모 18세, 부 17세)지만 아이 아빠와 엄마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호의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는 아이엄마의 처지가 열악하더라도, 아이 아빠나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설 아니고 그때도 애아빠가 있어 가지고 애아빠가 했는데……. 그 때 당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저녁에 애를 낳았어요. 그 때 당시 애아빠가 일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 혼자……. 아이 아빠가 와서 보고 그냥 신기하다고 아이 아빠 말고 (출산할 때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C19)

“남자친구 가족이 내복과 로손 사 주고 아기 아빠와 계속 연락해요. (아기 아빠와) 사이좋고 주고 받은 편지가 한가득이에요.” (C27)

출산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면 면접참여자들은 현재 재가양육인 경우라도 출산준비를 대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 전체 35사례 중 8사례(C3, C4, C5, C6, C9, C11, C14, C15)를 제외한 17명이 시설입소를 통해 임신기간 조리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소한 시설은 대부분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었으며, 면접참여자들은 중간의 집에서 기본생활지원을 받으며 출산 전과 후에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일반적으로 면접참여자들은 임신 3~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설에 입소 신청하여 입소하였으며, 이곳에서 주거와 식생활 및 산전 건강관리를 받고 기관에 따라서는 산후조리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혼자였다면 되게 외롭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랬을 텐데 (당시엔) 애기아빠도 있었고 시설 담임선생님도 있었고 해서 많이 편했었고 애 낳고서는 그냥 감사했어요. 애 낳아서 품에 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어요. (중략) 저는 애기 갖고 낳았을 때까지 기간을 보면 그 시설이라는 게 없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애기 갖기 오래전부터 가족이랑도 연락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조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주거지원서비스는 모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가족복지시설로 나누어진다. 이중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위한 기본생활지원과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이중 기본생활지원은 최대 1년(6개월 연장)이고, 공동생활지원은 최대 2년(1년 연장)까지 가능하다.

드문드문하고 잘 안가고 했던 상황이라서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애기아빠 말처럼 애기 지웠을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제일 도움 된 게 시설이란 게 있고 그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체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C17)

한편 재가양육의 경우, 출산과정에서 제공된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른 별다른 차이 없이 앞에서 언급한대로 모자복지가족시설에 입소하여 산전산후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 외에 고운맘카드로 출산 시 병원비를 지불하였으며, 출산격려금과 분유 및 기저귀를 지원받고,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민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고운맘카드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출산과정에서 받은 도움은 건강지원센터에서 출산비 30만원 지원 받았구요. 애기 난 후에 나머지 30만원은 기저귀 지원을 받았어요. (중략) 또 아무래도 임신을 했었을 때는 인제 진료비라고 해서 진료비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고운맘카드 발급받았을 때는 3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초음파 보러갈 때도 만 오천 원, 삼만 원 해요. 이걸 일년에 나눠 걸쳐 쓰니까 힘들거든요. 초기 때는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치지만 점점 막달이 다 되 갔을 때는 2주에 한 번 가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0주 때까지는 무료로 모든 검사랑 그런 거를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했는데 만약에 그냥 미혼모였으면 검사비용도 검사비용이고, 초음파비용도 초음파 비용이고, 아마 임신초기 때 벌써 고운맘카드는 다 썼을 거예요.” (C16)

“고운맘카드와 해산금 지원받았어요, 30만원.” (C6)

“시설에서 진료비 지원하고 고운맘카드로 장보고 튜살크림 사서 썼죠.” (C10)

“산후조리는 엄마가 해 주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출산비, 분유 지원받고……. 60만원…….” (C4)

그러나 출산 시 아기가 아프거나 특별한 예방접종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 부담을 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청소년 한부모들이 대응하기엔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참여자들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라도 출산 시 특별진료비가 발생하여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C18), 제도를 잘 몰라서 시설입소나 고운맘카드 등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출산할 때 아기가 아파서 고생했죠. 엄마에게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날 엄마가 와서 계산해 주고 퇴소 때 정착금 50만원을 받아 급한 대로 기저귀 분유 구입하고……, 분유값, 기저귀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지원을 받았으면…….” (C18)

“시설입소는 못하고, 몰라서요. 병원에서 출산했어요. 엄마, 그쪽 엄마, 남자친구가 비용대구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조리하고, 양쪽에서 반반씩 비용 대고 사회지원은 받은 거 없어요.” (C9)

현재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 역시 출산 시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준비와 출산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세 미만인 C27과 C21의 경우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출산한 것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고,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21의 경우 아이 아빠와 헤어져 출산당시는 혼자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견디기 힘들었으나, 그 후 시설의 도움으로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모으고 사용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었다.

“시설와서 편해졌어요. 여긴 다 지원해주니깐. 엄마가 도와주고, 해산금도 받았어요.” (C20)

“막달에 시설 들어왔어요. 병원진료 처음 받았고 진통 후 병원에 갔어요. 시설에서 출산비용대 주고, 기본 아기용품 제공해 주고 해산급여 50만원으로 나머지 물품 구입하고 시설에서 산후조리도 해 주고…….” (C27)

“시설 도움 받고 매달 3만원 지급받았어요. 고운맘카드도……. 출산 때 병원에서 도와줬어요. 지원금 안 쓰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어요. 출산 당시 혼자라는 것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팠죠. 출산 지원금 50만원도받고 시설 선생님이 격려해주고 축의금도 주시고…….” (C21)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한부모들에게는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야하는지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력이 없으며 가족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출산준비와 출산 관련 지원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청소년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의 갈등과 선택

양육을 하고 있는 25사례의 경우, 출산 후에 아기를 양육하는 것과 입양 보내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부터

대부분 자신이 아기를 키우려고 결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정과 출생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재가나 시설의 경우 모두 비슷했는데, 연령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린 연령 청소년들이 잠깐 입양을 고민하는 정도였다.

재가양육의 경우 19세 이상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아이를 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C1, C4, C5, C6, C13, C14, C16, C18) 갈등은 없었고,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과 같이 살아야하며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낙태도 안했던 이유가 그냥 낙태를 함으로써 평생 나의 오점이 되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것 같았어요, 평생. 입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혀 생각 안 해 봤어요. (중략) 아기를 낳으면 자기가 양육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냥 그때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양육이 힘들다는 거는 몰랐었고(웃음)……. 출산 후에 알게 된 거였거든요.” (C4)

“입양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낳으려고 결정을 했지. 입양을 차라리 보낼 거였다면 중절수술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낳고 싶었고 임신하고 힘들었을 때에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C6)

“제가 출산을 결심했을 때에는 제가 키우자는 생각으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심리적 변화는 없었구요. (중략) 주변에서는 제가 확고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산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입양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중략) 아예 애초부터 입양 보낼 생각이 없었구요, 여기서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낳았던 것 같아요.” (C16)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모의 권고(C1, C18), 사회적 편견(C1), 자신의 우울증(C5) 때문에 잠시 입양 보내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열악한 처지 때문에 아기에게 미안하여 더 좋은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경우(C1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또한 아기가 자라면서 너무나도 예쁜 모습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변에서는 거의 다 입양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봤는데 입양 보내는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미혼모센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엄마가 반대해서 못 간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데 뭐 하러 가냐고……. 제가 지금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입양 보내고 싶기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 같이 있었던 세월도 있으니까 싫기는 하구……. 그냥 애기 보고나서 애기 얼굴 보고나면 (키우려고) 생각했어요.” (C5)

“아버지가 입양 보내라고 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부터는 엄마아빠 전화를 계속 피했어요. 한동안 아빠는 연락도 하지도 말라하고……. (중략) 저는요 입양 보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아이 아빠한테 협박조로 입양보낸다는 말은 한 적은 있어요, (중략) 키운 정이라고 딱 상상을 해봤어요. 아 아이를 남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근데 물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 같아 굶어죽어도 그냥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C18)

“솔직히 애기 입양을 신생아 때는 생각해 본적이 없는데, 커갈수록 너무 미안한 거예요. 괜히 제가 욕심을 내서 키우나, 차라리 입양을 보냈다면 평범한 가정 밑에서 잘 클 수도 있었을 텐데……. (중략) 지금도 가끔 입양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애가 와서 보고 웃어주면 그냥 또 웃고만 있고……. 애기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남한테 보내는 것 보다 아무래도 친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더 애기한테 좋을 거고 제가 낳았으니 제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C13)

한편 면접참여자 중에는 입양 숙려제도를 강조하며, 엄마가 정신 차리면 우리사회는 얼마든지 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진짜 입양은 숙려제도가 필요해요. (중략) 저는 임신 8개월 때 결정했거든요. 입양 안 보내고 내가 키우겠다. 왜냐면 주위에 키우는 엄마들을 봤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애기 하나는 내가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들게 살더라도 (중략) 그래서 임신 8개월 때 결정했고 애 낳고는 아, 정말 내가 애를 책임지기를 잘 했구나……. 왜냐면 애를 만약에 보냈다면 그 출산하고 바로 모유 수유하잖아요. 모유 수유할 때도 내가 애한테 최선을 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안보내고 한 인간에게 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내가 어쨌든 나의 자식한테 해줄 수 있구나, 다른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1)

재가양육 19세 미만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한번쯤 입양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출산초기 양육이 너무 힘들었고(C10), 산후우울증이나(C8, C9), 부모의 권유로(C7) 갈등을 잠깐 하기도 하였으나, 출산 후 아기를 키우면서 그리고 산후우울증이 회복되면서 그러한 갈등은 사라졌다고(C7, C8, C9, C10, C12) 진술하였다.

“애기 딱 낳고 나서는 진짜 내 뱃속에 애기가(웃음) 있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입양하고 양육의 중간에서 계속 막 아, 어떤 게 애기한테 좋을까……. 일찍 낳아서 애기 용품 같은 것도

준비 못 하고. 근데 애기 얼굴을 딱 보고 나니까 아, 진짜 애를 어떻게 보내냐, 솔직히 내가 뭐, 연예인할 것도 아닌데 애기가 있는 게 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날 바로 키우게 됐어요.” (C12)

시설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면접참여자들의 경우도 입양을 보내는 것과 양육을 선택하는 과정사이에 큰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는 없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양육을 선택했거나(C19, C21, C22, C23), 처음엔 부모나 친구의 권유, 학교문제 등으로 입양 보내는 것을 잠시 생각했던 경우라도 낳고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고(C20, C27, C31, C34) 진술하였다. 그 중 C22는 현재 임신 중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가까운 친구의 격려가 양육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

“여자 애가 한명 있는데요, 진짜 진짜 제일 옆에서 각별하게 챙겨 주거든요? 근데 이친구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지금 너도 힘들고 남자친구도 힘들겠지만 젤 힘든 건 아기니깐 아기를 키우는 쪽으로 해서 이쁘게 잘 키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항상 하거든요, 연락할 때마다. 그래서 아기만 생각하라고…….” (C22)

C19의 경우는 헤어진 아이 아빠가 아기를 달라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절대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키울 거라고 다짐하였다.

“아기를 보고만 있어도 입양 보낼 생각 전혀 할 수 없어요. 헤어진 아기 아빠가 아기를 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보낼 거예요.” (C19)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면접참여자들은 대부분 임신기간 동안 처음부터 양육을 결심하고 출산을 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재가나 시설, 혹은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 연령과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출산 전 후에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하여 갈등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한다는 생각과 아이출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잠시 입양 보내는 것을 고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나 주위의 권유나,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인해 아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산후 우울증 등으로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또한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 아이와 함께 공유한 경험들과 출산시의 고통과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입양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양육과정에서의 제반경험

○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청소년 한부모들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양육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엔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아이 아빠의 빈자리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등 심리적인 것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과 취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및 경제적인 문제들도 이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특히 재가양육의 경우는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주거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이 아빠와의 헤어짐과 아이 아빠의 빈자리

면접참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양육과정에서 아이 아빠와 헤어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재가양육 중 19세 이상 12사례 중 한 사례(C4)를 제외하곤 모두 아이 아빠와 헤어졌는데, 대부분 임신 중에 헤어졌다. 이러한 이들이 무엇보다도 힘들어한 것은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것이었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를 찾고,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가 불쌍해서 매우 힘들어하였다.

“경제적인 거도 있고, 체력적인 거도 있고. 애가 다섯 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놀아줘야 될 것 같고 일 끝나고 나서는 녹초가 돼 버려서요. 또 뭐 가끔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어, 돌 전에 한두 번 봤어요. 아빠 찾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C5)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족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럼 친구들은 아빠얘기 하고 아빠가 뭐해줬다 얘기하면 애가 집에 와서 ‘아빠, 아빠’ 하고 찾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미안해서 괜히 애기한테 화내고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C13)

“아는 언니도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애기랑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중략) 거기는 애기아빠가 있잖아요. 형부가 퇴근을 하시면, 그게 또 딸이거든요, 안아주세요. 우리 딸이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애가 아빠, 아빠 하는데 우리 딸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 왜 내가 괜히 애기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 때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C16)

“아기가 아빠 찾을 때 빈자리가 힘들어요.” (C17)

“아이가 아빠 찾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아빠가 없어서 위축되고……. (중략) 큰 아이는 18개월까지 아빠랑 같이 살았었어요. 처음엔 아빠도 많이 찾았고…….” (C18)

– 남편 부재로 인한 외로움과 위축

또한 면접 대상자들은 아이 아빠와 헤어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외롭고 불안하며, 외부에서도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 위축되고 서럽다고 하였다.

“제일 슬픈 건 애기 아빠요. 아빠의 빈자리가 제일 슬프고……. 저도 밖에 나가면 애기아빠 뭐 하는 사람이나.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저 자신도 너무 속상해요. 사람들한테 초라해지고. 일을 할 때 면접을 볼 때도 애 혼자 키운다고 하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 아빠의 빈자리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C13)

“남친이랑 헤어진 것. 불안하죠. 그냥 놀러갈 때 애랑 나랑 둘이 가야되니까……. 모두 아빠들이랑 많이 오잖아요. 진짜 너무 애기 키우기 힘들었을 때……. 잠을 안 자요. 저는 집에 잘 못 있거든요. 근데 어디 데리고 나갈 데도 없고 나가면 다 돈이고, 그것도 힘들었고. (중략) 결혼해서 애기 낳은 애들이랑 만났을 때 애기아빠 애기 나오면 할 얘기가 없을 때…….” (C11)

“많이 외로워요. 그냥 많이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공부한다고 바쁘고 가족들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누구누구한테 막 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니까 외로운 거죠.” (C12)

– 아이 아빠에 대한 분노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아이 아빠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폭력을 일삼거나 아이 아빠가족으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듣는 등의 이유로 아이 아빠와 헤어지거나,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이 아빠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우울증이 오거나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대부분 아이 아빠와 인연을 끊고 주변 사람들이나 시설 등의 도움으로 자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출산 후 애아빠 친구 집에서 지내다 7개월 때 시설로 들어왔어요. 아기 아빠가 폭력이 있고, 다른 여자 사귀고 동거하고, 아기 달라 보육원 보내게, 아기와 나는 나가 뒤져라 욕하고……. 아기 아빠와 헤어질 결심하고 주거를 여러 번 옮겼어요. 애아빠 친구 집, 고시원 전전하고, 애 아빠친구가 분양사주고 기저귀 사다주고. 아이가 9개월 웅알이하는데 아빠 빈자리가 슬프죠. 시설에서 지내면서 양육과정 도움 받고, 검정고시 접수비, 예방접종 선택 등 연간 30만원 지원받아요. 도움

많이 돼요.” (C19)

“임신 후 헤어졌어요. 애기아빠를 산 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요.” (C31)

“아이 아빠 가족이 힘들게 했어요. 결혼 절대 안 시킨다고. 남친과도 헤어지고. 남친 할머니와 부모가 아기에는 관심 보이는데 아빠 쪽 양육 친권 포기 각서 받고 싶어요. 애 아빠가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믿음이 없어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나도 지금 새로운 남자 만나고 변하고, 밝아졌어요. 아기 때문에 사는 힘이 생겨요.” (C21)

- 혼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면접참여자들은 아이 아빠 없이 혼자서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나 모자가정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들어요. 청소년 한부모가 일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데 그게 힘들죠. 정규직으로 일하면 지원이 끊겨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려해요. 전세 집도 얻고 싶고 지원포기하고 일하면서 아이랑 살고 싶어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걱정되고 돈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C2)

“아기가 5살인데 아기와 놀아주는 문제, 집 문제, 어린이집 보내는 문제가 어려워요. 직장 근처에서 토요일에 보육 가능한 어린이집 찾기가 어렵죠. 처음엔 애기가 예뻐는데 이젠 어떻게 살아갈 지가 막막해요. (중략) 기초수급자, 모자가정지원 신청 다 탈락하고 아기 9개월에 양육수당이 나왔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엄마는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미혼모 센터도 못 가게 반대하고…….” (C5)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미안한 마음……. 아이를 낳은 거에 후회도 없고 아이를 의지하고 충분히 나는 그렇지만 아이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남자아이다 보니까 아빠의 빈자리도 느낄 텐데 아이의 선택 없이 내가 낳았나? 나중에 아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 엄마는 혼자 나를 낳았을까? 이런 복합적인. 그리고 어린애를 맡겨놓고 가면서도 아빠만 있었다면 너무 밖으로 안 휘둘려도 되는데……. 그런 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C6)

“출산 후 막막했는데, 시설(분유, 기저귀)과 동사무소(수급자)에서 도움 받았어요. 애기가 어려울 일 못하는 거, 애기 아플 때 가장 힘들고요, 가족의 도움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더 악화되는 거……. 애기아빠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애기 보러 오지만 지원은 없어요. 비호의적이고 주변의 부정적 시선이 힘들어요.” (C15)

“청소년 한부모한테 매달 15만원씩 나오는데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또 1년에 (위기지원비) 7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최대예요. 아기가 신생아면 분유 값, 아니 기저귀 값에다가 뭐에다가 애기 용품도 그렇고……. (중략) 만약에 제가 직장에 다니지 않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애기 키우면서 어려운 게 제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애기가 12개월까지는 엄마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초수급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어서 얼마든지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게 애기 낳고 어떻게 바로 일을 시작해요. 몸 풀지도 않았는데 애기도 엄청 어린데 누가 봐 줄 거예요. 이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힘들었죠. 사회적으로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C16)

“임신 후 3교대 직장일 할 수 없어서 퇴사했어요. 아기 아플 때 힘들죠. 출산 9개월 때 엄마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처음엔 창피해 했고, 주변에서 비난했죠. 엄마가 지금은 손주 자랑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중략) 출산용품지원, 긴급병원비지원 받고, 한부모 모임에선 함께 공부하고, 공연관람, 의견교류, 정보교환 등 많이 도움 돼요. 편모솔하 키우는 게 가슴 아프고 직장을 다니면서 애가 아픈걸 보면 제가 애를 못 지켜 준거 같아서 많이 미안했어요. 그때는 많이 혼자 울고 그랬는데…….” (C17)

“예전에 아이 아빠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한참 애네들이 감기 때문에 아팠었어요, 막 열도 나고, 외딴 곳에, 서울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진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외딴곳에 그 새벽에 막 애기 업고 병원에, 이렇게 한 애는 업고 한 애는 안고 그렇게 울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슬펐어요.” (C18)

“슬픔은 돈이 없어서 필요한 예방접종(선택사항), 로타바이러스(10만원 세 번) 못 해준 거요.” (C1)

특히 면접참여자들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지 못해 마음아파 했는데, 일부는 사회적 지원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진짜 거의 6개월 때까지 모유수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분유 먹이면서 그것도 힘들었고……. 도움 받는 것 없이 거의, 인제 한부모센터 같은, 그런 거를 애기 돌봄 돼서 알았어요. 그래서 시설 같은데 있었다가 나온 엄마들은 돌잔치도 다 해주고 돌 선물도 주고 금도 받았다는 엄마도 있다고. 거기 모자시설에 저도 거기 갈 뻔 해가지고 그런 거 봤거든요. 아, 돌 전에 들어갔으면 돌잔치도 해주고 선물도 받고, 뭔가 우리 애기 선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축하도 받았으면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싶고……. 그런 거 조금 아쉽고 (중략) 결국 결혼한 엄마들이랑은 안 만나고 미혼 엄마들끼리만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안한데, 그 때는 되게 힘들고 미혼엄마들이랑 같이 지금은 연락도 자주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참 나은거 같아요. 진짜 좀 알았으면...좋았을걸…….” (C11)

“공부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수입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한테 못해준 것도 많고

뭐 갖고 싶다고 우는데 못 사주고 하니깐. 너무 미안해서 그때는 진짜 입장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 너무 미안해요.” (C13)

- 시설에서의 불편한 생활과 퇴소 후 더 힘든 생활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시설에서의 생활을 힘들어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입소기간동안 외출시간이 제한되고 프로그램참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고 퇴소한 경우, 주거문제나 필요한 아기 물품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더 힘들어 퇴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지내다) 2월에 나왔어요.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억지로 참여해야하고) 거기 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지원 받는 게 너무 좋았는데 나와서 너무 후회되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거든요 (중략) 아니 그냥 막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는데 저희 위해서 하는 교육이긴 한데 하기 싫는데 억지로 강제로 참여를 하게 하니깐…….” (C15)

“시설입소 후 아기가 다른 아기를 해꼬지해서 힘들었어요. 시설퇴소 후 많이 힘들었죠. 애기는, 집에 애기 혼자 있는데 놀 상대가 없고, 한 달 60만 원 지원받지만 경제적으로 모자르고…….” (C7)

“시설에 있었을 때 (중략) 시설분위기에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나오니까 주거문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수급비는 받고 있지만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중략) 제가 한 지금 90만원 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활비 다 쓰고, 뭐 휴대폰요금, 엄마한테 도움 안 받고 제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깐……. 아이 이유식, 반찬값 이런 거 빼면 솔직히 정말 남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중략) 일단은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고 엄마 혼자서 키워나가 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C8)

- 불안정한 주거문제

면접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지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이들에겐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무래도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제가 가장 절실 했었어요. (중략) 직장에서 근무 했는데 4대 보험이 있으면 4대 보험을 해지한 이후로 3개월 지난 시점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20주였으니깐 그 3개월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C16)

- 산전·산후 우울증

면접참여자들 중엔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양육과정을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애기 낳고 산후우울증이 와서 한동안 아이가 진짜 싫었어요. 친정식구들이 다 남자라 털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만 애기 때문에 못 만나고, 극복을 못했죠. 쌓이고 쌓이다 애기한테 풀고……. 아기 키우는 과정자체가 극복과정이에요. 지금은 아기 때문에 인생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살게 되었죠.” (C13)

“산후조리,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어요.” (C9)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신생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 혼자라는 것, 남편 없는 것, 사회의 시선 등……. 감정 억누르며 참았어요.” (C12)

- 원가족과의 불화와 갈등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힘들어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신들의 문제로 부모가 실망하고 가족 간 불화가 생겨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둘째도 낳은 거를 비밀로 하고 한 거의 6, 7개월 정도 살아왔어요, 둘째 낳고 나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직 둘째를 인정을 안 해 주시거든요.” (C18)

“친엄마가 도와주지만 갈등이 많아요. 엄마 집 때문에 수급자 신청이 안 돼요. 엄마와 양육 때문에 갈등이 많고 아기가 나처럼 클까봐 걱정이예요. 아기 낳고 키우면서 우울해지고, 자해하고…….” (C31)

“사실 남보다 가족 사이에서의 불화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해하고 양육을 도와주신다고 해도 부모님이 저를 20년 넘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20년 동안 설계했던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많이 혼란을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많이 심적으로 힘들어보였어요. 가족 간의 불화(요인)이 저에게 충분히 있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서로 단순히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도 그 얘기가 꼬집어 나오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평화롭게 지내다가도 불현듯 그 얘기가 꼬집어 나오고 그러면서 소소한 불화들이 끊임없이…….” (C14)

C27은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과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아이 아빠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랑 인연을 끊었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애 키우면 엄마 인연 끊을 거라고. 엄마도 중요한데 제 애기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생각 많이 했어요. 임신하면 울면 안 된다는데 맨날 울고. 부모가 아직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죠. 아기 낳고 나서 잘 키우려고 노력중이에요. 내 친구들과 같은 생활을 못해 가끔 힘들고 친정엄마랑 인연 끊은 게 가장 힘들어요. 취업성공패키지 하려고 상담 중이에요. 남친은 지금 소년원에 있어요. (남친)출소 때 나도 시설 나왔으면 하는데 (시설)나가면 학원도 못 다니고 애도 돌볼 수 없어 걱정이죠. 시설에 있으면 다 알아서 지원해 줘서 현재 걱정 없고 편한데…….” (C27)

-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려움

시설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현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하고 아이가 청소년 한부모라는 사실이 관계를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솔직히 낳고 나서도 애기아빠 문제가 있으니까 내내 애기한테 신경을 못 써준 거 같아요. 화도 많이 났던 거 같고 많이 울고 많이 우울했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애아빠도 만나는 사람이 있듯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잘 보면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낀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엄청 우울하고 애한테 화도 잘 내는 편이고 좀 밝아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디가도 우리 애기가 제일 이쁘다고 그런 표현을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잘 웃고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 같대요. 애기를 보면서 그래도 애 때문에 산다는 말이…….” (C21)

“(아이를 키우니까)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하고 많이 좀 힘들 거 같아요, 애기 혼자서 키운다는 게.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났는데 그 남자한테 애기 있다는 사실 말하면……. (중략) 지금은 그냥 애기랑 오순도순 잘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할까 생각 중인데(웃음)……. 근데 애기 때문에 막상 좀 안될 거 같기도 하고…….” (C34)

○ 사회적 지원을 통한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 극복과정

청소년 한부모들은 위와 같은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다양한 경로로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재가양육 청소년들에게는 아기를 키우는 자체가 생활의 원동력이고 부모와 가족의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었지만 그 외에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의료비지원을 해주는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 시설입소를 통한 주거문제 해결

및 출산과 산전산후 관리, 위기지원비, 양육수당, 무료 예방접종, 무상보육, 분유와 기저귀 등 아기 용품지원, 출산 후 1년 동안 수급비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문화바우처,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한 영양보충식품공급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연계 교육도 받으면서 취업의 기회도 주어지고 다양한 기술교육이나 검정고시준비반이나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등록금도 지원받았다. 또한 지역의 한부모 센터나 자조모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도 하였다.

“애기 낳기 전에 제가 많이 방황도 하고 자리도 못 잡고 했거든요. 애기 낳고부터는 생활이 딱 잡히는 거예요. 목표도 생기고 대학도 가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다 패스 했거든요. 애기 때문에, 애기가 있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C13)

“친엄마와 가족이 도와주고, 출산축하금 60만원, 양육비 매달 20만원. 가족의 정신적 지지가 도움이 됐죠.” (C16)

“고운맘카드(2012부터 맘편한 카드 120만 원), 출산비 70만 원. 제가 자조모임을 좀 다니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을 좀 알게 돼서 그 엄마들이랑 좀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것들에 공유가 되고 (중략) 확실히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9개월이기도 하고…….” (C1)

시설에 거주하는 (또는 거주했던)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진술하였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만족해했다. 이들은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며, 학업이나 취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심리적 지지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 시설은 지역 혹은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시설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에서 산전체조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시키고 잘 먹고 잘 자게 해주고 강하게 낳고 산후 조리도 다 해 주고. 옷, 턱받이, 젖병 등 아기양육물품 다 지원해 줘서 큰 도움이 됐어요.” (C4)

“양육은 도움을 받아 큰 어려움 없었어요. 양육수당, 시설도움, 도담학교(서울시 한부모학교) 등 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C9)

“양육수당, 보육시설 무료, 미혼모 시설 숙식 제공 등 제도적으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다 도움이 되었어요.” (C12)

“현재 모자원 시설 신청했고, 모자원은 시설 퇴소 후에도 아기 용품 많이 보내줘요. 분유, 기저

귀, 등등. 충분히 보내줘서 신생아기, 영아기 잘 보내요. 쉼터 선생님이 정보 주시고 도와주고, 아이사랑카드 신청해서 도움 받아요. (중략) 시설생활, 수급비, 아기용품 등 지원받는데, 도움 많이 되죠.” (C31)

“시설생활은 매우 편안했어요. 육아가 힘들었죠. 분유값이 비싸고. 아기 아플 때, 육아 때문에 놀러 못가는 거 힘들고. 보육비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15만원, 기저귀 값 월 53000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월 15시간 지원받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현재 부모집 근처 중간의 집에 들어가려고 신청한 상태예요. (근데 왜 부모님 집에서 분리를 하려고 그래? 거기서 계속 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 OO시설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집이 이 근처잖아요. 지원도 제일 많이 해주고 애기 옷값으로 2개월마다 10만 원씩 나오는 거 같아요. 별의 별 거 다 나와요. 그 쪽으로 가면 지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주말에 여기서(집에서) 지내고 평일에 거기서(시설에서) 지내고. 분유가 다 지원 나오고 우유도 지원 나오고 너무 좋아요.” (C10)

이상과 같이 볼 때 현재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낙태나 입양 보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한 평가

현재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면접참여자들은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먼저 재가양육의 경우, 19세 이상인 한부모들은 대부분 아기를 키운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며 7사례(C1, C2, C4, C11, C13, C16, C18)가 한 번도 자신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며(C1),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되었을 지 상상할 수 없고(C2, C4), 아이 때문에 가족과 친밀해지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였다(C13). 또한 매스컴에서 입양아들을 보면 자식을 내가 키우길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있었다(C16).

“지금은 내가 아이를 키우기로 한 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고……. 지금 키우는 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당장은 지원해주는 것도 많고……. 이렇게만 한다면 아이 잘 키울 수 있겠다, 부모노릇 잘 하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 했어요. 주변에도 절대 낙태나 입양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양육하게 권할 것예요. 주변에 100% 좋은 선택이라 할 거예요.” (C13)

“잘한 거는 애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가족과도 더 친밀해졌죠. 원래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더 많이 친밀해지는 거 같아요. (주변에 나와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결심을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그렇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것은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C1)

“근데 해외로 입양 간 애들이 하는 말이 왜 아무리 외국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중략) 형제들도 너무 잘해주고 배울 환경도 되고 좋았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했대요. 그니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이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략) 입양을 보내서 금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양부모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친부모님 만큼은 아니겠죠. 왜냐면 내가 10달 동안 애기를 갖고 그담에 이제 애기를 이 과정에서 저는 아무래도 더 애기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친 엄마니까. 근데 양부모님은 아무리 잘해주셔도 그만큼 충족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공허하게 크느니 아빠가 없어도 저, 한입 인제 제 한입 못 벌여 살리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C16)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서 아이를 양육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거나 미혼모 자녀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느껴질 때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주변에 같은 처지의 청소년이 있다면 양육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아기 키우는거 후회한 적은) 가끔씩 하는 거 같아요. 몸은 일하고 나서 힘든데 애까지 이제 막 보채거나 저녁에 애가 막 너무 아플 때는 괜히 내가 키운다고 고집 부려서 애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막 이쁜 짓을 한다거나 이제 많이 컸다고 느껴질 땐 (잘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처지에 청소년이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몸이 힘드니까 요즘은 둘이서 키워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키우려면 두 배로 더 힘들 거니까…….” (C5)

“지금은 일찍 낳은 게 너무 좋아요. 한편으로는 잘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편하게 내 아이랑만 지내고 싶거든요. 그때는 너무 어려웠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 (중략) 그러나 나 같은 청소년들 중 중절수술을 놓쳐서 임신을 한 상태로 흐지부지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아이가 힘들잖아요. 정말 아이를 방치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중략) 순간에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크면 솔직히 말할 거예요. 엄마는 학교 다니다가 너를 낳았는데 여태껏 엄마가 너를 지켰고 부끄럼 없이 키웠다고……. 너를 낳아서 후회한적 한 번도 없고 너를 의지했다고 솔직히 털어놔야죠.” (C6)

재기양육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 역시 모두 아이를 낳고 키운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며(C7, C8, C8, C9, C10, C12), 아이로 인해 인생목표가 생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C12).

“일단 애기 볼 때에 이렇게, 이렇게 뭐 예쁜 짓하고 그럴 때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옛날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뭔가에 이렇게 목표의식이 있거나 어, 막 되는 데로 살자 이런 거였는데 애기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리 얹혀사는 입장이라고 해도 책임감도 생기고 어떻게든지 일단 뭘 해야겠다, 인생목표가 생기고 바르게 살려고 생각은 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저한테도 좋다고…….” (C12)

시설양육의 경우도,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 이나 상관없이 모두 아기를 낳아 기르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C19, C20, C21, C23, C31, C34). 이들은 아기가 삶의 활력소이며(C20), 자신이 아기를 키운다는 사실이 뿌듯하고(C23), 아기를 잘 키우고 있으며(C34), 내 아이는 절대로 보육원(예전 고아원)에서 자라게 하지 않고 부모인 자신이 직접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C31). 그러나 이들 중에도 주변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양육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빠 없는 아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낙태와 입양을 권하겠다는 경우도 있었다(C20).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 개가 없으면요 내가 나도 없을 거 같고 이제, 이제 내 딸을 보면은 제가 힘내는 거 같아요. (중략) (그러나 만약에 주변에 청소년이 임신을 하고 남친이 도망을 가서 혼자 키워야하는 상황이라면) 나쁜 말로 (조언) 할 거 같아요. 애기 지위라, 막 입양보내라고……. (중략) 나처럼 되지 말라고. 아빠 없는 애 만들지 말라고.” (C20)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고 아이가 자신의 삶에 큰 힘을 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다른 청소년이 자신과 같은 상황일 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선, 용기를 갖고 출산과 양육을 하라고 권하겠다는 경우도 많았지만, 엄마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 따르므로, 자신은 비록 출산과 양육을 선택했지만 다른 청소년에게 낙태와 입양보내기를 권하겠다는 이중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라. 앞으로의 계획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혹은 양육할 예정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으며,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강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 아빠와 아이와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아기 아빠와의 교류

현재 양육을 하고 있거나 양육예정인 24사례 중 아이 아빠와 계속 교류를 해온 경우는 4사례뿐이었다. 나머지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아이 아빠와 헤어졌는데, 아이 아빠와 헤어진 대부분의 청소년 한 부모들은 아이 아빠와 앞으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아: 인연 끊고 살리라

이들은 앞으로 아이 아빠와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은 사람들로서, 가족으로 결합하거나 아이에게 아빠역할을 해주거나 양육비지원 등 어떠한 교류도 원치 않았다. 대부분 이들은 아이 아빠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며, 남편으로서 또 아이 아빠로서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아이 아빠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태도에 환멸을 느껴 관계가 정리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이들 중에는 아이 아빠가 먼저 교류를 끊은 경우도 있으나 아이엄마 쪽에서 먼저 연락을 끊고 교류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교류 전혀 안 하고요. 군대 있는 남친이 애기 절대 안보고 나랑 잘해 볼 생각 없다고 말했어요. 애아빠 얼굴도 보기 싫고 앞으로도 교류 절대 안할 것예요.” (C20)

“아이 아빠는 전과자예요. 폭력 심하고, 아이 아빠로서 부적절해요.” (C1)

“헤어진 후 내가 번호 바꿨어요.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딱……. 다시 합치기 원치 않아요.” (C6)

- 교류는 원치 않지만 양육비는 부담해야

한편에서는 현재 아이 아빠와 교류가 없고 앞으로도 다시 결합하거나 관계개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의 양육비는 아이 아빠가 책임져 주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C9, C15, C6, C18, C31).

“그 동안 연락 안 됐고, 얼마 전 남친부모에게 연락하여 양육비지원 요청했어요. 서너 달에 한번 전화해서 마음만 흔들어놓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요. 엄마는 포기하라 하지만, 아빠역할(양육비)을 해주길 바라죠.” (C15)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냥 깨닫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기아빠는 저한테는 미안한데 애기한테는 미안하지 않대요.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되려 애기한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빈말이도 좋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애기 아빠노릇을 할 수 없다. 근데 니가 애기를 낳기 원하면은 내가 애기를 못 봐주더라고 니가 내 뉘까지 잘 키워주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했어도 제가 여기까지 안 왔거든요. 근데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송까지 하고 있거든요. 애기아빠가 하루빨리 자기 죄 뉘우치고 양육비나 잘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바라는 건 없어요.” (C16)

– 다시 돌아와 아이에게 아빠역할 해주길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아이 아빠가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임에도 다시 돌아와 함께 살면서 아빠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기 아빠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이에게) 아빠역할 해주길 (바라요).” (C2)

“아기책임을 떠넘길 생각 없으나, 아기생각하고 아빠역할 일부분 해주길 바라요.” (C14)

– 호의적 교류 중, 여건이 되면 함께 살고 싶어

현재 24명의 양육사례 중 4명은 아이 아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앞으로 함께 사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C4, C22, C23, C27) 이들 중 3명은 19세 미만으로 현재 시설에 있었고 두 명은 임신 중이었다. 그 중 한 사례는 아이 아빠가 고등학생으로 현재 소년원에 있으나,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특등급을 받았는데, 출소 후 함께 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C27).

“아기 아빠가 현재 소년원 특등급(모범)이에요. 대전 내, 외출, 전화 가능하고요. 시설 나가면 함께 살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편지 많이 써서 한 가득이에요.” (C27)

○ 아기에 대한 소망

아기에 대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소망은 대부분 비슷하였다. 이들은 재가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혹은 19세 이상이나 19세 미만이나 상관없이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였다. 아기의 건강은 모든 사례에서 소망하고 있었고, 아기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대하였다.

-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이들이 아기의 미래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교친구들과 주변에서 놀림을 받고 자녀가 상처를 받는 것이며, 특히 출생과정이나 아이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나 혹은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상처 받는 일 등이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가 주변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주눅 들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음, 애기가 커서 상처받을 까봐 걱정이 되요, 애들이 놀린다든지. 솔직히 자기가 잘 극복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리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애들이 놀리고 이런 일로 뭐, 니가 정말 힘들고 학교생활이 힘들고 진짜 못 하겠다 하면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꼭 학교만이 길은 아니잖아요. 요즘 뭐 검정고시도 있고. 저는 왕따 당하는 데도 억지로 다니면서 뭐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으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제 옆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던지…….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자기 아빠가 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까봐 좀 두려워요. 그걸로 인해 받을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C16)

-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라

한편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고, 성장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는 강한 모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C1, C11, C13, C7, C20), 일부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동시에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영재가 되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을 나와서 부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바람을 보이기도 하였다(C4, C6, C9, C14, C15, C17, C18). 특히 이들은 명문대와 인기연예인, 운동선수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면서 자녀가 평범한 삶 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유명인사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애가 영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는 안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가 비상하다면 엄마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저도 경제적으로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C4)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피겨시켜야 된다고, 김연아 처럼(웃음). (중략) 얘기가 하고 싶으면 저는 애기 다 밀어 줄려고요. 하고 싶은 거 무조건 그거 하나로 성공 시켜 줄려고요. 그래도 좀 유명해가지고 자기가 커서도 굶어죽지 않을 직업 그런 거…….” (C31)

“정일우 같은 연예인(ㅎㅎㅎ)……. 그런 애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세계인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C34)

- 엄마 아빠 닮지 말고 반듯하게 자라기를

또한 엄마아빠처럼 문제 일으키면서 자라지 말고 좋은 가정에서 바르게 잘 교육받은 아이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경우도 많았고(C4, C22, C23, C34) 자신감 있고 재주가 많은 아이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경우도 많았다(C7, C9, C12, C17, C21, C31, C34).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웃고 어디서 그냥 이렇게 버릇없다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냥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가정교육 잘 시키고 싶어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다른 사람 관점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랬거든요. 그냥 뭐 저희 집은 저희 집 나름대로 키웠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쪽, 그 시집, 그 애기 아빠 부모님과 겪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냥 여기저기서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누구나 그럴잖아요.” (C4)

“저처럼 소년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경찰서도 안 갔으면 좋겠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게 해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해 주고 싶어요. 막 때리지도 않고…….” (C34)

“저는 엄마랑 아빠랑 어떻게 헤어졌는지 다 기억이 나요. 싸운 것까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의기소침하게 약간 소외된 사람처럼 자랐었는데 자신감 없고……. 근데 애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략) 애가 그냥 여장부? 자신감 있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중략) 모든지 다 잘하는 만능인이 되고…….” (C17)

○ 자신에 대한 계획

자녀양육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대부분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계획, 결혼에 대한 계획, 소질개발에 대한 계획 등 다양했는데, 이러한 계획은 재가나 시설 혹은 연령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대학 진학에 대한 소망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가장 많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 진학하여 특정분야의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고(C2, C5, C6, C9),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며(C1, C4, C5, C6, C8, C9, C12, C13, C15, C18, C21), 이를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하거나, 한부모 센터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는 보육교사(C5, C15, C21), 간호사(C13), 특수교사(C4) 등이었는데, 수간호사까지 되겠다는 의지(C13)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갈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C18, C20). 청소년 한부모들은 현재 학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와 소망을 나타내었다. 한편 원하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꼼꼼히 살펴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경우(C1)도 있었다.

“다음 달이면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거든요. 간호조무사 1년 과정하고 시험 본 다음에 3년 하다가 간호대학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특기생으로 간호시험 합격하고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수간호사까지 하는 게 제 꿈이에요.” (C13)

“뭐지? 그냥 독학사 인강 듣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독학사를 이렇게 꼭 취득을 해서 대학원도 가고 최종목표는 좀 큰 꿈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C18)

“아이가 세돌 될 때까지는 일을 안 하고 지원을 받을 계획이에요. 정부 지원(수급자, 양육수당) 사회복지단체지원(청소년 한부모 등록 - 예방접종, 양육물품 지원 등), 한부모 센터, 보건소(영양플러스), 동사무소 등의 지원을 받으면 일을 안 해도 생활이 가능해요. 수급유지가 되면 일 안 하고 아기 키우고, 수급유지가 안 된다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대학을 갈 계획이에요. (중략) 사이버 대학교보다는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어요. 애기, 머 어린이집 시간도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맞는 그런……. (중략) 4년제 대학교 가고 싶은데 원래 꿈이 영어교육과였어요. (중략) 사범대학교라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탐색은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근데 학사학위는 꼭 따고 싶어요.” (C1)

-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인 불안을 많이 느끼며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취업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C7, C12, C20, C27) 만족도가 매우 높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대부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대로 다 참여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지금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어요. 어, 취업패키지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거를 따서, 따고 병원에 취직할 생각이예요. 그게 아이랑 좀 더 편찮을 것 같고 아이 어린이집 갈 시간에 출근해서 아이 어린이집 올 시간에 퇴근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거 피부 쪽으

로도 생각을 하고 헤어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10시 11시 이럴 때 끝나더라고요. 내가 내 새끼 얼굴 볼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C7)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직업교육을) 상담하면서 저 지금 교육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하고 싶었는데요, 메이크업은 취미로 하고 싶었던 거구요, 바리스타로 저 카페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바리스타도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야하는데) 그래서 취업성공패키지로 하면 나라에서 3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 (배움)카드로 결제해서 수업 듣고 제가 학원 다니는 동안에는 얘기 봐 주시는 선생님이 봐 주시고 저는 갔다 오면 얘기 보고, 학원 가면 또 학원 가고……. 근데 아직 학원은 안 다녀요. 아직 상담이 덜 끝나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과정이 있고) 학원 다니면 거기서 또 줘요, 돈 같은 걸. 뭐 사먹고 그런 걸 모아서 저축하고 그리고 자격증으로 카페 같은 데에 취업이 되면 또 나라에서 취업 성공했다고 100만 원 또 줘요. 그럼 또 저축했다가 그 카페에서 일을 하면 또 1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C27)

소년원에 있는 경우에도 미용이나 네일아트와 같은 기술을 배우면서 사회생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C31, C34).

“여기서 저는 미용을 꼭 딸 거예요. 네일아트도 꼭 따고, 나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둘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제가 운영하고 싶어요. 미용실이든 네일아트 차리든 둘 중 그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 네일아트 자신이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재미있더라고요.” (C31)

“(소년원 생활로 인해) 약 1년간 아이 못보고……. 아기 데리고 키우고 싶어요, 여기서. 텔레마케팅 자격증 취득하고 네일아트 일 혹은 식당 서빙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C34)

그 외에도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하여 컴퓨터 기술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려는 사람(C19), 출산으로 인해 쉬었던 직장에 복귀하고자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다(C16).

- 나 자신을 가꾸며 살고 싶어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취미를 살리거나 외모를 관리하는 등 보다 더 자신을 위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솔직히 하고 싶은 건 밴드데……. 얘기 키우면서 연습도 해야 하고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밴드하려고 밴드하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그랬었는데 거의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 이런 느낌이

예요. 어디 매이지 않고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기가 있으면은 좀 제약이 많이 있잖아요. 애기가 아프면 연습을 못하는데……. 머, 멤버들이랑도 싸우고 그러니까 좀 힘들 거 같다는 생각? 근데 이제 미혼 엄마 중에 밴드 하고 싶은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하자하자 이랬었는데…….” (C11)

“가장 하고 싶은거……. 음, 그냥 저는요 애기를 낳고 그니까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살도 찌고 막 손도 이렇게 다 트고 외모도 못 가꾸고 그래서 아이 아빠가 제가 싫다고 떠난 거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살도 빼보고 외모도 가꿔보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C18)

- 아이 아빠랑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어

양육사례 중 아이 아빠와 비교적 호의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는 4건이고 이중 C22와 C23은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자가족보호시설에 있었는데, 앞으로 아이 아빠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8월달에 이제 남자친구가 복학을 하는데요, 그때 맞춰서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말씀 드린다고 했거든요. 남자친구 군대도 가야되고 솔직히 대학도 다시 가야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로서)등급도 떨어지고, 일단은 개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래도 저는 애기를 저 혼자서 호적에 올려 놓는 거 보다는 차라리 애를 낳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같이 하러갔으면 좋겠어요.” (C22)

“저는요 애기를 낳고 남자친구랑 이제 집을 구해서 셋이서 사는 거요. 이아빠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남자친구 가장 보고 싶어요. 돈 때문이에요 저를 만나면 돈을 써야 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니까 한번 만나면 한 십만 원은 깨질 거예요. 먹는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C23)

-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아이 아빠와 다시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으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출발을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었다(C17, C20, C34).

“지금 하는 일 계속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만나면 결혼하는 거…….
(중략) 저한테 만약 남자를 만나 뭘 하던 간에 진짜 믿음 가는 사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만나고 제대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면 저는 애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C17)

“결혼하고 싶고요.. 나랑 애기랑 그 이해해 줄 수 있고 착한 사람 만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옛날처럼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C20)

“지금은 그냥 애기랑 오순도순 잘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또 할까 생각중인데(웃음)……. 근데 애기 때문에 막상 좀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C34)

마. 양육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책 제안

현재 우리사회에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확장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주거시설과 양육수당 및 물품지원이 현실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공보육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아이 아빠에게도 제도적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아이엄마를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해져서 엄마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고 양육지식과 기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일부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정보부재로 인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조차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은 아래와 같다.

○ 사회의 부정적 시각 개선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었다. 또한 앞으로 자녀가 자라면서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받을까봐 걱정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대해주거나 모른 척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도 자신들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C1, C8, C11, C13, C14, C17, C21, C22, C27).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아이 아빠에게 버림받은 미혼모지만 아이를 열심히 키웠다는 것에 긍지를 갖고 있으며, 사회가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못 했어요. 제가 임신하면서 아예 연락처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너무 싫어서. 지금 연락처 있는 사람이 다 미혼모 되고 나서 알게 된 사람

밖에 거의 없어요. (중략) 주변에 대한 바람은 머, 편견을 좀 더 어떻게 외국처럼……. (중략) 그에 못지않은 인식개선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C1)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기 키우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해야…….” (C11)

“애기 때문에 진짜 의지를 많이 얻게 됐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행복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게 됐고, 오히려 저는 아이덕분에 자신감을 얻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담에 사회가 절대로 억지로 선택했다든지 불행한 일이라든지 특히나 저한테 대놓고 아깝다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C14)

“사회에서도 막 미혼모 자식이다라고……. 예전에 저 학교 다녔을 때 엄마 혼자 키운 애들한테 다 물건 훔쳤다고 그러거나 무슨 머, 애비 없어서 애가 저따구라고 그런 말 많이 막 봤었거든요. 그런 말 듣고 그래서 그런 편견 없이 그냥 다 똑같은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C18)

○ 안정된 주거시설 제공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특별한 주거제도가 마련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C1, C2, C6, C7, C16, C19, C20, C21, C31, C34). 이들은 대부분 임신기간과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중간의 집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았으나,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적절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생하였고 입소 전에도 시설 입소조건에 맞지 않아 방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청소년 한부모라면,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이라면 일단 정부지원 같은 거, 집, 임대주택을 늘려주거나 너무 (신청절차가)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거…….” (C6)

“아무래도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제가 가장 절실 했었어요. (중략) 직장에서 근무했는데 4대 보험이 있으면 4대 보험을 해지한 이후로 3개월 지난 시점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20주였으니까 그 3개월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략)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C16)

또한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다하여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입소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이 안 되거나 현재 규정의 입소 요건이 안 되는 경우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특별한 주거지원제도를 필요로 하였는데, 임대주택 공급에서 우선순위를 주거나 경로우대권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 우대권을 발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C7).

“임대주택을 넣어놨는데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는 분 댁에 와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점수제로 들어가잖아요,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그냥 미혼모 먼저 들어가는 제도가 있었으면, 주택이 있긴 있는데 조금 더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략) 경로우대권과 같은 청소년 한부모 우대권발행…….” (C7)

“모자보호시설에 아이 나이제한이 없으면(현재 있는 모자원은 14개월)……. 시설마다 다 달라요. 미혼모만을 위한 혜택이 주어졌으면…….” (C21)

특히 임신초기 낙태를 중용하는 부모나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미혼모자지원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반대가 엄청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수급 즉, 미혼모 보호시설이 더 확장되어야 해요. (출산을 하고 월세방을 구해 살고 있는 현재) 지금 당장은요, 그 주거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지원금 90만 원을 받아도 35만 원이 집세로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미혼모는 임대주택이 하늘에 별따기라던데……. 그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좀 더 모자원처럼 (중략) 보장이 되는 그런 주택마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1)

18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출산의지를 갖고 양육을 선택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미혼모와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공동체 시설이 아닌 개인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20).

“원룸이여도 조그만 집도 좋으니까 애기랑 같이 살 수 있는 곳만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시설에서 사는 거 좀 솔직히 그래요, 공동생활이고……. 애기한테는 안 좋을 거 같아요. (중략) 그럼 만약에 바로 시설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딱했어요. 근데 애기 주소를 딱 줬는데 여기로 옮겼어요. (여기서 하면 본적지가 여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시설이라는 게 들어나기도 하고…….” (C20)

○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한부모들은 시설이나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이들은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교육의 범주를 확대하고(C21, C34), 아이엄마를 위한 상담, 재능개발, 양육훈련

등 일대일 형식의 심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으며(C4, C17), 시설 내 진학준비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C1).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했는데, 지자체 지원 무료프로그램의 경우, 미혼모들이 세대주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4).

○ 보육기관 보육시간의 조절과 질적 서비스 개선

청소년 한부모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아이 보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24시간 보육체제로 확대하거나 연장하고(C6, C7, C17), 주말에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C18), 월 14시간 지원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해주길 원하고 있었다(C20). 또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하여(C13) 아이가 교육적 혜택과 더불어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길 요구하였다. 한편 교사와 시설장이 청소년 한부모 자녀를 배려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재발되지 않기를 요구하였다(C5, C17). 미혼모 자치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예: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C5).

“애들을, 만약에 직장이 늦게 끝나면 어린이집에서는 눈치를 좀 줘요. 혼자 키우다 보니까 좀 앞잡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고…….” (C17)

○ 현실적인 수당지급과 의료지원 및 양육물품 지원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전후과정에서 시설에 입소한 경우,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으나 퇴소 후의 생활에서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생활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1, C11, C19, C22, C23, C27). 퇴소 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현재 가족이나 아이 아빠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사회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양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보다 현실에 맞는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구하였다.

- 양육수당의 현실화

월별 양육수당이 아이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5만 원에서 20만 원) 아이연령이 어릴수록 많이 지급되지만, 연령 별 수혜대상자들 모두 다 양육수당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현실에 맞게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C9, C13, C11, C14, C15, C31).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시 병원비와 기저귀나 분유 등의 아기용품을 지원하는 위기지원비도 연간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지원받았으나 대부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C18).³⁵⁾ 그 외 교통카드 발급(C13), 모자 심리치료(C17), 아기와와의 여가생활 지원(C34)³⁶⁾을 해주는 정책도 요구하였다.

- 소득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직업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아이엄마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 경우도 있었다(C17).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부모가족 중지가 됐어요. 소득신고 때문에 지금 회사 급여가 120인데 3달에 한 번씩 상여금 붙어서 나가요. 그럼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160이 돼요. 그걸 160으로 신고를 하니깐 중지가 됐다고 안내전화가 오는 거예요. 2인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에 따라서 소득 신고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너무 화가 나니까 까다로운 부분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고……. 뭐, 지원이 경제적인 거, 2인 가족은 얼마, 3인 가족 얼마라는 부분이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솔직히 서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기관에서의 지원이 제 개인적으로 2배 정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C17)

- 엄마에 대한 의료지원, 아기 예방접종 선택사항에 대한 무료지원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기본적인 예방접종 외에는 해당되지 않아 의료비가 너무 비싸게 들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적절한 처방과 예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또한 가족이나 다른 사회적 지원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건강은 아기를 지키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엄마의 진료에 대한 의료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였다(C1, C11, C18, C19).

35) C18은 위기지원비로 70만원을 받았으나, 아기가 자주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였다. 위기지원비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출산비, 병원진료비, 아기 생필품 구입비(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를 지원하는 것이며, 각 지역의 건강가정센터나 한부모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센터에서는 24개월 이내 자녀를 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2012년 기준 연간 70만 원을 지급하며, 2자녀 이상일 경우, 연간 14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36)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 모·부자를 위한 초기위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혼(부)모자의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수급자는 의료급여제도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엄마들 복지, 이런 거까지 요구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는데……. 아이 의료비 지원은 엄마 의료비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의료급여제도 제외하고 사적인 어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통 애기는 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마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C1)
 “산후조리와 엄마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해요.” (C11)
 “예방접종 선택사항 너무 비싸 무료로 해주면…….” (C19)

–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에 대한 양육보장

현행 양육수당과 지원제도에서는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을 보장하고 그 후엔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³⁷⁾,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아이의 발달을 고려하여 3세까지 엄마가 양육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C1).

“애기 금방 키우고 얼른 어린이집 맡기고 일해라 그렇게 종용하지 않고 음, 보통은 36개월까지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중략) 그때까지만이라도 물론 최저 생계비, 음, (경제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취업을 하지 않아도) 정도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애 가진 엄마들은 근로가 어렵고 3개월, 100일때부터 어린이집 맡기고 이럴 순 있지만 (중략) 일찍 맡기면 애착장애 생기고 애들이 심리적으로도 미쳐가는데 일찍, 일찍 맡기면 그게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때 아이를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는 키우게 해야……. 예상치 못하게 미혼모가 된 긴급상황에서는 도와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근로능력이 당장 갖춰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전체로 보면 오히려 손실이 아니라 안전된 가정을 이끌어주고 근로자립 능력을 세워주고 이게 국가경제에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C1)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면접참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하려면 영유아시기까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해주는 정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현 제도상 부양의무자가 부모로 되어 있어, 청소년 한부모가 수급자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수급자신청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소년

37) 현재 아이가 돌이 지나면 취업을 권유하는 전화가 온다.

한부모의 부모가 안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에게 한부모가 된 청소년 자녀와 그 손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길 원했다.

“이런 게 있어요. 부양의무자로 부모님이 나오면 수급비가 깎여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로 꼭 부모님을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은 지우라고 그랬는데 내가 애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건데 부모님께 부양의무가 주어 죄송스러운 게 있죠. (중략) 너무 바라는 심보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까지는 애기부양의무가 안 쥐어지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C1)

“수급자를 해주는 거(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너무 까다롭게 이 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게 없어요.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인데도……. 저 같은 경우도 아빠가 군인이시다 보니까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어찌됐든 아빠는 월급을 받으시고 공무원생활을 하시고 재혼을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저를) 부양을 해야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 하잖아요. 내가 성인이고 (혼자서 아이랑 사는데). 현재 제일 필요한 지원은 집.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정보를 몰라서……. 그리고 제일 1순위가 수급자잖아요. 한부모는 차상위로 들어가고 신혼부부 임대, 다 밀리는 거예요. 기간도 짧고 지금 여기도 매입임대인데 2년 계약에 연장이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봤자 4년. 아이가 100일 때 여기로 이사를 왔어요. 원래는 자취하다가 매입임대라고 해서 아무래도 월세가 저렴하고 방도 2칸이고 해서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4년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밖에 못사는 거예요. 내년이면 이사를 가야하는데 아무래도 또 그런 게 까다로울 것 같아서……. 계약서에도 보니까 4년이더라고요.” (C6)

청소년 한부모가 18세 미만이거나 소년원에 입소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이들의 부모가 대신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모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던 친생부모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기초수급자, 애기 낳은 사람 둘이 돈을 받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좀, 돈도 올려줬으면 좋

38) C1은 현재는 물론 임신당시에도 18세 이상으로 현재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C1은 수급자로서 지원받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엄마가 제가 없으니까 애기 거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면 엄마가 고집이 엄청 세요. 수급 들어온 돈을 엄마한테 해야 된대요. 전 솔직히 싫거든요. 제가 낳은 자식이고 엄마가 낳은 자식 아닌데 제가 그 돈을 받고 그런 권리가 있잖아. 어, 근데 좀, 좀 그래 보여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내 건데 엄마가 가져가니까 그 돈을 달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고 얘기하기 불편하고…….” (C34)

또한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기초수급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버는 경우에는 차등지원되는 현행제도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느끼며 개선을 요구하였다(C15, C16).

“지금도 애기 키우면서 어려운 게 제가 일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애기가 12개월까지는 엄마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초수급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안 된대요.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어서 얼마든지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게 애기 낳고 어떻게 바로 일을 시작해요. 몸 풀지도 않았는데 애기도 엄청 어린데 누가 봐 줄 거예요. 이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힘들었죠. 사회적으로는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C16)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정보수집에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지자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면접참여자들 중에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 혼자 지낸 경우 정보수집에 더 어두웠는데,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중에도 시설에서 시설 외 지원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잘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시설에서 시설 내 지원 외의 지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재가인 경우 인터넷이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했다.

“시설에 있으면 예전엔 정부지원 따로 못 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새로 생겨서 한 달에 5만원 받아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시설에서) 정책 설명회 해 줬으면…….” (C10)

“출산하고 2개월? 백일 안 돼서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그 때는 이제 시설에서 다 끊기잖아요, 모든 지원이. 예방접종이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폐구균, 뇌

수막염만 몇 십만 원, 로타바이러스 그거를 막막했는데 그거랑 기저귀, 분유 다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재가 미혼모를 해주시더라고……. 그거 신청을 했고 그냥 한부모지원센터나 그런 협회도 나중에 알게 됐지만…….” (C1)

○ 한부모 공동체 생활 마련

한편 청소년 한부모 중엔 한부모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음, 그냥 예전에 그 한부모 언니들이랑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언니들이랑 했던 애긴데 어느 한 지역을 한부모들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누구는 어린이집교사, 누구는 학원강사, 누구는 돈 갖고……. 다 정해가지고 저희들끼리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지금은 다들 그러는데, 시설들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제일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C5)

○ 제도적으로 아이 아빠에게 양육 책임 부여

청소년 한모들 중 일부는 아이 아빠와 교류를 원하지는 않지만 아이 아빠가 양육비와 같은 양육책임은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책임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C1, C7, C16).

“아이 아빠는 제가 일단은 알리기는 했는데 사정상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중략) 굳이 양육비라든가 뭐, 이런 거 청구할 생각이 저는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당연히 아이에 대한 아빠의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회피는, 이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 푸, 어떻게 보면은 (중략) 에, 그, 해소를 한 건데, 자기도 같이 키울게 아니라면 충분한 양육비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1)

“아기 아빠에게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아빠들 교육시켜야 해요.” (C7)

“입양가정한테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미혼모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미혼모에게 너무 까다롭게 법적 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미혼부한테는 제한이 없거든요. 미혼부한테도 적절하게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라도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우리 사회는 솔직히 미혼모가 많이 늘어날 사회예요. 남자에게 너무 좋은 세상이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자기가 사고 쳐도 어차피 뭐, 책임만 안 지면 그만이에요. 내 애 아니다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자는 임신과정에서부터, 출산에서부터, 애기 키우는 거부터, 애기 키우고 나서, 혼자 키우고 나서 양육비를 벌어야 된다는……. 여자 혼자 책임질게 너무 많잖아요. 또 얼마나 사회가 까다로우요. 미혼모라, 시선으로 보고 그래서 좀 남자한테도 법적인 책임을 많이 물렸으면 좋겠어요.” (C16)

○ 자산형성계좌제도의 부활

한편 C18의 경우는 2010년도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산형성계좌지원 계좌 운영사업을 다시 부활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구(만 25세 미만까지)의 본인적립금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월 20만 원 이내)제도로서, 최장 5년까지 지원 적립 후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고, 적립금은 지원가구의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0년 4월에 시작되어 2015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도이나, 2012년부터 신규폐지에 따라 현재 2010년도 지원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C18은 2010년 당시에는 아이 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 더 이상 바랄게 없음: 현재의 지원제도와 정책에 만족

한편 현재 임신 중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과 양육을 할 예정인 C23과 C27은 시설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산 후 재가양육을 하고 있는 C12의 경우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19세 미만으로 현재의 지원제도와 지원정책에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만족해요. 양육수당, 기저귀분유제공, 어린이집 공짜, 시설제공 등 필요한 것은 다해주고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주변시선만 개선되길 바라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C12)

“현재 시설에서 필요한 것 다 해주고 산후조리까지 해준다고 해서 더 바랄게 없어요.” (C23)

“현재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시설에서 다 해결되요.” (C27)

② 입양을 보낸(혹은 입양을 계획 중인) 사례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을 보낸(또는 보낼) 사례는 모두 10사례이며, 이 중 이미 입양을 보낸 경우(C24, C30, C32, C33, C35)와 현재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례(C3, C25, C26, C28, C29)는 각각 5사례였다. 이들 중 현재 임신 중인 사례는 4사례이고³⁹⁾, 재가인 경우는 1사례였다.

39) C32의 경우, 현재 세 번째 임신 중으로 이전에 2번의 임신경험에서 첫째는 낙태, 둘째는 입양을 보낸 경우이다. 본 조사에서는 입양을 보낸 경험에 대하여 면접을 하였고 출산 후 입양 보낸 사례로 분류하였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9명 중 5명은 모자복지시설에서 지내고, 나머지 4명(C30, C32, C33, C35)은 산업정보학교(소년원)에서 지냈다. 한편 입양을 보낸 10명의 청소년 한부모 중 19세 이상은 1명이고, 19세 미만은 9명이다.

가.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 임신을 하게 된 배경

입양사례에서 두 명(C28, C29)을 제외한 8명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당시 가출하여 친구 집에서 지냈거나(C3, C24, C25, C26),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거나(C30, C33, C35), 남자친구와 동거하며(C32)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남자친구랑 진심으로 사랑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경우는 단 한 사례였으며, 나머지는 그냥 사귀다가 얼떨결에(C3, C24, C26, C30), 술 먹고 아는 오빠와 어찌다가(C25),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다가(C28, C35), 처음 관계를 갖다가(C29)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들은 대부분 임신에 대한 사전 대비 없이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임신이나 피임에 대한 지식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29는 남자친구와의 첫 관계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가능성이나 피임에 대해선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C26도 임신의 가능성이나 두려움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C28의 경우도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피임에 대해선 콘돔밖에 몰랐으며,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지면서 잘 안 챙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조심은 안 했었어요. 몰랐어요. 피임은 그냥 콘돔밖에 몰랐고,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몰랐고. 근데 처음에는 잘 챙기다가 시간 지나니까 잘 안 챙기게 되고…….” (C28)

○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 및 당시 심정

입양사례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처음에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임신사실을 안 후에는 몹시 당황한 것으로 나타났다. C25, C26, C28을 제외한 임신당시 모두 중학생 연령이었는데, 이들은 자신 앞에 나타난 현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일부(C29, C30, C35)는 생리를 5~6개월 동안 하지 않고 몸이 점차 불어나는 동안에도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주변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 등이 먼저 인지하고 확인을 하도록 권유해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생리 안하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 선생님과 어머니께 먼저 알려져서 확인하게……. 너무 놀라서 아무생각도 안 들었어요.” (C29)

입양을 보낸 사례에서도 대부분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였고, 확인 후 너무나도 놀라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거나(C29) 앞날이 캄캄했다고(C24, C25, C30, C32) 하였다. C26의 경우도 당시 일터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기에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C25, C32), 당시 부모와 동거하던 C25의 경우는 임신사실을 알고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낙태할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살이 쪼서 임신을 확인하게 된 사례의 경우, 처음엔 스트레스로 살찌는 줄 알았다가 이상해서 병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C30, C35), C30은 태아가 쌍둥이라서 더 놀라고 막막했다고 하였다. 또한 입덧이 심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C28의 경우는 처음에 임신사실이 믿기지 않아 꿈이기를 바랐다고 진술하였다.

“몸이 아팠어요. 입덧도 심하고. 음, 살도 빠졌다 찌고. 그냥 이게 뭐지? 꿈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지금도 안 믿겨져요. 지금도 배가 불렀으니까 있긴 있구나. 움직이니까 있는 거구나 그런데, 애 낳을 때가 됐는데도 내가 애를 낳는다는 것도 뭔가 안 믿겨지고…….” (C28)

“그 때 5개월 때 쯤에 알았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혼자 따로 살고 있어 갖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먹기만 하니까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배가 나오는구나, 살이 찌는구나, 그럭저럭 넘겼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배만 계속 나오니까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략) 쌍둥이 임신했다고 하니깐 더 놀라가지고 좀 막막했죠…….” (C30)

반면 임신사실을 안 후 어떡하나 하는 생각보다는, 사진을 보고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반응도 있었고(C3, C33) 그냥 무덤덤했다는 반응도 있었다(C35).

○ 임신사실에 대한 고지 및 주변 반응

입양 보낸 사례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C25를 제외하고 임신사실을 맨 먼저 아이 아빠에게 알렸으며, 처음에는 가족과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25는 현재 임신 중인데, 아직까지 아이 아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입양 보낸 사례에서 현재 임신 중이고 시설에 입소한 C28과 C29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 아빠와 헤어진 상태인데, C24와 C26은 본인이 임신사실을 알기 전에 헤어졌고, C3은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에 헤어졌으며, 4명은(C30, C32, C33, C35)은

출산 후에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보낸 사례에서 아이 아빠들은 임신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출산을 한 6사례 중 C26와 C30는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난색을 표하며 낙태를 권유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였고, C33과 C35는 처음에는 낳아서 같이 키우기로 하였으나 후에 헤어졌으며, C32의 경우는 당사자들은 결혼하고 같이 키우려고 하였으나, 아이 아빠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입양을 보낸 경우이다. C24는 아기가 심장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기가 죽기 전에 아이 아빠에게 알려려고 연락을 한 경우였다.

“남자 친구는 어이없어 했었죠, 남자친구는 어이없어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낙태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낙태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한다고 했죠. 개월 수도 개월 수도 같이 살아있는 게 뱃속에 두 개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안 했고요. 주변에서는 몰랐죠. 주변에서는 임신한걸 아예 모르니깐…….” (C30)

“애기아빠는 처음에 같이 키우자고 하고 엄청 좋아하고 잘 챙겨주었으나……. 하지만 출산 후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등 성격이 달라져서 애기아빠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입양을 결심했어요). 애기아빠에게 연락이 오나 내가 피하고 있어요.” (C33)

또한 이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처음엔 알리지 못하다가 만삭(C30)이나 출산 후에 알리거나(C32) 현재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도(C24, C33) 있었다. 임신사실을 알게 된 부모나 가족들은 대부분 앞날을 걱정하며 처음엔 낙태나 입양을 보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임신인데 애기아빠는 일단 애기 낳자, 결혼도……. 하지만 내가 어려서 혼인신고가 불가능했고. 가족에겐 처음에 알리지 못하고 출산 후 알렸어요. 둘 다 나와 살다가 출산 후 (내가)집에 돌아가게 되고, 우린 결혼을 원했으나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로 (애기아빠가 군대 간 사이)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C32)

C24와 C33은 부모에겐 알리지 못하고 오빠와 언니에게만 고지하였는데, 이들이 면접참여자들을 위로하고 이해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아기를 낳은 C24의 경우는 가족에게는 숨기다 친오빠에게 임신사실을 말했는데, 처음에 오빠는 갈 길이 멀다며 앞날이 생각이 안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현재 임신 중으로 입양을 보낼 사례의 경우에도, C25 외에 모두 아이 아빠에게 가장 먼저

임신사실을 알렸고, 아이 아빠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아기를 낳자고 한 경우(C3), 처음엔 놀랐으나 책임을 지려한 경우(C29), 처음엔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책임을 피하려는 경우(C28) 등이 있었다. 가족들은 놀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애기아빠는 당황했죠. 처음엔 괜찮다 했으나 후에 피하려 하고. 애기아빠 부모도 여자 탓만 하고. 엄마에게 말하자 조금 예상했다며 혼내지는 않으시고, 아버지는 전에 술 드시면 가끔 때리기도 하셨는데 임신사실을 안 후 자제하세요. 다른 얘기는 평소와 같이 하시지만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여동생과는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동생도 이해해줘요. 친구에겐 알리지 않았어요.” (C28)

“애기아빠는 처음엔 놀랐으나 책임지려 했죠. 키우자고 했다가 입양도 괜찮다고 하고. 애기아빠 부모님은 낙태 권유하셨다가 아들이 성인이니 뜻대로 하라고……. 엄마만 알고 계시는데, 놀라셨고, 낙태를 권했다가 입양을 권유해서……. 친구에겐 엄마와 선생님이 알리지 말라고 해서 안 알렸어요.” (C29)

C25의 경우는 술 먹다 아는 오빠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바로 헤어져, 현재까지 아이 아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알릴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C25는 임신 8개월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는 낙태를 권유하였으나 시기가 너무 늦어 낙태를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애기아빠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가족에겐 처음에 숨기다 낙태하려고 아버지께 말했어요. 병원에 가서 해결하자고 함께 병원에 갔는데 개월 수가 많아 낙태가 불가능하자 위험하니 그냥 낳고 하셨어요.” (C25)

○ 낙태와 출산사이에서의 갈등과 출산 의지

입양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이 처음에 낙태를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을 한 경우나 임신 중인 경우나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중엔 임신사실을 너무 늦게 알거나 혹은 대처를 빨리 하지 못해 병원에서 낙태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C24, C25, C26, C29, C32)가 많았는데, 이들은 대체로 연령이 어리거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기반이 열악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낙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낙태를 포기한 경우(C30, C35)와 낙태를 하려다 초음파 사진을 보고 마음을 바꾸게 된 경우(C28)도 있었으며, 낳고 키우려는 마음에서 출산을 한 경우도 있었다(C3, C33).

“저도 처음에는 ‘아 그냥 애 지우면 되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초음파를 보면) 일단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잖아요. 일단 사진도 봤고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병원을 알아봤어요. 불법이긴 한데 찾았어요. 찾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낙태하기 싫어서) (엄마에게 그냥 병원이) 없다고 했어요.” (C28)

“난 원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낙태를 권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미 아이가 커서(5개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능했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C29)

“아이에게 잘못도 없고 남자친구도 출산에 동의해서 낙태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C3)

“일단은 뱃속에 있으니까 궁금하고 보고 싶고, 키우자는 마음으로 낳았어요.” (C33)

“지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미안함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C35)

나. 임신기간과 출산과정

○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입양 사례에서 면접참여자들은 혼자서 혹은 아이 아빠와 둘이서 임신과 출산과정을 보내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미 입양을 보낸 사례의 경우 모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과 연락을 두절한 채(혹은 원래 관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임신기간을 보내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지지기반이 없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며, 필요한 병원진료를 제 때에 받지 못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어서 모든 게 두렵고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친언니가 병원 다닐 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이 힘들었고, 전부터 혼자 살아서 심리적 지지기반이 없는 것이 힘들었어요.” (C33)

“애기아빠와 부모님 모르게 외딴 곳에서 전화도 없이 살아서 국가의 지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원진료도 임신 중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집에서 애기아빠와 둘이 낳았어요. 미혼모 시설에 갈까 했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고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됐죠.” (C32)

“집에 혼자 있을 때 몸 관리나,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답답한 것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잘 도와주었으나 출산 후 헤어지고……. 애기 낳을 때쯤 가족에게 알려 금전적 도움을 받았죠. 나라에서 출산비 지원받고…….” (C30)

“친구들이 도와주고, 다른 지원은 딱히 없었어요. 출산 때 부모님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두 번 다 안 계셨어요. 임신 중 애기아빠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가 (혼자가 될까봐) 힘들었어요.” (C35)

임신 6개월째에 아기가 아픈 것을 알게 된 C24의 경우, 가족이나 아이 아빠 없이 혼자서 출산하고 아기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였는데, 두 달 후 아기가 수술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고 친오빠의 위로와 입소시설에서 출산비용을 대준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일 어려운 게요. 아픈 애기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요, 병원비라던가, 아픈 애기 치료비라던가 아예 지원이 안 돼요. 지금 (입소시설) 원장선생님이 계속 움직이셔서 제 애기 막 도와달라고 후원 받고 그러셨어요. 저는 5개월 이제 6개월 접어들 때 병원에서 진찰받다가 애기 심장에 천공이 생겨서 알게 됐어요. 아프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슬프기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애기가 안 클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된다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오빠가 힘들어하지 말라고 니 애기니까 니가 알아서 잘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고)……. 000(입소시설)은 임신 5개월 때 들어오고 출산은 혼자 했죠. 진통이 너무 힘들었고 산후조리는 제대로 못 했어요. 애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왔다갔다 해야 되고 애기 보러 왔다갔다 해야 되고……. 출산비용은 000(입소시설)에서 내주셨어요. 000(입소시설)에서 해준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C24)

입양을 보낼 예정인 면접참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주변의 시선이 무섭고, 출산을 앞두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 수 없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역시 주변에 지지 기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지원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구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C3 외엔 모두 시설에 입소한 상태이며, C26은 출산 후 시설에서 입양숙려제도에 의해 7일간 아이를 양육하였다.

“혼자서 출산하고 조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나라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C3)

“배 나오는 것 때문에 학교가기가 힘들었어요. 집에서 알까봐 임신했을 때 거의 밖에서 지냈고

…….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C25)

“병원에 갔을 때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임신기간 동안 배를 감춰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중략) 낮에 혼자 있을 때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 입양 보내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한 우울증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러한 걱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힘들어요. 임신기간 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고…….” (C28)

“친구들과 놀지 못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데 의사와 간호사의 좋지 않은 시선도 힘들죠.” (C29)

C26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특별히 힘든 것은 없었으나, 입양 보내는 것을 앞두고 입양숙려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내가 힘든 것은 딱히 없었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C26)

○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의 갈등과 선택

입양 사례를 보면, 나이가 어리고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되어 입양을 보내거나(C3, C25, C26, C24, C35) 부모의 반대로 입양을 보내거나(C30, C35), 아이 아빠와 함께 키우려고 했지만 도중에 아이 아빠와 헤어지게 되어 입양을 보내게 된 경우(C33) 등이 있었다. 또한 입양결정 후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찾아오려 했지만 이미 입양을 간 후라 돌이킬 수 없게 된 경우(C30)와 아이 아빠가 군대 가고 아이엄마가 소년원에 들어온 사이 양쪽부모들이 입양을 보내버린 경우도 있었다(C32). 이들은 모두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마음 아파했다. 먼저 이미 입양을 보낸 사례를 보면, 가정형편, 어린 나이, 양가부모의 양육반대, 아이 아빠와의 이별 등이 입양을 보낸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초반에 많이 힘들어 했으며, 지금도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거라며 안타까워한 경우(C33)도 있었다. 한편 입양숙려제도를 경험한 사례의 경우, 입양숙려제도가 입양 보내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아기를 책임지기에 나이도 어리고 가정형편상 어려워서……. 입양숙려제도가 입양 보내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C24)

“애기를 키우고 싶었는데 애기아빠의 가족들이 절대 애기를 키우면 안 된다고……. 입양 보낸 후 초반에 많이 힘들었고, 이틀 만에 다시 찾으려 했으나 이미 입양을 가 버려서…….” (C30)

“우리는 키우고 싶었으나, 애기아빠가 군대에 가고 내가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사이 양쪽 부모님들이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C32)

“애기아빠와 동의하여 키울 마음으로 낳았다가, 출산 후 애기아빠가 갑자기 술, 담배를 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입양을 결정했어요. 학생이라서 혼자서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지원에 대해서 미리 잘 알고 있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해요. 애기를 낳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힘들어요.” (C33)

“처음엔 키우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리고 애기아빠와 평생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아 입양을 결정했고……. 부모님도 입양을 권유하고…….” (C35)

앞으로 입양을 보낼 결심을 한 사례들은 학생신분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집안형편이 어려워(C3, C26), 또는 아이 아빠 없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C25) 입양을 보내려고 하였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하여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C26), 입양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제대로 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C28, C29).

“직접 키울 수 있는데 내가 자신이 어리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시설에 와서) 들었어요. 하지만 학생이고 아무것도 못 해줄 것 같고, 우리 엄마아빠가 키워야 해서 그것도 미안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애기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커서 행복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애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기 보느라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우리 가족은 양육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으나 애기아빠와 그 가족들은 입양을 권유해서…….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서 해외로 입양 갔으면 하기도 해요. 입양이 무조건 매정한 선택이 아니고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C28)

이들 역시 모두 입양숙려제도의 적용을 받아 앞으로 아기를 출산하면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고 7일 동안 양육을 한 후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친생모 호적에 올리고 7일 동안 양육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C25, C26, C28, C29).

“솔직히 저는 입양 보내려고 여기를 들어 온 건데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호적에 올려야 되는 거 때문에……. 엄마호적에 꼭 올려야 되고 그리고 친아빠 쪽에도 올려야 되는데 만 올라가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입양숙려제도라고 해서 7일 동안 키우는 것도 좀 그런데 병원에서 3일 있고 그리고 4일을 여기 와서 있는 거 짧아요. 4일 동안 애기를 키워도 정이 금방 드는데……. 호적에 올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애기를 데리고 7일 동안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더 힘들고 저보다 먼저 간 사람들도 다 거쳐 지나갔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 대신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입양 보내고서 우는 애들도 참 많고……. 나라에서 그거잖아요, 입양 보내지 말고 그냥 키우라는 식으로 밖에는 안 들려요. 저희한테 그럴 거면은 미혼모 시설 자체가 왜 있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C26)

다. 입양 보내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적응과정

○ 입양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회적 지원

입양 사례의 경우, 대부분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출산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기반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 한 번쯤 낙태를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죄책감 때문에 혹은 아이 아빠의 약속을 믿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혹은 출산 예정이고), 아이 아빠의 변심이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등 키울 여건이 안 되어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한 경우였다. 입양 보내는(또는 보낼)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과 개선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모동의 절차의 부당함

면접참여자들은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을 보낼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자신이 입양을 보내려고 할 때 부모가 연락이 안 되거나 동의하지 않아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C35), 반대로 자신은 아이를 키우고 싶었으나 양가부모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양을 결정하여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다(C32). 이들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제도 때문에 힘들어 하였는데, C35는 청소년 한부모도 부모 동의 없이 결정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C32는 부모도 반드시 자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상황들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 입양숙려제도로 인한 고통

입양을 보냈거나 보낼 면접참여자들은 입양숙려제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제도에 적용된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은 자신이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이미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7일간 아이를 양육하게 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만 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친생모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간 아이가 양부모의 호적에 올라가는 기간도 더디게 만들어 아이와 양부모가족에게도 불편을 주는 일이라는 입장과 여자에게만 불리한 제도하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루빨리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입양이 늦어져서 아이가 입양기관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였다(C24).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법이 시행되기 전(2012년 8월) 아기를 낳기 위해 유도분만을 한 사람도 있으며, 애를 낳아서 입양 보내려다 낙태를 하거나 아기를 밖에서 낳아서 버리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C26, C28).

“입양을 할 목적으로 왔는데 이제 호적에 올라가면 호적 출생신고를 해야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제 쪽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남자 쪽에서도 저 혼자 올라가기 억울하니까 남자 쪽도 올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입양을 보낸다 해도 기록에서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등본 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애기들을 봐주면 남의 애도 이쁘고 정들고 그러는데 제 애기도 안 이쁘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래서 조금 왔다갔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C26)

“어차피 입양을 보낼 건데, 뭐 하러 호적에까지 올라가면서, 게다가 일주일 보라는 것도 솔직히 말로만 그렇지, 그 일주일 뒤에 또 바로 보내야 되는데……. 호적에 올리면 기록이 남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등본이나 그런 걸 떼면 저랑 그 아이 이름이 (서류상에 기록이) 딱 되서 나오니까 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지워지는 것도 1년이 걸린대요. 어차피 입양을 보내는데 호적에 뭐 하러 올리는지…….” (C29)

- 해외입양절차 개선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면접대상자들 중 일부는 새로 바뀐 입양특례법의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신의 아이가 입양기관에 간 후 바로 입양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면서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하였다. 또한 이런 경우 오히려 해외입양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해외입양을 바라는데, 이 역시 현재도가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C28).

“입양 보내는 그게 맨 처음에 알아봤을 때에는 다 애기 키울 자격이 되는가를 많이 따지더라고
요. 제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갑자기 애를 키우라는 등 호적에 올리라고 그러고, 이번에
애를 입양해 가는 사람들도 그 아이를 (바로) 친자식으로 못 올려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여기서
해외로 간 애들이……. 애기했었는데, 해외로 애들이 가니까 더 당당하고 많이 웃고 내가 못가본
데도 많이 가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잘 살고, 애를 하나만 입양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입양해서 차이점이 나지 않게 혼자 고립되는 느낌 안 들게, 그러면서 개방적이고, 애들도
말도 되게 잘하고, 원래 우리나라 애들은 되게 소심하고 나서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애긴데 외국으로 가서 되게 당당하게 살고 외국 엄마들도 진짜 자기자식처럼 안고 있고 스킨십에
되게 심하긴 한데 그게 되게 좋아보였어요. 해외에서는 또 친부모 찾는 걸 많이 도와준다고…….
어차피 호적에 남을 거 어차피 친자식으로 못 키울 거 그냥 해외 쪽으로 가서 그렇게 개방적으로
사는 게 더 낫고 근데, 이번에 법 때문에 일차 국내로 시도하고 안 되면 해외로. 그리고 또 호적이
애기를 국내로 입양하면 1년 지나면 지워진대요, 그 기록이. 아예 지워지는 게 아니라 네 개 중에
한 개는 남는다고 하는데, 호적이 지워진대요. 해외로 가면 4년 걸린다고, 지워지는데…….”
(C28)

– 입양 결정 후 힘들었던 점

입양 보낸 사례의 경우, 면접참여자들은 입양을 보내고 난 후 모두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과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진술했었다.
이들은 길에 지나가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괴롭고 마음 아프다고 하였다. C30의 경우엔, 입양 보낸다고 하고 이틀 후에 다시 찾으러
갔으나 이미 입양을 간 상태여서 슬펐으며, C32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양 보내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고 아이가 나중에 원망하며 찾아올까봐 두렵다고도 하였다. C35는 현재 둘째를
키우고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입양을 보낸 아이가 가끔 생각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현재 직업기술을
배우는 등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 힘든 마음을 극복해나가고 있었는데, 특히 소년원에
있는 면접참여자의 경우 나중에 아이가 찾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배우며 힘든 마음을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 놓고 진짜 엄청 미움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호감찰
에……. 그래서 여길 넘어오게 됐어요. 이곳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생각

할 수도 있고, 엄청 비싸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는데, 오히려 좋지만…….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아기 낳고 입양 보낸 거) 누가 알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슬프잖아요. 우울해지고 다 운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 혼자만 마음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지금도 편지도 쓰고 싶고 사진도 보고 싶고 그런데 너무 미안하고……. 만약에 (아이가)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아이가 얼마나 슬플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을 때 찾아오면 덜 슬프다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미용을 배우며 힘든 것을 극복해나가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C33)

한편 입양을 보낸 예정인 면접참여자들은 입양 결정 후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입양을 보내고 난후의 슬픔을 주로 언급하였다(C3, C28, C29). C29는 입양 보내는 것이 걱정되고 슬프며, 아기가 바로 입양이 안 되면 보고 싶어서 계속 보러 갈까봐 두렵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C28도 입양을 보내면 많이 슬플 것이고 입양 보내기로 한 결정을 가끔 후회하고 있으며, 나중에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둘째여도 첫째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싫다고 하였다. 또한 복잡한 입양절차 때문에 아기가 빨리 입양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고 입양된 후 아기가 적응을 잘 못할까봐 걱정되며, 한국가정에 입양간 아이보다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이 더 행복해 보여 해외로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입양숙려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서 현재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과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었다.

“법이 바뀌었잖아요. 애기를 데리고 있어야 돼요, 입양하기 전에. 원래는 애기 낳기 전에 입양 각서를 써야 돼요. 쓰는 건데 솔직히 애기 낳고, 애기 보고, 어떻게 써요, 그걸. 그것도 힘든데 그것도 미리 쓰지 말라고 그러고. 애기 돌볼 거 다 돌보고 보낼 거 다 보내놓고 쓰라고 그러고. 그리고 호적에 올려야 된다고. 무조건 부모 쪽으로 호적을 올려놓고, 입양 보내더라도 무조건 호적을 올려놔야 된다고……. 예전엔 낳기 전에 다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낳으면 진짜 잠깐, 0.1초 보는 것도 정들까봐 고민했는데, 1주일을 데리고 있으라니까…….” (C28)

- 어떤 상황이라면 입양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입양을 보낸 면접 대상자들은 만일 아이 아빠의 부모님이 반대만 안했거나(C30) 양쪽 부모님들끼리 멋대로 입양을 보내지 않았다면(C32)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아기 아빠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고(C33),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오래 함께 살 수 있었다면(C35) 아이를 입양을 보내지 않고 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들을 미리 알고 양육에 대한 지식과 계획이 있었더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C33) 응답도 있었다.

“솔직히 다 대부분 포기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남자친구 때문에 포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남자친구의 성격만 보고 포기했거든요. 애기가 살 집도 깨끗해야 되고, 또 아직 하나도 모르니까. 도우미 아줌마들이 도와주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를 가진 상황에서 두렵고 그래서 포기한 거 같은데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있다는 대책(사회적 지원)을 알았더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친구 성격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 . 근데 우리 언니를 보니까 (사회적 지원) 계획이 일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언니처럼만 했더라면 애 아빠가 미워도 포기는 안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C33)

입양을 보낼 예정인 이들은 모두 아기 아빠가 같이 살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입양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진술하였다(C3, C25, C26, C28, C29, C33, C35). 또한 주변에 양육을 지원해 줄 사람이 있거나(C29, C33) 사회적 지원이 늘어 경제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고(C26, C28), 한부모가정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 사라진다면(C26, C29)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일단은 첫 번째 가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남자 쪽이다. 남자 쪽이 착하고 인내심도 많고 배려를 할 줄 알고, 자기 딸인데도 무심히 돌아 버리는 남자가 제일 많거든요. 남자 쪽이 안 변하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C33)

“지원들, 아기에 대한 똑같은. 밖에서 낳은 사람들이나 여기 시설 안에서 낳은 사람이라 똑같은 부모고 똑같은 애 엄마인데 밖에서 낳은 사람들은 솔직히 축복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니까 돌이 잘아서 애아빠도 있고 축복받은 애기들이고 여기 있는 건 단지 사고 쳐서 책임감 없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축복해줬으면 좋겠고 똑같이 지원 좀 해줬음 좋겠고 똑같이 바라 봐 줬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애기들이랑 (그러면 키울 수 있을 거 같아요.)” (C26)

“환경이 좋아야 되요. 일단 학생이니까.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줘야 되요. 일단 학교에서도 알면 창피하잖아요. 일단 백퍼센트 비밀보장 되어야 하고요. 아무도 몰라야 하구요. 일단 애가 무력무력 자랄 수 있는 환경……. 솔직히 학교도 다니고 싶겠조. 근데 애기 땀에 못 다니잖아요. 조금 애기를 돌봐주실 분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있었다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연계해주는 것.” (C33)

한편 면접 대상자 중엔 사회적 지원이 현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도 하였다.

“지원해 주는 거 좀 후하게 주고, 너무 찝끔찝끔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고, 너무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고……. 말만 하고 신청하면 안 되고 이러는 게 너무 많아요. 애기엄마들 보면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 보고 가입하고 그랬는데,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이트가 없어졌다든가 갑자기 안 된다고,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해주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딱 맘에 들게 잘하는 건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C29)

○ 입양을 보내는 것에 대한 평가

입양을 보냈거나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례에서 면접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대부분 평가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특히 앞으로 입양을 보낼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입양을 보낸 사례 중에서는 다시 데려오고 싶고(C30) 보내고 싶지 않았으며(C32), 후회하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한편 C28의 경우는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아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입양보내기로 한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라. 앞으로의 계획

현재 입양을 보낸(혹은 앞으로 입양을 보낼)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으며, 엄마로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강한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 아빠와 아이와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아기 아빠와의 교류

현재 입양을 보냈거나 입양 보낼 예정인 10사례 중 아이 아빠와 계속 교류를 해온 경우는 2사례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진술한 경우는 한 사례뿐이었다. 나머지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아이 아빠와 헤어졌는데, 대부분의 아이 아빠들은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 엄마에게 낙태를 권했고, 처음엔 출산을 원했던 경우에도 막상 출산 후엔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하였다.

- 더 이상 교류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입양을 보낸 5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 한부모들은 모두 아이 아빠와 헤어진 상태였다.

이 중 세 사례(C24, C30, C35)는 아이 아빠와 전혀 교류가 없었고 관계도 좋지 않으며, 앞으로도 교류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다. C33의 경우는 출산 후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 아이 아빠가 연락을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C33이 피하고 있는 상태였다.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사례의 경우에는 C3을 제외하곤 모두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중 C28, C29를 제외하곤 모두 아이 아빠와 헤어진 상태였다. 아이 아빠와 교류를 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책임감 없고 형식적인 교류를 할 경우, 청소년 한부모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가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의무적으로 시설에 찾아오고 그 가족들은 여자 탕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C28의 경우, 아기를 출산하고 입양을 보내고 나면 아이 아빠와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답답해요. 너무 소심해요. 당당하게 가 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자기새끼 입양 못 보낸다고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근데 개는 저희엄마 보자마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희엄마도 답답하다고. 나한테 못해도 되니까 제발 저희 엄마아빠한테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남자답게 가서 아,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빌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도 다 싫으면 나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나한테 딱 잘라서 말하고 헤어지든가.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어중간해요. (입양보낸 후 교류 원치 않아요.)”
(C28)

- 교류는 원치 않으나 책임있는 행동 해주길 원해

또한 아이 아빠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 서로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아이 아빠가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경우(C26)도 있었다.

“아기 아빠요? 무책임하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말고 잔 사람이 없는데 내 애기 맞아?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만 완전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 다 있는 거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거 같아요. 잘못은 똑같이 저질렀는데 왜 여자 쪽만 상처를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나라에서도 자기 자식들이 오히려 이런 일을 겪었으면 오히려 물어려고 하고 돈을 더 줘서 라고 애 지우려고 할 텐데 이거는 진짜 아닌 거 같아요. 당해봐야지 알 거 같아요.” (C26)

- 진정성 있는 교류는 유지하고자

한편 C29는 비록 아이 아빠의 가족이 낙태를 권유했다가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지만,

아이 아빠가 일을 쉬는 날 시설에 찾아오고 힘들 때 아기 아빠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였다.

○ 아기에 대한 소망

면접참여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좋은 양부모를 만나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길 바랐다(C30, C32). 이들은 특히 자신의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고(C28),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하였다(C29).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했고(C29, C33), 특히 엄마 아빠를 닮지 말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라주길(C32, C33) 소망하였다. 한편 C30은 아기가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자신에 대한 계획

면접참여자들은 앞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하여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고, 취업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시설에 있는 면접참여자들의 경우, 입소기간동안 제공되는 검정고시 대비, 미용기술 자격증, 네일아트자격증, 텔레마케팅 자격증, 컴퓨터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여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몸조리 후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중에 아이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게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잘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C28)

“소년원 안에 있는 동안 미용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미용분야로 나가고 싶어요. 네일아트 필기시험 준비 중이고…….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싶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 안에 있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밖에서는 못 배우는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네일아트 샵이 있는 미용실을 갖고 싶고 미용에 자리를 잡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리본공예를 배우고 싶어요.” (C33)

“검정고시 보고 컴퓨터 자격증 딴 후에 취직하려고…….” (C24)

“검정고시 보고 텔레마케팅 자격증 따서 텔레마케팅 일을 하는 것…….” (C30)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재 또 임신 중이기에) 소년원에서 일찍 나가게 되면 일자리 구해서 (현재 임신한 아이 양육할) 돈을 모으려고 해요…….” (C32)

마. 입양 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책제안

입양을 보내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 및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를 보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아이 아빠에게도 제도적으로 임신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임신숙려제도가 개선되어 입양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의 개선

이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하며, 청소년 한부모를 편견 없이 바라보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C26, C28, C3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을 꺼리고 입양을 보내게 되며,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입양을 간 아이들 역시 사회적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 입양숙려제도의 개선

면접참여자들은 2012년 8월 이후 시행된 입양숙려제도가 입양을 보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입양을 보내고 난 후 더 큰 죄책감을 갖게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낙태나 영아유기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특히 아기를 친생모 앞으로 출생신고 하는 것을 곤혹스러워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기를 보는 것은 좋으나 엄마호적에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여자에게만 불리한 제도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부에 대한 자격과 책임에 대한 법 제정

면접참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원인이 아이 아빠들의 임신과 양육에 대한 책임회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아이 아빠가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남녀가 사랑을 하고 아기를 갖고 서로 상의하여 낳기로 했으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러한 법이 있어야 남자들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져서,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나 아기를 입양 보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제일 큰 문제는 남자……. 남자 쪽이 안 변하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입양 보내는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솔직히 여자잖아요. 10대의 상처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자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서로 상의를 하고 낳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 늙을 때까지 애를 키워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남자가 빠져나가 버리면 여자만 힘들잖아요. 도망갈 수 없게 딱 잡고 있는 법, 평생 책임질 수 있게 그런 법이 있어야 남자들이 이런 일을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솔직히 경제 같은 거는 서로 힘들어도 일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으면 여자 혼자서 일하고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솔직히 아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이 필요해요.” (C33)

○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 운영

면접참여자 중에는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일반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한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진료받기가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의 운영하여, 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이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만 가는 병원. 그냥 산부인과의 가면 다 나이가 있는 분들 이잖아요. 결혼을 하고, 근데 나이가 어린 저가 가면, 나이가 어리다고 간호사들도 무시하고 의사들도 무시한단 말이예요. 청소년만을 위한 산부인과가 따로 있어서, 산모들을 더욱 배려해주고 병원비 부담도 덜어주었으면 좋겠어요.” (C29)

○ 청소년 자녀의 아기 입양 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동의절차 개선

면접참여자들은 미성년자녀가 아기를 낳고 입양을 보낼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현실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들 중에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기를 입양 보내려 할 때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인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부모가 낙태를 권유하거나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때로는 청소년 자녀 몰래 아기를 입양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면접참여자들은 미성년 한부모가 아기를 입양 보낼 때는 미성년 한부모의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반면, 한부모의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는 현 동의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아픈 아기에 대한 의료지원

면접참여자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아기에 대한 의료지원이 임신과 출산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진료 외에 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시설 내에서 입양을 가는 아기와 가지 않는 아기를 차별하여 진료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은 임신과 출산 및 초기 양육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진료에 국한되는데, 면접참여자들은 아기가 아파 수술이나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에도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였고(C24), 시설 안에서 입양 가지 않는 아기들이 아플 때 받는 지원이 입양 가는 아기들과 다르다면, 입양 여부에 상관없이 아픈 아기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였다(C26).

○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임신 중이고 입양 보낼 예정인 C3은 현재 집에서 지내면서 사회적 지원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C33의 경우는 입양을 보내고 나서 사회적 지원내용을 알게 되었다며 사회적 지원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지원내용에 대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현실적인 경제지원 및 물품지원

면접참여자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에서의 충분한 영양섭취(C24), 주거공간지원(C32), 출산 전 경제적 도움(C30, C33),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 까지 아기들 병원비나 기저귀, 분유값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C26, C33), 아기 건강을 위하여 아이돌보미서비스 같은 지원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C33),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경제적 지원(C33) 등을 요구하였다.

○ 청소년 한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수립

청소년 한부모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며, 따로 기관에 가서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출산 전에 고운맘카드만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에서 지원하는 유치원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내기가 힘들므로

더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청소년 한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기를 요구하였다(C28).

(3)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부모 심층면접결과

심층면접대상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는 두 명 모두 어머니(사례별 고유번호는 P1과 P2)였고, 청소년 자녀가 아기를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였다. 이들 중 한 명은 한부모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P2), 다른 한 명은 한부모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P1), P1의 자녀는 어머니와 별도로 월세로 방을 구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청소년 자녀가 임신과 출산을 하고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모가 겪은 제반 경험들을 면접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임신인지단계

가. 청소년 자녀의 임신소식: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노랬다.”

이들 부모는 처음에 자녀의 임신사실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1은 가정불화와 경제적인 파탄으로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심리적으로 방황하면서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로서 가슴 아프고 걱정되어 처음엔 낙태를 권했었다고 진술하였다. P2도 처음 임신사실을 알았을 때 무척 놀랐으며 특히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진술하였다.

“애가 젊은 나이에 인제 우, 우리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인제 공황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지가 탈출구를 그런 쪽으로 인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갖고 임신을 했는데 사실 처음엔 엄청 당황스러웠죠. 인제 제가 이제 당황스러워갖고 막 반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 유산시켜라 그랬더니 유산은 절대로 못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P1)

“처음 알았을 때는 2개월 정도 돼서 알았는데 그것도 유부남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막 무너졌죠. 분명히 이루어 질 수는 없는 사이잖아. 한 남자 옆에 두 여자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때는 하늘이 노랬죠.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었고 주위의 감정은,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저희 친척들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중략) 반응이 별로 다 좋지는 않았지. 미혼, 아무래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니까. 다들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만 얘기했지. (중략) 음, 글썄 저도 감정이 좋진 않았지. 부모로서 떳떳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좋아하지 누가 뭐 이렇게 해 갖고 저렇게 된 거 좋아하냐고. 양쪽 엄마아빠가 다 있어가지고 키워야지 정상인데…….” (P2)

이들은 모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어난 일이고, 자녀가 임신 2, 3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았으며, 자녀가 직접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고 하였다. 또한 아기 아빠는 두 명 다 딸과 나이차가 많았는데, P1의 경우는 아기 아빠가 폭력전과가 많고 사고를 많이 쳐서 교도소를 들락거린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할 거라 판단하여 어머니가 일부러 딸에게 아기 아빠와의 연락을 끊게 하였다. P2의 경우는 아기 아빠가 유부남으로 아빠 쪽에서 낙태를 종용하고 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경우였다.

“(아기 아빠 쪽에서 연락이 와도 아기 아빠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아휴 갠 여러 가지로 완전 폭력전과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애가 좀 그 뭐랄까 아마추어 복싱인가 프로 복싱 복싱가 그래요. 걔가 복서였는데 한때, 한때 그랬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그냥 인제 뭐 자기가 개인사업도 좀, 그 치킨 집 같은 거 했더라고. 그러니까 재가 치킨 먹으러 가고 같이 맥주 한 잔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낸 거야. (중략) (이제 아이 아빠라고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아이 아빠의 신빙성이라고 해야 될까,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중략) 인제 애가 진로를 좀 바꾸고 좀 열심히 하면 나는 지 밥벌이는 툭툭히 할 수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는데, 그러니까 해도 인제 서로 그렇게 만나갖고 나이차이도 많고 생활력 없고 폭력이나 휘두르고 그러면 나중에 애 인생에도 지장이 있고 애기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아예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갖고 남자가 책임 못질 바에는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P1)

“(아기 아빠에게 연락은?) 첨에는 임신한 거 알았을 때 같이 만났죠. 그쪽 부모랑 그런데 무조건 유산을 하라 그러는 거야. 자기네는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 데리고 와서 설득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지. (중략) (아기 아빠에게) 첨에는 좋게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도 뭐 대화가 어차피 안 될 사람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길 안 했죠. (중략) 어려움이 많았지.” (P2)

어머니들은 모두 딸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열악한 가정생활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 남자를 만나고, 그 후 임신을 한 것을 알고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고 하였다. 특히 딸의 임신과 출산이 정상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절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 단계

○ 낙태와 출산 및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의 선택

- 처음엔 낙태, 지금은 양육 권유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생을 위해 처음엔 모두 낙태를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이 정상적인 결혼생활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아기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딸에게 낙태를 권유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는 모두 뱃속 아기의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낙태를 거부했으며 아기를 낳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의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자녀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딸의 출산의지를 확인하면서 딸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차라리 딸을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 판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루는 와서는 엄마 나 임신했어 이려더라고요. 야, 큰일났다, 빨리 떼자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라고, 못 떼다고. 나는 엄마, 생명을 죽이는 일은 싫다고, 왜냐면 애가 신앙심이 좀 나름대로 깊었다는 애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이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못 떼더라고요. (한숨)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좀 참 힘들었어요. (중략)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 의사에 맡겨야지 어떻게 해요. 내말을 듣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P1)

“애가 저기 병원가자 그러니까 지는 키울 결심했고 키울 마음에서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생각해 보는 기간이고 그러다가 다시 인제 또 미어지는 거죠. (중략) 처음엔 낙태를 권했지만 지가 선택한 길이니까 도와주자는 마음 그거였죠. (중략) 그래도 한 생명이, 낙태 시기가 늦었어요. 낙태도 어렸을 때나 찌꼬말 때나 그럴 때나 하는 거지 애기가 성장이 다 자라나면은 우리가 또 성장 믿고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못 되니까……. 또 지가 고집을 완강하게 하면은 그래도 딸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반대는 했지만 지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해줬으니까 도움을 주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중략) 요새 텔레비보니까 미혼모들이 집에서 외면당해서 혼자서 힘들게 사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이도 이제 50이 다되고 그러니까 살아야하면 (중략) 인제 도와주는 길로만 가는 거 그것만 생각했죠. 같이 출산해갖고……. (중략) (아기 아빠에게 취한 태도는?) 없어요. (딸에게) 아예 연락을 끊으라고 했지.” (P2)

- 앞으로도 입양 보낼 생각 없어

또한 P1과 P2는 앞으로도 손자를 입양 보낼 계획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P1의 경우 자녀의 인생을 위해 아기를 입양 보낼 것을 권하다 청소년 자녀의 거부로 키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P2의 경우도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절대로 입양을 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엔 입양 보내자 그랬거든요. (중략) 그런데 제가 입양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중략) 제가 끝까지 책임지는게 옳다고……. (중략) 그래서 내가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라. 사실 애기도 불쌍하잖아요. 너무 딱하지, 몰라라 하는 건. 책임도 제가 잘못했으니 져야지. (중략) 새록새록 크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 애 안 낳았으면 어쩔 했을 뻔 했나 생각이 들어 (딸집에) 딸내미 보고 싶어서 안 가. 보기 싫어서 안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손녀딸 보고 싶어서 가요, 정말로.” (P1)

“(입양)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중략) 내 뱃속에서 낳으면 얼마나 귀한데 내 딸래미도 그렇게 뱃속에서 낳았는데 그 핏덩이를 떼어놓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P2)

○ 자녀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한 평가

현재 P1과 P2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녀가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느끼며, 아기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자녀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만약 주변에 청소년이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다면 낙태가 아닌 출산과 양육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엄마 의사도 중요하고 애기 의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뭐 내 자식이 그럴까봐 그랬는데 (중략) 저도 부모를 일찍 여의었어요. (중략) 정말 너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신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항상 아팠거든.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싶어요. 여자가 자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못사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중략)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갖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낙태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생명 자체를 (중략) 그렇게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윤배반적인 행동을 왜 안하겠냐고 그래서 (내자식을) 아주 관찮게 봐요, 그 정신을. 솔직히 말해서 여자 혼자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대단해요.” (P1)

“(자녀가 임신을 하면) 가정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안 받아 주면 혼자 살게 돼서 힘들거든요. (중략) 저도 결정하기 전에는 힘들었는데 낳기로 결심하고 나서는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중략)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 (낙태나 입양 보내는 게) 많은데 그래도 내 자식이 자기핏줄을 옆에 끼고 있고……. (중략) 딸자식한테는 그 새로 나온 자식이 핏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중하잖아요. (중략) 그래도 고아원 같은데 맡겨서 엄마아빠 없는 거 보다는 한부모라도 있어서 애기를 키워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P2)

③ 청소년 한부모의 아기 양육 단계에서 부모가 겪은 제반 경험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들은 청소년 자녀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모가 언급한 구체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가. 주변의 따가운 시선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으며, 자녀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도 주변에서 눈치를 주고 친척들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여 힘들다고 하였다.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배불러 오게 되면 주위의 시선, 그런데다가 결혼 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었으니까 그 시선이 따가운 거 그런 게 좀 있었죠. (중략) 엄마 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선이 조금 눈치가 보이죠.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꺾고려운 게 있잖아. 아는 친한 사람 외에는 잘 말을 안했어요. 솔직히 내 자식이 뭐 미혼모라고 공개해야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주위시선이 따갑고 그러니까…….” (P2)

나. 경제적 어려움

또한 P1과 P2는 청소년 한부모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며, 부모로서 자신들이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돈이 있으면 애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약간 울먹) 내가 너무 이제 가계가 좀 힘들어진 이런 상태에서(울먹)……. (중략) 애 같은 경우는 지가 완전 굉장히 억척스럽게 사는 거 같아요. (중략) 배우는 기회가 있다는 곳 꽤 찾아다니는 거 같더라고요. (중략)근데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수급비가 오십 몇만 원인가 받고 양육수당 20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중략) 근데 거기서 집세가 반이 쪽 빠져나가니까 (중략) 집세 35만 원 나가요. 아무래도 지가 힘들지. 근데 집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료라든가 교통비라든가 하면 그것도

사십 몇만 원이잖아요. 정작 지가 쓰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살아보니까 경제에 대한 게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지가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문젠데, 밥도 한 번 안 해 먹어보던 애가 갑자기, 지 빨래도 안 빨아보던 애가 저렇게 하고 다니니……. 그래도 대견하더라구요. 지가 새끼를 낳아서 해가는 거 보면 대견해요.” (P1)

“내가 주는 도움이야 애기 돌봐주고 같이 먹고 살고 하는 거죠. 솔직히 뭐 양육비 나오는 걸로는 애기 키우기가 힘들죠. 나라의 정책이 덜 됐으니까……. (중략) 아직까지는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고 가장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돌볼 사람이니까 내가 이끌어 주고 돌봐주고 해야 되겠죠.” (P2)

다. 청소년 한부모의 부족한 양육기술과 열악한 양육여건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기를 양육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하여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크지만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경제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제력은 없고 인제 잠시 애기 잠시 봐주고, 저도 몸이 아파서 많이는 못 봐줘요. 그러나 어쩌다 잠시라도 봐주고 그리고 이유식 같은 거, 지가 못 만드니까 내가 만들어주고 그런 거. 뭐 목욕시켜달라는 거 아무래도 내가 씻기는 거 하곤 틀리지. 나는 막 거의 10분이면 씻겨 내놓으면 저는 한 30, 40분씩 주무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거는 조금씩 도와줘요.” (P1)

“그래도 자기랑 애기가 24시간 계속 붙어있고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힘들죠. 애가 그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일 가고 하면은 자기가 보고 혼자보고 하려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중략) (내가 도와주는 것은) 같이 살면서 그냥 같이 밥이나 먹여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주고 그러는 거지 뭐. 돈을 많이 싸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가는 거 그런 거지 뭐.” (P2)

라. 생활 속에서의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

어머니들은 아기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세대차이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와 갈등을 많이 일으키며, 이것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기온에 맞게 아기 옷을 입히는 문제나 아기 이유식을 만드는 문제 등 주로 보육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많이 하는데, 때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서 청소년 자녀와 갈등이 커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에어콘 바람 쐬니까 애 옷 하나 챙겨라. (중략)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고, 그래도 챙겨. 안 그래도 콧물 나오잖니. 덥다가 추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콧물이 나온다 그러면 알아서 한다니깐 이러면서 싸움박질이 나는 거예요. (중략) 죽을 썬 먹었는데 (중략) 영양플러스에서 호박도 오고 감자도 오고 당근도 오고 계속 그것만 썬 먹이다가 야, 그래도 요번에 가면 시금치라도 사와라. 천 원짜리라도 하나 넣자. 야채 좀 바꿔가며 먹이자 그러면 엄마 그거해서 그냥 남기면 뭐해. (중략) 먼저 이런 식으로 버리긴 왜 버려, 니가 먹고 개는 다른 것 좀 바꿔 줘. (중략) 애는 (음식재료를 골고루) 바꿔줘서 키워야 해, 이렇게 하면 그게 간섭이야. 그리고 애를 춤게 재우지 말아라, 잘 때는 그래도 여기 가슴은 따뜻하게 재워라, 뭐, 하여튼 그런 거부터가 충돌이 되는 거야. 생활 속에서 아무 것도 아닌데. (중략) 나는 생각이 나서 하는데 재는 간섭인거라 그렇게 돼서 싸우는 거 같아요.” (P1)

“우리세대 애기 키우는 거랑 재네 세대 애기 키우는 거랑 좀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제 50세 세대고 재는 이제 지금 태어난 애기 보는 젊은 세대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키우는 방식을 우리는 권하는데 재네는 자기방식으로 키우니까 차이가 트러블이 있어요.” (P2)

마.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연민

한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녀가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면서 젊음과 낭만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학교도 중단하고 애 키우고 사는데 바빠서 꿈을 펼치지도 못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프며, 또한 아기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도 가슴 아프다고 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로 살아가는 딸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중략) 내 딸이 공부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리고 뭐, 지가 꿈을 위해서 좀 낭만도 있어야 할 나이에 너무, 막, 저렇게 지가 사실상 가장이면서 엄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가 안타까워 할 때는 그게 맘이 아프죠.” (P1)

“가장 아팠던 거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없는 거. 엄마아빠가 있어서 애기들을 진짜 행복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도 애가 성장하면서도 아빠가 없으니까 그것도 많이 마음이 아프죠, (청소년 자녀의) 엄마로써…….” (P2)

④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소망

가. 아이 아빠와는 더 이상 연결되길 바라지 않아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는 자녀가 남편 없이 힘들게 지내는 것과 손자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도 자녀가 아기의 아빠나 그의 가족과 앞으로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는 두 사례 모두 아기 아빠가,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기 아빠로서 신뢰할 수 없고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P1의 경우는 아기 아빠가 폭력전과가 많았고, P2의 경우는 아기 아빠가 유부남이었는데, P1과 P2는 이런 아기 아빠하고는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차라리 자녀인 엄마가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P1은 상대방 아기 아빠에게 아기 아빠임을 부정하고 근본적으로 관계를 끊기를 요구했다.

“그 집에서는 애가 다른 데로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아이 아빠 만나서 내가 그렇게 애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는 아이 아빠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략)두 번 다시 생각에서 완전 지워버리게끔…….” (P1)

“그 집이랑은 양육비나 받고 이제 연락 같은 건 안했으면 좋겠죠. 그게 부모마음이죠.” (P2)

나. 자녀에 대한 소망: 새로운 출발

P1과 P2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를 소망하였으며, 딸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생활에 안정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었다(P1).

“어차피 애는 키워야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전문직으로 가라. (중략) 사회에서 니가 생활하기도 좋고 수입도 되니까 우선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중략) 또 인제 결혼도 하고 싶겠죠. (중략) 지금 나이도 어리니까. 지 좋은 남자 만나서 따뜻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라면 그게 소원이예요.” (P1)

“글쎄 앞으로 그래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고, 애기 데리고 계속 혼자 사는 거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죠.” (P2)

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P1과 P2가 제시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은 다양했는데, 먼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고 청소년 자녀가 일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도록 보육기관이나 아기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녀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고 취업 능력을 키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들이 발달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발달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그 애들이 (아기를) 혼자 키우고, 개네들이 정신적으로 다 성숙한 다음에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중략) 자기들도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하던 말이지. 재랑 나랑 싸우는 것도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각 튀어요. 재가 그럼 나도 참다참다 못해 같이 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문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잠시라도 기분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처럼 복지가……. (아이랑 엄마가 편안히) 쉴 수 있어도 좋고……. 그 돌 보미? 지원을 해주면서 엄마 혼자서 풀 수 있는 공간……. (중략)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자기네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중략)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받으니까. (중략) 제가 어렸을 때까지 다 해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면 저들도 갑자기 엄마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힐 거야……. (중략)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 묶여있다고…….” (P1)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거는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한부모 가정이 애기 키우기가 솔직히 힘들더라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죠. 애기 혼자 키우려면 나라에서 양육되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 것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래도 한 부모가정이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심하고 맡아주는 기관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부모 엄마들도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일을 하게끔 나라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희망이죠.” (P2)

4) 소결

청소년 한부모 35명과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 2명 등 총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면접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내용은 임신배경과 인지과정,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의 경험, 양육 혹은 입양 보낸 과정에서의 제반경험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것이었다. 면접대상청소년 한부모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22세까지였고, 집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중 양육사례는 25사례, 입양 보낸(보낼) 사례는 10사례였다. 면접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는 임신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임신할 당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가출이나 자취 또는 상대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피임이나 임신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가졌으며, 임신 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참여자들은 처음에 임신사실을 알고 몹시 당황했고 상대남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대남성들은 대부분 낙태를 권하거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면접참여자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주었다. 35사례 중 28사례가 임신 혹은 출산 후 헤어졌으며, 이중에는 임신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헤어진 경우도 있었다. 낙태와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정에서는 양육사례의 경우 처음부터 출산을 결심한 경우가 많았으나, 입양사례에서는 처음에 낙태를 고려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과 입양 보내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과정에서도 양육사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흔들림 없이 양육을 선택하였으나, 입양을 보내기로 한 청소년들은 마지막까지 갈등하며 마음의 동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이 아빠의 부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가장 힘들어 했고, 그 외 주거문제와 생활비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면접참여자 중에는 임신과 출산 및 초기양육과정에 시설에 입소하여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시설에서의 지원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퇴소 후 재가양육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주거와 의료비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을 우선 배려한 임대주택제도마련과 엄마와 아이모두를 위한 의료지원을 요구하였고, 현실을 반영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해줄길 요구하였다. 또한 아이 아빠가 양육을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육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열악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양육을 선택한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기가 곧 삶의 활력소이며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의 시각과 입양숙려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입양을 보낸(보낼)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대부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보니 사회적 지원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찾는데 제약이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입양사례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은 사회적 지원내용을 잘 알지 못했으며, 지원내용을 검색하고 신청하는 데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입양을 보낼 예정인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여 산전산후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다. 한편 입양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은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고 자신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느끼지 못했으며, 특히 입양숙려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사례의 경우 심리적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이미 입양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입양숙려제도는 고통만 줄 뿐이며, 특히 여자에게 불리하고 입양을 가는 아기에게도 입양을 지연시켜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입양을 보낼 때 한부모가 미성년이라면 반드시 한부모의 부모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반해 미성년 한부모의 부모가 손자를 입양보낼 때는 미성년 한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미성년 한부모의 부모가 손자를 입양 보낼 때에도 미성년 한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입양사례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숙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이 아빠의 법적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들은 처음에 딸의 임신사실을 알고 절망하며 딸에게 낙태할 것을 권했으나, 지금은 자녀가 한부모로서 아기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며 가능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딸이 새 출발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였다.

3.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청소년 한부모 관계자 집단면접조사는 현장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을 지원하는 활동가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로부터,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실태, 그리고 관련 문제점과 요구지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대안과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의 근거자료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집단면접조사는 집단별로 나누어 각 집단별로 1회씩, 총 2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의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각 면접은 2~3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접 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 전사되었다. 첫 번째 조사는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조사는 일선학교 보건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표 IV-101).

면접내용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활 실태 및 문제점, 그에 따른 정책적 요구안들을 주 내용으로 하였으며,

표 IV-101 집단면접조사 참여자

A 집단			B 집단			
	성별	소속		성별	소속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A1	여	보건 교사	B1	여	00중학교
	A2	여		B2	여	00중학교
	A3	여		B3	여	00중학교
	A4	여		B4	여	여성·청소년 사회단체
	A5	여		B5	여	00고등학교
	A6	여		B6	여	00중학교
	A7	여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및 성교육 실태, 그에 따른 정책요구안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한편 설문조사는 청소년 한부모의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간단하게나마 거주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청소년 한부모 입소자의 수, 퇴소 후 유형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2) 분석결과

청소년 한부모와 관련한 최근의 양상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담회 형식의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들은 종합하여 보면, 크게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와 정책적 요구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발생과정에 따라, 후자는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개입을 통한 지원정책을 주제별로 요약하였다. 집단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주로 만나는 이들은 보건교사의 경우는 학생,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의 경우는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들이어서 두 집단에서 전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 중에는 서로 상반된 내용도 있었다.

(1)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

①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임신실태

최근 들어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성행동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성교제가 허용되고 개방적인 성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과거와 달리 학생의 성관계나 임신이 일부 ‘노는’ 학생에 국한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논다는 애들은 (선생님) 보는데서 남자 무릎에 안고. 옛날 같으면 좀 제지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 보는데도 붙어 앉아서 무릎에 앉아서. 가라 그래도 안가고 그런 식이죠.”(B3)

“요새 애들 패턴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스킨십으로 간다는 것이 정식으로 되어 있어. 여자애들도 (성관계) 했어 안했어 물어보고. 그리고 (성관계) 했었던 경험에 대해 예전엔 남자애들이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여자애들도 이야기해요. 임신도 걱정도 하고 성병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는 거야.”(B3)

“우리 학교 애들도 여자친구 임신했을까봐 걱정하는 애들 있거든요. 검사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괜찮다고 기뻐서 찾아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애가 아주 괜찮은 애거

든요. 개가 그랬다는 걸 알면 선생님이 놀라 자빠질 걸. 옛날에는 일부 몰지각한 애들만 놀았으나 이제는 다 논다(고 보면 되요).”(B5)

“저희는 남학교라서 관찰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학을 보내고 오면 꼭 한 두건씩 (임신문제가) 나타나요.”(B6)

“(임신 사안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구요. 계층 간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살면 잘 사는 애들끼리 만나서, 못 살면 못사는 애들끼리.”(B5)

② 청소년의 낙태실태

청소년이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 이후의 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에 대해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임신이 알려지면 학생 당사자를 비롯하여 상대 남학생, 학교 당국 등 모두에게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낙태나 출산까지 담임교사 선에서 조용히 병·휴학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임신을 했냐 안했냐 고민이에요 그런 이야기보단, 오히려 임신 한 것 같은데 응급피임약을 어디서 구입해요 물어보는 애들이 있었어요. 모 고등학교에서는 응급피임약을 먹고 가라앉아서 하루 종일 보건실에 누워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B1)

“(낙태를 해주는 병원) 뒷골목엔 아직도 있다고 보면 되요. 애들끼리는...(정보가 공유된다) 그리고 그건 끊임없이 계속 있는 문제 같고, 저는 (학교를) 옮겨 다닐 때마다 임신진단시약 한 해에 5개씩 사는데, 거의 다 소진해요.”(B5)

임신한 학생의 경우 대부분 낙태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개의 경우 보호자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낙태)처리되는 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법낙태 시술을 받거나 성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 시술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2010년 낙태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해외 원정 낙태를 하는 청소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어렵사리 출산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조부모의 호적에 올리고 출산을 비밀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임신한 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출산보다는 낙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출산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학생 신분으로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 미혼모들은 낙태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소문이 엄청 나서,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여자애가 먼저 그만두고, 남자애도 그만뒀어요. 애를 낳은 건 한 사례고 나머진 다 낙태였어요.”(B5)

“성폭행 당한 걸로 해서 낙태를 했어요. 부모 간에 합의해서, 낙태 금지 이후 이야기예요.”(B6)

“출산하겠다는 아이를 달라고 해서, 결국 지방에 가서 낙태 하고, 비용은 남자 쪽 아버지가 다 대시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교류가 없고, 학교는 2주 정도 병가 처리 하는 걸로 해서 담임선생님이 처리했어요.”(B4)

“(남·녀) 둘 다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낙태를 하길 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보건교사가 알려줄 수 없거든요. 학부모가 책임지게 하거나 상담센터에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중략) 남자애가 자율형사립고 다니는데 그날 4시간 만에 낙태비용으로 120만 원을 모았대요. (중략) 둘이서 수소문해서 변두리 가서 낙태를 했다고 해요.”(B4)

“중국으로 낙태하러 간다는 아이들도 있고...(중략) 딸을 생각해서 아이를 할머니 호적에 올려서 아기가 미혼모의 동생이 되는 경우도 비밀비재한테 청소년 미혼모 숫자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A5)

③ 청소년의 출산 및 양육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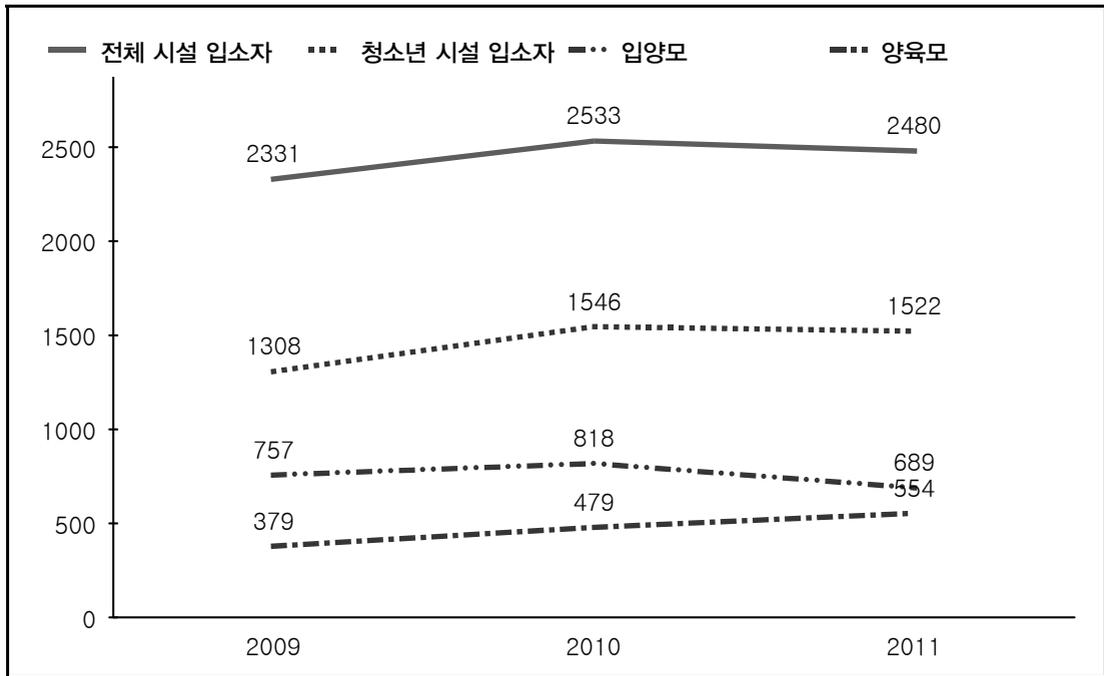
면접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출산을 한 경우는 낙태시기를 넘겼기 때문이 대부분이며 특히 학생의 경우는 출산을 하더라도 대부분 입양을 선택하고 복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경우 부모의 이해와 수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낙태의 위험과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수를 넘겨서……. 낙태가 불법화되기 전에는 대부분 출산을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낳는 거죠. 어른들한테 쉬쉬하고 있다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학교에서 다니라 마라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식이에요.”(B2)

“(부모님 간에) 합의하고 휴학하고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애기를 낳고, 애기는 남학생 엄마가 자기 호적에 입적을 해서 키우는 조건으로 그렇게 처리 됐어요.”(B6)

“낙태시기를 놓쳐서, 그 애는 아버지만 계셨어요. 아빠만 계시다보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때를 놓쳐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출산해서 입양한 케이스예요. 학업은 그때 잠깐 휴학을 하고, 다시 복학 했어요.”(B3)

미혼모 대상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임신 이후 출산 시기를 놓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적극적인 양육의지가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그림 IV-3】 거주 시설 내 청소년 한부모의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의 비율 증가와 관련하여 거주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그림 IV-3】), 지난 3년간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규모를 보면 2009년(56.1%, 전체 입소자 2,331명 중 청소년 입소자 1,308명)에 비해 2010~2011년(61~61.4%)에 거주시설에 입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 동안 입양모의 수는 점차 감소한 반면 양육모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느끼는 상황이 비교적 정확함을 보여준다. 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증가 이유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2010년 낙태금지법 시행을 들고 있다.

“2009년 말에 낙태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가 폭증했어요. 전화, 방문 상담 모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지방에는 여유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A5)

“과거에 비해 양육을 택하는 비율이 늘었어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되면서 ‘왜 내가 아이를 못 키워?’하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A1)

“10대는 원해서 출산하기보다 시기를 놓쳐서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부잣집 미혼

모가 아니라 저소득층 미혼모가 문제가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이미 청소년기에 부모 도움 없이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살아온 아이들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르바이트 해서 돈도 벌고 미혼모가 되고난 후에도 주저함이 덜한 것 같아요.”(A7)

자녀양육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나 ‘좋은 어머니’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강화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입양보다는 친모에 의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당사자들이 권익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권익 대변이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입양이 아니라 양육하는 한부모가 자신을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A1)

“남자 친구가 떠나도 ‘나는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다짐하면서 자기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의지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미혼모든 한부모든 당사자들이 권익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소년 한부모들이 목소리를 내기는 너무 어려운거죠.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요.”(A3)

④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정 실태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은 청소년 미혼모의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기에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재가 청소년 한부모보다 원가족과의 관계나 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주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부모가정보다는 계부모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표 IV-102) 원가정의 기능이 약화된 경우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의 효과적인 자립과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원가족의 지원이 절실하므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꾸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주된 의견이다.

표 IV-102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정 유형

단위: 명(%)

구분	양친부모 가정	계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기타	계
2009년	366(42.3)	111(12.8)	280(32.4)	41(4.7)	67(7.8)	865(100.0)
2010년	537(42.4)	132(10.4)	426(33.6)	69(5.54)	103(8.1)	1,267(100.0)
2011년	487(40.9)	131(11.0)	403(33.8)	73(6.1)	97(8.1)	1,191(100.0)

“저희 시설은 미혼모시설에 있다가 집으로 귀가하기 어려운 엄마들(청소년)이 들어오는데,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원 가정에서)수용하고, 자립할 준비가 되었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받아들 이더라고요. 미혼모들은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면 쫓겨날 거라 생각하지만 부모님 상담을 계속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져요. 10대 미혼모도 시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엄마가 도와주시면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A5)

“(부모가)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하면 슬픈 사람, 나를 버림 사람, 심지어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와의 관계가 우선 회복되어야 합니다.”(A6)

“부모와 자녀(미혼모)를 대상으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미혼모의)죄책감도 다루고, 부모 에게 손을 내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부모가 실망한 자녀에 대한 마음도 회복이 되어야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A7)

“성장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단절이 심한 청소년이 많고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거죠. 청소년 미혼모 아빠들의 상황도 좋지 않아요.”(A2)

“미혼모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요.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나 가족관계에서 일단 훨씬 열악해요.”(A2)

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실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과 양육권은 모두 정당한 기본권이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더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학생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일반적이듯이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소수자로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학교 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조금 달라져서 요즘에는 병가(병결)처리 해 주거나 학부모와 상의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A5)

“학교는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거죠. 지각을 하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잖아요. 아기가 아프기도 하고 애 키우면서 변수가 늘 있잖아요.”(A3)

“현재 학교체제에서 임신한 아이가 학적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주변에서 이미 속덕속덕 개가 애기를 낳고 학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B6)

“우리 학교에서 (학업을) 그만둔 애도 애들끼리 먼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들어오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학교에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나가요.”(B5)

“나는 애기 낳아서 키울 거다. 마음이 되어 있어서 난 당당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놀린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와, 부모가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죠. 너 유예해라.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요.”(B6)

“교감선생님한테 (이 문제에 관해) 물어봤어요. 너무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32년 동안 학교에 계셨는데, 이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인권위에서 절대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게 내려왔잖아요. 그만두게는 못하지만 아이에게 (학업을) 유예하도록 이야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B1)

(2) 정책적 요구

①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 교내 성교육의 내실화

현재 성교육은 보건교과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건교과는 선택교과로 분류되어 있어 수업시수 확보가 어렵고 정규수업이 아닌 임시나 보충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적 위주의 교육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후에라도 올바른 성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실적보고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성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 역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교육의 내실화는 청소년 한부모 발생 후 개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성폭력 성매매 관련 교육이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보고하는 거 위주로 하고 섹슈얼리티, 관계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있지만(다루지 못하고 있어요).”(B4)

“어떤 때는 시간이 없다보니까 보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단체로 관람하고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1시간 있으면 단체관람으로 7시간. 그러면 애들은 그런 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B3)

“지금 우리나라는 보건교육이 완전히 거꾸로예요. 초등학교는 안 돼요, 싫어요, 이런 정도 선에서 그치고 중학교에 와서 정작 받아야 할 때 단절인거예요.”(B2)

“문제가 생겼을 때만, 언론에서 떠들 때만 보건교육 강화해라, 성교육 해라 내려와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짓수업을 하는 거죠. 관리자는 없는 걸로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근본적으로는 안 되고, 잠시 임시방편으로 되는 거예요.”(B3)

“미혼모가 생기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교육, 재범방지, 낙태, 경제적 지원 그런 비용에 비하면 예방 교육은 훨씬 저렴하죠.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B5)

○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교육 실시

청소년 한부모의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 간 의사소통 및 성 심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남녀간 차별화된 피임 교육과 성행동에 대한 책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므로 남학생을 대상으로는 (임신·출산에 대한) 법적 의무 및 책임의 문제와 올바른 이성교제, 인권 중심의 교육을, 여학생을 대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자존감 향상 등의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러거든요.”(B6)

“여자애들이 키스하고 팔짱끼고,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남자애들은 그거는 벌써 관계를 다 허락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먼저 대시 했다고 이야기 하는 거지. (남학생에게)너희 씨가 다른 사람 손에 자라고 있다고 상상하면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면 당연히 싫다고 해요. 이것부터 접근해요.”(B4)

“(여학생의 경우) 자존감의 문제 같아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을 자기에게 러브콜을 보낸다고 느껴지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빠지고 반복되고, 이걸 낙태를 하고 나서도 반복되는 거죠.”(B2)

“권력의 문제도 있어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같은 학년끼리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여자)중학생이 (남자)고등학생을 만나거나, (여자)1학년이 (남자)3학년을 만나거나, 이러면 거의 남학생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의외로 그런 아이들 있어요. 우리 중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생 오빠 만나는 애들 있어요.”(B2)

○ 올바른 피임약 사용 교육

청소년들의 경우 응급피임약의 사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오·남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피임약의 오·남용은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응급피임약을 먹어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개념이 없어서, 이미 커버할 시간을 지나서 찾아오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응급피임약을 잘 못 알고 겁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교육이 필요한 거죠.”(B2)

“사전피임약은 병원에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⁴⁰⁾이라는 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임신 안 하려고 약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개들은 이제 피임을 못하는 거죠. (중략) 사후피임약의 문제는 쉽게 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건강에) 더 안 좋은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B5)

“응급피임약 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00고등학교에서는 응급피임약을 먹고 가라앉아서 하루 종일 보건실에 누워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B1)

② 사후 개입을 통한 지원책

○ 미혼모·부간 재결합과 자립지원

아기 아버지인 청소년 미혼부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담과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하며, 미혼모의 경우에도 아이 아버지와 결함 가능성이 있다면 결함 후에도 일정기간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실제로 시설 관계자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 아버지와 시설 퇴소 후 아이 아버지와 합친 경우를 질문한 결과, 2009년에는 67명, 2010년 114명, 2011년 98명으로 나타났으며, 합치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2009년 86명, 2010년 112명, 2011년 11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직 청소년으로 부모역할을 감당하기에 자립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 부모 자신을 물론 그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이후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0)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 6월 의약품 재분류에서 사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구입이 가능하도록 발표하였으나 같은 해 8월 최종 의약품재분류 결과, 피임약 사용관행과 사회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대로 사전 피임약은 의사 처방없이, 사후 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하도록 결정되었다(연합뉴스, 2012. 8. 29).

“아기 아빠와 재결합 가능성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기 아빠가) 미혼모와 환경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싸웠을 때 상담도 해 주고 몇 가정이라도 살리는 지원과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A6)

“10대 미혼모가 결합해서 시설을 퇴소하더라도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 지원이 유지되어야 해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애 아빠는 도망가고 애를 키우는데 출생신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상당해요.”(A7)

“10대들의 경우는 혼인신고가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이나 양육 돌봄이나 이런 지원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A4)

○ 사회적 편견 해소와 맞춤형 자립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 민간 보험 활용, 미혼모 지원 단체 육성, 가족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 자산형성계좌, 아이돌보미, 아동의료비, 지역사회 멘토 등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거든요. 지금 출산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조건부 수급자 형태로 6개월이나 1년, 적어도 아기가 2세가 될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은 저출산이죠. 한부모사업 보면 좋은 게 많은데 정작 엄마들 에게 물어보면 수당 말고 실제적인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고 말씀하거든요.”(A2)

인식개선에 초점을 뒀어 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 사회는 한부모가 되면 똑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10대 미혼모가 늘고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 대안학교) 학생은 늘지 않아요. 10대들은 주위 시선도 있고 당장 출산이 힘들니까 일단 시설로 가는 것 같아요.”(A3)

“부모님이 연락처고 뭐고 다 바꾸고 이사를 가 버린 거예요. 부모님께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 애 아빠와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도망가 버렸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중략) 월세 지원도 필요하고 민간차원의 보험회사에서 월 분납금을 대납해 주면 아이들 아플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정으로 사람을 파견하는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고 반 편견 교육도 꾸준히 해야 해요. 미혼모 지원단체를 법으로 육성하고 단체를 지원해야 미혼모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A7)

“자산형성계좌 사업이나 아동 의료비 지원은 없애면 안 될 사업이었어요. 교육비도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비로 방송통신대학)졸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예산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쓰도록 관리가 필요해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문제가 많아요.”(A6)

“아이돌보미는 기본이 2시간이잖아요. 1시간이 필요해도 2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이니 한 달

밖에 못 쓰니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주거지원도 한부모가 1순위 이긴 한데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미혼모는 서울, 부산 이동도 잦고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프거나 일하거나 쉬고 싶거나 아이한테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친정엄마 같은 지원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해요.”(A1)

○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구성원에 대한 반 편견 교육을 기반으로 보다 전향적인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학교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이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면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일단 필요하고 학교 다니면서 육아 도우미, 어린이집 이용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이 되어야죠.”(B5)

“(청소년 한부모에게) 부모의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학업을 유지하려면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만이라도 시설에서 양육해 주는 방안도 필요해요.”(B6)

“장애 학생들이 오면 보조인력을 하루 종일 붙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시설면에서는 임신부용 책상이나 의자, 교복 이런 것도 갖추어야 되는 거죠.”(B2)

“출석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연하게)대처해서 학습권을 박탈하지 않고 대물림되는 문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B3)

3) 소결

관계자 집단면접조사 및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하고 개방적인 성문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성행동에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의 신분에서 임신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낙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출산을 하더라도 자녀를 입양 보낸 후 복학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학생 신분으로 출산과 양육을 병행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았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학업과 양육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 미혼모들은 낙태를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혼모 대상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들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미혼모가 되기 이전

원가정의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원하지 않은 임신 이후 출산 시기를 놓쳐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최근의 경향으로 첫째,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2010년 낙태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미혼모가 증가하는 점과 둘째, 적극적인 양육 의지가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점을 들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입양모의 수는 점차 감소한 반면 양육모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이 비교적 정확함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이 청소년 한부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요구로는 교내 성교육 내실화와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예방교육 실시, 올바른 피임약 사용교육 등을 언급하였으며, 사후 개입을 통한 한부모 지원책으로는 미혼모·부간 재결합과 자립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와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현장의 지원 강화 등을 언급하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당사자들이 권익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권익 대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이상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본 면접에서 청소년들은 임신당시 대부분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취를 하거나 친구집에서 지내거나 기출을 한 상태였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부모가정 등의 이유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자녀는 이성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이른 나이에 성에 노출되고 중국에는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출산, 입양이나 양육 등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경로를 밟고 있었다. 현재 재가양육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가족과 연락을 거의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아이와 둘이서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그들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부모 또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은 우리사회 가정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통해 줄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과 피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 없이 성관계를 갖은 결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임신 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임신 사실에 대해 당혹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행동 이전에 성행동의 결과 및 책임을 인식하고 피임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학교나 보건교사를 통해 피임정보를 얻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내 성교육 및 보건교사의 학생 상담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 성교육은 수업시수 확보가 어렵고 정규수업이 아닌 임시나 보충수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책임감 있는 성행동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임신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상담 역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교육의 내실화는 청소년 한부모 발생 후 개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상대 남성 및 그 가족들은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회피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이로 인해 여자 청소년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에 임신과 출산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당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학생을 대상으로는 임신·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 및 법적 의무와 올바른 이성교제, 인권 중심의 교육 등을 통해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의식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성에게도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자녀양육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에 대한 의지와 목적이 굳건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낙태를 하거나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이나 아이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심리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높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할 가능성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 한부모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지원이 절실함을 시사한다. 현재 입소시설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에게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재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청소년 한부모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립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생활지원은 자녀양육 여부, 가족지원 여부, 학력이나 취업 준비 정도 등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에 이들의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립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업지속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학업지원을 하되, 정규학교나 대안학교로의 편입, 검정고시 준비 등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 개인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도움 없이 나이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학업지속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학령기가 되기까지 몇 년간 학업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만하다. 취업을 원하는 경우엔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지원을 하되, 청소년과 임신부라는 특성에 따른 제약이 있는 만큼 청소년 한부모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혼자서 육아 및 가사,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지원의 실시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지정이나 주거지원의 실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중에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아이의 부모가 함께 살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위장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제도적 지원이 되지만 양부모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초기에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비밀비재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자립여건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소년 양부모가 함께 살더라도 일정기간 자립지원을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면 여자 청소년이 한부모가 남게 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함께 양육을 감당하는 것이 부모가 된 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보다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 아버지 역시 상당수가 경제적 지원과 자립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양부모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발굴하고 제도적 지원의 홍보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고 정보수집에 부지런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지자체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얻고 있었지만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들도 있었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해 혼자 지낸 경우 청소년 한부모 지원 관련 정보에 더 어두웠는데,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중에도 시설에서

시설 외 지원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 잘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고 정보제공처가 어디냐에 따라 부분적인 정보를 얻어나 왜곡된 정보를 얻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청소년 한부모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한 홍보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나 학교, 청소년 시설, 지하철역 등 지역공공시설에 홍보유인물을 비치하여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상 주변에 자신의 처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워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시민사회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덟째, 청소년 한부모 대상 면접조사 결과는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책 임과 입양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면접 결과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모여서,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모가 대신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는 수급비를 아기의 부모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지 않고 자신에 뜻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가 건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의도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수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입양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의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손자를 입양을 보낼 수 있는데, 이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리하게 행사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소지가 다분하다. 즉 청소년 자녀가 양육을 원할 때에도 부모 마음대로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홉째,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엇갈린 반응은 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입양숙려제도는 선택귀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녀를 입양을 보내려는 청소년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악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아이 아빠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숙려제도는 엄마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되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양숙려제도로 인해, 입양을 보내려고 하기 보다는 낙태와 유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며 결코 간과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제 5 장

정책제언

1.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2. 정책과제 및 제언

제 5 장⁴¹⁾ 정책제언

1.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준비 없이 임신을 하게 되고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 임신 상황을 종료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양육보다 입양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양육을 선택하더라도 미양육부모와 원가족의 지원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원이 단절되거나 공식적인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와 더불어 용기 있게 양육을 선택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요구하기도 여전히 쉽지 않다. 어린 나이와 낮은 학력, 자녀양육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만성 빈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청소년 한부모가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되어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 청소년 한부모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열악한 가정환경과 책임감 없는 성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상당수는 임신 당시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문제로 부모의 지도감독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한부모라는 가족형태가 대물림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격차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에 자주 노출되고, 학업중단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과 불법 낙태, 출산, 입양과 양육 등 위기 상황에 놓이고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는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다. OECD 주요국의 경우에서도 청소년 출산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임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41) 이 장은 김지연 부연구위원, 백혜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있다. 그 가운데는 피임방법을 포함한 적극적인 성교육과 낙태의 허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는 국가적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 임신·출산의 세계적 경향을 보면 청소년 출산율 수준은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폭넓은 수용과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국가들이므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청소년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므로 청소년들의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출산 현황을 보고할 때 대부분 생존 출산율(live birth rate)을 척도로 이용하게 되지만, 이는 인공임신중절로 종결된 임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임신과 출산 문제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출산을 하더라도 아기 외조부모의 자녀로 가족관계가 정리되어 출생한 자녀가 동생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그 규모를 알 수 없고 이들은 청소년 출산 통계에서도 누락되고 있다.

셋째,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소득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⁴²⁾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대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는 부모와 왕래 자체가 없거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소득과 자산을 보유한 부모의 존재만으로 법에서 정한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급여 일체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소득지원은 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00~130%에 해당하는 모 혹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미양육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도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과 불법을 감수하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다.

42)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동법 제4조제1항).

또한 연구과정에서 만난 일부 청소년 한부모는 높은 양육의지와 적극성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기관을 통해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외부와의 교류가 없거나 지지망이 없는 경우 정보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부진하다.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여성, 즉 어머니에게 있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미혼부는 임신·출산·자녀양육의 책임과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가족부가 친자검사비와 자녀양육비 청구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친자로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상대 남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미혼부는 경제적인 능력 자체가 없고 미혼부의 부모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분명한 근거도 없어 청소년 한부모가 친자확인과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에 있어 남녀 모두가 당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제도적 장치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녀양육 지원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양육과 학업 및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외부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돌보미 사업이나 보육료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학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돌보미 사업의 경우 연 480시간이라는 이용시간의 제한이 있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 및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보미 제도는 비용 면에서도 접근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양육지원 서비스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데 있어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우리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동시에 발달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보급·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섯째, 청소년 한부모가 학습권, 양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우선 학습권과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심각한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개별학교가 청소년 미혼모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가 나서서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한부모 발생의 보호요인이며, 학교를 벗어난 순간 청소년 한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성 빈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한부모들의 양육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한 자녀를 양육할 권리는 부모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손자를 입양을 보낼 수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리를 무리하게 행사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 자녀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청소년 한부모가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하여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소년의 임신·출산 전반에 있어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에 대한 의지와 목적을 보다 굳건히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빈곤과 부족한 지지체계가 동반될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일부 자녀 방임과 학대 사례도 발견되었다. 현재 입소시설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에게 대한 심리적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재가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그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낙태를 하거나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의 경우 양육 한부모에 비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이 더 클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숙제도이다. 이 제도는 출산 후 자녀를 입양하기 전에 7일 간의 숙려 기간을 줌으로써 출생한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보다 신중한 입양을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그간 출산과 동시에 입양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했던 많은 폐해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양의 전 과정에서 출생한 아동의 관점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임신 과정에서 이미 입양을 결정한 청소년에게는 숙려 기간이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주는 기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입양숙려제도에 대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는데 비해 입양을 보냈거나 보낼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나쁜 제도’라고 평가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입양 전에 친생모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 한 후 7일이 지나서 입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있고, 동시에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미 입양을 결정한 상황에서 자녀를 돌보고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자체가 당사자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숙려 기간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행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입양 전에 고통과 참회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버려 두는’ 시간으로 쓰이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가 아닐 것이다. 당사자와 출생한 아기를 위해 입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약 양육을 선택할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어떤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시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면접대상자 중에도 자녀양육을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절대 입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임신 단계에서 이미 확고하게 입양을 결정한 경우라면, 심리적 외상에 대한 치유와 함께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회고와 상담을 통해 상황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같은 사안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과제 및 제언

정책제언은 위에서 서술한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청소년 임신·출산과 관련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크게 청소년 한부모 예방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후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1) 청소년 한부모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개입정책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자녀양육이라는 성인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출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취약 가정 및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강화

앞서 서술했듯이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이 지목되었다. 즉 성적인 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빈곤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많은 경우 임신 당시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자취나 가출을 한 상태였으며, 부모와 함께 지낸다 하더라도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열악한 가정환경은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이른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성에 노출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자녀 출산 후 입양 보내기나 양육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아웃리치 기능을 확대하여 열악한 가정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사회 안전망 내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결손을 대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위기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성교육과 성상담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성교육 시수보장 및 맞춤형 성교육 실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접근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009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사에 의한 체계적 보건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이들 바탕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 1개 학년을 정하여 연간 17시간(1학기 동안 1주일에 1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보건교육이 실시되지만, 중·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채택 비율이 10% 내외로 저조한 실정이다(김은지 외, 2012: 116). 법률에서 규정한 보건교육의 의무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형식도 매우 중요한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식 교육보다는 학급 및 소집단 단위, 체험교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성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서로 다른 욕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선택교과의 채택 비율을 확대하고, 보건과목 편성과 시수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 요구되며, 성교육이 보건교과 내에서 학교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이지만 맞춤형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성교육을 통해 피임실천율을 제고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 학교 밖 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여자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 임신과 같은 위기상황에 특히 취약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성교육 보다 학교 밖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이 성의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만족도 역시 높았다. 일례로 ‘실제 성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학교 성교육에서는 51.1%에 불과한 반면, 학교 외 성교육에서는 83.9%에 달하였다. 또한 ‘교육을 받은 후 성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 성교육에서는 38.3%, 학교 외 성교육에서는 6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11년 3월~2012년 2월까지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생이 4만 명(중학교 1만 7천여 명, 고등학교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한국교육개발원, 2012) 시점에서 학교 밖 성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뿐 아니라 소년원, 보호관찰소, 분류심사원 등 취약·위기 청소년 대상 시설 및 기관의 성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교육 확대 운영을 위한 계획 마련과 매뉴얼 보급이 요구된다.

(4) 성평등 피임교육 강화: 남학생에 대한 책임교육

이번 연구에서 연령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성교육이 성문제 이해와 성에 대한 생각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최근의 성교육이 과거에 비해 실효성과 교육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의 첫 성관계 시기나 피임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교육이 청소년 한부모 발생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성평등 피임교육에서 젠더역학을 고려한 성교육과, 남성의 피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적극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피임방법 중 남성이

사용하는 콘돔은 피임성공률이 높고 동시에 구입이 비교적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소년들이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감수하고 고농도 호르몬제인 응급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 낙태를 강요받기도 한다. 따라서 피임실천의 책임은 남·여 모두에게 있으며, 성행동은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5) 자녀양육 책임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민법, 가사소송법 등에 의해 청소년 한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이를 전담하는 행정담당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양육부모의 소재 및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조주은, 2010). 특히 아이가 생기면 인지청구를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가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양육비 납부를 거부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책임을 여성이 아닌 남·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사회전반에 파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성행동 이후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것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처하고 출생한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6) 성적인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적응력 강화

최근 청소년의 성경험은 특정 계층과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발생 역시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인다. 연구결과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성관계는 이성친구나 애인과 같이 주로 친밀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즉석만남이나 성구매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성관계에 이르는 경로 역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올바른 성의식과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보호해주는 사회적 체계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피임교육과 접근성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재임신을 통해 한부모가 되는 상황을 반복하기도 하여 개인과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성적인 사회’에 적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면서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국가들에 대한 심층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7) 청소년 관점을 반영한 응급 피임약 재분류 추진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경구피임약 재분류 논의가 최근 무산되었다. 즉 사전 피임약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반대로 응급 피임약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응급 피임약은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응급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특히 여성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복용에 대한 지도 없는 자유로운 판매로 인해 청소년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여성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절충안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임신과 같은 사안에서 신속히 병원에서 응급 피임약을 처방받는 등 일련의 대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성행위의 책임을 여성이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요자인 여성, 특히 청소년의 권리와 관점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피임약 재분류 논의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

(8) 보편적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배경으로 빈곤을 동반한 취약한 가정환경이 지목되었다. 그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각종 수당제도가 확대·도입되어 왔다. 문제는 각 부처간 유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수혜자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 간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한부모와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으로 재편하고, 18세 이후에도 주거비, 교육수당은 자녀양육 비용으로 간주하여 가족수당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상당수 OECD 국가에서와 같이 한부모에게는 아동수당 외 추가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이 빈곤한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현금성 급여 프로그램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한부모 발생 사후 개입 지원정책

준비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은 예방이 우선이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이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사안이 이미 발생했다면 국가가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관리·감독 및 보호·지원하는 이른바 ‘국친사상’이 적극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는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발생할 개인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원동력을 강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들이 생명의 존엄을 실천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이상 사회의 지탄을 받을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제는 이들이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정책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강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어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업중단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장치만 있을 뿐 ‘출산휴가제’도입, 임신·출산 학생을 위한 교내·외 시설 구비, 교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교내 상담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사례와 기준은 전무하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은 여전히 이중적인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낙태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관련한 권리 행사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한부모 대상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출산한 자녀의 입양과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부모가 손자녀의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 입양숙려제 기간 동안 친생부모인 청소년 한부모의 의사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앞서 2005년부터 11년까지 영아살해로 검거된 범죄자 총 83명 가운데 10대를 포함한 25세 이하는 48명(57.8%)으로 과반을 넘고, 이 중 10대도 16명(19.2%)이나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경찰청, 2010).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취약한 사회 안전망, 청소년의 적극적인 서비스 수혜 노력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초래된 극단적인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법적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이슈와 기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보완·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 이중과업 수행자

출산 이후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의 과업과 성인기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과업 수행자’이며, 따라서 특별한 보호와 다양한 정책적 욕구를 지닌 대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사회적 편견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제도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결과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다른 정책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낙인의 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 한부모를 특화된 정책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이중과업 수행자에 대한 선별적인 추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사회적 배제 예방: 생활전반에서의 자립능력 강화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는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조차 안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지원 및 지지 여부, 학업과 취업준비에 대한 의지와 여건 등 자립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별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본 조사 표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0.6%에 불과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정규학교보다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형태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보다 학업 중단 이후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8명은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했으나, 이에 반해 적성에 맞지 않거나 형편이 되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업에 대해 고민 중(20.0%)이거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는 경우(19.0%)도 다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학업중단숙려제’에 의한 숙려 기간 동안 피임방법을 포함한 성교육을 상담과정에 포함하고, 미혼모자지원시설과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의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 중인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대만,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임신·출산 학생을 위해 교내·외 시설 구비,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교내 상담 등 구체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0명 중 9명에 달하지만, 대만과 같이 ‘출산휴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것에 있어 10명 중 5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홍순혜 외, 2007). 따라서 교과부는 관련 지침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검정고시 학원비에 국한된 학습지원 예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대안학교, 원격교육 등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과 적성 등의 문제로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없을 경우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 중 상당수는 자녀가 만3세에 달할 때까지 양육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학업을 장기간 유예하여 청소년 한부모 지원 연령(24세)을 초과할 경우 학습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학습지원을 연장하여 생애기간 중 학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②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여건 마련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정부가 지원하는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보가 없었거나(20.9%), 미용·제과제빵 등 희망하는 직업훈련 업종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현재 취업 중인 경우는 13%, 19세 미만의 경우 5.1%에 불과하였는데 구직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나이가 어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뿐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는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즉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돌보미 지원을 확대하거나 예외 적용이 가능해야만 훈련 및 교육 포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그 일자리에 맞는 취업연계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연계

교육을 받은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조를 통해 이 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사업 중 폐지된 ‘자산형성지원계좌’의 경우 자립을 위한 종자돈 형성에 도움이 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직업훈련 및 취업과 연계하여 제한적이거나 신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영·유아기 자녀를 위한 양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상당부분 소진되고 있는 만큼, 근로소득에서 주거비와 양육비를 제외한 소득을 파악하여 이들이 정부 지원에서 최대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근로는 단순히 소득의 확보를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만성적인 수급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자립 의지를 키우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③ 자녀양육 지원강화

먼저 보육지원과 관련하여 돌보미 제도는 연간 이용시간이 48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60일 이상을 이용할 수 없다. 즉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종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하루 2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돌보미는 청소년 한부모가 ‘친정엄마’와 같이 수시로 양육을 분담하고, 육아와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돌보미 제도의 확대 운영 뿐 아니라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는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어려움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육아 휴직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육아 휴직제도는 고용보험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가족종사자, 일용직 및 파트타임 근로 여성 등은 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육아 휴직제도 운영에 있어 직종 간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장려세계’운영 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육아 휴직 대상자에게 기간 중 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방접종비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건강가정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확대 운영하거나, 의료보호에 준하여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영양보충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④ 주거지원 강화

현재 청소년 한부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 입주자는 그리 많지 않다. 제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납입횟수 등 입주조건에서 성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지원대상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10대 한부모는 그나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세대로 200여 세대에 불과하며,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입소시설은 자립 기반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시적인 거처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연령이 어리고 주변에 지지기반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10대 미혼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특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2~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그룹홈’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많은 이용자가 함께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는 줄이고 자녀양육이나 일상생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조그룹을 형성하거나 집단 상담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특화 운영이 요구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을 결정할 경우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독립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심리적 지원 강화 및 확대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육아를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 양육 부담,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자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무책임한 상대 남성에게 대한 분노와, 임신 및 분만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조차 없어 산전우울증과 산후우울증을 보이기도 하였고, 양육 과정이 너무 힘든 나머지 “낙태나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지만 친구에게는 양육에 대해 신중하게 재고하라고 권하겠다.”는 이중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분노, 서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식, 위축 등 복합적인 갈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임신·출산의 전 과정에서 주변의 지지가 없었던 경우 이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낮은 자존감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적극성에도 영향을 미쳐 정보와

지원에서 고립되는 상황이나 자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이 입소시설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재가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청소년 한부모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조집단, 멘토링, 육아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중대한 생애사건(life event)의 수준을 넘어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이 필요한 심각한 외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의 경우에도 입양숙려제 기간 등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는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5)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가족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미양육부모라 할 수 있는 미혼부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 청소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부가 ‘동거 중이거나 사귀고 있더라도’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합법적인 가족을 형성할 경우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즉 제도가 의도치 않게 청소년 한부모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가정 형태가 양육부담을 나누는데 용이하고 출생한 자녀에게도 바람직하다면,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법적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가정’모든 청소년 가정에 대해 한부모 대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아이 아버지 즉 미혼부에 대한 학업·자립지원 등도 포함된다. 특히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생계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복지 뿐 아니라 원 가정을 보호하는 가족정책으로서의 의미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만성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6) 재가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접근성 제고

청소년 한부모들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 제도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적극적인 요구와 행동화가 쉽지 않은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수성이 원인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 홍보의 부족과 제도의 진입장벽이 낮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시설에 입소한 후,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재가 한부모 청소년과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관련 지원 제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뿐 아니라 학교, 청소년 시설 및 기관,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에 홍보 유인물 비치하거나 인터넷 포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무료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재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와 사례관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청소년 한부모 이용 시설의 운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성보건서비스, 자조집단(self-help)과 멘토링 운영, 일시 휴식제도 운영, 원 가족과의 관계 회복 서비스 등 타 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7)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원 확대

현재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내 가족지원과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내에서 일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는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이며 상당수가 학업중단 상황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요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내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활동과 참여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상담과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들은 교육정책, 입양정책, 가족 및 복지정책, 청소년정책, 노동정책 등 기존 정책들간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다. 정책 과제의 시급성, 정책 추진 용이성, 추가 검토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안)을 표 V-1에서 제시하였다.

표 V-1 정책방안 추진 계획(안)

정책방안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013)	중장기		
		2014~ 2016	2017~	
1) 청소년 한부모 예방	(1) 취약 가정 및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2) 성교육 시수보장 및 맞춤형 성교육 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3) 학교 밖 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4) 성평등 피임교육 강화: 남학생에 대한 책임 교육		○	교육과학기술부
	(5) 자녀양육 책임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6) 성적인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적응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7) 청소년 관점을 반영한 응급 피임약 재분류 추진		○	보건복지부
	(8) 보편적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도입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1)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강화		○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 이중과업 수행자			○ 여성가족부
	(3) 사회적 배제 예방: 자립능력 강화			-
	① 학습권 보장 지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교육과학기술부
	②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준비 여건 마련		○	고용노동부
	③ 자녀양육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④ 주거 지원 강화	○		국토해양부
	(4) 심리적 지원 강화 및 확대		○	여성가족부
	(5)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가족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6) 재가 청소년 한부모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여성가족부 지자체	
(7) 청소년정책 대상으로서의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	

* 단기 정책방안은 기존 정책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정책방안은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로, 2013년도에 추진될 2차년 연구를 통해 실천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02). 미혼양육모의 현황. 제7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 강철희, 김교성, 김영범 (2000).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비 지출 변화(1982~1992)에 관한 실증적 연구: Fuller-Battese Model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2, 7-40.
- 경찰청 (2012). 강력범죄수사과 내부자료.
- 고경환, 장영식, 강지원 (2008).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6차(2010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 서울: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저소득 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 <https://oneclick.mest.go.kr/es/index.jsp>에서 2012년 5월 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0). 보도자료. 2010.8.30.
- 국토해양부(2012).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http://www.mltm.go.kr/ebook/20100503_ebook/EBook.htm에서 2012년 5월 29일 인출
- 김만지 (2000).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만지 (2001). 미혼모 스트레스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8), 53-65.
- 김만지 (2004). 미혼모의 임신 연령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또래,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2), 5-25.
- 김미숙 (2006). 방과후 아동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6(2), 3-36.
- 김미숙, 박민정, 이상현,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 (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03). 한국의 빈곤정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쟁점: 가족부양 ‘범위’ 및 ‘부양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9, 193-223.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 김은영 (2008).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삶과 미래**.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 (2008). 미혼양육모의 양육체험. **청소년복지연구**, 10(1), 1-20.
- 김은지, 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김혜영, 여유진 (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2012). **공생발전 종합연구 :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선, 김은하 (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체험. **한국사회복지학**, 58(1), 373-393.
- 김혜영 (2010). 십대청소년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 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26(4), 101-131.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윤홍식 (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1), 5-51.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 (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남미애, 홍봉선 (2011). 청소년 양육미혼모의 부모됨의 경험과 의미: 시간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3), 141-170.
- 도미향, 정은미 (2001).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2), 1-11.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정책 및 미혼모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주요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2).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지원. <http://www.mcst.go.kr/web/cultureInfoCourt/voucher/art.jsp>에서 2012년 6월 10일 인출
- 박복순 (2004).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민사법연구**, 12(2), 27-66.
- 박진아 (2011).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모·자의 심리적응 및 모-자녀관계 관련 연구. **놀이치료연구**, 15(1), 43-56.
- 배영미, 이형실 (2002).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및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39-51.
- 백옥현 (2008).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관점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15(7), 49-77.
- 백혜정, 김은정 (2008).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9). **보육실태조사**. http://stat.mw.go.kr/stat/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601에서 2012년 2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 국내외입양통계**.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EQ=264530&page=1에서 2012년 9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국내외입양통계**. http://www.mw.go.kr/fron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CONT_SEQ=264582&page=1에서 2012년 9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1). **요보호아동현황보고**.
- 보건복지부 (2012). **결식아동 급식지원**.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servId=SCY00000003>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http://www.bokjiro.go.kr/morning/morning1.do>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 **복지로**. www.bokjiro.or.kr 에서 2012년 6월 10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svcsearch/WelSvcSearchView.do>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생활요금 감면제도**.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7 에서 2012년 5월 7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 <http://www.bokjiro.go.kr/morning/morning1.do>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http://www.bokjiro.go.kr/service/livingView.do?data_sid=5085124에서 2012년 5월 29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송다영 (2006).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권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사회투자 국가로의 전환과 사회복지 노동시장**, 327-333.
- 서울특별시청(201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2>에서 2012년 5월 29일 인출
- 서정애 (2009).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81-308.
- 석창훈 (2008). **학생미혼모 실태와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복지적 대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2). 아이돌봄 서비스.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1.jsp에서 2012년 6월 5일 인출
-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진주 (2008). 아동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보건사회연구**, 28(1), 3-26.
- 연합뉴스 (2012.12.28). 미혼모 학습권 등 인권위 권고 일제히 수용.
- 연합뉴스 (2012.8.29). 사후피임약 약국판매 무산에 '갑론을박' 재연
- 유희정 (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한국여성개발원.
- 윤미현, 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윤홍식 (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5-27.
- 이미정, 김혜영, 선보영 (201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봉주, 광금주, 구인희, 김민화, 김선숙, 김지현 외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삼식, 최효진, 김윤경, 김영아 (2009). **선진국의 인구문제 및 정책방향: 저출산대책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시백, 서정애, 박인화, 이제진 (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성문화 연구소·보건복지부.
- 이용우 (2006). 여성 한부모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 연구**, 22(2), 105-131.
- 이준일 (2012).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고려법학**, (64), 139-171.
- 이현주 (2011). 원가족이 경험한 양육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 143-175.
- 장혜경, 홍승아, 김혜영, 정경자, 김보영 (2006). **주요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경순 (2008). 십대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아동간호학회**, 14(2), 186-194.
- 정호진 (2012). 경구피임약의 유통과 복약지도 이대로 좋은가! 경구피임약 이대로 좋은가!: **피임약 분류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제석봉, 석창훈 (2008). **학생미혼모실태조사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주은 (2010).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천혜정, 배선희, 송말희, 송현애, 전길양 (2002). 미혼모 보호시설 종사자들을 통해 본 10대 미혼모의 교육요구도와 시설운영에 관한 연구 양육결정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0(9), 63-78.
- 최경화 (2006). **양육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승희 (2003). 자녀를 상실한 미혼들을 위한 슬픔완화 지지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아동 복지학회**, 16, 261-280.
- 최정수, 원종욱, 채수미, 박은자, 서경 (2010).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0). **인구동향조사**.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1035에서 2011년 9월 6일 인출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

- 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9에서 2012년 2월 22일 인출
- 통계청 (2010). **장래가구추계**.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 (검색일: 2011. 9. 6)
- 통계청 (2010). **혼인통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8&idx_kornm=한부모%20가구%20비율에서 2012년 2월 14일 인출
- 통계청(2011). **건강심사평가원 분만건수**.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에서 2012년 9월 6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연보**.
- 행정안전부(2012). **OK주민서비스**. <http://www.oklife.go.kr>에서 2012년 6월 11일 인출
- 허남순, 노충래(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형사정책연구원(2011).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기관평가용 미발간보고서.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홍순혜, 김혜래, 이해원, 변귀연, 정재연, 이상희 외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Paula, A.M. (2007). *Social Work Services in Schools*. Allyn and Bacon.
- Berthoud R, & Robson K. (2001). *The Outcomes of Teeange Motherhood in Europe*, Innocenti Working Paper. no.18, Firenze, UNICEF Innocenti Research Paper.
- Breheny, M., & Stephens, C. (2008). Breaking the cycle: constructing intergenerational explanations for disadvantag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 754– 763.
- Daguerre A. & Nativel C., (2004). *Les maternités précoces dans les pays développés : problèmes, dispositifs, enjeux politiques*, Cnaf, Dossier d'études n° 53.
- Dalla, R., & Gamble, W. C. (2000). Mother, daughter, teenager—who am I? Perceptions of adolescent maternity in a navajo reservation community. *Journal of Family Issue*, 21(2), 225–245.
- de Certaines, M., Martin, C., & Vasseur, V. (2000). *Etre monoparent à Rennes : des familles sous contraintes dans un contexte institutionnel local*, CAF et la Ville de Rennes.

- Ercan, O., Alikasifoglu, M., Erginoz, E., Janda, J., Kabicek, P., & Rubino, A., et al. (2009). Demography of adolescent health care delivery and training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ediatrics*, 168, 417–426.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 parent households*.
- French, R.S., Mercer, C.H., & Kane, R. (2007). What impact has England's Teenage Pregnancy Strategy had on young people's knowledge of and access to contraceptive servic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594–601.
- Hoffman, S. D. (1998). Teenage childbearing is not so bad after all or is it?: A review of the new literature, *Family Planning Perspective*, 30(5), 236–243.
- Ingham, R. & Zessen, G. (1998). From cultural contexts to interactional competencies: A European Comparative study'. Paper presented at AIDS in Europe, Social and Behavioural Dimensions.
- 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Bordeaux (2004). Les maternités précoces dans les pays développés: Problèmes, dispositifs, enjeux politiques, *Dossiers d'études*, 53,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 Kahn, J.G., Brindis, C.A., & Gleit, D.A. (1999). Pregnancies averted among U.S. teenagers by the use of contraceptiv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1(1), 29–34.
- Ketting, E. & Visser, A.P. (1994). Contraception in the Netherlands: the low abortion rate explain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23, 161–171
- Kiernan, K. (1995). *Transition to Parenthood: Young mothers, young fathers - associated factors and later life experiences*, Welfare State Programme, Discussion paper WSP/113, London School of Economics.
- Lynch, R. (2004). *Exceptional Returns: Economic, fiscal and social benefits of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OECD (2011).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2년 2월 20일 인출
- OECD(2012).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에서 2012년 10월 11일 인출
- Raatikainen, K, Heiskanen, N, Verkasalo, P. K, & Heinonen, S (2006). Good outcome of teenage pregnancies in high-quality maternity care. *European Journal Public Health*, 16(2). 157-61.
-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2011). *Briefly: A Summary of Effective Interventions*. http://www.thenationalcampaign.org/resources/pdf/Briefly_Effective_Interventions.pdf에서 2012년 3월 28일 발췌.
- Paton, D. (2002). The Economics of Family Planning and Underage Conception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1, 2(March), 27-45.
- Reid, V. & Meadows-Oliver, M. (2007). Postpartum depression in adolescent mothers: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1, 289-298.
- Roles, P. (1989). *Saying goodbye to a baby: The birthparent's guide to loss and grief in adoption*. Washington: CWLA.
- Trifiletti, R. (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parent households*.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Fondazione G. Brodolini.
- Wilkinson, P., French, R., & Kane, R. (2006). Teenage conceptions, abortions, and births in England, 1994-2003, and the national teenage pregnancy strategy. *Lancet*, 368, 1879-1886.
- Wong, J. & Checkland, D. (1999). *Teen Pregnancy and Parenting: Social and ethical issu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부록(설문조사지)

부록(설문조사지)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 조사									
<p>안녕하십니까?</p> <p>우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p> <p>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성의 있는 답변은 여러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p> <p>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u>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u>,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u>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u>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u>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조사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연구 담당자: 백혜정 연구위원 전화: (02)2188-8818 이메일: hbaek@nypi.re.kr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조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조사 담당자: 신성현 부장/임영학 과장 전화: (02)3014-0088 이메일: yhlim@hrc.co.kr </td> </tr> </table>								조사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연구 담당자: 백혜정 연구위원 전화: (02)2188-8818 이메일: hbaek@nypi.re.kr	조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조사 담당자: 신성현 부장/임영학 과장 전화: (02)3014-0088 이메일: yhlim@hrc.co.kr
조사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연구 담당자: 백혜정 연구위원 전화: (02)2188-8818 이메일: hbaek@nypi.re.kr	조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조사 담당자: 신성현 부장/임영학 과장 전화: (02)3014-0088 이메일: yhlim@hrc.co.kr								
면접원 성명		슈퍼바이저 확인		전화검증 확인 성공		응답자 ID			
응답자 성명	연락처			() -					
이메일 주소	_____ @ _____								
조사 일시	2012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시 _____ 분부터 _____ 시 _____ 분까지								
면접장소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면/읍								

신문1 귀하께서 본 조사에 참여하신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모자시설(모자보호시설((구)모자원),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 ② 부자시설(부자보호시설)
- ③ 미혼모자시설
- ④ 공동생활가정(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 ⑤ 미혼모·부자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 ⑥ 그 외 시설·기관
- ⑦ 집(시설·기관 이용 안함)
- ⑧ 기타(_____)

신문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조사 중단

신문3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198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조사중단

신문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이혼
- ③ 사별
- ④ 기혼 조사 중단

신문5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대구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경기도 |
| ⑨ 경상북도 | ⑩ 경상남도 | ⑪ 전라북도 | ⑫ 전라남도 |
| ⑬ 충청북도 | ⑭ 충청남도 | ⑮ 강원도 | ⑯ 제주도 |

☉ 다음은 (미혼)모자 관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 귀하는 (미혼)모자 관련시설에 입소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입소하고 있다 ⇨문 1-1로 이동
- ② 과거 입소해 보았다 ⇨문 1-1로 이동
- ③ 전혀 없다 ⇨문 1-9로 이동

※ 다음은 (미혼)모자 관련시설 입소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맨 처음 입소한 시설은 누구(어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주변 사람 ② 인터넷 ③ 병원 ④ 관련 정부기관/사회단체
- ⑤ 상담기관/입양기관 ⑥ 기타(_____)

문 1-2 시설에 입소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의 입소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출산 또는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 ② 주변사람 모르게 출산 또는 양육하려고
- ③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④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어서
- ⑤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⑥ 기타(_____)

문 1-3 입소시설의 주된 선택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의 입소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원래 살던 곳과 가까운 곳 ②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
- ③ 이용자들의 평판이 좋은 곳 ④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곳
- ⑤ 입소자 정원이 다 차지 않아 빈자리가 있는 곳 ⑥ 기타(_____)

문 1-4 입소 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가장 최근의 입소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적절하다
- ② 짧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문1-4-1로 이동
- ③ 길다 (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 ⇨문1-4-2로 이동

문 1-4-1 짧다(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년 _____개월 ⇨문1-5로 이동

문 1-4-2 길다(좀 더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년 _____개월

문 1-5 입소시설의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법률 및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⑤ 받은 적 없다'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받은 적 없다
1) 자립지원 프로그램(취업/진로교육)	①	②	③	④	⑤
2) 교양/문화 프로그램(영화관람, 박물관견학 등)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5) 산전·산후 관리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성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7) 산전·산후 및 일반 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8) 법률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문 1-6 시설에 거주하면서 좋았던 점을 우선순위 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 ① 숙식(거주지)제공 | ② 쾌적한 환경 | ③ 시설담당자와의 관계 | ④ 입소자들과의 관계 |
| ⑤ 교육 프로그램 | ⑥ 자립지원프로그램 | ⑦ 자원서비스(업무/의료지원 등) | ⑧ 타 기관과의 연계 |
| ⑨ 비밀(안전)보장 | ⑩ 기타(_____) | | |

문 1-7 시설에 거주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우선순위 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
| ① 열악한 시설 | ② 외출 제한 | ③ 엄격한 생활규칙 | ④ 입소자들과의 관계 |
| ⑤ 시설담당자와의 관계 | ⑥ 내키지 않는 프로그램 참석 | ⑦ 원하는 프로그램 부족 | ⑧ 개인생활 부족 |
| ⑨ 대중교통이용이 불편 (의진 곳 위치) | ⑩ 기타(_____) | | |

문 1-8 퇴소 후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가셨습니까)?

- | | | |
|---------|-----------------|-----------------|
| ① 부모님 집 | ② 친구/선후배 집 | ③ 아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 |
| ④ 자립 | ⑤ 다른 (미혼)모부자 시설 | ⑥ 아직 결정하지 못함 |
| | | ⑦ 기타(_____) |

☞ 문1-8응답 후 문2로 이동

※ 다음은 (미혼)모자 관련시설 입소 경험이 없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9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입소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 ② 입소시설에 빈자리가 없어서 |
| ③ 입소절차가 까다로워서 | ④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
| ⑤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 ⑥ 아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
| ⑦ 친구나 친지 집에 있을 수 있어서 | ⑧ 나 혼자 생활할 수 있어서 |
| ⑨ 기타(_____) | |

문 2-6-2 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몸조리를 위해 스스로 그만 됨
- ②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 됨
- ③ 임신 사실이 알려져 주위로부터의 차별이나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그만 됨
- ④ 임신 사실이 알려져 부모님이나 가족의 권유로 그만 됨
- ⑤ 임신 사실이 알려져 학교(교사)의 징계나 강요 때문에 강제로 그만 됨
- ⑥ 아이를 돌보기 위해
- ⑦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
- ⑧ 기타 (_____)

문 2-7 향후 학업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 ①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 ② 정규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 ③ 원격교육(방송통신학교, 사이버대학 등)을 이용하고 싶다
- ④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
-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 ⑥ 독학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 ⑦ 아직 고민 중이다
- ⑧ 기타 (_____)

→문2-7-1로 이동

→문3으로 이동

문 2-7-1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 지속 방법을 몰라서
- ②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③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④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형편이 안돼서
- ⑤ 경제활동(돈벌이)을 해야 돼서
- ⑥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
- ⑦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 ⑧ 기타(_____)

문 5-6 귀하가 첫 성관계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결혼할 사이라서 ② 서로 사랑해서 ③ 충동적으로 ④ 호기심으로
 ⑤ 성폭력 등 강제로 ⑥ 숙식, 금품을 제공받아서 ⑦ 기타(_____)

문 5-7 귀하는 임신 전 성관계시 피임을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 ① 성관계마다 하였다 ② 대부분 하였다
 ③ 가끔 하였다 ④ 전혀 하지 않았다

문 5-7-1 성관계시 피임의 결정은 주로 누가 합니까?

- ① 본인 ② 상대방
 ③ 사전에 서로 합의 ④ 기타(_____)

문 5-7-2 귀하는 피임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인척 ④ 학교성교육(보건교사)
 ⑤ 의사/간호사/약사 ⑥ 민간단체 ⑦ 친구/선후배 ⑧ 대중매체
 ⑨ 인터넷 ⑩ 성인용 매체 ⑪ 기타(_____)

문 5-7-3 귀하가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피임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피임하지 않는다 ② 먹는(사건) 피임약 ③ 응급(사후) 피임약 ④ 콘돔
 ⑤ 자궁내 장치(루프) ⑥ 살(질)정제(질좌약) ⑦ 월경주기법 ⑧ 난관수술
 ⑨ 정관수술 ⑩ 질의 사정법 ⑪ 기타(_____)

문 5-7-4 먹는 피임약(사전 피임약)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어려움을 겪었다 ②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③ 먹는 피임약(사전피임약) 구입 경험이 없다

문 5-7-5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을 의사 처방 후 약국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어려움을 겪었다 ②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③ 응급 피임약(사후피임약) 구입 경험이 없다

문 5-7-6 콘돔을 마트 및 편의점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어려움을 겪었다 ②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③ 콘돔 구입 경험이 없다

문 5-8 귀하는 출산(낙태, 자연유산, 사산) 이후 성관계를 하셨습니까?

- ① 했다 ▶문5-8-1로 이동 ② 안 했다 ▶문6으로 이동

문 5-8-1 귀하는 출산(낙태, 자연유산, 사산) 후 얼마 만에 성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약 _____ 개월

문 5-8-2 귀하는 출산(낙태, 자연유산, 사산) 이후 성관계시 피임을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 ① 성관계마다 하였다 ② 대부분 하였다 ③ 가끔 하였다 ④ 전혀 하지 않았다

☺ 다음은 임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6 귀하가 지금까지 임신한 경험은 모두 몇 회입니까?

_____ 회

※ 가장 최근의 임신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1 임신 당시 귀하와 상대 남성은 각각 몇 살이었습니까?

귀 하 : 만 _____ 세

상대방 : 만 _____ 세

문 6-2 임신 당시 귀하와 상대 남성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없음', 모르면 '모름'으로 기입)

ex) OO편의점 주간 아르바이트, OO화장품 화장품 판매

귀 하 : (구체적으로) _____

상대방 : (구체적으로) _____

문 6-3 귀하는 임신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임신 후 _____ 개월 (또는 _____ 주)

문 6-4 귀하가 임신을 원했습니까?

① 예 ▶문6-5로 이동

② 아니오 ▶문6-4-1로 이동

문 6-4-1 (원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임신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임을 했으나 실패했다 ▶문6-5로 이동

② 피임을 하지 않았다(못했다) ▶문6-4-2로 이동

문 6-4-2 (피임을 하지 않았다면(못했다면)) 귀하가 피임을 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② 미처 피임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③ 상대 남성이 원하지 않아서

④ 임신하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아서

⑤ 성폭력 등 사고로 인해

⑥ 기타(_____)

문 6-5 귀하는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서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았습니까?

① 정기적(한 달에 1회 이상)으로 받았다

② 비정기적으로 몇 번 가서 받았다

③ 받지 않았다

문 6-6 귀하는 상대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까?

① 알렸다 ▶문6-6-1로 이동

② 알리지 않았다 ▶문6-6-2로 이동

문 6-6-1 (알렸다면) 귀하의 임신을 알게 된 후 상대 남성의 주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결혼하자고 하였다

②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고 하였다

③ 낙태하라고 하였다

④ 출산 후 입양 보내라고 하였다

⑤ 헤어지자고 하였다

⑥ 연락이 끊어졌다

⑦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다

⑧ 아무 반응 없었다

⑨ 기타(_____)

▶ 문6-6-1 응답 후 문6-7로 이동

문 6-6-2 (알리지 않았다면) 귀하의 임신에 대해 상대 남성에게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알려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② 연락이 닿지 않아서
- ③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서 ④ 나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 ⑤ 상대 남성이 누군지 몰라서 ⑥ 기타(_____)

문 6-7 상대 남성은 귀하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 ① 애인/남자친구 ② 친하게 지내던 친구/선후배 ③ 가족이나 친인척
- ④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⑤ 전혀 모르는 사람 ⑥ 남편
- ⑦ 기타(_____)

문 6-8 귀하가 임신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어려운 점이 없었다 ② 주변에 알려지는 것
- ③ 숙식문제 ④ 사회적 편견과 차별
- ⑤ 마음의 혼란 ⑥ 아이의 장래(출산, 낙태, 입양, 양육 등) 결정
- ⑦ 상대 남성과의 관계 ⑧ 경제적 문제
- ⑨ 신체적 피로 및 건강 문제 ⑩ 기타(_____)

문 6-9 다음의 사람들은 귀하의 임신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1)인지 여부의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알고 있(었)다면 이후 귀하와 그들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관계 변화의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⑨ 해당자 없음'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1) 인지 여부	2) 관계 변화	해당자 없음
(1) 아버지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2) 어머니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3) 형제자매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4) 상대 남성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5) 상대 남성 가족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6) 친한 친구/동료	① 안다	① 더 좋아졌다 ② 더 멀어졌다 ③ 변화 없다	⑨
	② 모른다		

문 6-10 귀하가 임신을 알게 된 후 임신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항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거의 항상 했다
1) 태아를 위한 가벼운 운동과 영양섭취	①	②	③	④
2) 태아를 위해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노력	①	②	③	④
3) 술을 마셨다	①	②	③	④
4) 담배를 피웠다	①	②	③	④

문 7-8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귀하가 겪은 정신적 후유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정신적 후유증: 우울, 죄책감, 남성불신, 피해의식, 성생활에 대한 공포감 등

- ① 매우 심했다 ⇨문7-8-1로 이동 ② 심했다 ⇨문7-8-1로 이동 ③ 약간 있었다 ⇨문7-8-1로 이동
 ④ 거의 없었다 ⇨문8로 이동 ⑤ 전혀 없었다 ⇨문8로 이동

문 7-8-1 (있었다면) 귀하는 정신적 후유증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 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③ 전문기관의 상담, 병원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받았다 ④ 기타(_____)

☺ 다음은 출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8 귀하는 출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8-0으로 이동 ② 없다 ⇨문9로 이동

※ 다음은 가장 최근의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8-0 있다면, 출산은 지금까지 몇 번 하였습니까?

_____회

문 8-1 귀하가 출산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낳기를 위해서 ② 아이 아버지가 낳기를 원해서
 ③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④ 혼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⑤ 아이 아버지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⑥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⑦ 낙태(인공임신중절)를 미처 하지 못해서 ⑧ 시설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⑨ 기타(_____)

문 8-2 귀하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나 혼자 결정하였다. ② 아이 아버지
 ③ 내 부모님 ④ 아이 아버지 부모님(가족)
 ⑤ 내 형제자매 ⑥ 친구/선후배
 ⑦ 상담기관(지원 시설이나 기관) ⑧ 기타(_____)

문 8-3 자연분만이었습니까?

- ① 자연분만하였다 ② 제왕절개하였다

문 8-4 조산(37주 이하에 출산)이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8-5 출생 시 신생아의 몸무게는 몇 Kg이었습니까?

_____ Kg

문 8-6 귀하는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를 했습니까?

- ① 충분히 했다 ② 약간 했다 ③ 거의 못했다 ④ 전혀 못했다

문 8-7 귀하는 출산 후 4주 이내에 산부인과에 가서 산후 검진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다 ② 못 받았다

문 8-8 출산 후 귀하가 겪은 신체적 후유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신체적 후유증: 생리불순, 세균감염, 산후풍, 습관성 유산, 불임,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 등

- ① 매우 심했다 ⇨문8-8-1로 이동 ② 심했다 ⇨문8-8-1로 이동 ③ 약간 있었다 ⇨문8-8-1로 이동
 ④ 거의 없었다 ⇨문8-9로 이동 ⑤ 전혀 없었다 ⇨문8-9로 이동

※ 다음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⑩ 문 10-5 현재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⑩ 문 10-6 귀하의 자녀는 몇 년 생입니까?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가장 큰 아이부터 둘째 아이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첫째: _____ 년 생 / 둘째: _____ 년 생

⑩ 문 10-7 가정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이 엄마(본인) ② 가족 ③ 친구/이웃
 ④ 자원봉사자/아이 돌보미(외부 지원) ⑤ 육아도우미/파출부(비용 개인 부담) ⑥ 기타(_____)

⑩ 문 10-8 귀하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① 특별히 없다 | ② 경제적 어려움 |
| ③ 아이 돌보기 | ④ 사회적 편견 |
| ⑤ 내 미래(진로 및 결혼)가 불투명한 점 | ⑥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아이가 힘들어할까봐 |
| ⑦ 가정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점 | ⑧ 가족과의 단절 |
| ⑨ 기타(_____) | |

⑩ 문 10-9 귀하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각 일상생활 영역 별로 다음 중 도움을 많이 준 사람(기관)을 순서대로 선택해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아이 아버지 ② 아이 외할아버지 ③ 아이 외할머니 ④ 아이 친할아버지 ⑤ 아이 친할머니
 ⑥ 아이 외가 쪽 친인척 ⑦ 아이 친가 쪽 친인척 ⑧ 내 친구/이웃 ⑨ 파출부/육아도우미 ⑩ 아이돌보미/자원봉사자
 ⑪ 지원 시설/기관 ⑫ 일시위탁 ⑬ 기타(_____)

일상생활 영역	도움을 주는 사람들(번호로 써 주십시오.)
1) 경제적 도움(용돈, 생활비 등)	_____
2) 아기 돌보기 도움	_____
3) 가사 도움(집안일, 집 봐주기 등)	_____
4) 정서적 도움(의논, 푸념 상대 등)	_____

⑩ 문 10-10 현재 아기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 ① 함께 산다 ⇨문10-14로 이동
 ② 따로 살지만 여전히 사귀고 있다 ⇨문10-11로 이동
 ③ 헤어졌지만 필요할 때 연락은 하고 지낸다 ⇨문10-11로 이동
 ④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 ⇨문10-11로 이동
 ⑤ 기타(_____) ⇨문10-11로 이동

⑩ 문 10-11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귀하는 아이 아버지 쪽에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0-12로 이동 ② 없다 ⇨문10-13으로 이동

㉔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1 각 지원 정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 문11의 지원 정책 중 '① 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지원 경험 여부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책	인지 여부		지원 경험 여부	
	안다	모른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1) 영유아 보육료/학비(만 0~5세) 지원	①	②	①	②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6개월 미만) 양육수당지원	①	②	①	②
3)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월 15만원)	①	②	①	②
4)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무료법률상담)	①	②	①	②
5) 아이 돌보미	①	②	①	②
6) 생필품비(분유, 기저귀 비용 등) 지원	①	②	①	②
7) 기초생활수급지원	①	②	①	②
8)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①	②	①	②
9)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①	②	①	②
10)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보험료 지원	①	②	①	②
11) 출산 전 진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12) 출산비 지원	①	②	①	②
1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①	②	①	②
14) 심리상담(개인/집단 상담) 서비스	①	②	①	②
15)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①	②	①	②
16) 임대(국민/영구)주택 지원	①	②	①	②
17) 복지시설입소	①	②	①	②
18)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①	②	①	②
19)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20) 자립촉진수당	①	②	①	②
21) 자산형성계좌지원	①	②	①	②
22)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창업 및 운영자금) 대여	①	②	①	②
23) 저소득 가구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①	②	①	②
24) 공공요금(전화요금/전기요금/통신비)감면	①	②	①	②
25) 기타()	①	②	①	②

문 11-1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정책 중 귀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정책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 문11의 지원 정책 중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①받았다)만 순서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문 11-2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해 그 **번호**를 써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다음은 귀하가 현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2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13 귀하는 지난 일 년 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거의 없었다 (일 년에 1-2번 이하)	가끔 있었다 (한 달에 1-2번)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1-2번)	대부분 그랬다 (거의 항상)
1)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될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14 귀하는 지난 한 달간 다음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⑨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	거의 없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해당사항없음
1) 집안일	①	②	③	④	⑨
2) 직장일(학업)	①	②	③	④	⑨
3)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⑨
4) 아이 돌보기	①	②	③	④	⑨
5)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⑨
6) 원가족(부모 및 형제자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⑨
7)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⑨
8) 사회적 편견 및 차별	①	②	③	④	⑨
9) 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⑨
10) 미래에 대한 걱정	①	②	③	④	⑨
11) 기타()	①	②	③	④	⑨

문 15 현재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건강하지 않다

☺ 다음은 귀하의 현 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6 현재 귀하가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시설 거주 ⇨문17로 이동 ② 부모님 집 ⇨문16-1로 이동
 ③ 내가 마련한 주거지 ⇨문16-1로 이동 ④ 형제자매/친인척집 ⇨문16-1로 이동
 ⑤ 친구집 ⇨문17로 이동 ⑥ 기타() ⇨문17로 이동

(문 16-1) 현재 귀하가 생활하는 곳의 주거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문 17 현재 귀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자녀 ⇨문17-1로 이동 ② 내 부모님 ⇨문18로 이동
 ③ 내 형제자매 ⇨문17-1로 이동 ④ 내 친인척 ⇨문17-1로 이동
 ⑤ 자녀의 아버지 ⇨문17-1로 이동 ⑥ 자녀 아버지 가족 ⇨문17-1로 이동
 ⑦ 친구/선후배 ⇨문17-1로 이동 ⑧ 시설관계자/이용자 ⇨문17-1로 이동
 ⑨ 기타()

⇨ 문17에서 '② 내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문17-1로 이동

⇨ 문17에서 '② 내 부모님'을 선택한 경우는 문18로 이동

(문 17-1)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습니까?

※ 부모님이 안계시면 '⑥ 안 계시다'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년 1회 이상	몇 년에 한 번	안 만난다	안 계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귀하의 원가정 및 보호자(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8 귀하는 어떤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까?

- ① 양친 가정 ② 계부모 가정 ③ 한부모 가정 ④ 조손 가정
 ⑤ 위탁가정(친인척 포함) ⑥ 대안 가정(그룹홈, 보호시설 등) ⑦ 기타(_____)

문 19 귀하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랐습니까?

※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을 의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문 20 귀하 보호자(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 다음은 귀하의 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1 현재 귀하의 월 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각 항목에서 1) 소득 여부 중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시고, 소득이 있다면 2) 월 평균 소득액에 그 액수를 만원 단위로 적어 주십시오.

항목	1) 소득 여부	2) 월평균 소득액
1) 귀하의 근로소득(세금공제 이전 소득 기준)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2) 가족(부모님 및 형제·자매, 친인척 등)으로부터의 지원 ※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응답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3) 아이 아버지(전 배우자) 또는 아이 아버지(전 배우자)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4)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5)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지원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6) 기타(부동산 임대소득, 저축 이자 등)	① 있다 ② 없다	월평균 약 _____ 만 원
계		월평균 약 _____ 만 원

문 22 현재 귀하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문22-1로 이동 ② 아니오 ▶문23으로 이동

문 22-1 현재 귀하는 월평균 얼마를 저축하고 있습니까?

(월 평균 _____ 만 원)

문 23 현재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 ① 예 ▶문23-1로 이동 ② 아니오 ▶조사 완료

문 23-1 현재 귀하는 부채(빚)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총 _____ 만 원)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Research 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y I : A General Report

This research is a cooperative research of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articipa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 this year, as the first year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was put to analyse living conditions of the youth single parents including the youth's pregnancy, childbirth, adoption and child custody. The detailed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different area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 it grasped the current status of the youth single parents who have experienced pregnancy, childbirth, adoption and parenting, analysing the various political issues and needs. Second, based on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youth single parents, the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y and support policy were suggested. Third, it reviewed the childbirth status of the youth of the OECD countries and derived implications by classifying the types of single-parent policy. For this,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as utilized such 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on the youth single parents, statistical analysis on the OECD and EU countries, officials FGI, seminars and etc.

This research is consisted of total four volumes; a general report, 「Research 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y I」 and three detailed reports, 「Research on the different youth single parent support policy within countries」, 「Prevention and Support for Policy Studi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youth single parents」, and 「Handbook of Support Project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ies」.

As the findings, the background of female adolescents' pregnancy and childbirth results from vulnerable family environment, dropouts situation and low contraceptive practice. In addition, the youth single parents who sent the child up for adoption tend to have more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an those who raise their own, and the latter was shown that they are not able to work or study effectively due to the burden of child raising. Lastly, in case that adolescents are under the age of 19, the parents of them have the support obligation for their children, putting themselves in the blind spot of institutional support or not guaranteed the self-determination on pregnancy · childbirth · nurture.

Policy suggestions say that support policies for the youth single parents need to be developed as a whole in education policy to prevent unwanted pregnancy, adoption policy, and family policy for the youth single parents who raise a child, and yield the needs of step-by-step policy development considering the situation and needs of the adolescents.

keywords: youth single parent, youth pregnancy · childbirth, adoption, independence support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옥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수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흥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종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구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김희진·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이경상·변승환·유홍식·김현수·김동일·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김영지·김지연·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이진숙·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김진호·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장근영·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성윤숙·김경준·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조진우·박형근·이수경·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정제영·김성기·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조남익·손익숙·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장수현·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이유진·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이혜연·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김기현·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장근영·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김지경·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김지경·맹영임·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김준홍·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성윤숙·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최인재·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윤철경·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순)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일량 (동방아동복지회 사무국장)
목경화 (한국미혼가족협회 회장)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사)
이영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장)
이정옥 (문성중학교 수석교사)
이혜란 (탁틴내일 가해행동연구실장)
임형호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정미영 (한성여자중학교 보건교사)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양자 (한국한부모가정지도사협회 회장)
차미향 (서울시보건교사회 회장)
최규영 (서울과학고등학교 보건교사)
최미혜 (서라벌중학교 보건교사)
최형숙 (한국미혼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홍순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민숙 (대한사회복지회 미혼모쉼터 원장)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단체총연맹 회장)
허명숙 (스텔라의 집 원장)
Marie-Thérèse Letablier (Directrice de recherches CNRS)

감 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 문

이현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3-01

연구보고 12-R17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 총괄보고서

인 쇄 2012년 12월 21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5. 08. 31 제 301-2012-019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660-7 94330

978-89-7816-659-1(세트)

